

발 간 등 록 번 호

11-1192000-001662-01

# 경상북도 해양공간관리계획

2022. 6.





# 경상북도 해양공간관리계획

2022. 6.





### < 일러두기 >

- **본 관리계획(도면포함)에 표기된 해양공간**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공간계획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대상 해역의 해양용도구역 등을 효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인접 시·도의 육지부와 관할 해역이 일부 포함될 수 있음.**
- **관리계획의 도면**은 지방자치단체 간 해상 행정구역의 경계에 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등의 참고자료로 주장·활용할 수 없고**, 「해양공간계획법」의 소관사항이 아닌 어업권 및 공유수면 관리권한 등 타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목 차 ●●●

<b>제1장 해양공간관리계획 개요</b> .....	<b>3</b>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3
2. 목적 및 성격 .....	4
1) 계획의 목적 .....	4
2) 계획의 성격 .....	4
3. 범위 .....	5
1) 시간적 범위 .....	5
2) 내용적 범위 .....	5
3) 공간적 범위 .....	6
4. 수립 절차 .....	7
5. 추진 경과 .....	9
<b>제2장 해양공간관리 여건 및 정책 방향</b> .....	<b>13</b>
1. 환경적·생태적 특성 .....	13
1) 해안선 .....	13
2) 유·무인도서 .....	13
3) 연안·해양보호구역 .....	15
4) 해양생태계 현황 .....	17
2. 이용·개발 및 관리 현황 .....	29
1) 인구 .....	29
2) 사업체수 .....	30
3) 수산 .....	33
4) 광업권 .....	36
5) 해양관광 .....	37
6) 항만·항행 .....	39
7) 군사활동 .....	45
8) 공유수면 점·사용 .....	46
9) 안전관리 .....	48

3. 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 .....	51
1) 분석 개요 .....	51
2) 분야별 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 .....	54
4. 해양공간관리 현안 .....	65
1) 일반주민 설문조사 .....	65
2) 해양공간관리 현안 .....	69
5. 해양공간관리 정책방향 .....	71
<b>제3장 해양용도구역 지정 및 관리 .....</b>	<b>77</b>
1. 해양공간특성평가 .....	77
1) 해양공간특성평가 개요 .....	77
2) 기초자료 조사·수집 .....	78
3) 평가항목 .....	80
4)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 .....	82
2. 해양용도구역 지정 기준 및 구획 방법 .....	88
3. 해양용도구역 지정 및 관리 .....	103
1) 어업활동보호구역 .....	104
2)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	108
3) 해양관광구역 .....	110
4) 환경·생태계관리구역 .....	113
5) 연구·교육보전구역 .....	116
6) 항만·항행구역 .....	117
7) 군사활동구역 .....	120
8) 안전관리구역 .....	122
9) 에너지개발구역 .....	124
<b>제4장 해양공간계획의 성공적 수립 및 이행방안 .....</b>	<b>129</b>
1.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	129
2. 지역협의회 운영 결과 .....	131
1) 경북 지자체 설명회 .....	131
2) 경북 지역 담당자 협의회 .....	131
3) 제1차 경북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 .....	132
4) 제2차 경북 해양공간계획 지역협의회 .....	133

3. 해양공간관리 이행·점검 방안 .....	135
1) 해양공간관리 거버넌스 구축 .....	135
2) 해양공간관리 주기적 모니터링 .....	136
<b>부록 : 1. 경북 해양공간 이용 및 개발 수요 .....</b>	<b>141</b>
2. 경북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서 .....	147
3. 경북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위원 .....	159
4. 경북 지역협의회 의견 제출 현황 및 검토 결과 .....	160
5. 공청회 결과 .....	162
6. 관계기관 협의결과 .....	163
7. 경북 지역위원회 운영 결과 .....	164
8.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결과 .....	164
<b>경북 해양공간관리계획 설명서 .....</b>	<b>165</b>
<b>경북 해양공간관리계획도 .....</b>	<b>173</b>

# 표 목 차

〈표 2-1〉 경상북도 해안선 길이(2021년) .....	13
〈표 2-2〉 경상북도 유·무인도서 분포현황 (2021년) .....	14
〈표 2-3〉 관리유형이 지정된 무인도서 현황 .....	14
〈표 2-4〉 경상북도 절대보전 및 개발가능 무인도서 .....	14
〈표 2-5〉 경상북도 연안·해양보호구역 지정 현황 .....	15
〈표 2-6〉 경상북도 문화재 지정 현황 .....	15
〈표 2-7〉 경상북도 국가지질공원 현황 .....	16
〈표 2-8〉 경상북도 특정도서 지정 현황 .....	16
〈표 2-9〉 경상북도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 현황 .....	17
〈표 2-10〉 5대 해양생태축과 동해안 생태 보전축 .....	17
〈표 2-11〉 동해안 갯벌에 출현한 저서동물 .....	19
〈표 2-12〉 2020년 동해 및 전 해역 저서동물 출현 종수 .....	20
〈표 2-13〉 2020년 동해 및 전 해역 해조류 출현 종수 .....	21
〈표 2-14〉 동해 어란 및 난자치어 출현 양상 .....	27
〈표 2-15〉 동해 해역의 어종별 출현 현황 .....	27
〈표 2-16〉 경북 인구 현황 .....	29
〈표 2-17〉 경북 사업체 현황 .....	32
〈표 2-18〉 전국 및 경북 어업생산량 비교 .....	33
〈표 2-19〉 전국 및 경북 어업생산량 비교 .....	34
〈표 2-20〉 경북 어항 현황 .....	35
〈표 2-21〉 경북 광업권 설정 현황 .....	36
〈표 2-22〉 경북 해수욕장 방문객 수(2019년) .....	37
〈표 2-23〉 경북연안 및 해양 관광객 현황 .....	38
〈표 2-24〉 경북 마리나항만 개발 및 예정구역 .....	38
〈표 2-25〉 경북 어촌체험마을 현황 .....	39
〈표 2-26〉 포항항 항만시설 현황 .....	40
〈표 2-27〉 구룡포항 항만시설 현황 .....	41
〈표 2-28〉 강구항 항만시설 현황 .....	41
〈표 2-29〉 후포항 항만시설 현황 .....	41
〈표 2-30〉 울릉항 항만시설 현황 .....	42
〈표 2-31〉 경북 연안여객선 항로 현황 .....	43
〈표 2-32〉 유형별 공유수면 점·사용 현황 .....	47

〈표 2-33〉 지역별 점용·사용 분포 현황	47
〈표 2-34〉 해역별 해양사고 발생건수	48
〈표 2-35〉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 현황	49
〈표 2-36〉 연안침식관리구역 주요 내용	50
〈표 2-37〉 국가 및 광역·기초자치단체 연안·해양 이용·개발 관련 주요 계획	51
〈표 2-38〉 경북 연안·해양 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 특성 분석(해양용도구역별)	52
〈표 2-39〉 경북 연안·해양 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 적합성 협의 대상(해양용도구역별)	53
〈표 2-40〉 경북 연안용도해역지정 현황	54
〈표 2-41〉 경북 연안해역기능구 지정 현황	54
〈표 2-42〉 경북연안 공유수면매립수요 현황	57
〈표 2-43〉 포항항 개발 수요	58
〈표 2-44〉 구룡포항 개발 수요	58
〈표 2-45〉 강구항 개발 수요	58
〈표 2-46〉 후포항 개발 수요	59
〈표 2-47〉 울릉항 개발 수요	59
〈표 2-48〉 오산항 개발 수요	60
〈표 2-49〉 오산항 개발 수요	60
〈표 2-50〉 축산항 개발 수요	61
〈표 2-51〉 호미곶항 개발 수요	61
〈표 2-52〉 관광(단)지 사업 총괄	62
〈표 2-53〉 경상북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현황	63
〈표 2-54〉 지역주민이 인식하는 해양공간 활동간 갈등 예상 정도	68
〈표 3-1〉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목록	78
〈표 3-2〉 특성평가 평가항목	80
〈표 3-3〉 해양용도구역 설정 시 고려사항	90
〈표 3-4〉 해양용도구역 지정기준	90
〈표 3-5〉 「해양공간계획법」의 해양용도구역과 「연안관리법」의 연안해역기능구 비교	95
〈표 3-6〉 「해양공간계획법」 시행 시 기존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의 경과조치	95
〈표 3-7〉 항만·항행구역(안)과 중복하는 경우 조정 방향	96
〈표 3-8〉 환경·생태계관리구역(안)과 중복하는 경우 조정 방향	98
〈표 3-9〉 어업활동보호구역(안)과 중복하는 경우 조정 방향	99
〈표 3-10〉 해양관광구역(안)과 중복하는 경우 조정 방향	100
〈표 3-11〉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안)과 중복하는 경우 조정 방향	100
〈표 3-12〉 어업활동보호구역 관리구역 해양공간관리 사항	107
〈표 3-13〉 해양관광관리구역 해양공간관리 사항	112
〈표 3-14〉 환경·생태계관리구역 해양공간관리 사항	115

〈표 3-15〉 항만·항행관리구역 해양공간관리 사항 .....	120
〈표 4-1〉 경북 지역협의회 구성(안) .....	130
〈표 4-2〉 경북 지자체 설명회 주요내용 .....	131
〈표 4-3〉 경북 지역 담당자 협의회 주요내용 .....	132
〈표 4-4〉 제1차 지역협의회 주요내용 .....	132
〈표 4-5〉 제2차 지역협의회 주요내용 .....	134
〈표 4-6〉 관리계획의 이행점검 대상 및 방법 .....	137
〈표 4-7〉 자체평가 보고서의 목차 .....	138
〈부록 표 1-1〉 경북 연안해양 이용개발수요 특성 분석(사업성격) 1 .....	142
〈부록 표 1-2〉 경북 연안해양 이용개발수요 특성 분석(사업성격) 2 .....	143
〈부록 표 1-3〉 경북 연안해양 이용개발수요 특성 분석(용도해역) 1 .....	145
〈부록 표 1-4〉 경북 연안해양 이용개발수요 특성 분석(용도해역) 2 .....	146
〈부록 표 3-1〉 2021년도 경북 지역협의회 위원 .....	159
〈부록 표 4-1〉 제1차 경북 지역협의회 의견 제출 현황 및 검토 .....	160
〈부록 표 4-2〉 제2차 경북 지역협의회 의견 제출 현황 및 검토 .....	161
〈부록 표 5-1〉 공청회 의견 제출 현황 및 검토 .....	162
〈부록 표 5-2〉 관계기관 협의 의견 제출 현황 및 검토 .....	163

# 그림 목 차

<그림 1-1> 계획 수립 대상 해양공간 범위 ..... 6

<그림 1-2> 관리계획(안) 초안 작성 및 수립 절차 ..... 7

<그림 2-1> 경상북도 국가지질공원 위치도 ..... 16

<그림 2-2> 경북 암반생태계 해조류 총 출현 종수 ..... 20

<그림 2-3> 국내 암반생태계 대표 해조류 분포범위 ..... 21

<그림 2-4> 포항 영일만 수거머리말 군락 ..... 22

<그림 2-5> 울릉도, 독도 해역의 해양보호생물 ..... 23

<그림 2-6> 경북 연안생태계 식물플랑크톤 크기별 생물량 비율 ..... 24

<그림 2-7> 경북 연안 식물플랑크톤 출현 개체수 ..... 25

<그림 2-8> 경북 연안 식물플랑크톤 출현 종수 ..... 25

<그림 2-9> 울릉도 통구미항 내 발생한 적조 ..... 26

<그림 2-10> 경북 연안 동물플랑크톤 출현 개체수 ..... 26

<그림 2-11> 수온 상승으로 변화된 조업 해역(전국 연안) ..... 28

<그림 2-12> 경북 인구 현황 및 변화 ..... 30

<그림 2-13> 경북 연안 사업체 현황 ..... 31

<그림 2-14> 경북 연안 사업체 증가율 ..... 31

<그림 2-15> 경북 일반해면 및 천해양식 어업생산량 변화 ..... 34

<그림 2-16> 경북 어업권 면적 및 건수 변화 ..... 35

<그림 2-17> 경북 광업권 건수 및 면적 ..... 36

<그림 2-18> 경북 마리나항만 개발 및 예정구역 분포 ..... 39

<그림 2-19> 포항항 항만시설 설치예정평면도 ..... 40

<그림 2-20> 연안항 계획평면도 ..... 42

<그림 2-21> 포항항 항로 ..... 43

<그림 2-22> 연안여객선 항로도(동해 및 포항지역) ..... 44

<그림 2-23> AIS 선박밀집도(경북 및 울릉) ..... 44

<그림 2-24> 경북 해역 해상사격 훈련구역 현황 ..... 45

<그림 2-25> 지역별 점용사용 분포 현황 ..... 48

<그림 2-26> 경북 해양공간 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 위치 ..... 53

<그림 2-27> 경북 연안용도해역(안) 현황 ..... 55

<그림 2-28> 경북 연안용도해역(안) 현황 ..... 56

<그림 2-29> 경북연안 공유수면매립수요 현황 ..... 57

〈그림 2-30〉 경북연안 관광개발 공간체계	63
〈그림 2-31〉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 전략	64
〈그림 2-32〉 주민 거주만족도 및 바다 이용현황	66
〈그림 2-33〉 바다 고유 자원의 유형 및 바다 공간 혜택 인식도	66
〈그림 2-34〉 응답자 및 지역사회에 중요한 바다로부터의 혜택	67
〈그림 2-35〉 과거 10년 전 대비 바다 이용 변화 정도 및 이용방식 복잡화 정도	67
〈그림 2-36〉 향후 경북 해양공간계획 수립시 우선시 되어야 할 가치 AHP	68
〈그림 2-37〉 경북 바다 향후 지향 발전양상 및 해양공간관리 관련 우선 해결현안	69
〈그림 2-38〉 해양공간관리계획 정책방향 도출 과정	71
〈그림 3-1〉 특성평가 절차 및 방법	77
〈그림 3-2〉 용도구역별 특성평가	82
〈그림 3-3〉 일반격자(연안:1.5'×1.5', 영해내측: 3'×3', 영해외측: 15'×15')만 적용한 격자 구성	82
〈그림 3-4〉 경북 어업활동보호구역 관련 특성평가 결과	83
〈그림 3-5〉 경북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관련 특성평가 결과	84
〈그림 3-6〉 경북 에너지개발구역 관련 특성평가 결과	84
〈그림 3-7〉 경북 연구·교육보전구역 관련 특성평가 결과	85
〈그림 3-8〉 경북 군사활동구역 관련 특성평가 결과	85
〈그림 3-9〉 경북 항만·항행구역 관련 특성평가 결과	86
〈그림 3-10〉 경북 환경·생태관리구역 관련 특성평가 결과	86
〈그림 3-11〉 경북 안전관리구역 관련 특성평가 결과	87
〈그림 3-12〉 경북 해양관광구역 관련 특성평가 결과	87
〈그림 3-13〉 해양용도구역 지정 목적	88
〈그림 3-14〉 해양용도구역 지정 절차	94
〈그림 3-15〉 용도구역별 관리구역 도출 결과	102
〈그림 3-16〉 경북 주변해역 어종별 공간 분포 현황	106
〈그림 3-17〉 어업활동보호구역 내 관리구역	107
〈그림 3-18〉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109
〈그림 3-19〉 해양관광구역 내 관리구역	112
〈그림 3-20〉 환경·생태관리구역	113
〈그림 3-21〉 환경·생태관리구역 내 관리구역	115
〈그림 3-22〉 연구·교육보전구역	116
〈그림 3-23〉 항만·항행구역	118
〈그림 3-24〉 항만·항행구역 내 관리구역	119
〈그림 3-25〉 군사활동구역	121
〈그림 3-26〉 안전관리구역	123
〈그림 3-27〉 에너지개발구역	124

〈그림 4-1〉 경북 지자체 설명회 회의장면 .....	131
〈그림 4-2〉 제1차 경북 지역협의회 회의장면 .....	133
〈그림 4-3〉 제2차 경북 지역협의회 회의장면 .....	134





## 제1장

# 해양공간관리계획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목적 및 성격
3. 범위
4. 수립 절차
5. 추진 경과





## 제1장 / 해양공간관리계획 개요



###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해양 이용개발의 다양화, 부처별 해양공간 선점경쟁이 가속화 되면서 해양생태계 가치저하 및 이용-보전 간, 이용 간 갈등 심화
  - 해양자원은 공유재로 비합리적 입지선정은 타 분야 활용 가능성 훼손
  - 바다골재 채취와 어민과 갈등, 선박 통행과 양식해양에너지 단지조성으로 어장 축소, 양식어장과 선박 운항 간 갈등, 어로활동과 해양레저 활동 간 충돌 등 해양공간 이용의 갈등 광범위
- 해양생태계의 가치, 개발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양공간의 핵심용도와 관리방향을 사전 설정하는 실효적 계획체제 도입 필요
  - '17년 EU 해양수산국과 UNESCO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는 Marine Spatial Planning(이하 "MSP") 추진을 장려하기 위해 MSP 목표(전 세계 해양의 1/3, 2025년 까지 MSP를 통해 관리)를 제시하고,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 작성
  - 우리나라도 '18년 4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하여 해양공간계획체제를 도입·시행
- 「해양공간계획법」에서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해양공간을 9개 해양용도구역으로 구획하여 관리토록 명시
  - 「해양공간계획법」 제7조(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는 해양공간의 특성 및 현황, 보전 및 이용·개발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양용도구역을 지정·관리함
    - 해양수산부장관 :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과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 시·도지사 : 그 외 해양공간(영해 내)
  - 다만, 법 시행 후 제7조에 따라 최초로 수립되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해양공간계획법」 부칙 제5조)

- 해양공간특성평가, 해양용도구역제 등 해양공간의 객관적 평가 수단 도입 및 적용 필요
  - 해양용도구역제 도입으로 해양공간의 용도를 미리 지정하고 관리함으로써 해양공간의 핵심 활동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혜택을 지속가능하게 유지 및 보호
  -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하여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해양공간의 자연적 특성, 입지 및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2. 목적 및 성격

### 1) 계획의 목적

- 해양공간을 체계적·계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개발·보전 방향을 설정하고 계획 수립
- 해역의 특성과 다양한 해양공간의 이용·개발·보전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양공간의 현재 활동 및 미래 수요에 맞는 계획의 수립
- 효율적인 해양공간 관리를 위해 민·관·산·학·연 등 이해관계자의 협력 및 참여의 장 마련

### 2) 계획의 성격

- 법정계획
  -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공간계획법」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해양공간의 체계적·통합적 보전 및 이용·개발하기 위한 법정계획임.
- 실천계획
  - 해양공간관리계획을 통해 해양공간의 이용, 개발, 보전의 실태를 파악하고, 해양용도 구역을 결정하고 관리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해양공간의 관리에 관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실천계획임.
- 협력계획
  - 해양공간관리계획은 민·관·산·학·연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및 해양수산발전위원회 등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협력계획임.

### 3. 범위

#### 1) 시간적 범위

- 고시일로부터 적용: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수시 변경
  -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여건 변화로 내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해양공간관리계획을 변경
  - 향후 발생하는 해양공간에 대한 보전 및 이용·개발에 대한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관리
- \* 「해양공간계획법」제7조제7항에 따라 수립·고시된 관리계획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

#### 2) 내용적 범위

- 계획 수립 대상 해양공간(이하, 대상 해양공간)
- 대상 해양공간의 관리에 대한 정책방향
- 대상 해양공간의 특성 및 현황에 관한 사항
- 대상 해양공간의 보전 및 이용·개발에 관한 사항
- 대상 해양공간의 공간구조와 기능배분에 관한 사항
-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해양공간계획법」 시행령 제5조(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제3항
    - 해양용도구역이 지정된 해양공간을 용도에 맞게 지속적으로 이용·개발 및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관리계획의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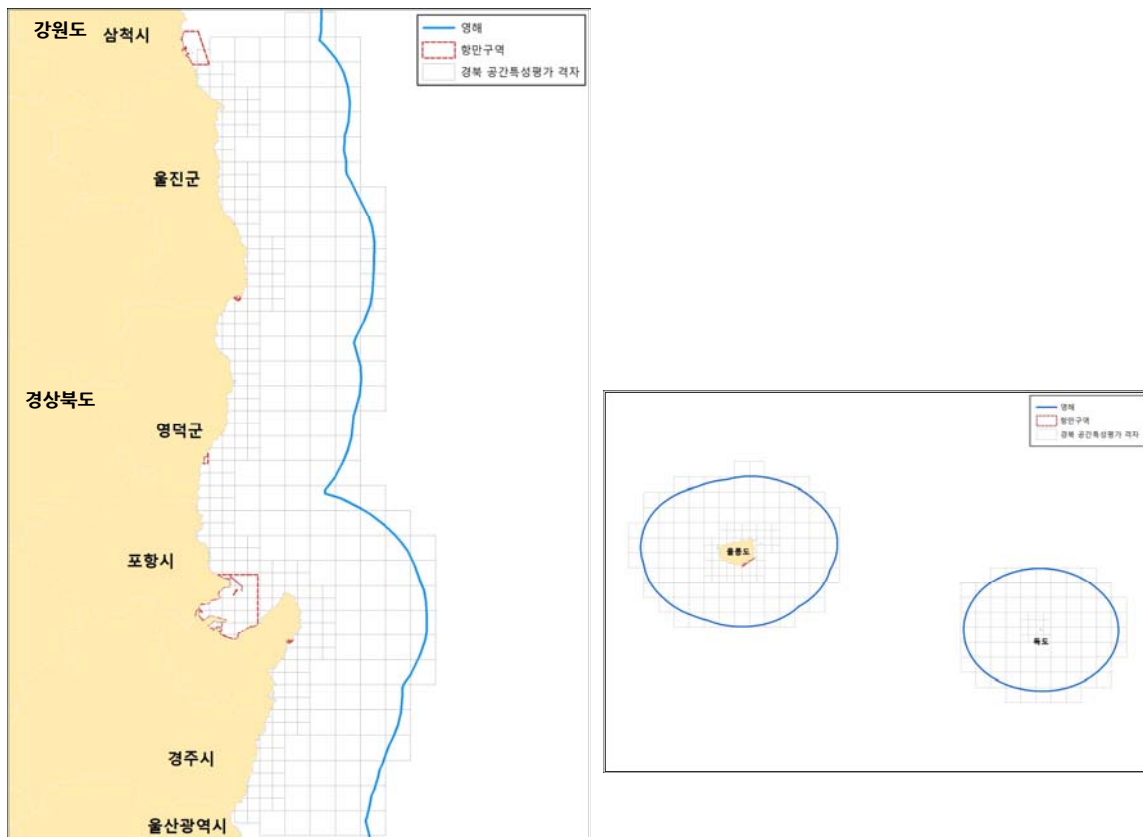
### 3) 공간적 범위

○ 대상 해양공간의 면적은 8,410.92km<sup>2</sup>

\* 면적은 관할해역 주장 범위(현재 판결, 관습적 경계, 연안관리지역계획 범위 등)를 토대로 산출한 것으로 인접 시도의 육지부와 관할해역이 포함되는 계획 설명범위(도면)와는 다름.

- 해양수산부 : 항만구역(109.54km<sup>2</sup>)
- 경상북도 : 영해 중 항만구역 제외 해양공간(8,301.38km<sup>2</sup>)

〈그림 1-1〉 계획 수립 대상 해양공간 범위



## 4. 수립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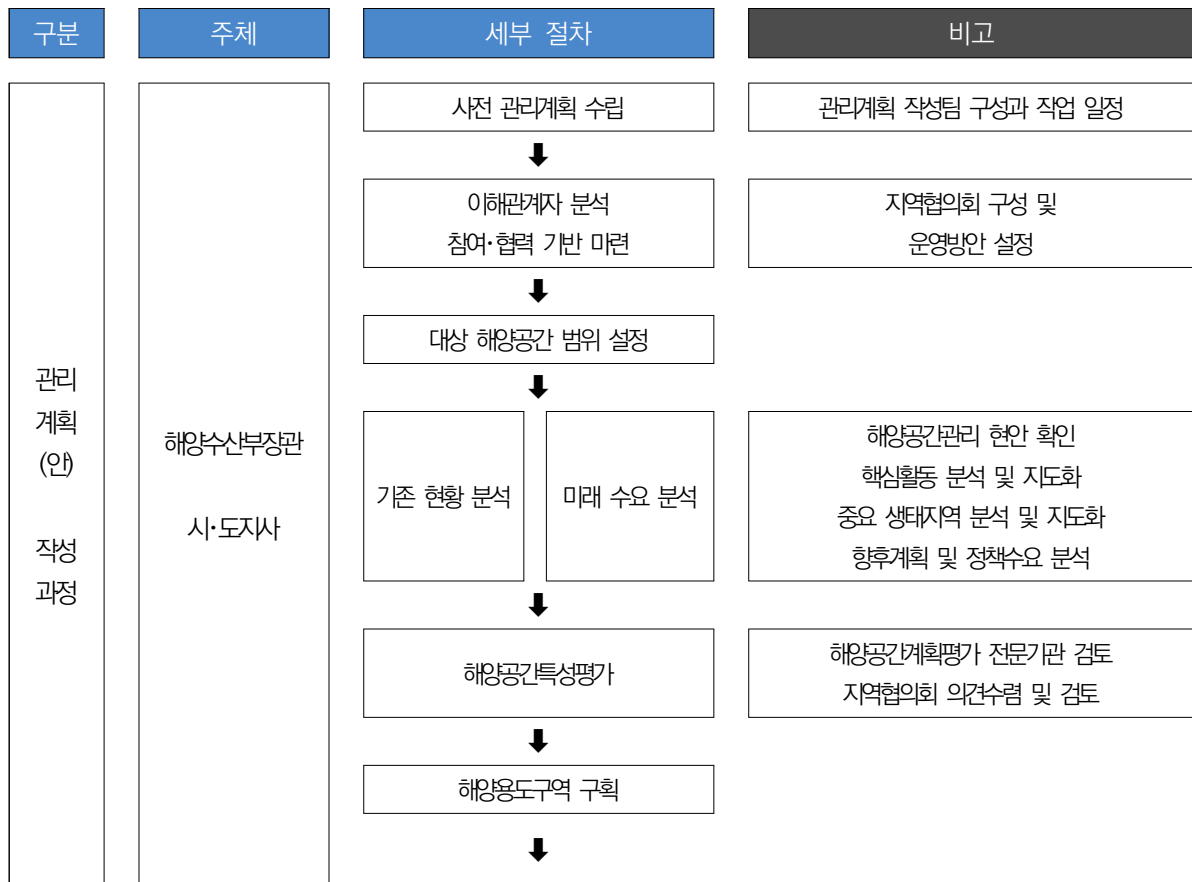
### □ 관리계획의 초안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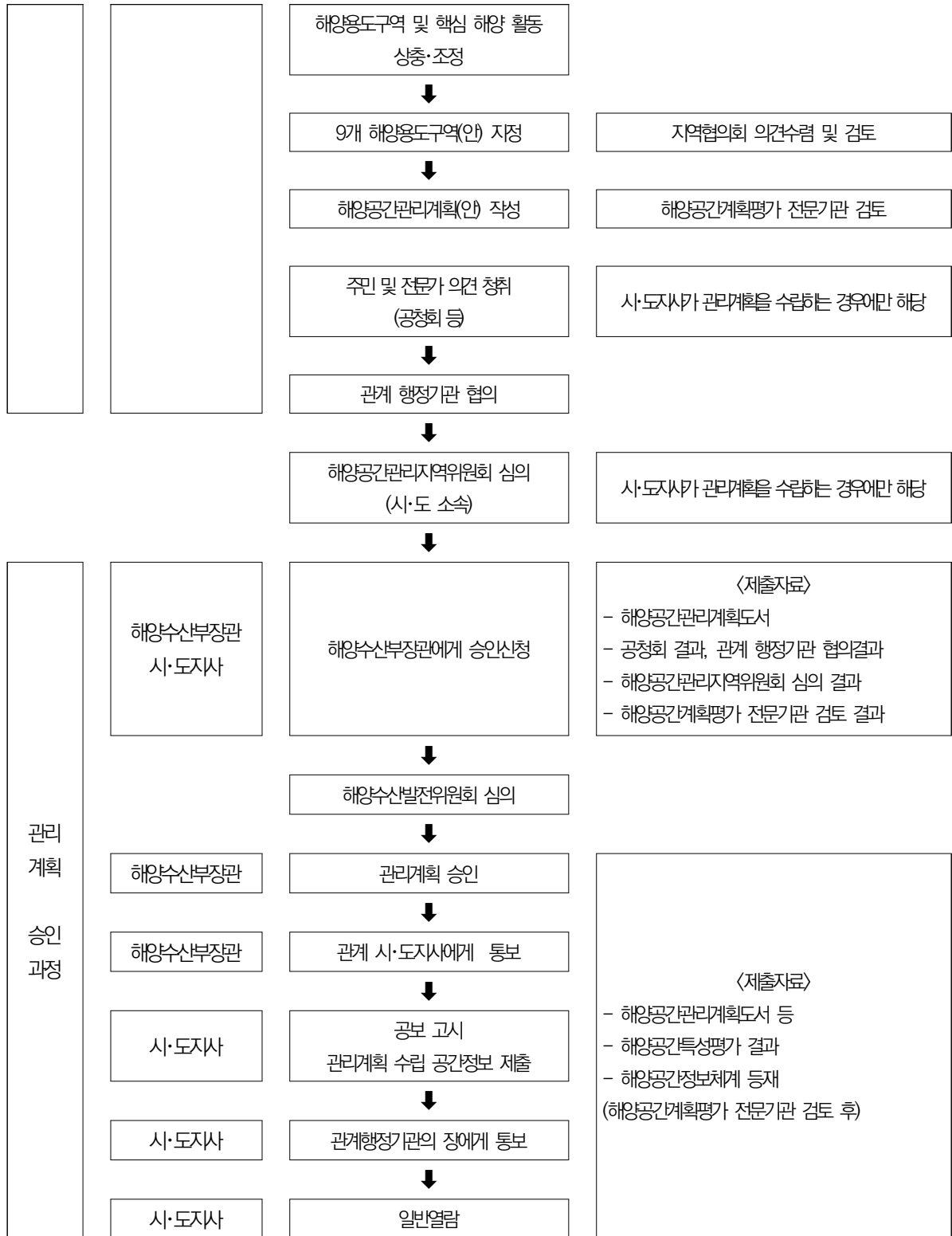
-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 이용·개발·보전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양용도구역(안)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지역협의회를 통해 주민,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리계획(안) 마련
- 관리계획(안)은 공청회 등 의견 수렴과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수정·보완

### □ 관리계획의 승인 과정

- 이후 관리계획(안)은 시·도지사 소속의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에 관리계획(안)의 승인을 신청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리계획을 승인

〈그림 1-2〉 관리계획(안) 초안 작성 및 수립 절차





자료 : 해양수산부, 2021,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21-64호)

## 5. 추진 경과

- 경북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착수 : '21. 3월
- 경북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지역협의회 관련 조례 제정 : '21. 7월
- 경북 해양공간관리계획(안) 마련 : '21. 8월
- 경북 시·군 사전설명회 : '21. 9월
- 경북 지역협의회 의견수렴 : '21. 10월, 11월 (2회)
- 경북 해양공간관리계획(안) 공청회 : '21. 12월
- 관계부처 의견조회 : '21. 12월 ~ '22. 1월
- 경북 지역위원회 운영 : '22.5월
-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 및 해양공간관리계획 확정 : '22.6월





## 제2장

# 해양공간관리 여건 및 정책 방향

1. 환경적·생태적 특성
2. 이용·개발 및 관리 현황
3. 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
4. 해양공간관리 현안
5. 해양공간관리 정책방향





## 제2장 / 해양공간관리 여건 및 정책 방향



### 1. 환경적·생태적 특성

#### 1) 해안선

□ 경북의 해안선 길이는 총 567.71km이며, 전국 해안선 길이의 3.7%를 차지

- 연안 시·군별로 포항시(2214.53km), 경주시(48.88km), 영덕군(98.22km), 울진군(121.23km), 울릉군(84.85km) 순

〈표 2-1〉 경상북도 해안선 길이(2021년)

(단위 : km, %)

구분	총 해안선 길이		자연 해안선		인공 해안선	
	길이	비율	길이	비율	길이	비율
전국	15,281.68	100.0	9,821.77	64.3	5,459.91	35.7
경상북도	567.71	100.0	342.37	60.3	225.34	39.7

자료 : 국립해양조사원(<http://www.khoa.go.kr/komc>)

□ 인공해안선 비율이 39.7%로 전국 평균(35.7%)보다 다소 높으며, 자연해안선 비율은 60.3%로 전국 평균(64.3%)에 비해 낮음

- 경상북도 인공해안선의 길이는 총 225.34km로 전체 해안선 길이의 3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평균(35.7%)보다 높은 인공화 경향을 보임

#### 2) 유·무인도서

□ 유·무인도서는 총 22개소로, 유인도서는 3개소, 지정 무인도서는 15개소가 존재

- 유인도서는 경상북도 전체 도서의 13.64%를 차지하며, 3개소 모두 울릉군에 있음

〈표 2-2〉 경상북도 유·무인도서 분포현황 (2021년)

(단위 : km<sup>2</sup>, %)

구분	유인도서				무인도서				총계	
	개수	비율	면적	비율	개수	비율	면적	비율	개수	면적
경상북도	3	13.64	73.26	99.85	19	86.36	0.11	0.15	22	73.37

자료 :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유인도서, 2021.11월 기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종합정보제공(<http://uii.mof.go.kr/>)(검색일자: 2021.11.29.)

- 관리유형이 지정된 무인도서는 전체 도서의 68.18%를 차지하며, 경주시 1개소, 포항시 3개소, 울릉군 11개소가 존재
  - 절대·준보전 유형이 9개소로 40.91%, 이용·개발가능 유형은 6개소로 27.27%를 차지
  - 관리유형이 지정된 무인도서중 면적을 기준으로 절대·준보전 유형이 36,690m<sup>2</sup>로 33.63%, 이용·개발가능 유형은 72,407m<sup>2</sup>로 66.37%를 차지
  - 절대보전 무인도서는 포항시 1개소, 울릉군 4개소 존재하며, 총 면적은 16,170m<sup>2</sup>

〈표 2-3〉 관리유형이 지정된 무인도서 현황

구분	개소	비율(%)	면적(m <sup>2</sup> )*	비율(%)
절대보전	5	33.33	16,170	14.82
준보전	4	26.67	20,520	18.81
이용가능	5	33.33	1,002	0.92
개발가능	1	6.67	71,405	65.45
총계	15	100.0	109,097	100.0

\* 일부 면적 통계가 미 제시된 무인도서가 존재

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종합정보제공(<http://uii.mof.go.kr/>)(검색일자: 21.11.29.)

〈표 2-4〉 경상북도 절대보전 및 개발가능 무인도서

구분	도서명	소재지	면적(m <sup>2</sup> )	관리유형
울릉군	공암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현포리	6,327	절대보전
울릉군	판바위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천부리	7,934	절대보전
울릉군	삼선암(2)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천부리	1,587	절대보전
울릉군	일선암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천부리	-	절대보전
포항시	호미곶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리	322	절대보전
울릉군	관음도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천부리	71,405	개발가능

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종합정보제공(<http://uii.mof.go.kr/>)(검색일자: 21.11.29.)

### 3) 연안·해양보호구역

□ 해양보호구역 2개소 지정·관리 중이며, 면적은 39.69km<sup>2</sup>임

- 울릉도 주변 해역 해양보호구역은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고, 해양보호생물인 유착나무돌산호와 해송류, 희귀종인 보석말미잘 등 학술적 가치가 높은 종들이 서식
- 호미곶 주변 해역 해양보호구역은 해양보호생물인 게바다말과 새우말의 주서식지이며, 해양보호생물의 산란장과 서식지로서 생태학적 보전가치가 높음

〈표 2-5〉 경상북도 연안·해양보호구역 지정 현황

구분	명칭	위치	지정일	면적(km <sup>2</sup> )
해양보호구역	울릉도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울릉군	2014.12.24	39.44
해양보호구역	호미곶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포항시	2021.12.31	0.25

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포털(<https://www.meis.go.kr/>)(검색일자: 22.4.3)

□ 천연기념물 2개소, 경상북도 기념물 1개소 등 연안·해양에 총 3개소 분포

〈표 2-6〉 경상북도 문화재 지정 현황

명칭	구분	분류	지정일	관리자
독도 천연보호구역	천연기념물 제336호	자연유산/천연보호구역/문화 및 자연결합성/영토적 상징성	1982.11.20	울릉군
양남 주상절리군	천연기념물 제536호	자연유산/천연기념물/지구과 학기념물/지질지형	2012.9.25	경주시
호미곶 등대	경상북도 기념물 제39호	유적건조물/교통통신/ 근대교통·통신시설/해운	1982.8.4	포항지방 해양항만청

자료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검색일자: 21.11.29)

□ 국가지질공원 2개소 지정 및 운영 중

- 경상북도에 지정된 국가지질공원은 2개소 있으며,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과 경북 동해안지질공원이 있음
  -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은 화산활동과 침식·퇴적지형의 지질학적·생태적·문화적 가치가 우수하며, 총 23개의 지질 명소 중 4곳이 독도에 위치함
  - 경북동해안지질공원은 동해안을 따라 위치한 포항, 경주, 영덕, 울진의 희소성 있는 지질·지형 유산을 보존 및 활용하고자 조성되었으며 다양한 지질·지형 명소들을 보유

〈표 2-7〉 경상북도 국가지질공원 현황

명칭	위치	명소 수	면적(km <sup>2</sup> )	인증일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울릉군 전지역	23개소 (울릉도 19개, 독도 4개)	127.9	2012.12.27
경북동해안지질공원	경주, 포항, 영덕, 울진	19개소 (경주시 3개, 포항시 5개, 영덕군 7개, 울진군 4개)	2,261	2017.9.13

자료 : 국가지질공원 사무국, 국가지질공원(<https://www.koreageoparks.kr/>)(검색일자: 21.11.29)

〈그림 2-1〉 경상북도 국가지질공원 위치도



자료 : 국가지질공원 사무국, 국가지질공원(<https://www.koreageoparks.kr/>)(검색일자: 21.11.29)

- 특정도서 1개소가 지정·관리 중이며 전국 특정도서의 0.34%가 경북 연안·해안에 분포
- 경상북도에 지정된 특정도서 1개소는 울릉군에 있는 독도이며 ‘특정도서’ 제1호임
- 경상북도 특정도서 면적은 188km<sup>2</sup>로서 전국 특정도서 면적의 1.36%를 차지함

〈표 2-8〉 경상북도 특정도서 지정 현황

행정 구역	도서명	지정 사유	면적(m <sup>2</sup> )	소재지	지정 차수
울릉군	독도	• 독특한 자연환경 유지 • 해양생물상이 다양하고 풍부	187,554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	1차

자료 : 환경부, 특정도서 지정현황(2020.12. 기준)

## □ 연안침식관리구역 2개소 지정·관리 중

- 연안침식관리구역은 전국 7개 중 경북지역에 2개소 있으며, 모두 울진군에 위치함
  - 2015년 지정된 봉평해변의 면적은 3,811천㎡, 2016년 지정된 금음해변의 면적은 4,268천㎡임

〈표 2-9〉 경상북도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 현황

명칭	소재지	면적(천㎡)	지정연도
금음해변	울진군 후포면	3,811	2016
봉평해변	울진군 죽변면	4,268	2015

자료 :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120호; 제2016-109호; 제2021-233호

## 4) 해양생태계 현황

- 우리 바다는 5개 해양생태축<sup>1)</sup>으로 구분되며, 경북 해양공간은 동해안 생태 보전축에 해당
  - 정부는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국토관리를 위해 한반도 생태축 관리 강화 추진 중
  -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해양생태축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양생태계 통합관리 정책을 추진할 계획

〈표 2-10〉 5대 해양생태축과 동해안 생태 보전축

구분	설정유형	5대 해양생태축
1	해양생물의 주요 서식처·이동로 보전축	① 서해안 갯벌 보전축
		② 남해 도서생태 보전축
		③ 동해 생태 보전축
2	해양보호생물(포유류)의 주요 이동로 보전축	④ 회유성 해양보호생물 (물범-상괘이) 보전축
3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변화 관찰축	⑤ 기후변화 관찰축

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보도자료, “해양생태축 구축 방안” 2020.7.; 해수부 내부자료, “「해양생태축 지정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알림 및 의견조회”, 2021.11월

1) 해양생태축 지정 목적: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따라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을 통합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함.

- 동해안 생태 보전축은 동해안의 해양생물다양성과 수산자원 증진을 위해 설정되었으며, 그 범위는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오륙도 까지임
  - 동해안 생태 보전축에 포함된 해양보호구역은 조도 주변해역, 오륙도 주변해역이고, 해역의 생산성인 높은 곳은 왕돌초 주변해역, 후포 용승해역임.

□ 해양생물다양성

- 경북 해역은 단조로운 해안선에 사질 및 암반이 우세한 퇴적환경으로 대양의 직접적인 에너지를 받는 개방형 연안(open coast)으로 분류됨.
  - 특히 북한 한류와 쿠로시오 난류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어 해양환경과 생물의 변화가 뚜렷하고, 이에 따라 해양생물다양성 또한 높음.
- 경북 울릉과 독도 해역에 출현하는 해양생물의 다양성은 약 570종 이상으로 이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음<sup>2)</sup>
- 2020년 국가 해양생태계종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동해안의 갯벌, 연안, 근해, 암반생태계 및 바닷새 현황을 확인하였음.

□ 갯벌생태계

- 경북해역의 갯벌의 저서동물 생물다양성 및 생물지수는 전국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 우리나라 갯벌에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출현한 저서동물은 총 771종이며 평균적으로 15종이 출현하였음
  - 반면 경북에서 출현한 저서동물은 총 48종이며, 평균적으로 3종이 출현하였음
  - 출현한 종에 대한 평균 다양도 지수에서도 경북은 지난 6년간 평균 0.63으로 전국 평균 1.78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음

---

2) Song SJ, Park J, Ryu J, Rho HS, Kim W, Khim JS, 2017, Biodiversity hotspot for marine invertebrates around the Dokdo, East Sea, Korea: Ecological checklist revisited. Marine Pollution Bulletin 119.; Hyeong-Gi Kima, Sung Joon Songa, Heegab Leeb, Chan Hong Parkb, Stephen J. Hawkinsc,d, Jong Seong Khima, Hyun Soo Rhob, 2020, A long-term ecological monitoring of subtidal macrozoobenthos around Dokdo waters, East Sea, Korea. Marine Pollution Bulletin 156.; JONG SEONG KHIM, CHANGKEUN LEE, SUNG JOON SONG, HANNA BAE, JUNSUNG NOH, JUNGHYUN LEE, HYEONG-GI KIM & JIN-WOO CHOI, 2021, MARINE BIODIVERSITY IN KOREA: A REVIEW OF MACROZOOBENTHIC ASSEMBLAGES, THEIR DISTRIBUTIONS, AND LONG-TERM COMMUNITY CHANGES FROM HUMAN IMPACTS, Oceanography and Marine Biology: An Annual Review 59.

〈표 2-11〉 동해안 갯벌에 출현한 저서동물

시기	평균 출현 종수		평균 다양도 지수	
	경북	전국 평균	경북	전국 평균
'15-'16	3종	18종	0.81	1.93
'17-'18	2종	14종	0.63	1.84
'19-'20	2종	12종	0.46	1.58
합계	3종	15종	0.63	1.78

- 경북을 포함한 동해지역은 대체적으로 갯벌(해변) 길이가 짧고 파도의 영향이 강하며, 특히 최근의 연안침식 이슈 등 서식지 자체의 안정성이 낮아졌음
  - 이러한 물리 환경은 저서생물이 서식하기에 어려운 조건일 수 있으며, 서남해안 갯벌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한 생물상이 그러한 결과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동해 저서생태계는 서남해안에서 찾아보기 힘든 고유의 특징적 모래갯벌 서식지로 사질 우점생물이 출현
- 달랑계를 제외한 다른 해양보호생물 출현하지 않음
- 잠재적으로 동해역에 서식가능한 해양보호생물 중 '달랑계'만 출현 확인
    - \* 달랑계는 강원을 제외한 전국 해안에서 고르게 출현하므로 경북을 대표하는 해양보호생물이라 보기는 어려움
  - 과거 달랑계가 생육가능한 최대 북방한계선은 영일만 지역이었으나, 최근의 조사에서 울진군 구산리에서 서식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서식지가 약 80km 북상한 것임
  - 달랑계 서식 북방한계선 변화의 이유로는 아직 구체적인 연구결과가 없지만, 기후 변화에 따라 달랑계 서식환경이 확장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음
  - 달랑계 서식지는 깨끗한 모래입자가 분포한 해안가인데 경북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전 해안에서 일어나는 연안침식으로 인해 서식지가 위협을 받고 있음
  - 특히 경북은 해수욕장이 넓게 분포하고 있고 이러한 공간이 달랑계 주요서식지임
  - 경북은 모래유실현상으로 인한 해수욕장 유실을 막기 위해 양빈(養濱)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달랑계 서식지는 중장비 작업에 노출될 수 있음. 이에 경북 연안의 양빈작업 시 달랑계 서식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

#### □ 암반생태계

- (저서동물) 전국 암반생태계 저서동물의 총 출현 종수 중 매우 높은 비율이 경북 해역에서 출현

- 우리나라 암반에서 출현한 저서동물의 출현 종수는 조간대 총 161종, 조하대 총 508종이며, 이 중 동해에서 조간대와 조하대 각각 120, 317종이 출현하였음
- 분류군 중 전반적으로 연체동물의 출현이 가장 높으며 절지동물, 환형동물, 극피동물 순으로 출현

○ 울릉도, 독도 지역의 생물다양성이 높음

- 기존의 연구에서도 울릉도와 독도 연안의 대형저서무척추동물 다양성(578종 출현)이 매우 높고 서해갯벌의 생물다양성(624종 출현)에 버금가는 것으로 알려짐(Song et al., 2017)
-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에서 울릉도와 독도의 암반생태계는 중점조사 정점에 속하는 지역으로 매년 많은 자료를 축적해왔고, 상대적으로 희귀종 등의 발견율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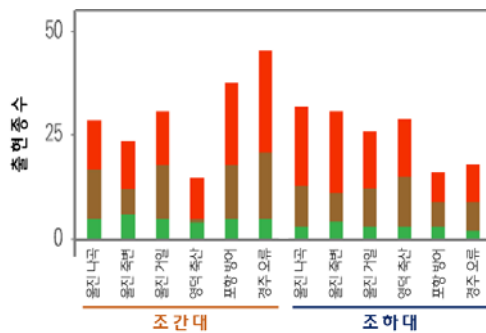
〈표 2-12〉 2020년 동해 및 전 해역 저서동물 출현 종수

분류군	해역(정점수)		조간대		조하대	
	동해(14)	전 해역(25)	동해(14)	전 해역(25)	동해(14)	전 해역(25)
환형동물	35	42	52	61		
절지동물	25	37	101	149		
극피동물	2	2	18	35		
연체동물	48	67	120	196		
기타동물	10	13	26	67		
합계	120	161	317	508		

○ (해조류) 전국 해조류 총 출현 종수 중 매우 높은 비율이 동해(경북) 해역에서 출현

- 우리나라 암반에서 출현한 해조류의 출현 종수는 조간대 총 169종, 조하대 총 233종이며, 이 중 동해에서 조간대와 조하대 각각 117, 143종이 출현하였음
- 분류군 중 전반적으로 홍조류의 출현이 가장 높으며 갈조류, 녹조류 순으로 출현

〈그림 2-2〉 경북 암반생태계 해조류 총 출현 종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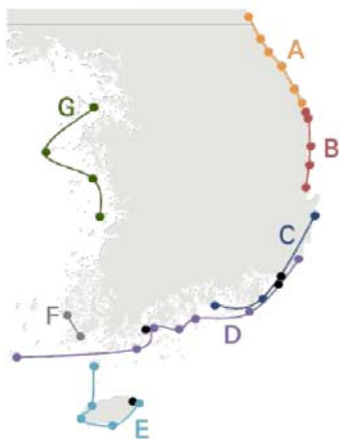
- 경북에서는 지역별로 조간대 평균 30여종, 조하대 평균 60여종 이상의 해조류가 출현하였으며, 이는 매우 높은 비율의 종이 동해(경북) 해역 암반생태계에서 출현

〈표 2-13〉 2020년 동해 및 전 해역 해조류 출현 종수

해역(정점수) 분류군	조간대		조하대	
	동해(14)	전 해역(25)	동해(14)	전 해역(25)
녹조류	15	18	13	25
갈조류	35	43	32	47
홍조류	67	108	98	161
합계	117	169	143	233

- 경북해역의 수온변화 지시종으로 해조류 적용 가능성이 높음
  - 동해안에서는 모자반류의 해조류가 공통적으로 우점하는 생물종임. 경북해역의 대표(지시) 해조류는 한온대성 해조류 구멍쇠미역이며, 경북 북부해역부터 강원지역은 한대성 쇠꼬리산말임
  - 이에 동해에서 두 종의 분포범위를 통해 연안 수온상승을 나타내는 기후변화 지시종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2-3〉 국내 암반생태계 대표 해조류 분포범위



그룹	대표(지시)생물	기타 특징
A	쇠꼬리산말 (한대성)	모자반류 공통 우점
B	구멍쇠미역 (한온대성)	
C	모자반류	
D	감태	감태 공통 우점
E	감태	
F	홍조류	대형 갈조류 극소량 출현
G	-	낮은 생체량

자료 : 해양환경공단, 2020, 2020년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해양생태총서

- (해초류) 해초류는 우리나라의 동해안에 집중적으로 분포
  - 전국 총 25개 정점 중 16개 정점에서 총 4종(거머리말, 수거머리말, 계바다말, 새우말)의

- 해초류가 출현하고 있으며, 특히 경북지역의 울진 나곡리, 울진 거일리, 울진 죽변리, 영덕 축산리, 포항 방어리, 경주 오류리 조사정점에서 게바다말이 넓게 분포
- 게바다말의 평균 서식밀도는 3,479 shoot·m<sup>-2</sup>로 해초류 가운데 가장 높은 밀도로(새우말 2,443shoot·m<sup>-2</sup>, 거머리말 392shoot·m<sup>-2</sup>, 수거머리말 213shoot·m<sup>-2</sup>) 생육하는 종임
  - 특히, 포항 방어리 지역은 국내 최대 게머리말 분포(99,040m<sup>2</sup>) 지역이며, 과거 포항 영일만에서 국내 최대 수거머리말 분포(약 150,000m<sup>2</sup>) 지역이 발견된 것(해양환경공단, 2018)을 감안하면 포항의 해초 군락은 전국 최대 규모의 보전해야 할 해양생물 자원지로 판단됨.

〈그림 2-4〉 포항 영일만 수거머리말 군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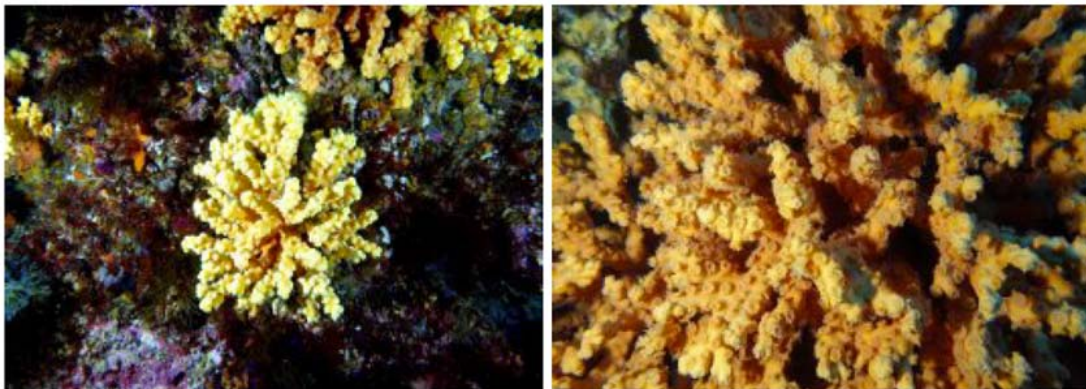


자료 : 해양환경공단, 2020, 2020년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해양생태총서

- 해양생태계 탄소흡수원으로 해초류(잘피) 관리 강화 필요
  -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최종점 과제는 2030 탄소배출 40% 감축과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감축원 확보가 있음
  - 특히, 자연기반 탄소흡수원 발굴에서 해양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해초류는 해양 탄소흡수원 ‘블루카본’으로 해양생태계 내 해초류 군락의 확장은 곧 탄소 감축원 추가 확보로 귀결됨
  - 이에 해초류 분포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잠재적인 탄소량(블루카본) 산정을 위한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
  - 향후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해초류 군락을 증대하는 사업이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며, 동해안(경북 등) 조하대에 전략적으로 이식하기 위한 해초류 종 선정에 활용할 수 있는 생태자료 구축이 필요
- (해양보호생물) 2020년 발견된 경북의 해양보호생물은 1종

- 2020년 경북의 중점조사 해역(왕돌초, 울릉도, 독도)에서 확인된 해양보호생물은 유착나무돌산호(*Dendrophyllia cribrata*) 1종임
- 해당 종은 대형 돌산호류로 남해역 내 거문도와 남형제섬에서도 서식이 확인된 종으로 심미적, 생태적, 자원적 가치 측면에서 보존 가치가 높은 종임

〈그림 2-5〉 울릉도, 독도 해역의 해양보호생물

유착나무돌산호-울릉도  
(*Dendrophyllia cribrata*)유착나무돌산호-독도  
(*Dendrophyllia cribrata*)

자료 : 해양환경공단, 2020, 2020년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해양생태총서

#### □ 연안생태계

##### 〈수질환경〉

- 춘·하계 모두 비교적 낮은 농도의 영양염 보고됨.
  - 동해의 표층 수온은 지난 30년간 0.9도 이상 상승하였는데, 이로 인해 표층과 중층 사이의 성층이 강화되면서 저층으로부터의 영양염 공급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
  - 영양염의 감소는 일차생산자이자 중요 먹이원인 식물플랑크톤의 감소를 야기하며, 이는 주요 어족자원의 감소까지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일부 지역에서 중금속인 니켈과 비소가 높은 농도로 나타남
  - \* CF(Concentration Factor)<sup>3)</sup>가 10이 넘는 항목 및 정점을 위주로 기술함
  - 2016년 하계 포항 연안(영일만)에서 니켈(Ni)과 2018년 하계 영덕 연안에서 비소(As)가 기준 농도보다 높게 나타남
  - 경북의 연안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경우 점오염원이 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3) Concentration factor: 중금속 농도자료를 기준 농도값으로 나눈 수치이며, 여기서 기준 농도값은 해양환경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18-10호)의 해수 수질 기준을 사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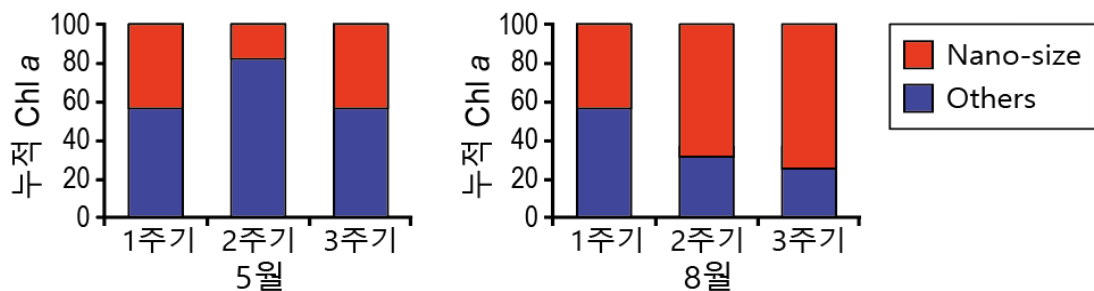
〈퇴적환경〉

- 포항 영일만 정점에서 수은 오염이 관찰됨<sup>4)</sup>
  - E17(포항 영일만) 정점에서 2018년 춘·하계, 2020년 춘계에 수은(Hg) 농도가 3등급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18년 춘계에는 4등급으로 약간 오염/심한 오염 수준을 나타냈음
  - 그러나 대부분 약간오염·비오염 수준의 등급으로 평가되어, 경북 연안 퇴적물 내 중금속의 오염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부유생태〉

- (식물플랑크톤) 경북 연안<sup>5)</sup>에서 작은 크기의 식물플랑크톤 출현 비율이 증가
  - 조사해역에서는 대부분 규조류 우세의 식물플랑크톤 군집을 형성하였고, nano-size의 chl a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음(그림 참고)
  - 빈영양 해역에서는 크기가 작은 식물플랑크톤이 성장하기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1차 생산자에서 상위 영양 단계로 에너지 전달의 효율성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먹이망의 변화는 결국 주요 어족자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실례로 수온 상승으로 인한 먹이사슬 변화로 동해의 특산물인 오징어가 서남해로 서식지를 이동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음(Park et al. 2020)

〈그림 2-6〉 경북 연안생태계 식물플랑크톤 크기별 생물량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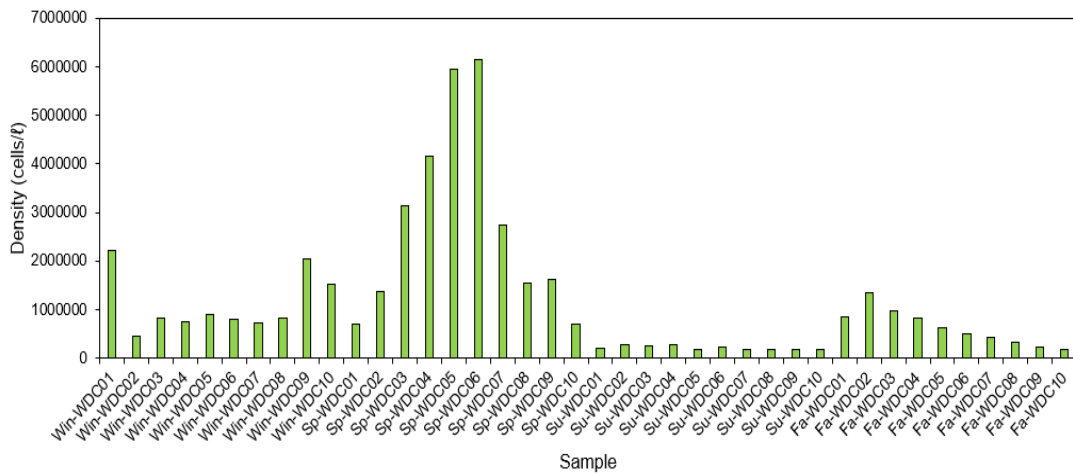


4) 2015년~2020년 동안의 퇴적물 중금속 자료와 “한반도 연안 퇴적물의 중금속 배경농도 및 오염도 평가(우준식 외, 2019, J.Korean Soc. Oceanogr.)”에서 제시한 중금속 배경수준을 이용하여 등급화(1~7등급)하여 평가하였으며, 약간 오염 수준인 3등급 이상의 오염된 정점을 중심으로 기술함  
 5) 2020년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해양총서의 경우 경북해역의 자료를 따로 분석하지 않고, 동해권역으로 경남지역 일부와 강원도 지역을 통합하여 제시함

○ 울릉분지에서 식물플랑크톤의 봄철 대발생(blooming) 현상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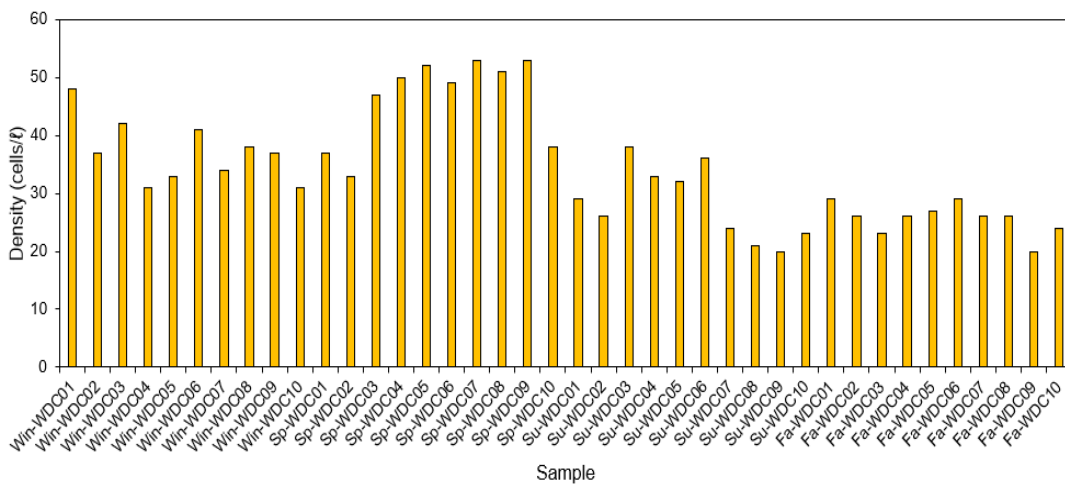
- 식물플랑크톤의 대발생은 수온과 같은 물리적 요인과 영양염과 같은 화학적 요인, 포식압력과 같은 생물학적 요인의 영향을 받음. 다양한 동인을 검토하여야 하므로 종합적인 생태조사 필요
- 적조현상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식물플랑크톤의 증식과 종조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

〈그림 2-7〉 경북 연안 식물플랑크톤 출현 개체수



주 : 장기해양생태계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제공된 울릉분지 식물플랑크톤자료를 분석하였음

〈그림 2-8〉 경북 연안 식물플랑크톤 출현 종수



주 : 장기해양생태계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제공된 울릉분지 식물플랑크톤자료를 분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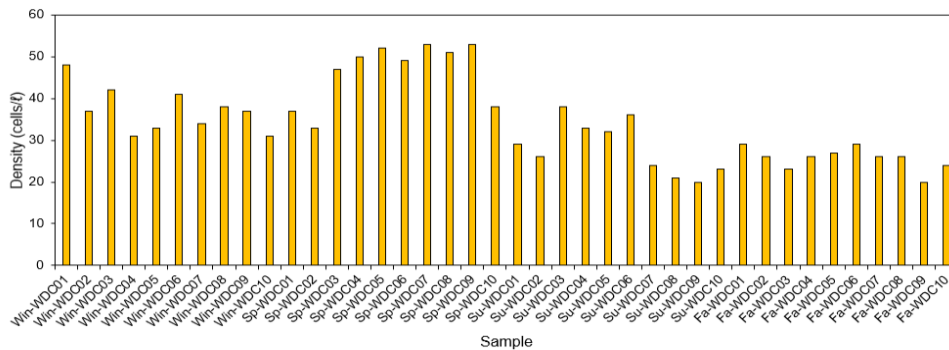
- (동물플랑크톤) 2015~2020년까지 춘계 동물플랑크톤 출현 개체수는 동해 해역 33-3,927ind.m<sup>-3</sup>임.
- 울릉분지에서 봄철 동물플랑크톤의 증가 현상 확인, 이는 봄철 식물플랑크톤의 대발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임
- \* 2021년 5월과 7월에 적조가 발생하였으며,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에 따르면 울릉도 인근 해상 기온이 2021년 같은 시기보다 5도 이상 높은 수온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고하였음

〈그림 2-9〉 울릉도 통구미항 내 발생한 적조



주: 울릉군 제공

〈그림 2-10〉 경북 연안 동물플랑크톤 출현 개체수



주: 장기해양생태계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제공된 울릉분지 동물플랑크톤자료를 분석하였음

〈저서생태〉

- (대형저서동물) 경북 연안에서 대형저서동물 총 460종 조사되었고, 전반적으로 강원도에서 경북, 울산으로 갈수록 서식밀도와 생체량이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냄
- 영일만 정점에서 대형저서동물 이상점 보고되었음. 영일만 내에 위치한 정점 E17에서 나이카안경옆새우(*Ampelisca naikaiensis*)와 양손갯지렁이(*Magelona japonica*), 민송대나무갯지렁이(*Maldane cristata*)가 주요 우점종으로 출현

- 얇은 수심과 혼합 퇴적상으로 인해 E17에서 이상점이 나타난 것으로 사료됨
- 독도가 난류성 종의 관문 역할을 수행, 울릉도에 난류성 종인 바다딸기류(*Elutherobia sp.*) 증가
  - \* 바다딸기류는 독도 최우점 산호류로 해류를 따라 울릉도로 전파된 것으로 독도를 통해 울릉도 또는 동해 연안으로 난류성 종의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추측

### 〈유영생태〉

- 어란 출현 양상을 살펴보면 2015-2020년의 기본조사에서 동해에서는 춘계에 37종, 하계에 33종, 총 52종의 어란이 출현하였으며 평균 출현량은 하계가 춘계의 약 2배 정도로 더 높게 나타남(춘계, 91.9ind.100m<sup>-3</sup>; 하계 181.3ind.100m<sup>-3</sup>)
  - 2019년 동해용승역에서는 멸치 어란(*E. japonicus*)의 출현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 자치어 출현 양상을 살펴보면 2015-2020년의 기본조사에서 동해에서는 춘계에 19종, 하계에 34종, 총 46종의 자치어가 출현하였으며 평균 출현량은 춘계에 1.9ind. 100 m<sup>-3</sup>, 하계에 9.1ind. 100m<sup>-3</sup> 로 조사되어 어란과 마찬가지로 하계에 출현량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2-14〉 동해 어란 및 난자치어 출현 양상

구분	종수			평균출현량			우점종	
	춘계	하계	전체	춘계	하계	전체	춘계	하계
어란	37	33	52	91.9	181.3	136.6	정보없음	
자치어	19	34	46	1.9	9.1	3.5	도화망둑	멸치

- 2015-2020년의 기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해에서 총 189종의 어종이 조사되었음.
  - 전반적으로 아열대 어종은 약 22.0~33.0%의 비교적 높은 출현율을 보였음. 전체 어획종수가 많았던 2018년에 아열대 어종의 출현율이 높았음.

〈표 2-15〉 동해 해역의 어종별 출현 현황

구분	온대	열대	아열대	기타	합계
2015	-	-	-	-	-
2016	50	11	33	6	100
2017	41	12	24	3	80
2018	59	17	39	4	119
2019	15	6	7	1	29
2020	48	11	19	8	86
합계	89 (47.3%)	29 (15.4%)	59 (31.4%)	11 (5.9%)	188

- 동해의 유명생물은 엘니뇨와 같은 전지구 규모의 기후변화와의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대마난류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추적 관찰을 바탕으로 한 어종 변화 예측이 시급
- 특히 동해는 다른 해역 대비 수온 상승폭이 크므로 해양생태계 및 경제적으로 주요한 어족자원에 큰 변화를 야기할 수 있음
- 경북해역 외에도 우리나라 해역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온 상승에 따른 어종 변화는 이미 진행 중

〈그림 2-11〉 수온 상승으로 변화된 조업 해역(전국 연안)



자료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1120595>i검색일자: 2022.4.25.)

- 독도 주변 해역의 자치어 종조성은 내륙연안과 출현종의 조성 및 배율이 뚜렷하게 구분
  - 독도 주변 해역은 20 여종의 어류가 보육장으로 활용(Lee et al., 2010)
  - 2000년대 이후로 독도에서 아열대성 어종이 출현하고 있으며(Myoung, 2002), 이는 동해의 표층 수온 상승의 영향으로 사료됨.

## 2. 이용·개발 및 관리 현황

### 1) 인구

- 경북연안의 인구는 2020년 기준 851천명(전국 인구의 1.64%)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0.41%로 전국연안 지역 증가율 0.75% 보다 낮음.
  - 2020년 경북연안은 전국 인구의 1.64%인 851천명이 거주하며, 2010년 886천명에 비해 약 4% 감소함.
  - 경북연안 연평균 증가율은 -0.41%로 경상북도의 -0.19%, 전국연안의 0.75%와 비교할 때 높은 감소세를 나타냄.
    - 울릉군과 영덕군은 타 지역에 비해 뚜렷한 인구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포항시의 인구 감소가 가장 완만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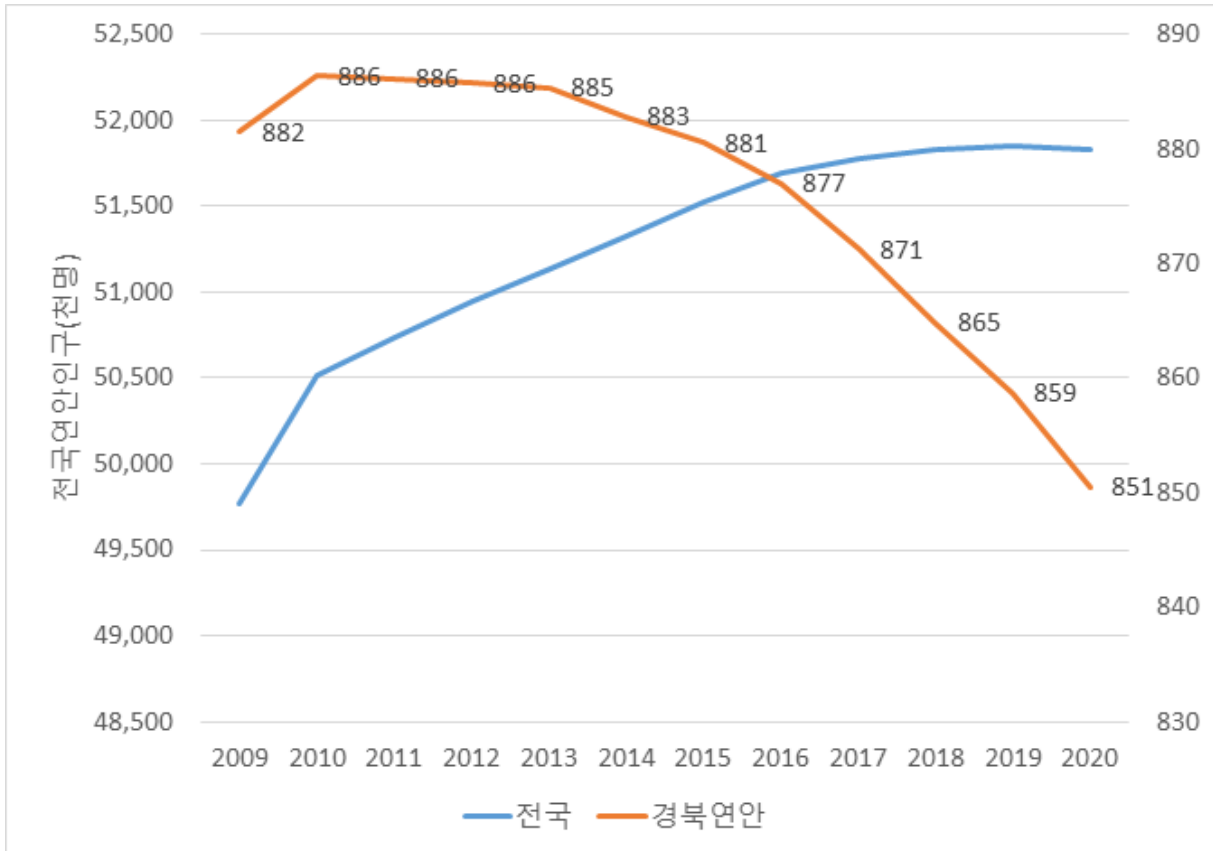
〈표 2-16〉 경북 인구 현황

(단위 : 천 명, %)

구분	2009년	2010년	2015년	2020년	연평균 증가율
전국	49,773	50,516	51,529	51,829	0.26
연안인구	12,393	13,145	13,703	14,161	0.75
경상북도	2,670	2,690	2,703	2,639	-0.19
경북연안	882	886	881	851	-0.41
포항시	509	515	520	503	-0.23
경주시	267	267	260	254	-0.52
영덕군	42	41	39	36	-1.30
울진군	53	52	52	49	-0.73
울릉군	10	11	10	9	-1.63
경북연안/전국	1.77	1.75	1.71	1.64	-

자료 : 행정안전부, 2020, 주민등록인구현황 재구성(2009~2020)

〈그림 2-12〉 경북 인구 현황 및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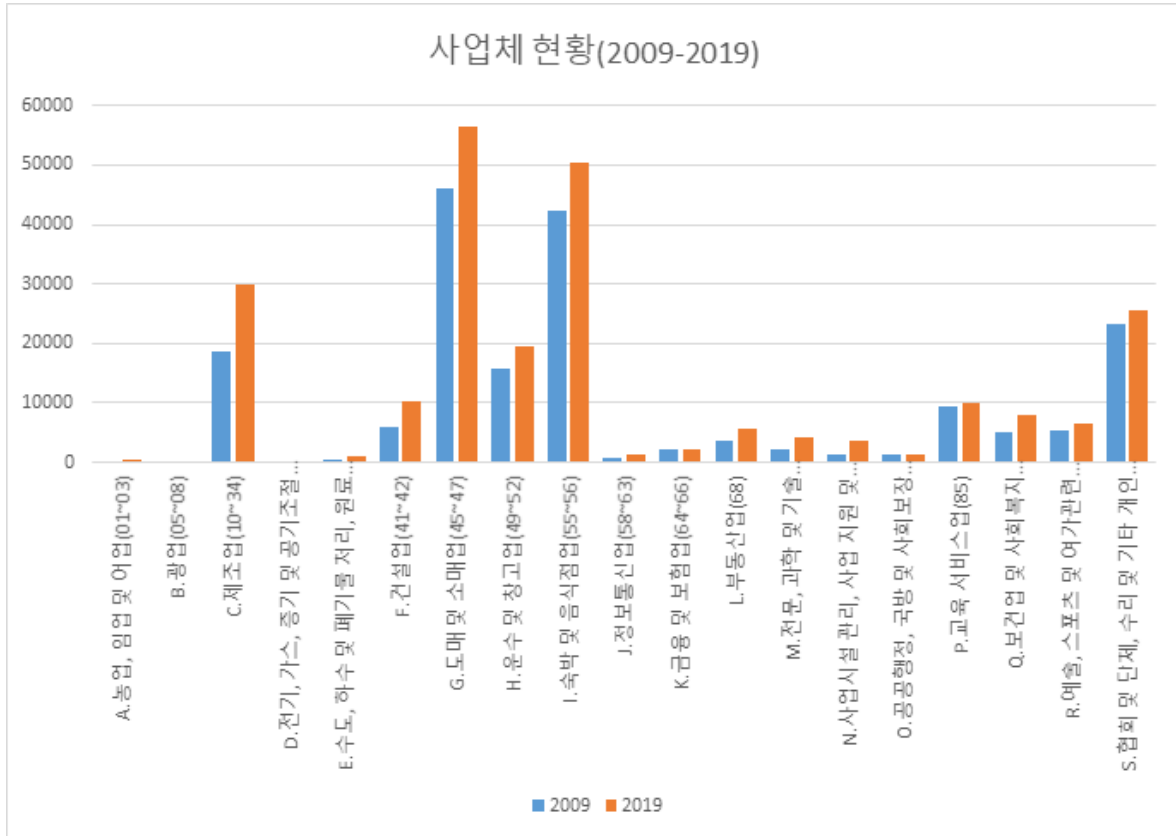
자료 : 행정안전부, 2020, 주민등록인구현황 재구성(2009~2020)

## 2) 사업체수

- 경북연안의 사업체는 2019년 기준 79,641개소(경상북도 전체 33.6%)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2.31%로 경상북도 전체 증가율 2.55% 보다 낮음.
  - ‘19년 경북연안의 사업체 수는 전국 사업체수(418만개)의 약 1.91% 차지, 전국대비 농림어업(11.59%)과 공공행정(10.36%),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10.34%)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임.
  - 19개 산업 중 전체 산업의 증가율 보다 낮은 산업은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서비스업 등이 있음
  - 경북연안의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였지만 경북 전체 증가율 보다 높은 곳은 경주시가 2.97%로 유일함.

〈그림 2-13〉 경북 연안 사업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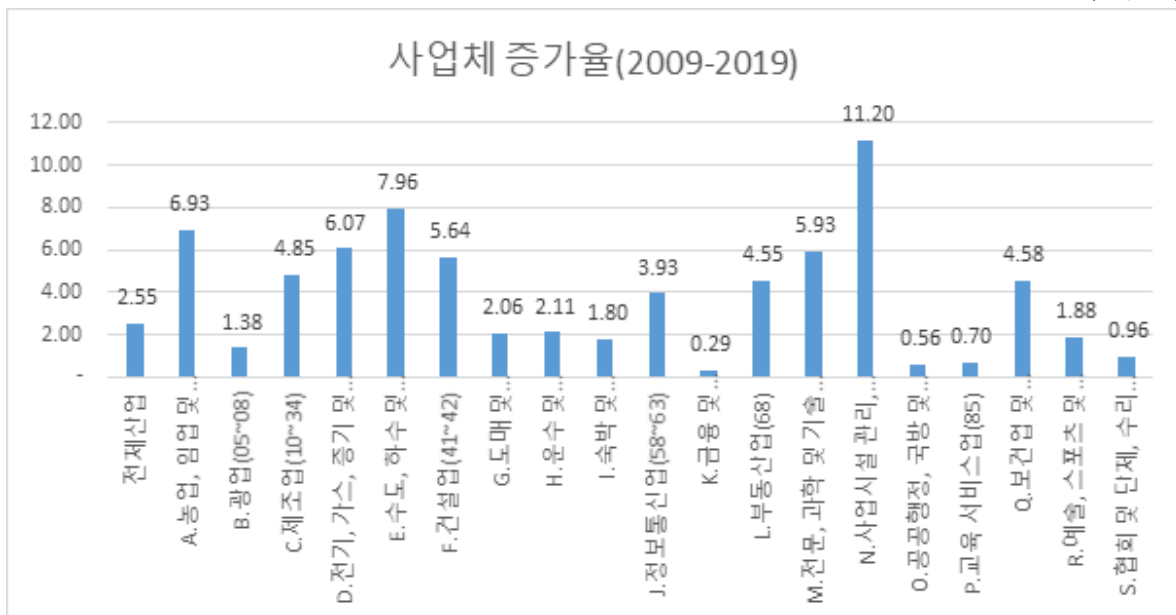
(단위 : 개소)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09, 2019), 경상북도 사업체조사(2009, 2019)

〈그림 2-14〉 경북 연안 사업체 증가율

(단위 : %)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09, 2019), 경상북도 사업체조사(2009, 2019)

〈표 2-17〉 경북 사업체 현황

(단위 : 개, %)

구분	전 산업		광업		기타		농·임·어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운수업		제조업	
	2009	2019	2009	2019	2009	2019	2009	2019	2009	2019	2009	2019	2009	2019	2009	2019
전국	3,293,558	4,176,549	1,840	1,776	1,135,157	1,506,168	2,302	4,522	861,736	1,028,323	628,078	785,706	344,071	409,288	320,374	440,766
경상북도	184,153	236,807	123	141	60,977	79,717	268	524	46,110	56,514	42,236	50,490	15,769	19,435	18,670	29,986
경북연안	63,403	79,641	38	42	20,667	26,480	54	99	16,209	19,693	16,212	19,447	5,478	6,207	4,745	7,673
포항시	35,531	43,428	11	12	11,978	15,474	18	24	9,350	11,361	8,505	9,686	3,508	3,731	2,161	3,140
경주시	19,454	26,067	13	17	6,174	7,780	17	46	4,591	5,671	5,062	6,701	1,555	2,007	2,042	3,845
영덕군	3,372	4,001	2	5	940	1,214	8	9	896	1,086	1,102	1,183	160	194	264	310
울진군	4,017	4,837	12	8	1,273	1,618	4	19	1,136	1,288	1,209	1,435	182	189	201	280
울릉군	1,029	1,308	-	-	302	394	7	1	236	287	334	442	73	86	77	98
경북연안/전국	1.93%	1.91%	2.07%	2.36%	1.82%	1.76%	2.35%	2.19%	1.88%	1.92%	2.58%	2.48%	1.59%	1.52%	1.48%	1.74%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09, 2019), 경상북도 사업체조사(2009, 2019)

## 3) 수산

□ 2020년 어업생산량은 92,126톤 상당(전국 생산량 대비 2.5%)

- `20년 어업생산량은 전국 어업생산량(3,711천 톤)의 2.5%를 차지, `09년 이후로 계속적으로 생산량 감소
  - 면허어업권 수는 459개, 총 면적은 3,214ha이며, 이 중 기타양식이 가장 많은 2,980ha (22.6%)을 차지
  - `09년 이후 경북의 일반해면 어업생산량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이며, 반면 천해양식 어업생산량은 `10년 이후 일정한 수준을 유지
- 일반해면 85,280톤으로 전국 일반해면 생산량의 9.2%, 천해양식어업은 5,585톤으로 전국 천해양식 생산량의 0.26%의 비중을 보임
- 천해양식어업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반해면어업은 지속적으로 감소

〈표 2-18〉 전국 및 경북 어업생산량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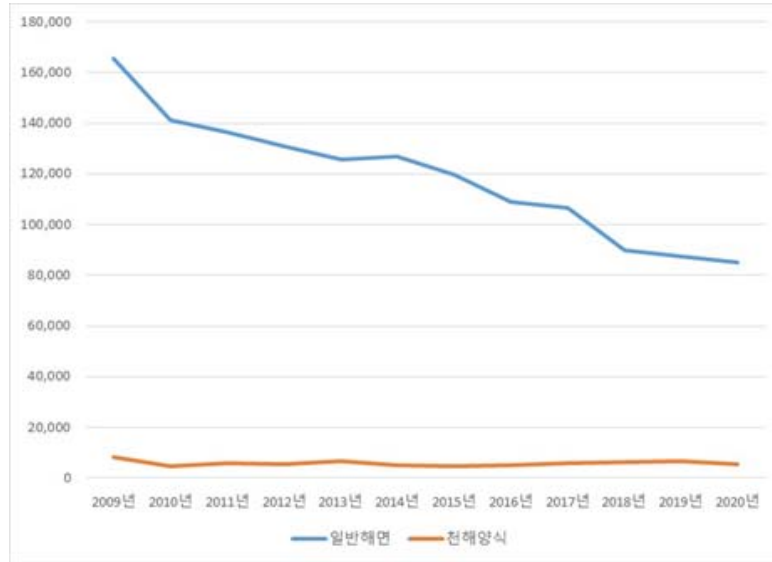
(단위 : 천톤)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국	일반해면	1,227	1,133	1,235	1,091	1,045	1,059	1,058	908	927	1,012	912	932
	천해양식	1,313	1,355	1,478	1,489	1,515	1,547	1,668	1,872	2,316	2,250	2,410	2,308
	소계	2,540	2,488	2,713	2,580	2,560	2,606	2,726	2,780	3,243	3,261	3,322	3,240
경북	일반해면	166	141	136	131	126	127	120	109	106	90	87	85
	%	13.50	12.47	11.03	12.00	12.03	11.96	11.32	11.99	11.48	8.90	9.58	9.12
	천해양식	8	5	6	5	7	5	5	5	6	6	7	6
	%	0.62	0.35	0.40	0.36	0.45	0.34	0.27	0.27	0.26	0.28	0.28	0.26
	소계	174	146	142	136	132	132	124	114	112	96	94	91
	%	6.84	5.87	5.24	5.28	5.17	5.06	4.56	4.10	3.46	2.95	2.84	2.80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W0004&conn\\_path=1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W0004&conn_path=13)), 재구성

〈그림 2-15〉 경북 일반해면 및 천해양식 어업생산량 변화

(단위 : 천톤)



자료 : 수산정보포털, 2009~2020, 어업생산통계

- 어종별 생산량은 2020년 기준 어류가 45,838톤으로 가장 많고 폐류가 2,107톤으로 가장 적은 생산량을 보임.
- 어류는 생산량은 2015년 이후 증가추세로 전환되었지만 2018년을 정점으로 다시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남.

〈표 2-19〉 전국 및 경북 어업생산량 비교

(단위 : 톤)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국	소계	254,321	248,536	273,035	259,984	259,907	265,314	276,191	279,980	324,716	321,139	324,471	
	어류	95,018	81,638	91,052	78,065	76,600	77,417	76,038	68,448	71,789	80,175	72,386	77,161
	갑각류	102,019	110,980	104,388	108,053	109,364	106,773	95,529	89,404	81,150	79,998	71,888	79,881
	패류	416,736	436,079	461,389	428,130	341,600	413,400	402,627	413,976	483,980	504,762	525,972	498,885
	연체동물류	223,212	187,777	197,415	207,409	178,423	187,645	182,024	147,779	115,523	75,619	83,010	84,096
	기타수산물	2,384	2,727	2,756	2,248	2,299	2,603	3,233	4,000	4,635	4,875	3,217	4,138
	해조류	89,512	91,475	1,007,070	1,082,440	1,139,871	1,066,786	1,212,600	1,395,373	1,799,088	1,721,820	1,851,224	1,799,040
경북	소계	173,823	132,446	142,173	146,007	136,227	131,800	124,309	113,866	112,300	96,238	94,180	90,865
	어류	51,952	35,591	41,338	41,002	38,884	37,115	35,451	38,666	56,246	53,754	56,500	46,888
	갑각류	18,977	18,371	21,815	23,845	24,918	25,744	25,231	22,342	19,454	14,628	13,025	13,578
	패류	1,766	1,618	1,463	1,615	1,584	1,805	1,634	1,500	1,778	1,621	1,779	2,107
	연체동물류	9,675	9,348	7,329	7,682	6,736	6,277	5,749	4,705	3,998	18,599	16,365	23,945
	기타수산물	2,318	2,730	1,811	1,489	2,366	2,172	1,507	2,009	2,026	2,605	3,090	1,624
	해조류	2,065	4,788	2,447	2,193	2,680	2,846	3,335	2,346	1,998	5,000	3,300	3,774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W0004&conn\\_path=1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W0004&conn_path=13)), 재구성

- 어업권은 459건으로 3,214ha로 전국 대비 4.6%와 2.0%에 해당 대부분을 신고어업이 차지
  - 면허 건수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면적은 2012년 이후 증가하고 있음.

〈그림 2-16〉 경북 어업권 면적 및 건수 변화



자료 : 수산정보포털, 2009~2020, 어업생산통계

- 국가어항 14개소, 지방어항 22개소, 어촌정주어항 12개소 등 총 48개 어항이 지정운영 중
  - 국가어항은 울진군에 4개소로 가장 많고, 지방어항은 포항시에 7개소, 경주시에 6개소가 집중, 어촌정주어항은 영덕군 6개소와 울진군 5개소로 대부분을 차지

〈표 2-20〉 경북 어항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합계	비율
	연안	도시	소계					
포항시	2	0	2	7	0	0	9	18.75
경주시	2	0	2	3	1	0	6	12.5
영덕군	3	0	3	6	6	0	15	31.25
울진군	4	0	4	3	5	0	12	25.00
울릉군	3	0	3	3		0	6	12.50
합계	14	0	14	22	12	0	48	100.00
비율	29.17	0	29.17	45.83	25.00	0	100.00	

자료 : 해양수산부, 법정어항현황, 2021, 재구성

#### 4) 광업권

□ 경북연안에는 총 31건의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음

- 총 31개 광구 전체에 광업권 1건(276ha), 채굴권 29건(5,544ha), 탐사권 1건(64ha) 등록
- 규사를 채굴하는 광구는 24건 4,090ha로 이중 대부분이 울진군 연안(23건)에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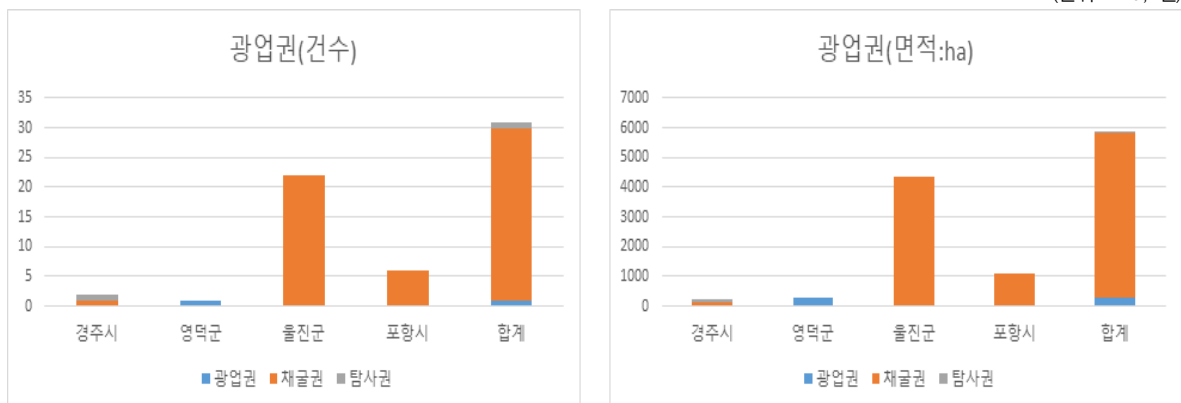
〈표 2-21〉 경북 광업권 설정 현황

구분		광업권	채굴권	탐사권	합계
경주시	건수	0	1	1	2
	면적(ha)	0	139	64	203
영덕군	건수	1	0	0	1
	면적(ha)	276	0	0	276
울진군	건수	0	22	0	22
	면적(ha)	0	4,328	0	4,328
포항시	건수	0	6	0	6
	면적(ha)	0	1,077	0	1077
경북 연안	건수	1	29	1	31
	면적(ha)	276	5,544	64	5,884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 2021, 내부자료

〈그림 2-17〉 경북 광업권 건수 및 면적

(단위 : ha, 건)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 2021, 내부자료

## 5) 해양관광

□ 경북연안에는 국가지정 해수욕장 25개소가 지정운영 중에 있음.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및 운영 중인 해수욕장은 경주시 5개소, 영덕군 7개소, 울진군 7개소, 포항시 6개소로 울릉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분포

〈표 2-22〉 경북 해수욕장 방문객 수(2019년)

구분	이름	백사장		방문객수 (명)
		길이(m)	면적(m <sup>2</sup> )	
경주시	관성	932	36,533	102,750
	나정	383	20,102	59,000
	봉길	538	18,832	43,810
	오류	462	28,947	86,250
	진촌	624	36,120	31,500
영덕군	경정	400	6,487	8,523
	고래불	2,000	243,052	306,930
	남호	500	7,000	8,888
	대진	350	51,000	9,874
	오보	250	4,950	1,619
	장사	1,200	197,000	42,485
	하저	550	10,558	3,907
울진군	구산	360	23,308	24,221
	기성망양	646	38,516	6,975
	나곡	150	9,073	5,332
	망양정	435	27,259	21,049
	봉평	157	7,835	4,151
	후정	346	11,979	7,421
	후포	225	15,156	32,240
포항시	구룡포	400	19,830	48,990
	도구	800	31,107	18,294
	영일대	1,750	382,608	50,080
	월포	1,100	107,786	61,330
	칠포	4,000	324,443	16,664
	화진	750	56,000	20,690
합계		19,308	1,715,481	1,022,973

자료 : 경상북도, 2019, 경북통계연보

□ 운영 중인 마리나는 양포를 비롯해 5개소가 분포하고 마리나항만은 6개소가 지정됨.

○ 운영중 마리나는 양포를 비롯해 총 5개소로 포항에 3개소, 울진에 2개소가 위치

〈표 2-23〉 경북연안 및 해양 관광객 현황

마리나명	위치	구분	계류선석			개발 및 운영주체	운영년도
			계	해상	육상		
후포	후포(소규모항)	연안항	7	7	0	개발:국가(해수부) 운영:울진군(미운영)	'13 (미운영)
양포	양포	국가어항	36	36	0	개발:국가(해수부) 운영:포항시	'08
포항구항	포항구항	무역항	50	50	0	개발:포항시 운영:포항시	'15
오산	오산	국가어항	30	20	10	개발:울진군 운영:울진군(미운영)	'15 (미운영)
두호	두호	무역항 (어항구)	16	16	0	개발:포항시 운영:어촌계	'16
합계			139	129	10		

자료 : 해양수산부, 2020,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 마리나 항만 개발은 예정구역 5개항과 운영구역 1개항 등 총 6개항이 선정됨.

- (예정구역) 감포, 나정, 양포(경주시 3개소), 두호(포항시 1개소), 강구(영덕군 1개소)
- (운영구역) 후포(울진군 1개소)

〈표 2-24〉 경북 마리나항만 개발 및 예정구역

구분	마리나 항만	위치	단계
경주시	감포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나정리 산 61-2 일원	예정구역
	나정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나정리 662-5 일원	예정구역
	양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리 289-31 일원	예정구역
포항시	두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두호동 산 13-1 일원	예정구역
영덕군	강구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삼사리 197-7 일원	예정구역
울진군	후포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후포항	운영중
합계		6개	

자료 : 해양수산부, 2020,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그림 2-18〉 경북 마리나항만 개발 및 예정구역 분포



자료 : 해양수산부, 2020,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 어촌체험휴양마을은 전국 114개소 중 7개소 지정되어 있고 이중 5개소가 울진군에 집중
  - 울진군 5개소, 포항 1개소, 경주시 1개소('14~'18 지정)

〈표 2-25〉 경북 어촌체험마을 현황

구분	마을명	선정연월
포항시	창바우(신창2리)마을	'16.03
경주시	연동마을	'15.03
울진군	거일1리마을	'14.07
	나곡1리마을	'14.07
	구산마을	'14.07
	기성마을	'14.07
	해빛뜰마을	'18.03

자료 : 해양수산부, 2020, 어촌체험마을 현황

## 6) 항만·항행

### (1) 항만

- 무역항(포항항) 1개소와 신항만(포항영일만항) 1개소, 연안항 4개소 등 총 6개의 항만이 입지
- 포항항 및 포항영일만항 현황

○ 항만육성 기본방향

- 국가 기간산업 지원 및 환동해 물류·관광 거점 항만으로 육성
- 배후 제철산업 등 국가 기간산업 지원강화 및 항만 이용여건 개선을 통한 환동해권 물류 및 관광 거점항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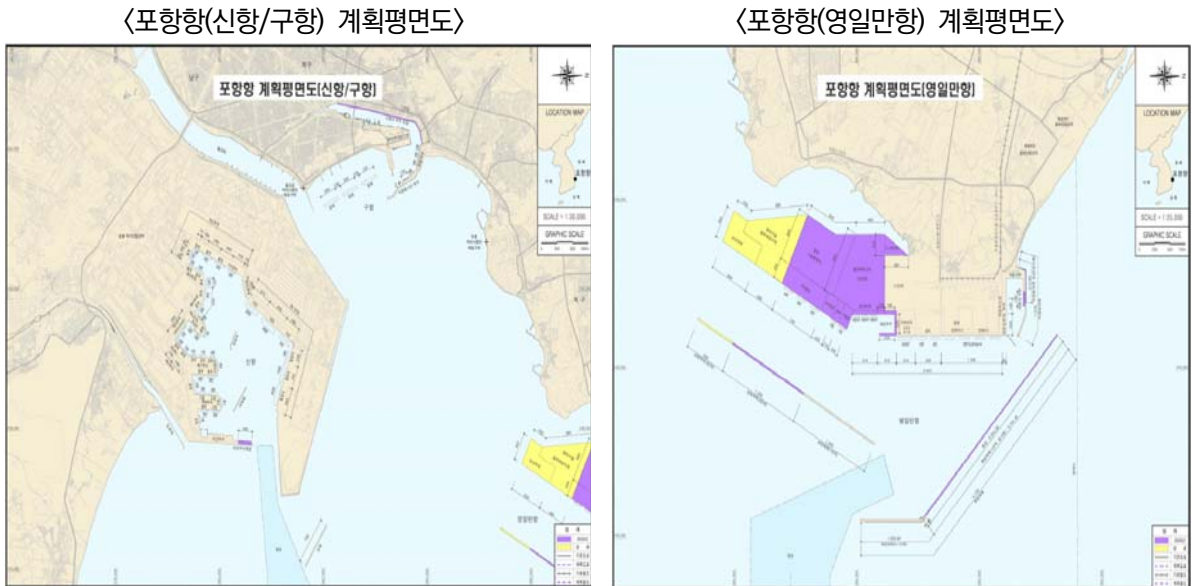
○ 항만시설 현황

〈표 2-26〉 포항항 항만시설 현황

안벽(m)	소형선 부두(m)	잔고(기)	방파제(m)	상옥(동)	야적장(천㎡)
11,722	3,338	-	10,906	-	1,407
-접안능력 : 50선석(여객 및 유류포함)					
-하역능력 : 95,559천톤/년					

자료 : 해양수산부, 2021, 제4차(21~30)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그림 2-19〉 포항항 항만시설 설치예정평면도



자료 : 해양수산부, 2021, 제4차(21~30)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 구룡포항 현황

○ 항만육성 기본방향

- 경북권 어업 및 수산물 유통 거점항만으로 육성
- 항만재개발구역을 통한 동해권 해양관광산업 지원 항만으로 개발

## ○ 항만시설 현황

〈표 2-27〉 구룡포항 항만시설 현황

안벽(m)	소형선 부두(m)	방파제(m)	호안(m)
304	2,008	1,090	320
-접안능력 : 4선석 -하역능력 : 338천톤/년			

자료 : 해양수산부, 2021, 제4차(21~30)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 □ 강구항 현황

## ○ 항만육성 기본방향

- 경북 영덕권 어업 지원 및 유통기능 중심항만으로 육성

## ○ 항만시설 현황

〈표 2-28〉 강구항 항만시설 현황

호안(m)	소형선 부두(m)	방파제(m)	호안(m)
268	967	641	230
-접안능력 : 없음, -하역능력 : 없음			

자료 : 해양수산부, 2021, 제4차(21~30)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 □ 후포항 현황

## ○ 항만육성 기본방향

- 동해남부권 영해관리 거점 항만으로 개발

## ○ 항만시설 현황

〈표 2-29〉 후포항 항만시설 현황

안벽(m)	해경부두(m)	소형선 부두(m)	방파제(m)	호안(m)
260	60	1,185	1,312	432
-접안능력 : 2선석 -하역능력 : 321천톤/년				

자료 : 해양수산부, 2021, 제4차(21~30)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 울릉항 현황

○ 항만육성 기본방향

- 동해해역 국가안보, 영토 및 영해관리 전략적 요충 항만으로 육성
- 환동해권 해양관광 거점 항만으로 개발

○ 항만시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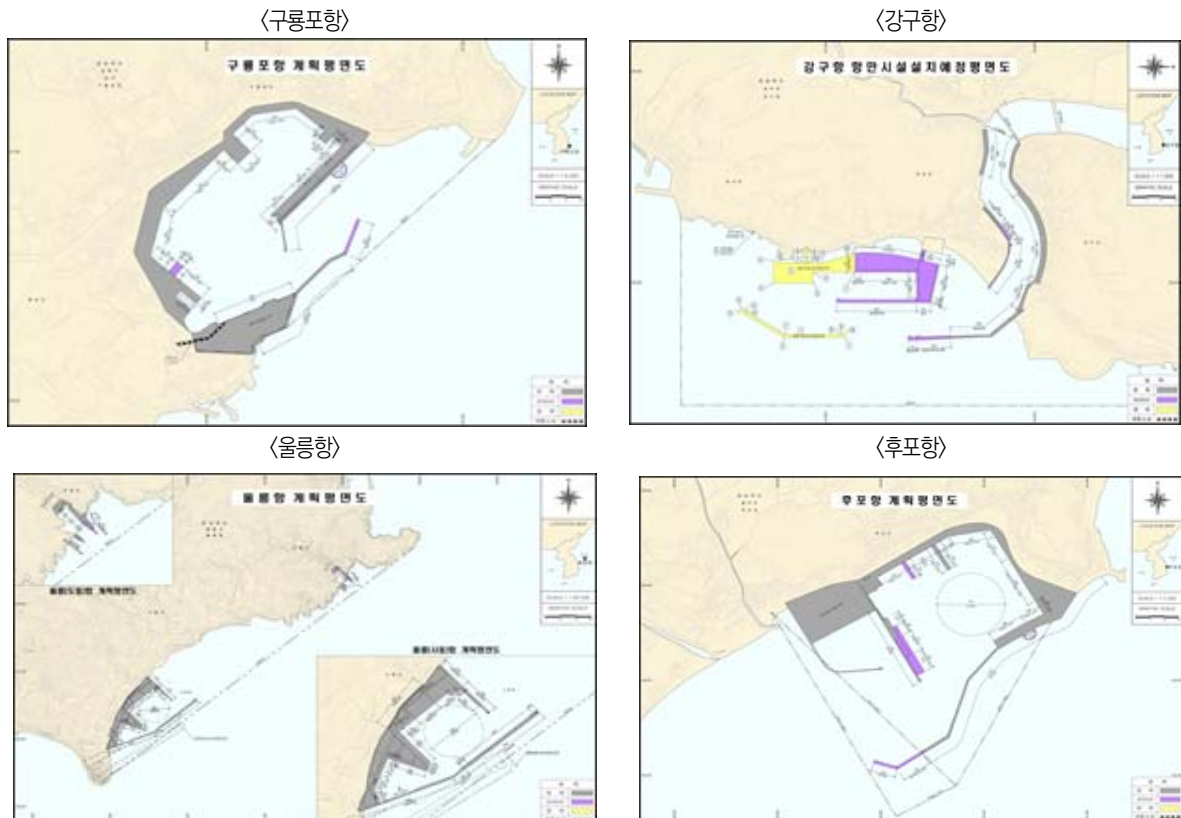
〈표 2-30〉 울릉항 항만시설 현황

울릉(사동)항	방파제(m)	호안(m)	화물선부두(m)	여객부두(m)	소형선부두(m)	유람선부두(m)	위그선부두(m)
	1,390	30	227	200	60	70	70
울릉(도동)항	방파제(m)	호안(m)	소형선부두(m)				
	185	117	161				

-접안능력 : 2선석  
-하역능력 : 253천톤/년

자료 : 해양수산부, 2021, 제4차(21~30)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그림 2-20〉 연안항 계획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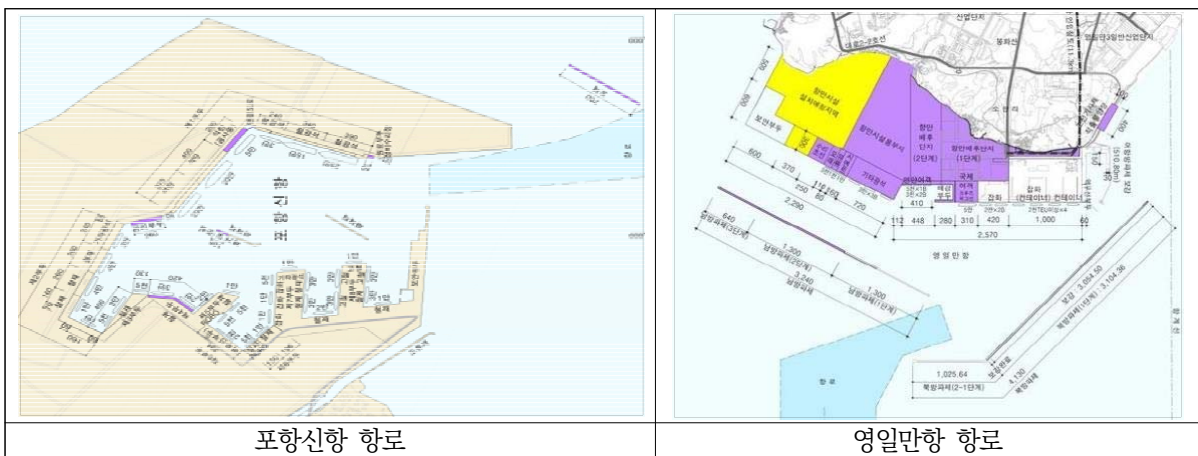


자료 : 해양수산부, 2021, 제4차(21~30) 전국 연안항 기본계획

(2) 항로

- 경북연안에는 연안여객선 일반항로 6개와 포항항 항로 1개, 영일만항로 1개 등 총 8개의 항로가 운영중에 있음.
- 여객선항로 6개는 울릉도를 중심으로 육지(강원도와 경상북도)와 독도를 연결하는 항로로 구성

〈그림 2-21〉 포항항 항로



〈표 2-31〉 경북 연안여객선 항로 현황

관할지방해양수산청	계	일반항로	보조항로	비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	4	4	-	포항-울릉 후포-울릉 울릉(사동)-독도 울릉(저동)-독도
동해지방해양수산청	2	2	-	묵호-울릉(독도) 강릉-울릉(독도)
전체	6	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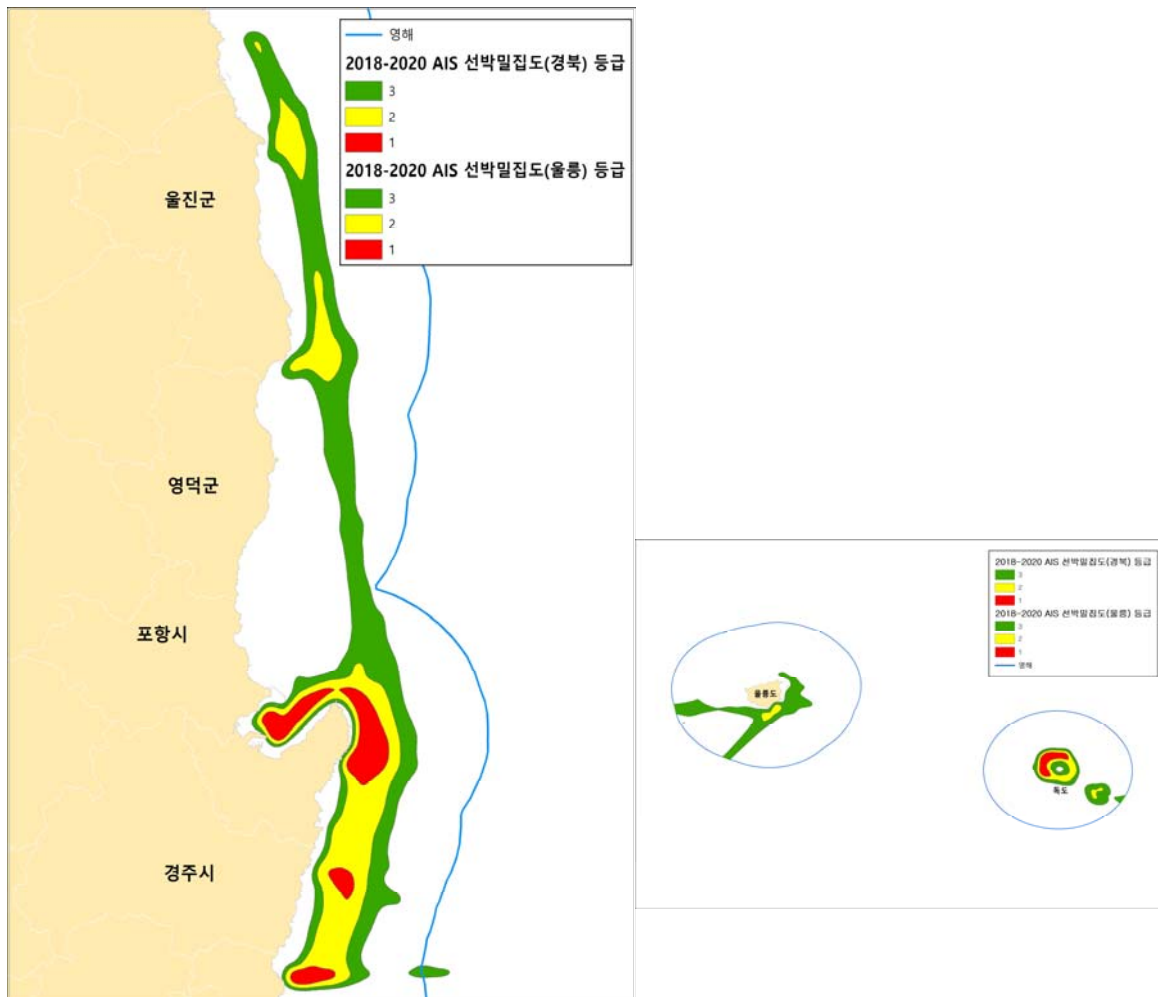
자료 : 한국해운조합, 연안여객선 업체 현황, 2021.

〈그림 2-22〉 연안여객선 항로도(동해 및 포항지역)



자료 : 한국해운조합, 2021, 연안여객선 업체 현황

〈그림 2-23〉 AIS 선박밀집도(경북 및 울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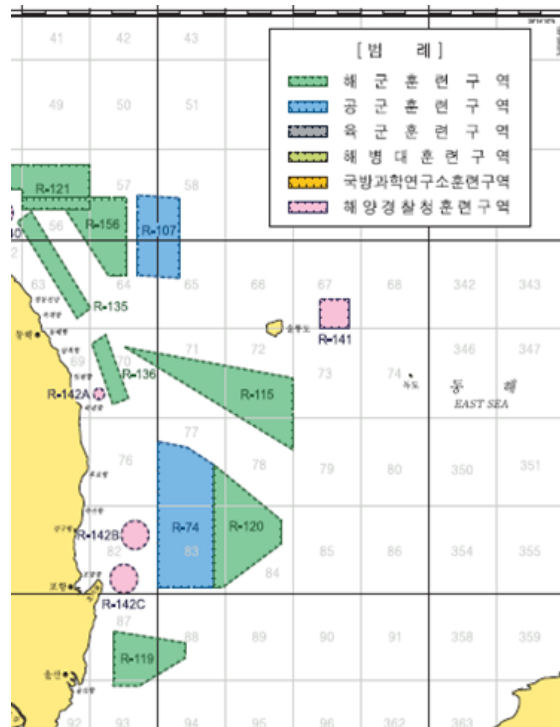


## 7) 군사활동

□ 경북해역 군사구역은 해군훈련구역, 해양경찰훈련구역, 공군훈련구역으로 산재되어 있음.

- (해군훈련구역) R136, R115, R120, R119
- (해양경찰훈련구역) R141, R142B, R142C
- (공군훈련구역) R74

〈그림 2-24〉 경북 해역 해상사격 훈련구역 현황



자료 : 국립해양조사원, 2020, 항행통보연보, 대한민국연안 해상사격 훈련구역도

□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포항시 연안안에 5개소가 지정

-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 2개소, 제한보호구역 3개소(비행안전구역 포함)가 지정되어 있음.
  - 울릉군 서면 태하리 일대에 지정되었던 제한보호구역은 2021년 해제됨.(국방부 고시 제2021-2호)

### 8) 공유수면 점·사용

□ 경북연안에서 허가된 공유수면 점용·사용은 632건(2020.5월 기준)으로 면적은 약 16.32km<sup>2</sup>를 차지함.

○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점용과 사용의 형태에 따라 11가지 유형으로 구분<sup>6)</sup>

구분	내용
1호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재생에너지 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호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掘鑿)하는 행위
3호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浚渫)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4호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5호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6호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7호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8호	공유수면에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水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9호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10호	공유수면에서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11호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 공유수면 점사용의 유형은 기타유형의 공유수면 점용·사용이 259건, 12.7km<sup>2</sup>으로 가장 많음.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1호내지 11호

〈표 2-32〉 유형별 공유수면 점·사용 현황

(단위 : m<sup>2</sup>)

구분	무역항		연안항		어항		기타해역		전체	
	개수	면적	개수	면적	개수	면적	개수	면적	개수	면적
1호	26	65,302	112	1,868,696	12	21,544	98	590,097	248	2,545,639
2호	-	-	-	-	1	59,313	-	-	1	59,313
3호	-	-	-	-	12	53,973	5	553,101	17	607,074
4호	-	-	1	1,939	-	-	11	7,163	12	9,102
5호	1	195	18	11,998	-	-	45	264,301	64	276,494
6호	-	-	1	2,000	1	3,891	-	-	2	5,891
7호	2	7,590	3	7,890	1	4,000	-	-	6	19,480
8호	-	-	2	17,444	2	630	2	132	6	18,206
9호	-	-	-	-	2	1,037	15	64,044	17	65,081
10호	-	-	-	-	-	-	-	-	-	-
11호	6	43,210	50	1,128,531	4	18,430	199	11,521,650	259	12,711,821
합계	35	116,296	187	3,038,498	35	162,818	375	13,000,488	632	16,318,100

자료 : 해양수산부, 2020,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현황 내부자료(2020년 5월 19일 기준)

- 경북연안 지자체 중 점용사용이 가장 많은 지역은 포항시로 324건의 허가가 이루어졌고, 점용·사용 면적은 울릉군이 10.1km<sup>2</sup>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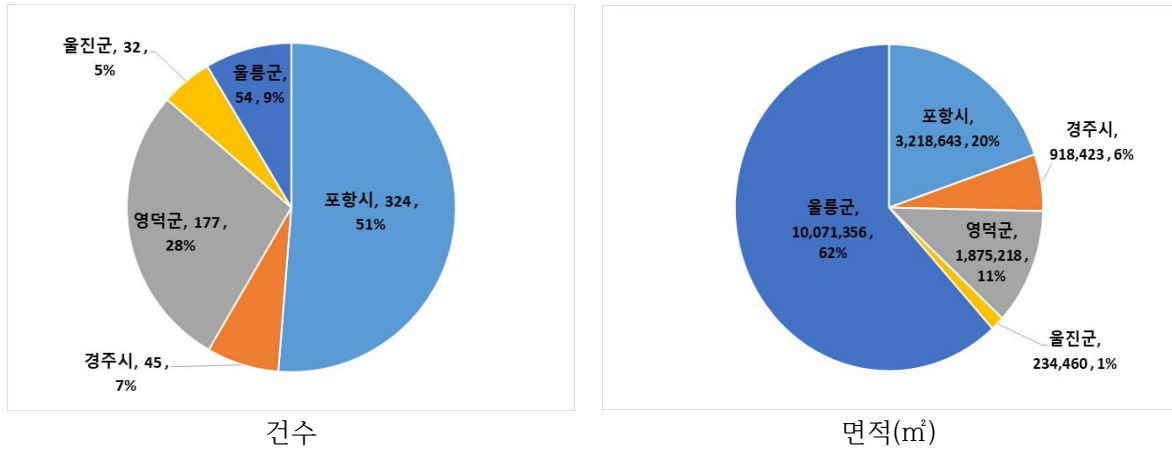
〈표 2-33〉 지역별 점용·사용 분포 현황

(단위 : m<sup>2</sup>)

구분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전체	
	개수	면적	개수	면적	개수	면적	개수	면적	개수	면적	개수	면적
1호	163	1,948,004	8	173,540	57	132,176	9	39,971	11	251,946	248	2,545,639
2호	-	-	-	-	-	-	-	-	1	59,313	1	59,313
3호	1	24,600	2	458,149	12	30,873	2	93,452	-	-	17	607,074
4호	9	8,702	2	400	-	-	-	-	1	-	12	9,102
5호	41	24,616	7	1,242	6	244,169	7	2,459	3	4,009	64	276,494
6호	-	-	-	-	2	5,891	-	-	-	-	2	5,891
7호	5	15,480	-	-	-	-	1	4,000	-	-	6	19,480
8호	3	17,486	-	-	1	140	-	-	2	580	6	18,206
9호	3	190	13	63,878	-	-	-	-	1	1,013	17	65,081
10호	-	-	-	-	-	-	-	-	-	-	-	-
11호	99	1,179,565	13	221,214	99	1,461,969	13	94,578	35	9,754,495	259	12,711,821
합계	324	3,218,643	45	918,423	177	1,875,218	32	234,460	54	10,071,356	632	16,318,100

자료 : 해양수산부, 2020,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현황 내부자료(2020년 5월 19일 기준)

〈그림 2-25〉 지역별 점용사용 분포 현황



9) 안전관리

- 경북해역(울산항 포함)에서 2020년 83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하였으며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 2016년 이후 사고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2020년에는 전년 대비 25.8%(17건) 증가함.

〈표 2-34〉 해역별 해양사고 발생건수

(단위 : 건)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전국	1,971	2,285	2,392	2,688	2,847
울산항 및 진입수로, 포항항	47	52	30	66	83

자료 : 해양안전심판원, 2020, 해역별 해양사고 발생건수

- 경북 해역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12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포항시와 경주시에 집중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포항시에 화진포, 월포, 칠포, 영일대, 송도, 도구, 구룡포 등 7개소와 경주시에 오류, 전춘, 나정, 봉길, 관성 등 4개소가 지정되어 있음.

□ 연안침식관리구역은 전국에 7개소가 지정되어있으며 이중 경북연안에는 2개소가 분포

○ 경북연안에는 지정된 침식관리구역은 봉평해변, 금음해변으로 모두 울진군에 위치

〈표 2-35〉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 현황

구분	지정시기	위치	전체(천㎡)	핵심관리구역	완충관리구역
합계			60,941	22,435	38,506
맹방해변	2015	강원 삼척	18,937	4,647	14,290
봉평해변	2015	경북 울진	4,268	814	3,454
대광해변	2015	전남 신안	14,235	6,138	8,097
원평해변	2016	강원 삼척	2,310	693	1,617
금음해변	2016	경북 울진	3,811	673	3,138
꽃지해변	2016	충남 태안	4,294	2,262	2,032
남애1리~ 소들해변	2021	강원 양양~ 강원 강릉	13,086	7,208	5,878

자료 :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120호; 제2016-109호; 제2021-233호.

○ 연안침식관리구역제도 개요

- 2013년 「연안관리법」 개정을 통해 도입한 연안침식관리구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음.
- 연안침식관리구역이 지정되면 건축물 및 공작물 신·증축, 공유수면 또는 토지 형질 변경 행위, 바다모래, 토석 등 채취행위 등이 제한된 반면, 침식방지를 위해 연안정비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 연안침식관리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관리계획에서는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 실태조사’, ‘관리구역 내 침식원인 및 피해조사’, ‘관리구역 내 침식방지 및 복구대책’ 등을 제시함.

〈표 2-36〉 연안침식관리구역 주요 내용

항 목	주 요 내 용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	- 연안침식 피해가 심각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 1. 핵심관리구역 : 연안침식이 빠르게 진행 중이거나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구역 2. 완충관리구역 : 핵심관리구역과 맞닿은 지역 등으로서 핵심관리구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 - 관리구역 지정 고려사항 1. 침식으로 인하여 토지, 바닷가 또는 제방, 도로 등 시설물의 기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2. 연안보전을 위한 연안정비사업 후에도 침식이 지속되는 경우 3. 공유수면 매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으로 장래 침식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 관리구역 범위는 침식에 영향을 미치는 구역과 침식피해가 예상되는 구역 포함 - 지자체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견 수렴 후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 후 고시
관리구역 행위제한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 2.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3. 바다모래·규사 및 토석의 채취행위 4. 입목·대나무의 벌채 또는 훼손 5. 사구식생의 훼손 또는 변형
관리계획 수립·시행	1. 관리구역 내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 실태조사 2. 관리구역 내 침식원인 및 피해조사 3. 관리구역 내 침식방지 및 복구대책
일시적 출입제한	- 관리구역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하여 긴급 조치가 필요한 지역
연안정비사업 우선 시행	- 관리구역에서 연안정비사업 우선 실시

자료 : 「연안관리법」제3장의2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관리 등

### 3. 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

#### 1) 분석 개요

##### (1) 분석 방법 및 절차

- 중앙정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수립한 계획(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을 대상으로 대상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과 수요 조사
  - 국가계획: 국토종합계획,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항만기본계획,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관광개발기본계획 등
  - 광역시 및 도 계획: 광역시 및 도 종합계획,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등
  - 지난 5년간 법정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
- 관련계획에 반영된 사업수요 중 해양공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계획·사업만 선별
  - 공유수면매립, 점용·사용 등을 기반으로 해양을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를 확인
  - 도서관광개발사업은 직접적인 이용 대상을 해양공간으로 하지는 않지만, 도서로 접근을 위해서 해양공간을 활용하게 되므로 해양공간 이용·개발 수요로 반영
  - 다수의 계획에 중복적으로 반영된 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는 가장 최근 수립된 계획의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

〈표 2-37〉 국가 및 광역·기초자치단체 연안·해양 이용·개발 관련 주요 계획

기관명	계획명	근거법령	비고
국가계획	동해안권발전종합계획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5조 및 제6조	
	제4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계획(2021-2030)	항만법 제5조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2020-2029)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2019-2040)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	

기관명	계획명	근거법령	비고
	제3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2020-2024)	어촌·어항법 제4조	어촌뉴딜 사업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2014-2023)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	
경상북도	제6차 경북권 관광개발계획(2017-2021)	관광진흥법 제51조	
	제4차 경상북도 지역에너지계획	에너지법제7조	
	도서개발사업계획	도서개발촉진법 제6조	
	도정주요업무계획(2016-2020)	-	
기초 자치단체	도시·군 기본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어장이용개발계획	수산업법 제4조	
	연안관리지역계획	연안관리법 제9조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	어촌·어항법 제4조	
	주요 업무계획(2016~2020)	-	

(2) 수요 분석 결과

□ 총 257건의 이용개발보전수요가 수립되어 추진 중

- (지역별) 포항시가 73건 24.5조원으로 가장 많고 면적은 경주시가 24.1km<sup>2</sup>로 최대
- (해양활동별) 건수는 해양관광(83건)이 최대, 면적은 에너지(22.2 km<sup>2</sup>), 예산은 교량건설 등이 포함된 기타(15.7조원) 최다
-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대상) 협의대상 131건 중 항만어항부분이 63건으로 최다

〈표 2-38〉 경북 연안·해양 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 특성 분석(해양용도구역별)

구분	건수	면적 (㎡)	예산 (백만원 )
어업활동	30	4,148,916	232,799
에너지	4	22,224,000	1,585,000
해양관광	83	3,341,951	1,566,784
환경생태	5	9,590,000	21,512
항만항행	55	2,221,132	9,930,891
해양안전	42	966,015	636,134
기타	38	3,986,485	15,730,032
총합계	257	46,478,499	29,703,152

〈표 2-39〉 경북 연안·해양 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 적합성 협의 대상(해양용도구역별)

구분	건수	면적 (㎡)	예산 (백만원 )
어장	19	7,522,500	15,690
항만어항	63	3,690,505	10,628,048
해양관광	1	-	541,600
해양에너지	1	-	-
기타	47	3,618,345	1,816,934
대상 외	126	31,647,149	16,700,880
총합계	257	46,478,499	29,703,152

〈그림 2-26〉 경북 해양공간 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 위치



## 2) 분야별 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

### (1) 연안관리

- 현황 : 4개소 고시, 1개소 미고시(공청회 완료)
  - (고시)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미고시) 울릉군

〈표 2-40〉 경북 연안용도해역지정 현황

(단위 : km<sup>2</sup>)

용도해역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합계
이용연안해역	149.47	81.78	2.46	37.98	206.085	477.77
특수연안해역	1.35	0.88	47.98	59.53	48.057	157.79
보전연안해역	152.01	10.22	76.47	83.58	40.206	362.49
관리연안해역	1,176.84	439.32	859.43	1,236.40	3,644.72	7,356.71
합 계	1,479.67	532.19	986.34	1,417.50	3,939.07	-

〈표 2-41〉 경북 연안해역기능구 지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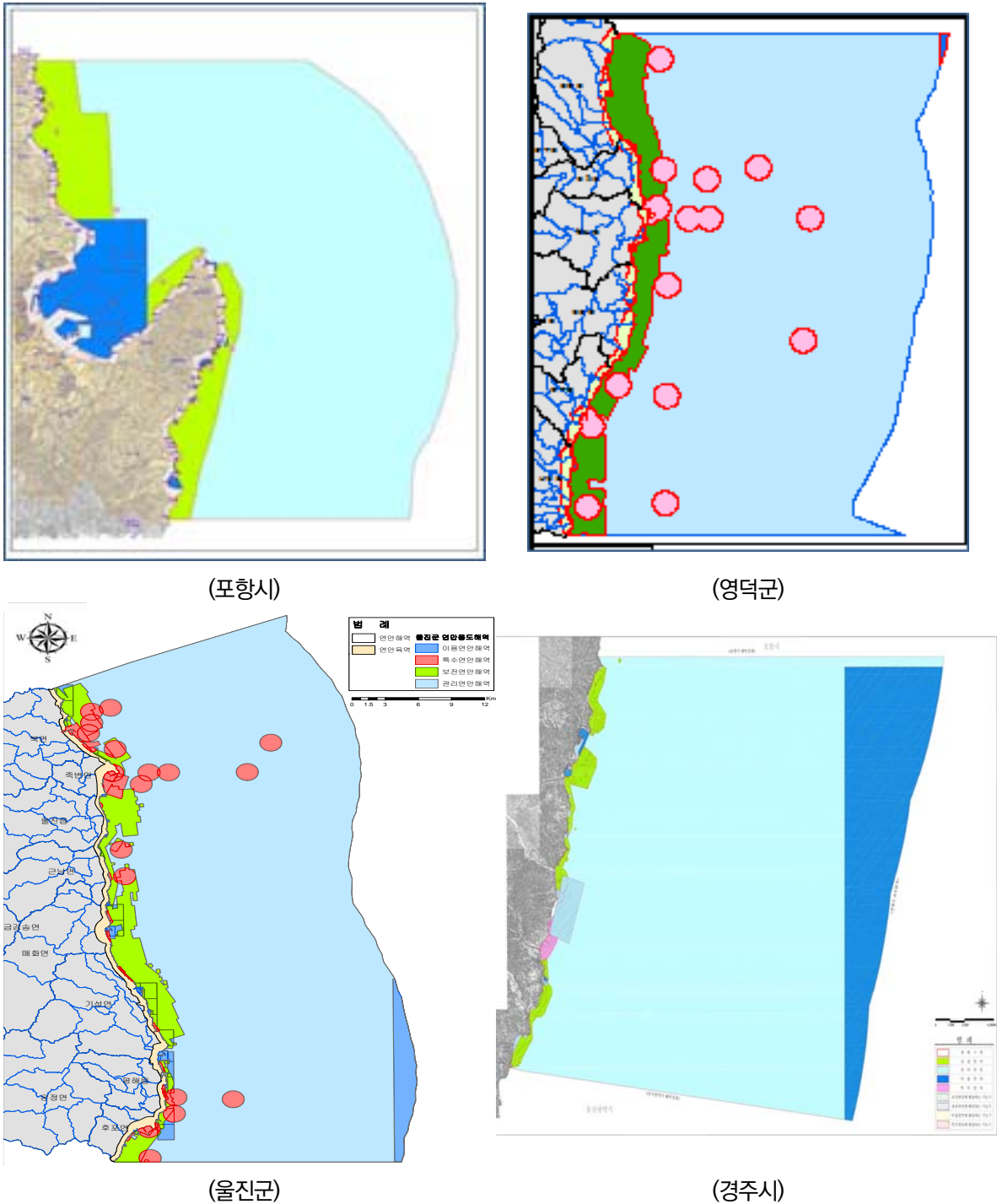
(단위 : km<sup>2</sup>)

용도해역	기능구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합계
이용 연안 해역	항만구	100.11	-	0.46	0.90	2.34	103.81
	항로구	39.93	-	-	-	-	39.93
	어항구	4.57	0.70	1.64	3.96	0.91	11.78
	레저관광구	1.07	0.01	0.05	-	268.52	269.65
	해수욕장구	0.58	-	1.80	0.85	-	3.22
	광물자원구	3.21	81.07	0.99	54.29	-	139.56
	해중문화시설구	-	-	-	-	-	-
특수 연안 해역	해양수질관리구	-	-	-	3.46	22.11	25.57
	해양조사구	1.33	-	50.40	53.76	5.55	111.04
	재해관리구	0.02	0.02	0.47	6.42	0.84	7.77
	군사시설구	-	-	-	-	-	-
	산업시설구	-	0.85	-	3.46	26.71	31.02
	해양환경보원구	-	-	-	-	-	-
보전 연안 해역	수산생물자원보호구	-	-	4.02	-	2.74	6.75
	해양생태보호구	-	0.65	-	-	42.39	43.03
	경관보호구	-	0.20	-	-	1.26	1.46
	공원구	-	0.01	-	-	-	0.01
	어장구	152.01	8.16	88.23	100.99	5.85	355.25
	해양문화자원보존구	-	1.20	-	-	-	1.20
합 계 (기능구 -용도해역 )	1,479.67 (0)	532.19 (0)	1,007.48 (21.14)	1,464.50 (47.00)	4,023.93 (84.8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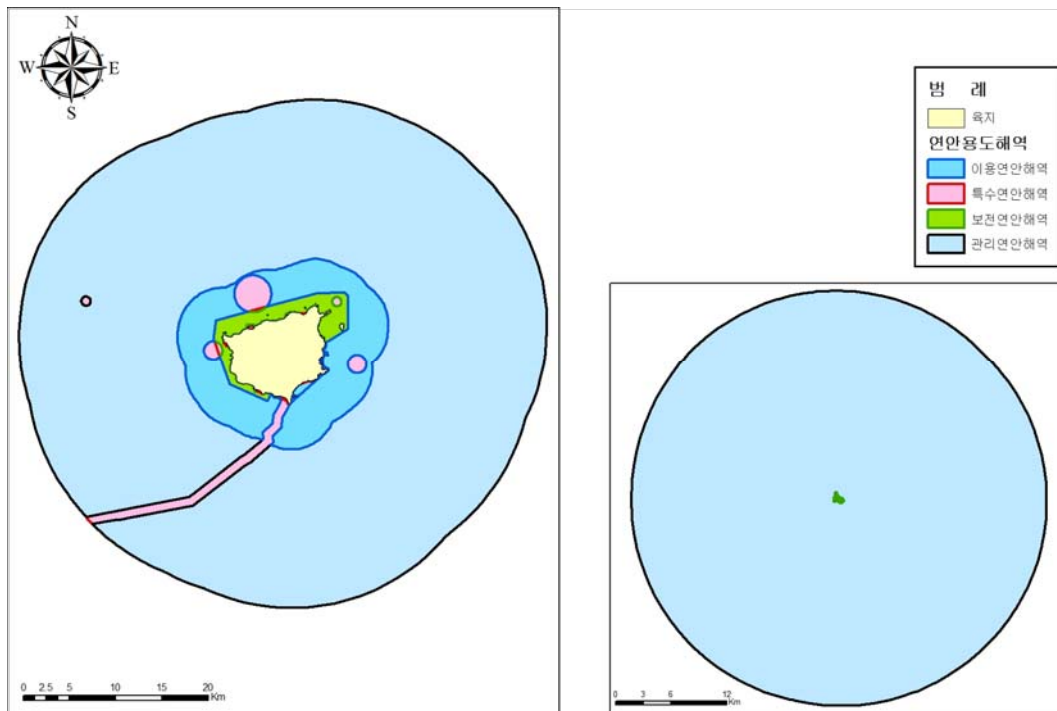
주 : 기능구의 합계가 중복 지정 등으로 인해 용도해역의 합계와 일치하지 않음

- 연안관리지역계획(안)에 따른 연안용도해역 지정은 관리해역이 7.4km<sup>2</sup>로 대부분을 차지
- 연안해역기능구는 보전연안해역의 어장구가 355.25km<sup>2</sup>로 가장 많은 면적이 지정되어 있으며, 다음으로는 이용연안해역의 레저관광구가 269.65km<sup>2</sup>로 많은 면적을 차지

〈그림 2-27〉 경북 연안용도해역(안) 현황



〈그림 2-28〉 경북 연안용도해역(안) 현황



(울릉군)

(2) 공유수면 매립

□ 매립수요는 총 60개소, 매립예정면적은 19.56km<sup>2</sup>에 달함

- 이중 항만구역 내 매립예정지구는 총 38개소로 그 면적이 16.07km<sup>2</sup>이며, 항만구역 외 매립수요는 22개소로 3.49km<sup>2</sup>의 면적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

〈표 2-42〉 경북연안 공유수면매립수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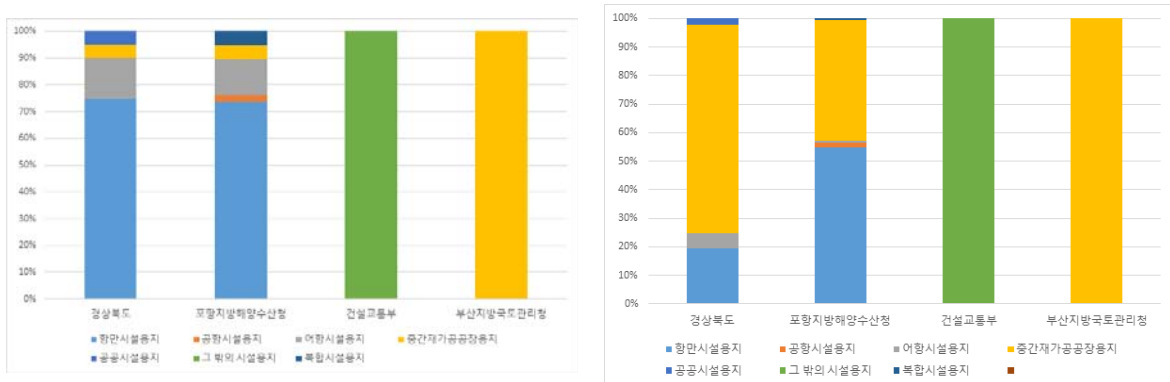
매립목적**	면허관청									
	경상북도		포항 지방해양수산청		건설교통부		부산 지방국토관리청		합계	
	개소	면적 (km <sup>2</sup> )	개소	면적 (km <sup>2</sup> )	개소	면적 (km <sup>2</sup> )	개소	면적 (km <sup>2</sup> )	개소	면적 (km <sup>2</sup> )
항만시설용지	15	0.24	28	8.80	-	-	-	-	43	9.04
공항시설용지	-	-	1	0.28	-	-	-	-	1	0.28
어항시설용지	3	0.06	5	0.08	-	-	-	-	8	0.15
중간재가공공장용지	1	0.91	2	6.80	-	-	1	0.11	4	7.82
공공시설용지	1	0.03	-	-	-	-	-	-	1	0.03
그 밖의 시설용지	-	-	-	-	1	2.14	-	-	1	2.14
복합시설용지		0.00	2	0.11	-	-	-	-	2	0.11
총합계	20	1.24	38	16.07	1	2.14	1	0.11	60	19.56

자료 : 해양수산부, 2020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반영 타당성 검토 연구

\* 공유수면 매립수요현황의 건수 및 면적은 실효된 지구를 제외한 결과임

\*\* 매립목적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매립목적(제34조제2항 전단관련) 1~17에 해당하는 내용을 따르되, 법률상 열거하는 2개 이상의 매립 목적을 포함할 시 복합시설용지로 구분함

〈그림 2-29〉 경북연안 공유수면매립수요 현황



(경북연안 공유수면 매립지구 현황)

(경북연안 공유수면 매립면적 현황)

### (3) 항만 개발

□ 무역항 1개소와 신항만 1개소, 연안항 4개소 등 총 6개소의 항만개발 추진 중

- 무역항인 포항항은 국가 기간사업 지원 및 환동해 물류, 관광 거점 항만 육성과 배후 제철산업 등 국가 기간산업 지원강화 및 항만 이용여건 개선을 통한 환동해권 물류 및 관광 거점항 조성을 항만육성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음.

〈표 2-43〉 포항항 개발 수요

시설 종류			
외곽시설	계류시설	임항교통시설	기타시설
북방파제 : 165m 북방파제연장 : 40m 접속호안 : 25m 호안 : 162m 중앙방파제 : 385m 수로호안 : 312m 방파호안 : 87m	소형선 부두 정비 : 95m 소형선 부두 : 280m 소형선 부두 : 265m 관리부두 : 30m	-	해수소통부 : 50m

자료 : 해양수산부, 2020,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2021-2030) 재구성

- 구룡포항 경북 어업 및 수산물 유통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고 항만재개발구역을 통한 동해권 해양관광산업 지원항만으로 개발하는 것을 항만육성의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음.

〈표 2-44〉 구룡포항 개발 수요

시설 종류			
외곽시설	계류시설	임항교통시설	기타시설
남방파제 : 150m	소형선 부두 : 130m	진입도로 : 210m	해수교환시설 1식

자료 : 해양수산부, 2020, 제4차 전국 연안항 기본계획(2021-2030) 재구성

- 강구항은 경북 영덕권 어업 지원 및 유통기능 중심항만으로 개발하는 것을 항만육성의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음.

〈표 2-45〉 강구항 개발 수요

시설 종류			
외곽시설	계류시설	임항교통시설	기타시설
북방파제 : 165m 북방파제연장 : 40m 접속호안 : 25m 호안 : 162m 중앙방파제 : 385m 수로호안 : 312m 방파호안 : 87m	소형선 부두 정비 : 95m 소형선 부두 : 280m 소형선 부두 : 265m 관리부두 : 30m	-	해수소통부 : 50m

자료 : 해양수산부, 2020, 제4차 전국 연안항 기본계획(2021-2030) 재구성

- 후포항은 동해안부권 영해관리 거점 항만으로 개발하는 것을 항만육성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음.

〈표 2-46〉 후포항 개발 수요

시설 종류			
외곽시설	계류시설	임항교통시설	기타시설
방파제 : 150m 방파제 : 120m	소형선 부두 : 100m 해경부두 : 170m 국가어업지도선부두 : 110m	-	해수교환시설 : 1식

자료 : 해양수산부, 2020, 제4차 전국 연안항 기본계획(2021-2030) 재구성

- 울릉항은 동해해역 국가안보, 영토 및 영해관리 전략적 요충 항만으로 육성하고 환동해권 해양관광 거점 항만으로 개발하는 것을 항만육성 기본방향으로 제시

〈표 2-47〉 울릉항 개발 수요

시설 종류			
외곽시설	계류시설	임항교통시설	기타시설
북방파제 : 50m 남방파제 : 30m	여객부두 : 30m	-	-

자료 : 해양수산부, 2020, 제4차 전국 연안항 기본계획(2021-2030) 재구성

#### (4) 어항 개발

- 국가어항 중 오산항, 대진항, 축산항, 호미곶항을 중심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오산항은 199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8년 오산항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2021년부터 정비사업이 착공되어 개발이 진행 중에 있음.

〈표 2-48〉 오산항 개발 수요

세부사업	총 사업비		2020년까지		2021년 계획		2022년 이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16,144	-	721		2,847		12,576
시설비		13,126		40		2,437		10,649
소형선부두	115	1,234	-	-	-	-	115	1,234
선양장	30	401	-	-	-	-	90	401
배후부지 경비	1식	451	-	-	-	-	1식	451
준설 및 매립	1식	1,177	-	-	-	-	1식	1,177
방사제	100	5,278	-	-	-	-	100	5,278
부대공사 등	1식	3,539	1식	30	-	2,147	1식	1,362
사후환경	1식	1,046	1식	10	1식	290	1식	746
부대경비		3,018		681		410		1,927
설계비	1식	604	1식	604	-	-	-	-
감리비	1식	2,386	1식	72	1식	400	1식	1,914
부대비	1식	28	1식	5	1식	10	1식	

자료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누리집(<https://pohang.mof.go.kr/ko/page.do?menuidx=2810>)

- 대진항은 199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었고 2019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021년부터 정비사업이 착공되었음.

〈표 2-49〉 오산항 개발 수요

세부사업	총 사업비		2020년까지		2021년 계획		2022년 이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16,738		10		2,029		14,699
시설비		16,738		10		2,029		14,699
북방파제 보강	269	5,903	-	-	55	1,900	214	4,003
모래차단시설	100	2,719	-	-	-	-	100	2,719
소형선부두	56	563	-	-	-	-	56	563
친수시설	166	4,216	-	-	-	-	166	4,216
어구보관창고	1식	1,500	-	-	-	-	1식	1,500
부대공	1식	1,837	-	10	1식	129	1식	1,698

자료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누리집(<https://pohang.mof.go.kr/ko/page.do?menuidx=2813>)

- 축산항은 199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5년 정비사업을 착공하여 2021년 준공예정에 있음.

〈표 2-50〉 축산항 개발 수요

세부사업	총 사업비		2020년까지		2021년 계획		2022년 이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36,710		34,349		2,404		0
시설비		36,710		34,349		2,404		0
북방파제	180	25,840	160	23,779	20	2,104	-	-
내항방파제	1식	823	1식	823	-	-	-	-
동방파제	1식	649	1식	649	-	-	-	-
소형선부두	1식	350	1식	350	-	-	-	-
부대시설	1식	8,128	1식	7,828	1식	300	-	-
사후환경	1식	920	1식	920	-	-	-	-

자료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누리집(<https://pohang.mof.go.kr/ko/page.do?menuIdx=2814>)

- 호미곶항은 2020년 대보항을 호미곶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197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어 2005년 전체시설이 완공되었고 2017년 정비사업 기본을 수립하여 2021년 정비사업이 착공되어 추진중에 있음.

〈표 2-51〉 호미곶항 개발 수요

세부사업	총 사업비		2020년까지		2021년 계획		2022년 이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44,204		10		4,462		39,732
북방파제	350	17,047	-	-	-	-	350	17,047
도제	165	10,881	-	-	-	-	165	10,881
부지조성	206	3,128	-	-	175	2,513	31	615
소형선부두 보수	1식	825	-	-	-	-	1식	825
부대공	1식	4,536	1식	10	1식	1,699	1식	2,827
건축공	1식	3,915	-	-	-	-	1식	3,915
전기/통신/폐기물	1식	1,872	-	-	-	-	1식	1,872
사후환경	1식	2,000	-	-	-	250	1식	1,750

자료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누리집(<https://pohang.mof.go.kr/ko/page.do?menuIdx=2816>)

(5) 해양관광 및 레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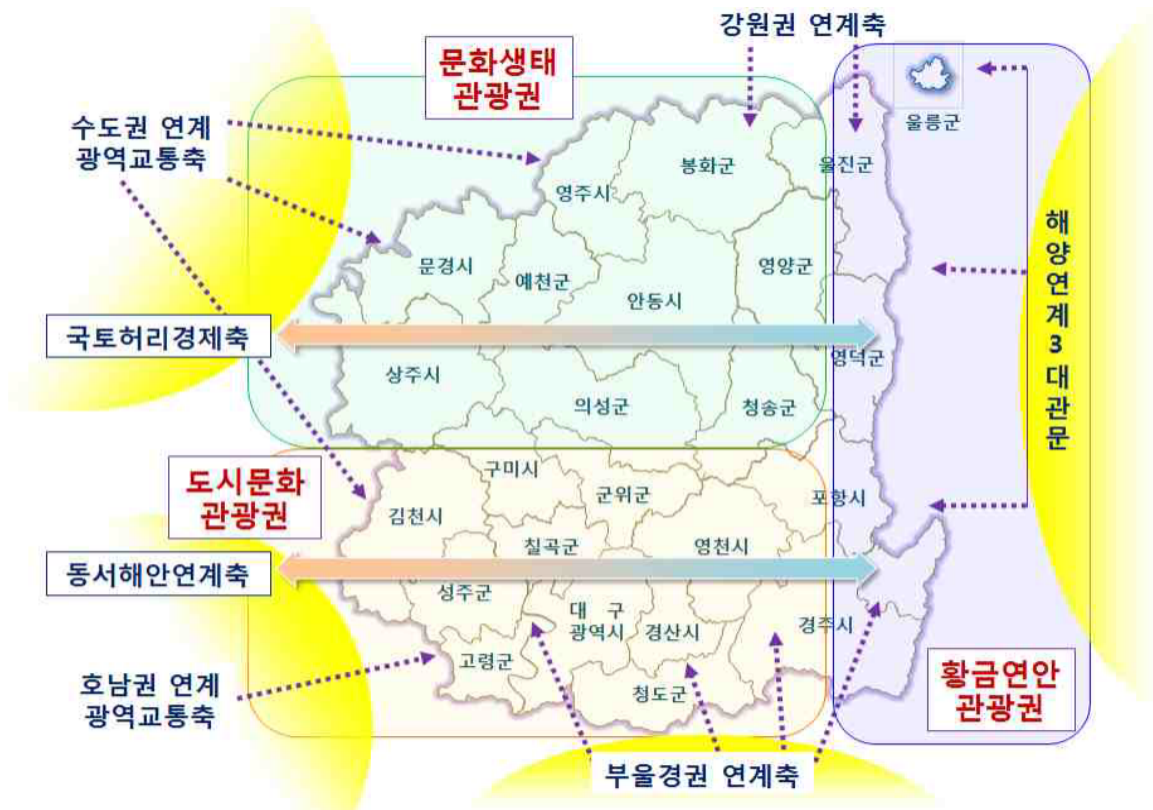
- 경북권 관광개발계획에서 황금연안권으로 설정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해양관광 중심지로 특성화 하는 목표와 개발방향을 제시
  - 동서 4축과 5축, 동해안 고속도로 등 동서와 남북 간의 광역교통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점을 감안하여 시대 흐름에 부응한 신개념의 부가가치 높은 해양관광 중심지로 특성화
  - 신라문화와 낙동정맥의 생태자원, 물 좋은 온천, 천혜의 비경 울릉도와 독도 등을 복합적으로 연계한 해양·문화·힐링 복합형 관광개발을 지향
- 해양관련 관광단지는 총 7개소로 약 2조 7,73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계획이 수립되어 시행중에 있음.
  - 관광(단)지는 울진을 제외한 4개 시군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경주시의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약 2조 2,978억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표 2-52〉 관광(단)지 사업 총괄

관광지명	시군	면적(㎡)	지정일	사업기간 (완료)	사업비 (백만원)
감포해양	경주시	4,019,200	93.12.31	2025	1,313,365
마우나오션	경주시	6,419,256	09.12.28	2017	984,465
호미곶	포항시	221,366	03.11.06	2018	148,000
장사해수욕장	영덕군	104,219	81.12.30	2021	37,394
고래불	영덕군	880,400	88.03.28	2021	211,377
울릉도	울릉군	1,060,290	87.12.31	2015	55,028
개척사	울릉군	152,244	12.12.31	2015	24,000
합계		12,856,975			2,773,629

자료 : 경상북도, 제6차 경북권 관광개발계획(2017~2021), 2017. 재구성

〈그림 2-30〉 경북연안 관광개발 공간체계



자료 : 경상북도, 제6차 경북권 관광개발계획, 2017.

(6) 신재생에너지 개발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제1차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하여 개발 추진
  - 경북연안에서는 경상북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영덕군, 포항시)를 지정하여 단지개발을 추진중에 있으며 영덕군 지구에는 해상풍력발전단지 0.63km<sup>2</sup>가 포함되어 있음.

〈표 2-53〉 경상북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현황

구분	유형		지정면적
산업융합 거점지구 (코어지구)	영덕	신재생에너지산업단지	0.33km <sup>2</sup>
		풍력리파워링발전단지	3.54km <sup>2</sup>
		해상풍력발전단지	0.63km <sup>2</sup>
		풍력산업지원단지	3.25km <sup>2</sup>
연구교육 거점지구 (연계지구)	포항	R&D 거점 (포스텍, RIST, 포항TP,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2.72km <sup>2</sup>
면적 합계			10.47km <sup>2</sup>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40호, 경상북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고시

(7) 해양환경 보호 및 보전 수요

- 울릉군 및 호미곶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경북동해안 국가지질 공원 재인증에 대한 심의가 진행 중
  - 울릉군 주변 해역을 대상으로 2014년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되었으며 2019년 울릉군 지방조례 제정 이후 관광객 방문자센터 건립이 추진 중
  - 호미곶 주변 해역의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5년 단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기반을 마련할 예정
  - 국가지질공원은 포항시 구룡소 돌개구멍, 호미곶 해안단구, 경주시 주상절리군, 영덕군 고래불 해안, 원생대 변성암, 대부정합, 백악기 퇴적암, 화강섬록암 해안 등 8개 소를 대상으로 2017년 인증
- 경북도는 호미곶 해역 일원을 국가해양정원으로 조성 예정
  - 호미곶 주변해역에는 해안단구가 발달해 있고 저서동물이 나타나고 있으며 동해연안 주요 바닷새들의 휴식·번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 단순한 해양환경 보전이 아닌 생태계 복원과 생태관광을 연계한 산림과 바다, 인문 역사가 어우러진 명품 생태·힐링 공간으로 조성

〈그림 2-31〉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 전략



자료 : 경상북도, 2022, 호미반도 국가 해양정원 주민설명회 보도자료

## 4. 해양공간관리 현안

### 1) 일반주민 설문조사

#### (1) 설문조사 개요

##### □ 경북 해양공간활동 및 해양공간관리 인식조사

- 조사 대상 : 경북 지역주민 및 공무원을 포함 총 372명
  - \* 경북의 해안을 접하고 있는 시·군의 지역주민 및 지자체 공무원 (지역주민 : 350명, 공무원 : 22명)
- 조사 기간 : 2021년 6월 8일~2021년 6월 29일 (약 3주)
- 조사 방법
  - (지역주민)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개별면접 조사
  - (전문가 혹은 공무원)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온라인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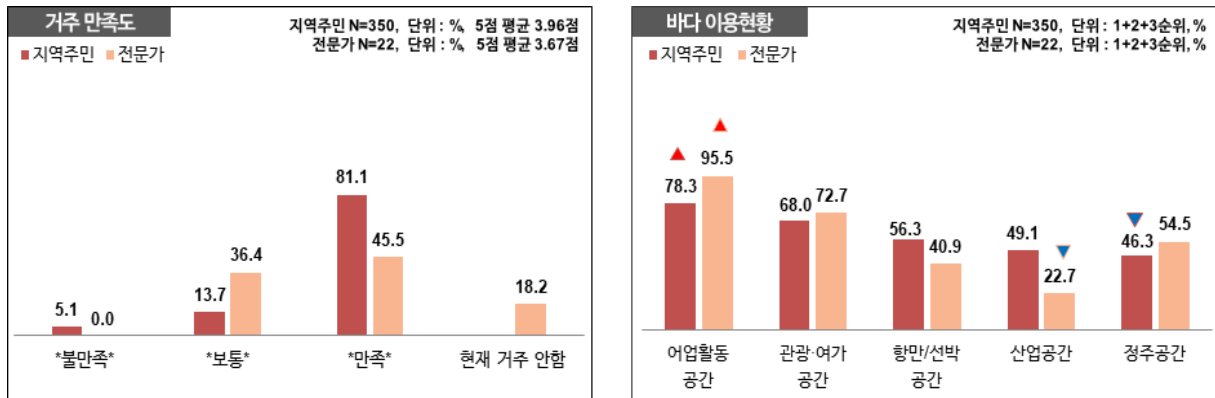
#### (2) 설문조사 결과

##### 가. 해양공간인식

##### □ 거주 만족도 및 경북 바다 이용현황

- 지역주민 및 공무원의 '거주만족도'는 5점 만점 기준으로 각각 3.96점, 3.67점으로 나타남
- 바다 이용현황의 경우, 지역주민은 바다를 '어업활동 공간'으로 이용한다는 응답이 7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무원은 95.5%가 바다를 '어업활동 공간'으로 인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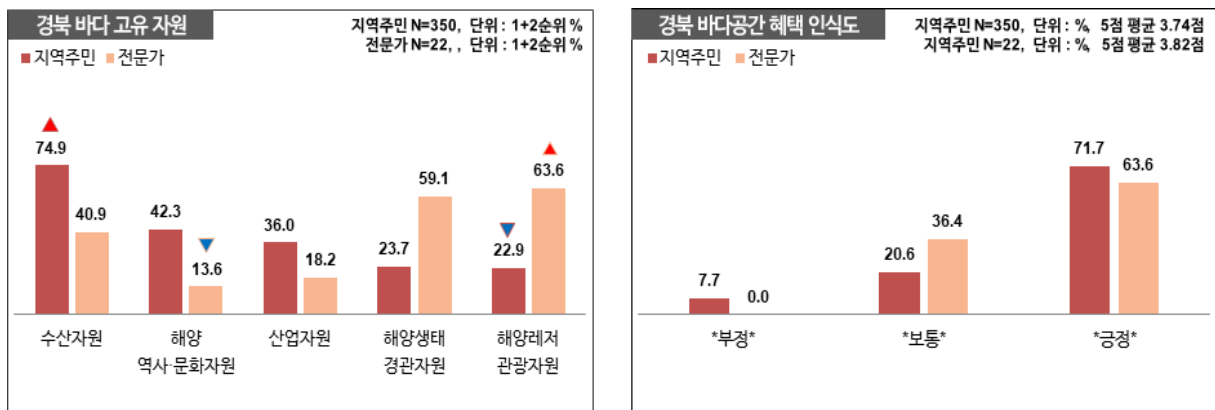
〈그림 2-32〉 주민 거주만족도 및 바다 이용현황



□ 바다 고유자원 및 바다 공간 지역주민 혜택 인식도

- 바다 고유자원에 대한 의견은, 지역주민은 ‘수산자원’이 74.9%, 공무원은 ‘해양레저 관광자원’이 63.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바다공간 혜택 인식도는 5점 만점 기준으로 지역주민 3.74점, 전문가 3.82점으로 나타남
- 바다 공간이 주는 혜택에 대하여 지역주민 및 공무원의 대다수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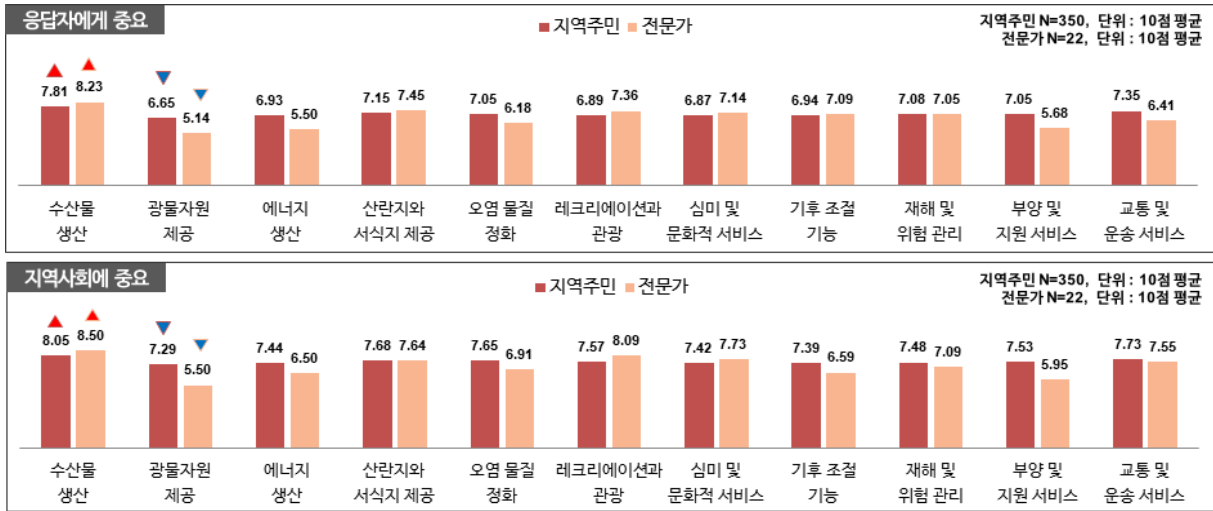
〈그림 2-33〉 바다 고유 자원의 유형 및 바다 공간 혜택 인식도



□ 바다로부터의 혜택

- 지역사회에 중요한 바다로부터의 혜택에 관하여 지역주민 및 공무원 모두 ‘수산물 생산’을 각각 7.81점, 8.23점으로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34〉 응답자 및 지역사회에 중요한 바다로부터의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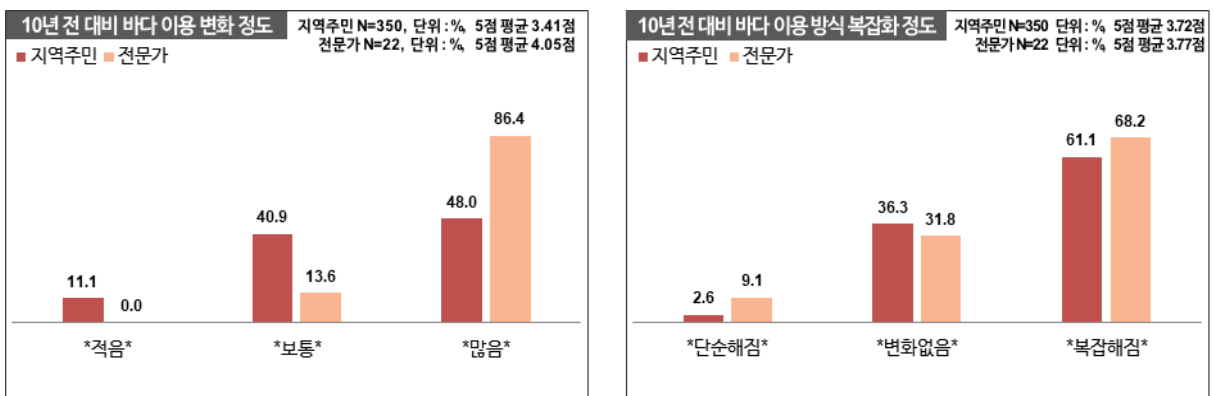


나. 주요 해양활동 간 갈등

□ 과거 10년 전 대비 경북 바다 이용정도 및 이용방식 복잡화 정도

- 지역주민 및 공무원의 과거 10년 전 대비 바다 이용 변화 정도는 5점 만점 기준으로 각각 3.41점, 4.05점으로 나타남
- 과거 10년 전 대비 바다 이용 복잡화 정도는 5점 만점 기준으로 지역주민 3.72점, 공무원 3.77점으로 나타남

〈그림 2-35〉 과거 10년 전 대비 바다 이용 변화 정도 및 이용방식 복잡화 정도



□ 해양공간 이용 갈등 : 지역주민

- 지역주민에게 해양공간 활동들이 서로 얼마나 갈등이 있을지 알아본 결과, 어업활동의 경우 '환경·생태', '항만·항행', '군사활동', '안전관리' 활동에서 갈등이 예상됨.

〈표 2-54〉 지역주민이 인식하는 해양공간 활동간 갈등 예상 정도

해양공간 용도	어업 활동	골재·광물	에너지 개발	해양 관광	환경·생태	연구·교육	항만·항행	군사 활동
(1) 어업활동								
(2) 골재·광물	2.53점							
(3) 에너지개발	2.76점	2.73점						
(4) 해양관광	2.99점	2.90점	2.81점					
(5) 환경·생태	3.09점	2.92점	2.85점	3.11점				
(6) 연구·교육	2.89점	2.76점	2.80점	2.89점	2.83점			
(7) 항만·항행	3.08점	2.81점	2.86점	2.90점	2.85점	2.79점		
(8) 군사활동	3.07점	2.90점	2.91점	2.99점	2.91점	3.01점	2.91점	
(9) 안전관리	3.11점	2.87점	2.87점	2.94점	2.77점	2.90점	2.90점	3.12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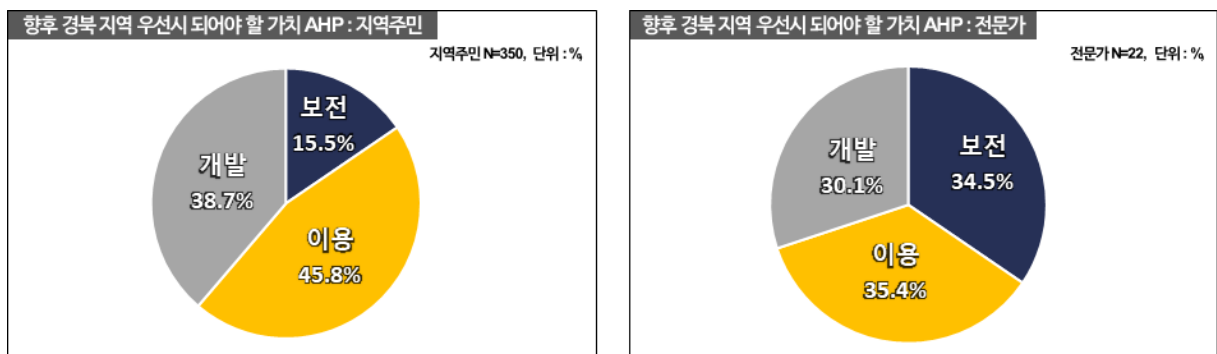
\* 주) 1점에 가까울 수록 '갈등 없음', 5점에 가까울 수록 '갈등 클것' 응답으로, 3점 이상인 경우 '갈등 예상' 으로 분류

다. 해양공간계획 제도 및 경북 해양공간관리 방향

□ 향후 해양공간계획 수립 시 우선 가치

- 지역주민의 경우, 향후 해양공간계획 수립 시 우선시 되어야하는 바다의 가치에 대한 의견은 '이용' 45.8% > '개발' 38.7% > '보전' 15.5% 순으로 나타남
- 공무원의 경우, 향후 해양공간계획 수립 시 우선시 되어야하는 바다의 가치에 대한 의견은 '이용' 35.4% > '보전' 34.5% > '개발' 30.1% 순으로 나타남

〈그림 2-36〉 향후 경북 해양공간계획 수립시 우선시 되어야 할 가치 AH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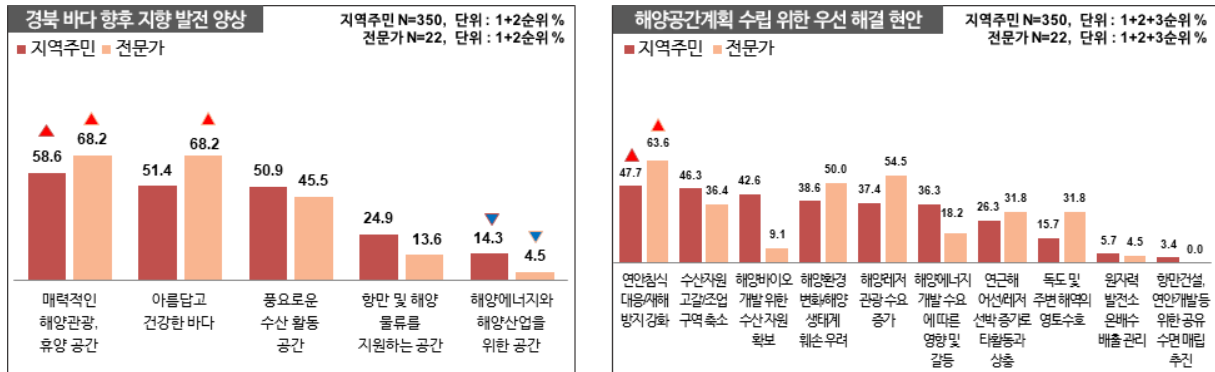


□ 경북 바다 향후 발전 양상 및 해양공간계획 수립 시 우선 해결 현안

- 경북 바다의 향후 지향 발전 양상에 대해서 지역주민은 '매력적인 해양관광, 휴양 공간'을 58.6%로 가장 높게 꼽았고, 공무원은 '매력적인 해양관광, 휴양 공간' 및 '아름답고 건강한 바다'를 각각 68.2%로 응답함

- 해양공간관리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에 대해 지역주민과 공무원 모두 '연안침식 대응, 재해방지 강화'가 각각 47.7%, 63.6%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2-37〉 경북 바다 향후 지향 발전양상 및 해양공간관리 관련 우선 해결현안



## 2) 해양공간관리 현안

### □ 다양한 해양이용·개발 행위에 따른 침식·퇴적 현상 및 갈등 발생

- 해수욕장, 어항·어촌마을 등은 바닷가 개발로 해안경관 훼손
  - \* 해안침식에 따른 백사장 유실로 해수욕장 매력도 감소, '20년 연안침식 실태조사에서 D등급 9개소 발생
- 하구와 어항 내 모래 퇴적현상이 심화되면서 매물로 인한 피해 발생
  - \*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는 해역의 퇴적된 모래를 준설하고 활용함에 광업권 보유 업체와 갈등 발생

### □ 울릉도·독도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 요구와 해양생태계 보전 수요와 상충 가능

- 울릉도 기반시설(공항, 도로, 항만 등) 관련 콘텐츠를 활용·연계한 영토 관리 거점 조성 추진
- 독도 및 주변 해역 해저지형, 해양생태계 등 연구·조사를 통해 과학적 연구 성과 지속 확보

### □ 해양의 접근성 개선과 해양바이오·해양레저관광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어촌마을, 해양공원, 마리나 개발 등 해양레저관광 수요 확대
  - \* 포항시 남구 송도동 일원 부력식 해양공원 조성, 마리나예정구역 5개소 지정(양포, 후포, 두호, 감포, 강구)
- 해양치유자원(높은 미네랄과 낮은 염분을 포함한 염지하수 등) 활용 기반 조성 및 연안 시·군 관광자원 연계한 환동해 해양 힐링벨트 구축

□ 왕돌초 주변해역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조성, 어장환경 복원 추진

- 천연해조장(해조류 군락지)을 국가핵심가치 바다숲으로 지정·관리하여 해조류 보호·보전 기반 마련
- 갯녹음 예방과 생태계 복원뿐만 아니라 인간과 수산생물의 공존하는 동해안의 해양자연·문화·생태 공간 조성 추진

□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에 따른 갈등 발생

- 영덕군 해상풍력발전단지(100MW) 조성계획 추진\*-반대대책위원회 활동 중\*\*
  - \* 해상풍력 실증단지 공모사업에 경북컨소시엄 선정('18), 영덕 해상풍력사업 주민수용성 고양 방안 연구용역 완료('19)
  - \* 18.8.29. 결성, 대형정치망 구획어업 구역으로 영덕대게 치어 서식지 훼손 등 생활어업권 침해 우려

## 5. 해양공간관리 정책방향

### □ 정책방향의 성격

- 해양공간계획은 공간에 분포하는 자원과 환경을 관리하는 제도적 수단이지만, 특정 자원 또는 환경에 특화된 계획이 아닌, 다양한 해양수요가 상충 없이 조화롭게 유지·증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획임.
  - 즉, 다양한 해양수요가 상충 없이 조화를 이루어 각 수요별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통합적 계획의 특징을 보이고 있어, 해양공간계획에 반영된 각 수요별 정책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음.
- 해양공간계획은 현재의 공간관리구조를 파악하여 기능을 배분하고 조정한 결과물인 해양용도구역으로 실현됨으로, 정량적 정책목표 설정이 불가능하지만 행위주체들의 행동을 결정할 이정표 설정은 필요함.
  - 따라서 해양공간계획은 ‘정책방향’을 통해 각 행위주체들의 용도구역별 공간할당 결과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최소상충과 조화의 원칙’을 기초로 해양공간 이용을 재배치함으로써 가치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의 성격을 갖고 있음.

### □ 정책방향의 성격

- 행위주체들의 공간할당에 대한 인식증진 및 최소 상충과 조화의 원칙을 기초로 현재의 해양공간이용을 재배치함으로써 가치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

### □ 정책방향 도출 과정과 구성요소

- 행위주체들의 공간할당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고, 행위결정과정에서 가치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정책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과 정책방향에 포함될 사항은 아래와 같음.

〈그림 2-38〉 해양공간관리계획 정책방향 도출 과정



- 가치창출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틀로서 정책방향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대상 공간의 특성을 분석해야 함. 계획대상 공간특성 분석 대상은 자연 환경 특성, 사회경제 이용특성, 국가정책 및 계획 수요 등임.
- 다음 단계는 공간특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각 수요별 상충현황(상충 내용과 수준)과 현재의 관리자원·역량(자료, 정보, 인력, 기술수준 등)을 분석하는 과정임.
- 마지막으로 공간특성, 상충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해상충 조정방향, 해양공간 배분’을, 관리자원·역량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양공간계획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제시함.

□ 경북 해양공간관리계획 정책방향

- 상기의 과정을 거쳐 도출한 경북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정책방향은 아래와 같음.

① 항만·어항, 에너지, 관광, 어업 등 해양활동 공간의 합리적 배분과 복합적 활용을 통한 가치 증진

- 해양공간에서 다양한 항만, 에너지, 레저·관광, 수산 활동의 잠재성과 지역경제의 이익을 고려한 공간 할당
- 해양활동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용도구역과 관리 우선순위를 설정하되, 용도 간 조화를 위한 해양활동의 상호작용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② 생태·문화적 가치가 높은 해양공간을 환경·생태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해양 생태계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의 조화

- 건강한 해양생태계 조성을 위한 바다숲, 바다목장 사업과 연계하여 수산자원 유지·회복 방안 마련
- 환경·생태계관리구역은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이용을 지원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통한 가치창출의 기반으로 활용

\* 울릉도, 왕돌초 주변해역(3차원 해양 경관)의 우수한 경관·생태·문화 가치 유지 및 관리 추진

③ 환동해권 관광 허브, 휴식·레저·치유를 위한 해양관광구역 지정과 동시에 안전한 접근을 위한 침식 대응 강화

○ 우수한 해양경관(구산항~월송정, 죽변항, 후포항 등)을 유지하고 훼손된 경관의 복원을 통해 해양관광 진흥

○ 다변화된 침식대응 수단(공간관리수단\*, 정비사업 등)을 통한 침식 관리 강화

\* 봉평, 금음해변(연안침식관리구역) 등

④ 신규 개발 수요의 지속적 모니터링과 행위간 갈등 조정 기제 구축

○ 해양공간 이용기회 확대를 위한 과학적 연구와 지속적인 조사 추진 및 연구·교육 보전구역\* 지정 검토

\* 해양심층수, 수중로봇 실증 해역 등, 신규 이용·개발에 따른 타 활동과 공간경쟁·영향 등 점검 체계 마련

○ 지역협의회를 통해 갈등 해결을 위한 참여·협력 체계 마련 및 의사소통 개선 강화





## 제3장

# 해양용도구역 지정 및 관리

1. 해양공간특성평가
2. 해양용도구역 지정 기준 및 구획 방법
3. 해양용도구역 지정 및 관리





## 제3장 / 해양용도구역 지정 및 관리



### 1. 해양공간특성평가

#### 1) 해양공간특성평가 개요

○ 해양공간특성평가(이하, “특성평가”)는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 방향을 유도하고 결정하는 데 필요한 평가방법임.

\* 「해양공간계획법」제2조제7항 : 해양공간특성평가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 개발, 보전 방향을 유도하고 결정하는데 필요한 평가를 말함.

- 해양공간의 환경·생태, 자원, 이용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해양의 핵심 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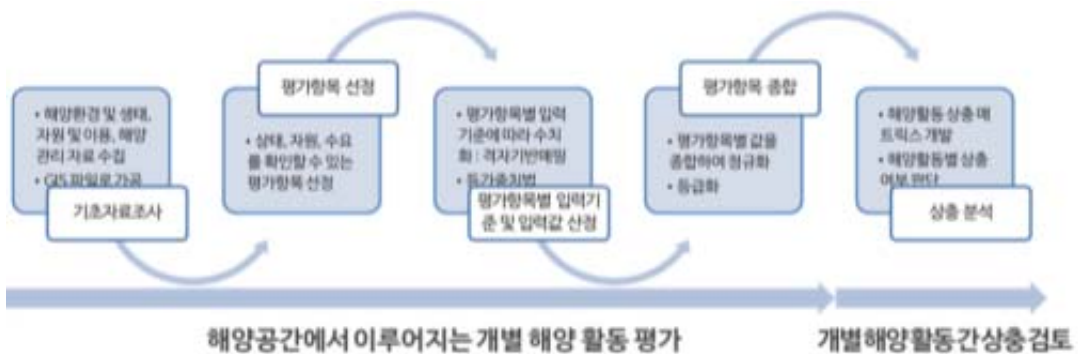
○ 특성평가는 핵심 해양활동을 자료 기반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등급화 하는 과정임.

- 특성평가를 통해 해양활동을 대표하는 해양공간정보를 지리정보체계(GIS)를 활용하여 평가단위인 격자 형태로 가공하고, 이를 중첩 분석(overlay analysis) 하여 해양공간 특성을 등급화하고 핵심 활동 공간을 식별

- 특성평가 결과는 해양용도구역의 지정·변경, 용도구역 간 상충 여부와 정도를 파악하는데 활용

\* 「해양공간계획법」제5조에 따라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및 제12조에 따라 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을 위해서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제13조 제2항에서는 해양공간특성평가에 대한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해양공간특성평가 지침)으로 정하도록 함

〈그림 3-1〉 특성평가 절차 및 방법



2) 기초자료 조사·수집

-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해양공간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정보 목록의 자료를 우선 하여 조사·수집
- 기초자료 조사를 위해 관련 법정조사, 연구보고서, 해양공간정보, 행정통계 등을 검토

〈표 3-1〉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목록

구분	자료 및 정보	관련 기관
1. 기본 해양공간정보	가. 해도(海圖)	국립해양조사원
	나. 수심	
	다. 조위(潮位: 조수에 의한 해수면 높이) 변화	
	라. 조류·해류	
	마. 해역 경계	
	바. 인공·자연해안선	
	사. 약최저저조선	
	아. 지적 경계	국토교통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자. 무인도서	해양수산부
	차. 해양환경관측 지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공단
카. 배타적 경제수역 해역조사 자료	국립해양조사원	
2. 해양환경·생태	가. 수온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공단
	나. 염분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다. 갯벌	
	라.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 자료	
	마. 해양보호생물종	국립수산과학원
	바. 해양생태도	
	사. 이상해역환경 정보	
	아. 적조출현속보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지방해양수산청
	자. 해파리출현 정보	
	차. 해역이용협의서	
	카. 해역이용영향평가서	환경부
	타. 해양환경영향조사서	
	파. 환경영향평가서	
	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문화재청
	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너. 문화재 정보, 문화재유존정보 등		
3. 어업활동	가. 어항시설	해양수산부
	나. 어항개발계획	
	다. 배타적 경제수역 조업허가·관리 자료	

구분	자료 및 정보	관련 기관
	라. 연근해 어업자원 조사 자료	국립수산물과학원
	마. 산란·서식지 조사 자료	
	바. 수출패류생산해역위생조사 자료	
	사. 바다숲·바다목장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해당 지방자치단체
	아. 인공어초	
	자. 천연해조장·잘피(해수에 완전히 잠겨서 자라는 식물) 조사 자료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차. 연근해어획실적(소해구별·조업위치별)	해양수산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카. 선박패스(V-PASS) 장치 동적정보	해양경찰청
	타. 어선등록정보	해양수산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파. 양식장 시설 자료(위성영상판독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하. 수산자원관리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거. 면허어업권(양식장 등)	해양수산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4. 골재·광물	가. 골재자원 조사자료(부존량(賦存量) 등)	국토교통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나. 골재유망단지분할도	
	다. 바다골재채취예정지	
	라. 해저광물개발구역	산업통상자원부
	마. 광업권(채굴권·탐사권)	
	바. 바다골재채취허가	국토교통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5. 해양에너지	가. 조류에너지	해양수산부
	나. 조력에너지	
	다. 파력에너지	
	라. 온도차에너지	
	마. 해상풍력에너지	산업통상자원부, 기상청
	바. 석유·천연가스·가스하이드레이트 등 자원 조사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및 전원개발사업구역	
아. 전기사업허가구역		
6. 해양관광	가. 해수욕장	해당 지방자치단체
	나. 마리나 시설	해양수산부
	다. 낚시 활동 및 신고 정보	한국어촌어항공단, 해당 지방자치단체
	라. 어촌체험휴양마을	
	마. 여객선 항로 및 이용 자료	해양수산부, 한국해운조합
	바.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구역	해양경찰청
	사. 동·서·남해안권 개발구역	국토교통부
	아. 해양관광진흥지구	
7. 항만·항행	가. 항만시설	해양수산부
	나. 항만기본계획	
	다. 선박운항정보	

구분	자료 및 정보	관련 기관
8. 군사활동	해상사격 훈련구역 등	국방부, 국립해양조사원
9. 해양안전·관리	가. 해양시설 자료	해양수산부
	나. 해상교통 안전진단 등 정보	
	다. 공유수면매립 예정지	
	라. 바닷가실태조사 자료	
	마. 해양사고 자료	해양경찰청
	바.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	
	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주 : 위 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개별 법령에 따라 바다와 바닷가에 설정된 이용·개발 및 보전·보호 구역 정보 등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특성평가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음.

자료 : 해양수산부, 2019, 「해양공간특성평가 지침」(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76호)

### 3) 평가항목

#### □ 평가항목 선정

- 특성평가의 평가항목을 선정하기 위해 해양용도구역 분류와 연관성을 고려하여 구역별 해양활동을 확인하였음.
- 주요 해양활동을 확인하고, 개별 해양활동을 확인하기 위해 해양자원의 부존 현황 및 가치, 해양환경 및 생태계 특성, 해양공간의 이용 및 개발 현황, 해양공간의 미래 활용 수요와 관련된 사항을 검토
- 이에 따른 공간특성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음.

〈표 3-2〉 특성평가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격자별 입력기준	용도별 종합점수
어업활동	• 연근해 어획량(5년평균)	5개 등급(상위 3개)	① 격자별 입력기준에 따라 각각의 평가항목 점수를 주고 ② 이를 합산한 값을 표준화한 후 ③ 5점 척도로 등급화 함
	• 연근해 어선밀집도(5년평균)	5개 등급(상위 3개)	
	• 어업 관련 보호구역	존재유무(유=1, 무=0)	
	• 양식장(면허어업권)	존재유무(유=1, 무=0)	
	• 어항	존재유무(유=1, 무=0)	
	• 바다목장 및 바다숲	존재유무(유=1, 무=0)	
골재·광물 자원개발	• 광업권 등록(광업권 채굴권 탐사권)	존재유무(유=1, 무=0)	① 격자별 입력기준에 따라 각각의 평가항목 점수를 주고 ② 이를 합산한 값을 표준화한 후 ③ 5점 척도로 등급화 함
	• EEZ 광물자원	존재유무(유=1, 무=0)	

구분	평가항목	격자별 입력기준	용도별 종합점수
에너지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전소(풍력실증단지, 조력)</li> <li>조류, 조력, 파력, 해상풍력, 해수 온도차 등의 자원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류 : 평균유속 &gt; 2m/s(1등급), 1.5m/s (2등급)</li> <li>- 조차 : 조차 5m 이상(1등급)</li> <li>- 파력 : 10년 평균 &gt; 2m/s(1등급), 1m/s(2등급)</li> <li>- 해상풍력 : 50m 상공 &gt; 6m/s(1등급)</li> <li>- 해수온도차 : 해수온도차에너지</li> </ul> </li> </ul>	존재유무(유=1, 무=0)	① 격자별 입력기준에 따라 각각의 평가항목 점수를 주고 ② 이를 합산한 값을 표준화
	발전단지 예정구역·사업 허가 구역	존재유무(유=1, 무=0)	
항만·항행	항만구역(무역항, 연안항)	존재유무(유=1, 무=0)	① 격자별 입력기준에 따라 각각의 평가항목 점수를 주고 ② 이를 합산한 값을 표준화 ※ 항만 및 항행 활동과 관련한 평가항목은 법제도상 지정된 구역을 토대로 설정
	신항만예정구역	존재유무(유=1, 무=0)	
	항로(항로 및 통항분리제도 등)	존재유무(유=1, 무=0)	
	정박지(정박지, 묘박지)	존재유무(유=1, 무=0)	
	교통안전특정해역	존재유무(유=1, 무=0)	
GICOMS 통항밀집구역	5개 등급(상위 3개)		
해양관광	해수욕장(해안)	존재유무(유=1, 무=0)	① 격자별 입력기준에 따라 각각의 평가항목 점수를 주고 ② 이를 합산한 값을 표준화한 후 ③ 5점 척도로 등급화 함
	마리나항만(해안), 마리나항만 예정구역(해안)	존재유무(유=1, 무=0)	
	낙시포인트(갯바위, 선상, 유어장)	존재유무(유=1, 무=0)	
	레저구역	존재유무(유=1, 무=0)	
	V-PASS 기반 낙시어선 활동	5개 등급(상위 3개)	
환경·생태계 관리	수중식물(갈피, 해조/해초류)	존재유무(유=1, 무=0)	① 격자별 입력기준에 따라 각각의 평가항목 점수를 주고 ② 이를 합산한 값을 표준화한 후 ③ 5점 척도로 등급화 함
	해양보호생물	존재유무(유=1, 무=0)	
	해양생태도	1등급=1/2등급=0.5	
	해양생물다양성지수	5개 등급(상위 3개)	
	연안·해양보호구역	존재유무(유=1, 무=0)	
	보호도서(특정/절대보전 무인도서)	존재유무(유=1, 무=0)	
연구·교육	영해기점 무인도서	존재유무(유=1, 무=0)	
	해양관측 부이 등	존재유무(유=1, 무=0)	
	지역의견반영구역(울릉군해양심층 수취수구/연구실증해역)	존재유무(유=1, 무=0)	
군사활동	군사 관련 법정구역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 해상 사격훈련구역 등)	존재유무(유=1, 무=0)	
안전관리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	존재유무(유=1, 무=0)	
	대형선박 및 낙시활동 상충구역	5개 등급(상위 3개)	
	해양시설주변구역(발전소 등)	존재유무(유=1, 무=0)	

#### 4)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

##### □ 용도구역별 특성평가

- 특성평가대상해역에 대한 공간분석을 실시하고 특성평가지도를 제작 및 제공하기 위하여 ‘대상해역 격자구성’, ‘공간정보 격자화’, ‘평가항목별 점수지도 제작’, ‘용도구역별 특성평가지도 제작’ 과정을 수행하는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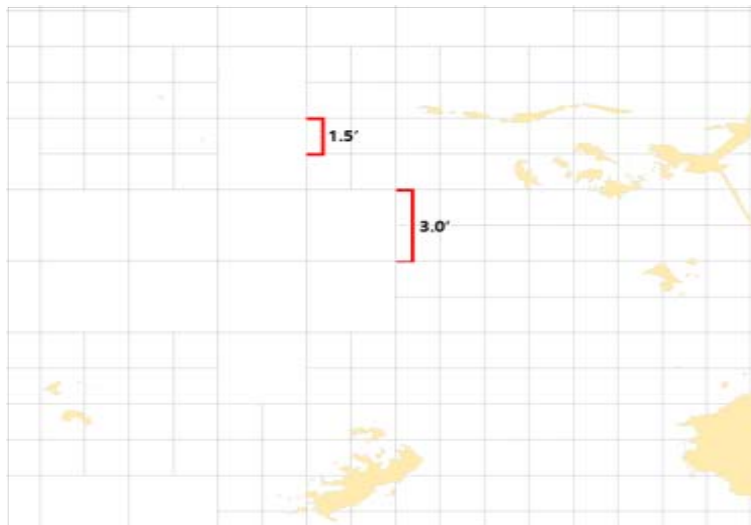
〈그림 3-2〉 용도구역별 특성평가



자료 : 「해양공간특성평가 지침」(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7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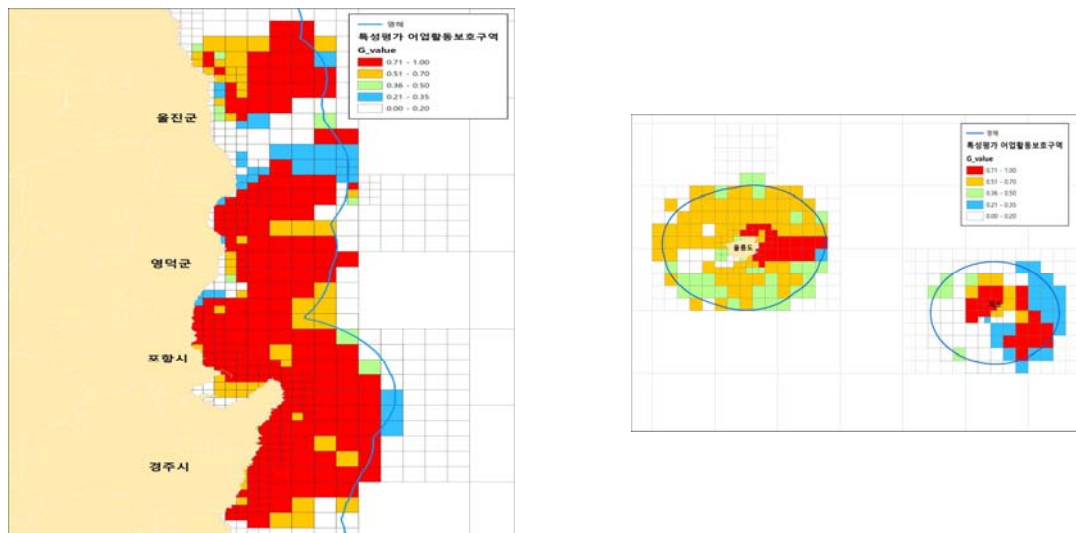
- (대상해역 격자 구성) 공간분석 및 특성평가지도를 제작하기 위하여 영해 내측은 3'×3'(약 5km) 격자, 영해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까지는 15'×15'(약 25km) 격자인 일반 격자를 적용한 격자망도 제작

〈그림 3-3〉 일반격자(연안:1.5'×1.5', 영해내측: 3'×3', 영해외측: 15'×15')만 적용한 격자 구성



- (공간정보 격자화) 평가항목에 관련된 해양공간정보를 개별 격자의 속성정보로 입력하는 공간정보 격자화 과정을 수행
  - (평가항목별 점수지도 제작) 공간정보 격자화 결과로 입력된 속성정보의 통계적인 의미를 고려하여 평가항목별 점수산정 기준을 정하되, 개별 평가항목별 점수는 0부터 1까지의 점수 이내에서 부여
  - (용도구역별 특성평가지도 제작) 각 용도구역별로 관련된 모든 평가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통합점수를 산정하고, 이를 격자망도 공간정보의 속성정보로 입력
- 어업활동보호구역 특성평가 결과
- 어업활동보호구역 특성평가를 위한 데이터 : 연근해 어획량(5년 평균어획량, 5개 주요 어종 어획량, V-PASS밀집구역), 연근해 어선밀집(5년 평균어획실적), 어업활동 법정구역(관리수면, 보호수면), 양식장(면허어업권), 어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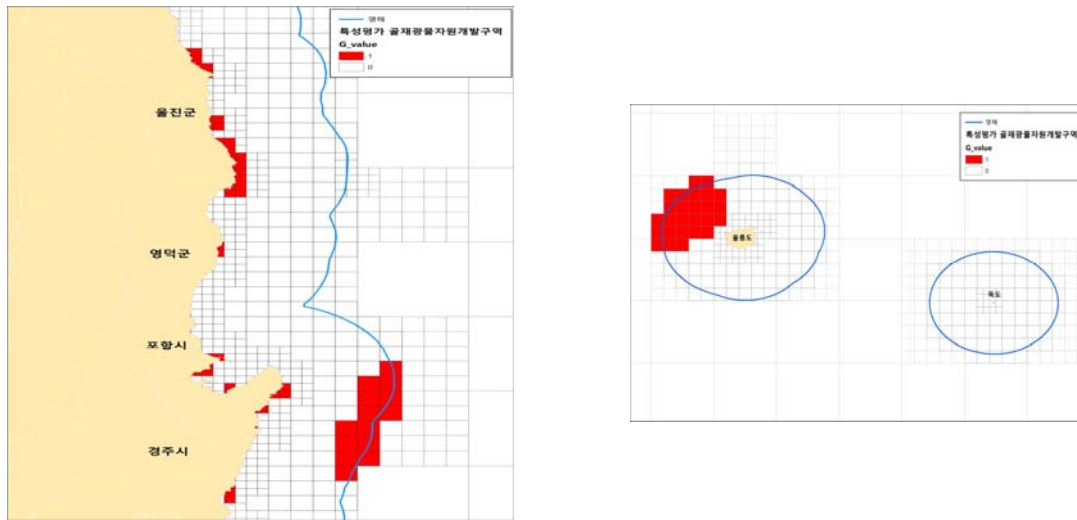
〈그림 3-4〉 경북 어업활동보호구역 관련 특성평가 결과



□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특성평가 결과

-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특성평가를 위한 데이터 : 광업지적단위광구(광업권, 채굴권, 탐사권), 바다골재 부존량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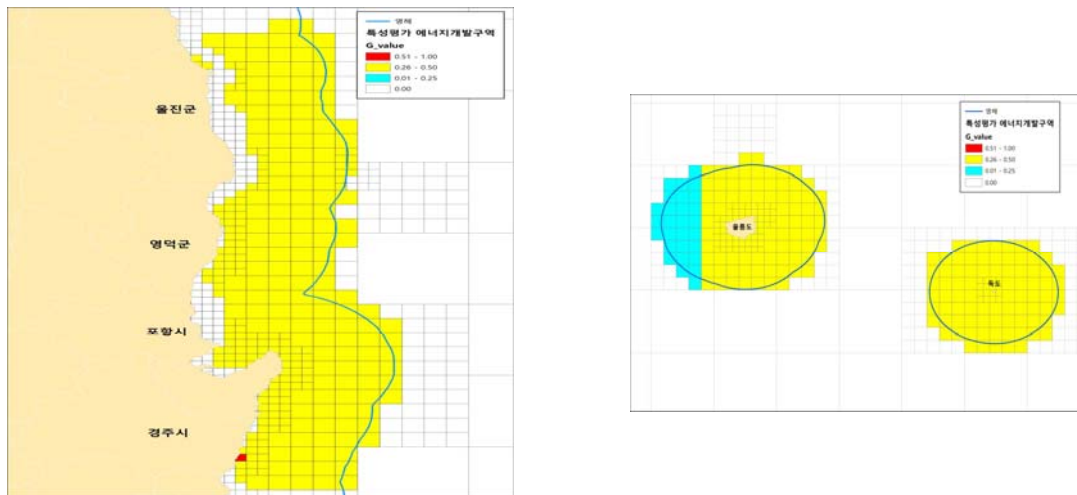
〈그림 3-5〉 경북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관련 특성평가 결과



□ 에너지개발구역 특성평가 결과

- 에너지개발구역 특성평가를 위한 데이터 : 해양에너지 자원 부존량\*, 발전사업 허가 등
  - \* 해양에너지 발전에 적당한 조건 : 조류는 평균유속 1.5m/s 이상, 조력은 조차 5m이상, 파력은 평균 1m/s 이상, 해상풍력은 풍속 6m/s 이상인 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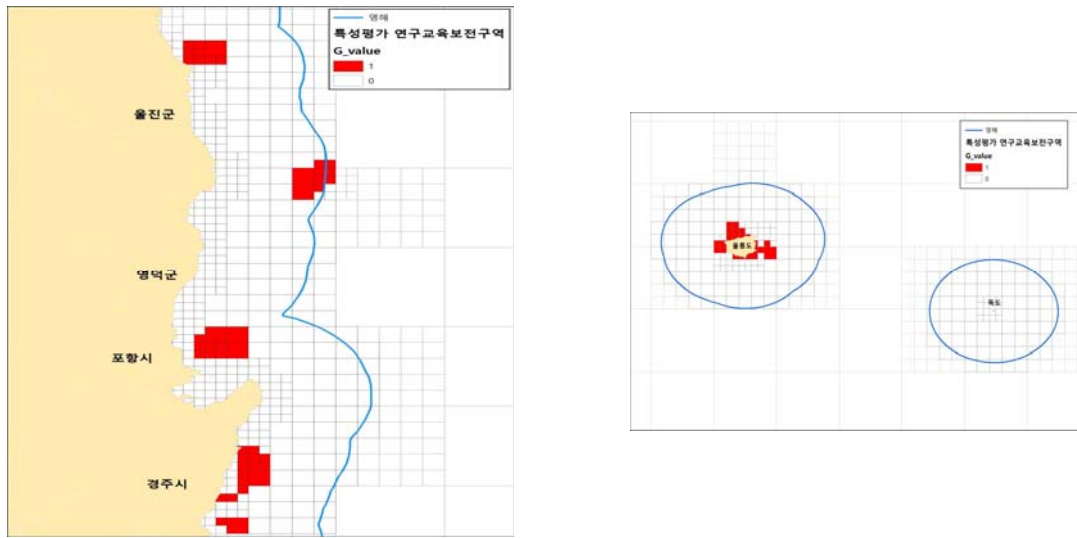
〈그림 3-6〉 경북 에너지개발구역 관련 특성평가 결과



□ 연구·교육보전구역 특성평가 결과

- 연구·교육보전구역 공간특성평가를 위한 데이터 목록: 해양관측 부이(국립해양조사원), 영해기점 무인도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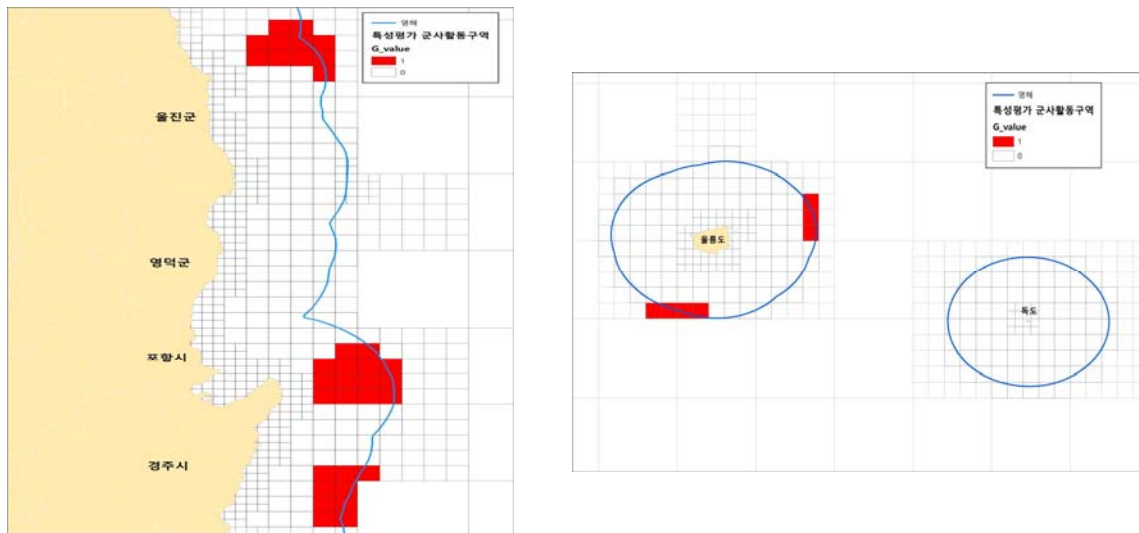
〈그림 3-7〉 경북 연구·교육보전구역 관련 특성평가 결과



□ 군사활동구역 특성평가 결과

- 군사활동구역 특성평가를 위한 데이터: 해상사격 훈련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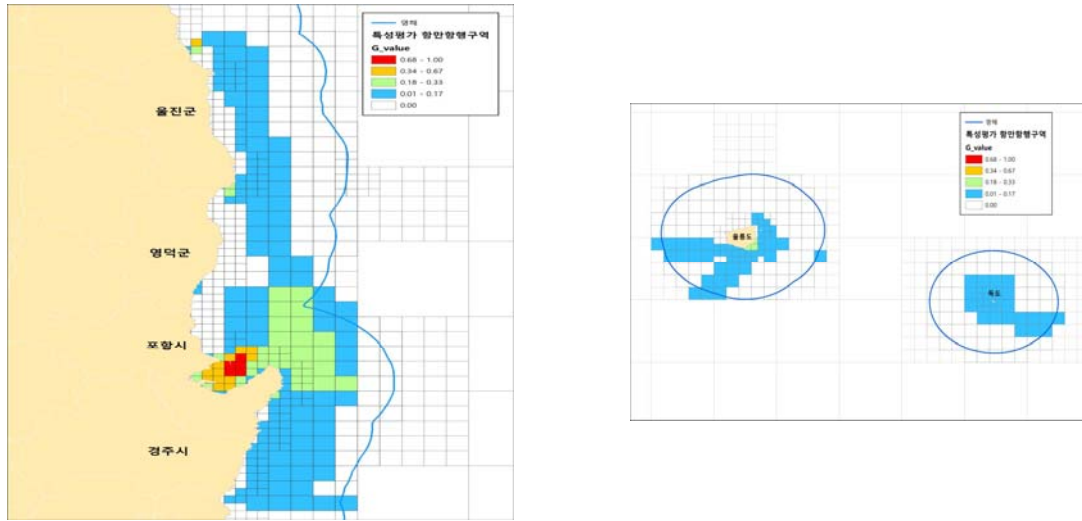
〈그림 3-8〉 경북 군사활동구역 관련 특성평가 결과



□ 항만·항행구역 특성평가 결과

- 항만·항행구역 특성평가를 위한 데이터: 무역항 및 연안항 항만구역, 신항만, 항로, 교통안전특정해역, 정박지, AIS 통항밀집구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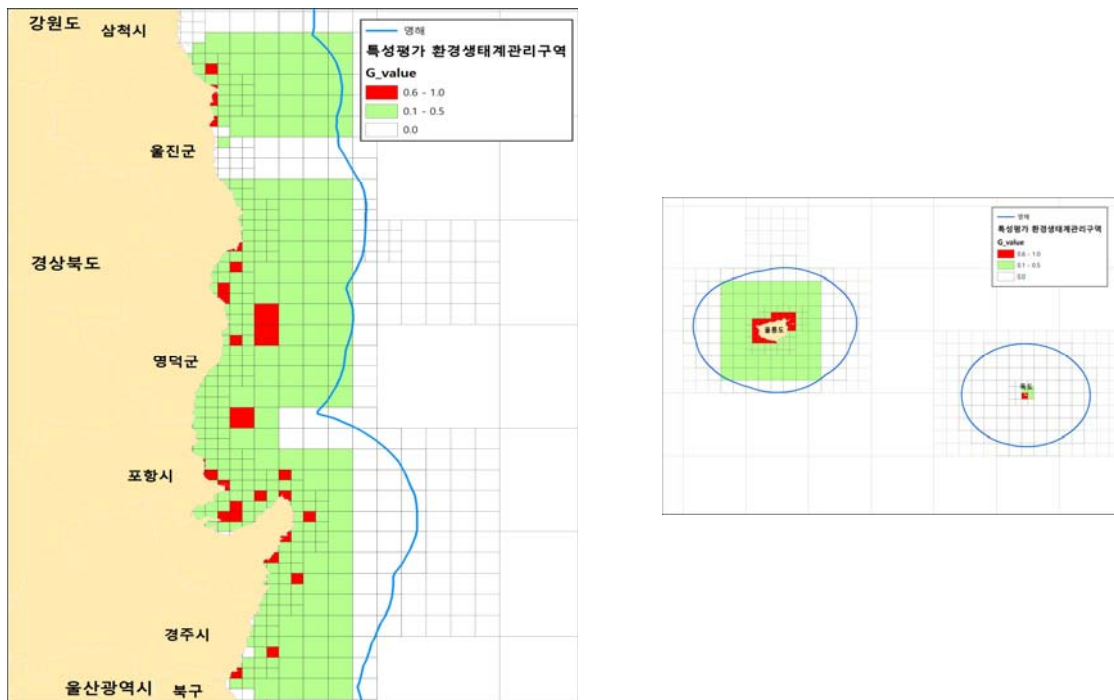
〈그림 3-9〉 경북 항만·항행구역 관련 특성평가 결과



□ 환경·생태계관리구역 특성평가 결과

- 환경·생태계관리구역 특성평가를 위한 데이터: 수중식물(잘피, 해조/해초류), 해양보호 생물 출현 정보, 해양생태도, 해양생물다양성지수, 연안·해양보호구역, 보호도서(특정 도서/절대보전 무인도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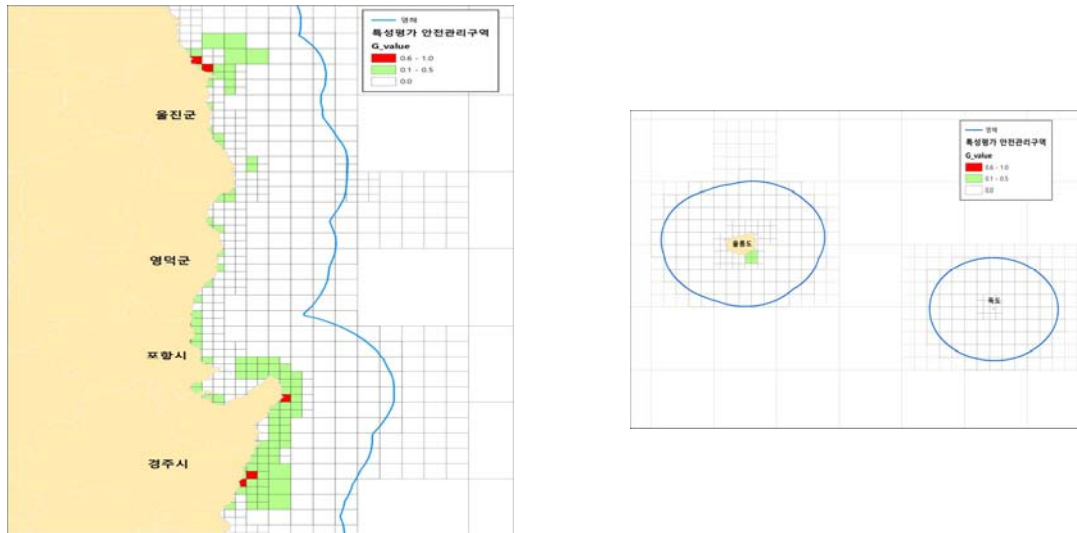
〈그림 3-10〉 경북 환경·생태계관리구역 관련 특성평가 결과



□ 안전관리구역 특성평가 결과

- 안전관리구역 특성평가를 위한 데이터: 대형선박 및 낚시활동상충 구역,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해양시설 주변 해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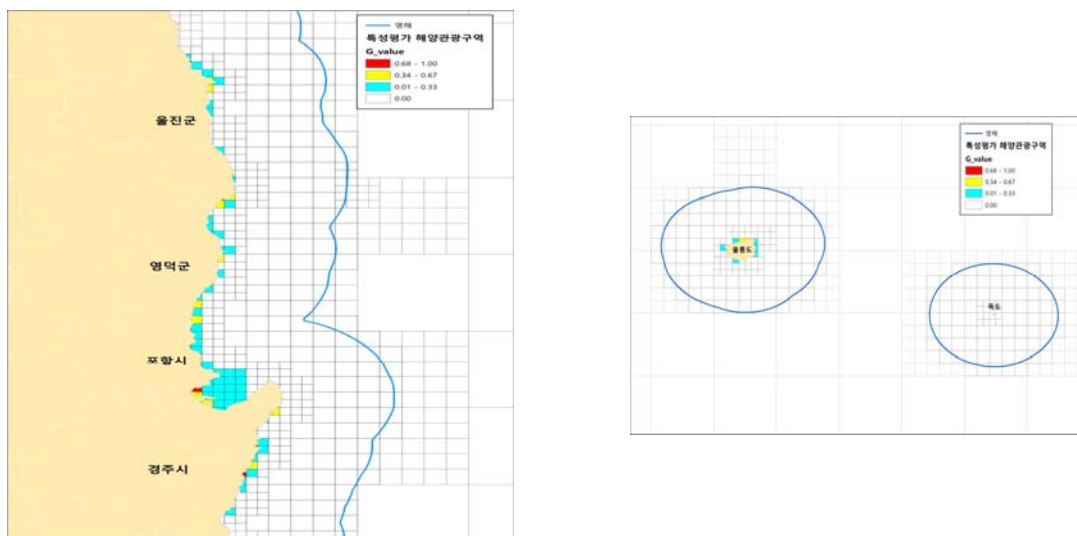
〈그림 3-11〉 경북 안전관리구역 관련 특성평가 결과



□ 해양관광구역 특성평가 결과

- 해양관광구역 특성평가를 위한 데이터: 해수욕장, 마리나항만 및 시설, 낚시포인트 (갯바위, 선상, 유어장), V-PASS 기반 낚시활동 분석 정보 등

〈그림 3-12〉 경북 해양관광구역 관련 특성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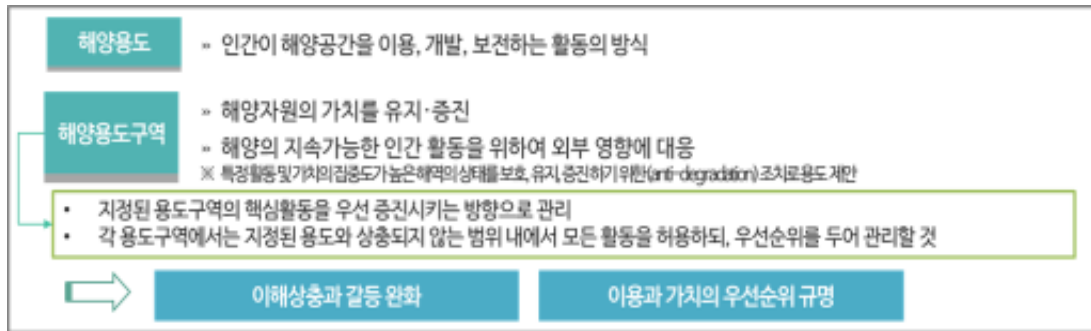


## 2. 해양용도구역 지정 기준 및 구획 방법

### □ 해양용도구역 개요

- (해양용도구역)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및 보전 활동을 합리적으로 배분·관리하기 위하여 결정하는 구역
  - 해양에서 지속가능한 인간 활동을 위해 외부 영향에 대응하고, 해양자원의 가치를 유지·증진하기 위한 구역
  - 해양의 인간 활동 간 이해상충·갈등을 완화하고, 이용과 가치의 우선순위를 규명

〈그림 3-13〉 해양용도구역 지정 목적



- (해양용도구역 구획·지정) 다양한 핵심가치가 존재하는 공간에 대해서 해양공간특성 분석, 상충 분석 및 비교(생태연결성, 정책수요 및 계획 등)를 통해 구획
  - 9개 해양용도구역은 중복되지 아니하게 지정되어야 하나, 3차원적이고 유동적인 해양의 특성 상 안전관리구역, 군사활동구역, 연구·교육보전구역은 중복되어 지정할 수 있음.

\*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2항

- (해양용도구역 관리) 지정된 개별 용도구역의 용도를 우선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관리
  - 해당 용도구역에서는 지정된 용도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해양 활동을 허용
  - 현실에서 개별 용도구역 내 이용, 개발, 보전의 활동이 다양하게 나타남으로 동일한 공간에 여러 활동이 나타나는 경우, 해당 용도구역 내의 관리의 우선 순위를 설정
  - 즉, 용도가 중첩되는 경우 자연환경, 사회경제적 여건 및 주변 해역의 이용·보전 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의 우선순위를 설정

\* 「해양공간계획법」제12조제2항

## □ 해양용도구역 지정 기준

- 해양용도구역은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 법제적 현황(기존 구역 및 권한 설정), 해양생태 특성 및 해양자원 분포, 현재 이용·활동 상태, 미래 이용 수요를 통해서 설정되어야 함.
  - 현재 가용한 데이터 및 과학적 분석을 통해 해양공간의 상태 및 여건을 확인 하는 것이 우선임. 이 목적은 생태적/경제적 지역의 분포와 그에 대한 인간의 이용 특성과 범위를 이해하는 것임.
- (해양공간특성평가)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는 해양용도구역 설정의 기초가 되는 정보임.
- (기존 구역 및 권한 설정) 현재 해양에서 일어나 이용·개발·보전 활동은 관련 개별 법률·제도에 따른 구역에서 이루어기 때문에 관련 설정 내용 검토
  - 기존 구역과 상호 호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 지정 혹은 고시된 구역을 고려
- (해양환경 및 생태계 특성) 지속가능한 해양의 혜택을 누리기 위한 근간이 되는 생물학적, 생태적 특성 파악이 중요
  - 해양생물·생태적 특성<sup>7)</sup>에 관한 정보가 부족할 경우 서식지와 관련 프로세스를 식별하기 위한 해양학적 및 물리적 특성(수심, 해류, 퇴적물 등)을 함께 고려 가능
- (해양자원 분포) 개발·이용 가능한 해양생물자원, 해양광물자원, 해양에너지, 해양관광 자원, 해양공간자원 등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하며, 이러한 자원이 위치한 공간과 분포를 확인
- (현재 이용·활동 상태) 어업, 해운 및 해상, 에너지 개발, 광물자원개발, 해양관광·레저, 군사 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의 시·공간적 분포, 이용 강도, 환경 영향 특성을 확인
- (미래 이용 수요 및 상황 예측) 용도구역 설정을 미래지향적 활동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적극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향후 미래의 여건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특정 개입 없이)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때 미래 예측, 대안적 공간을 추정하고, 이에 따른 영향을 고려한 공간 변화예측 시나리오 분석 기술 필요

7) CBD EBSA(Ecologically or Biologically Significant Area) 선정 기준 : 고유성 및 희귀성, 생물종 생애주기에 있어서 중요성, 멸종위기종·감소종·서식지 중요성, 취약성·민감성·낮은 회복력, 생물학적 생산성, 생물학적 다양성, 자연성

〈표 3-3〉 해양용도구역 설정 시 고려사항

고려사항	의미
해양공간 특성평가	해양공간 및 자원을 활용하는 특성을 파악하고, 해양을 이용·보전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핵심가치에 대해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용도구역 지정, 해양공간계획 수립 등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실시 * (예) 어업활동, 해양레저·관광, 에너지 개발 등
법제적 현황	기존 법체계와의 상호 호환성 및 해양공간계획법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존 구역 고려 * (예) 각종 연안·해양보호구역, 법 시행 당시 법적 권한 설정이 이루어진 구역(「해양공간계획법」부칙 제3~4조) 등
해양생태계 특성	생태적 가치와 특정 생태학적 특성 고려 * (예) 해조류·조류 등 서식지, 산란지, 하구, 생물다양성이 높은 해양공간(Delta+) 등
현재 이용·활동	현재 이용과 활동을 토대로 경제적 기회를 유지하면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계 설정 * (예) 어선 어업, 양식, 해사채취, 항행, 관광 등
미래 이용 수요	법률에 근거하여 확정하였거나 확정가능성이 높은 해양이용·개발계획, 해양공간에 대한 이용·개발의 용도와 위치 및 규모 등 구체적 계획 등이 마련된 사업, 잠재적 수요와 활동을 평가하여 미래 이용기회를 식별 * (예) 항만·어항 개발계획, 해양에너지 관련 입지, 관광·레저 관련계획 등

○ (지정기준) 해양용도구역 지정 기준은 각 용도별 특성에 따라 필수적 고려사항\*과 관련 법률에 따른 법적 지정기준\*\*에 의한 지정 또는 준하는 구역으로 구분

\* 해당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고려해야하는 요소, 현재 데이터가 미비하거나 미흡한 항목이더라도(수산자원 분포, 해양에너지 분포 등) 향후 지정 가능성을 고려하여 포함.

\*\*「법 부칙 경과조치에 따른 연안해역기능구(부칙 3조) 및 관련 개별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부칙 4조), 해당 용도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지정된 용도구역 등

- 現 수준에서의 과학적, 기술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사회적 과정 반영(지역협의회 등에서 참여와 협력을 통해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표 3-4〉 해양용도구역 지정기준

해양용도구역	해역 특성 및 이용현황	법정구역
어업활동 보호구역	가. 수산자원량 및 분포 나. 수산자원 산란지 및 서식지 다. 어업생산량 라. 면허어업구역 마. 인공어초	가. 「어촌·어항법」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 나. 「수산업법」에 따른 기르는 어업(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외해양식어업과 종묘생산어업)에 해당하는 어장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른

해양용도구역	해역 특성 및 이용현황	법정구역
	바. 조업 특성 및 분포	수산자원보호구역 라. 「수산자원관리법」제46조에 따른 보호수면 및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 마. 그 밖에 어업활동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골재·광물 자원 개발 구역	가. 골재채취허가 지역 및 광물자원개발 지역 나. 골재채취 및 광물자원개발로 인한 해저지형의 변화 및 해양생태계의 영향 다. 골재자원의 부존량 및 분포	가. 「골재채취법」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 및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 나. 「해저광물자원개발법」제14조에 따른 채취권 설정 구역 다. 「광업법」제3조제3호의 광업권(법률 제9982호 광업법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이전에 설정된 것을 말한다) 또는 「광업법」제3조 및 제15조에 따른 채굴권 설정 구역 라. 그 밖에 골재채취 및 광물자원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에너지 개발구역	가. 에너지의 탐사·개발 활동을 위해 설치한 시설의 위치 및 범위 나. 조류, 조력, 파력, 해상풍력 등 해양에너지의 자원량과 분포 다.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 중 해양공간의 발전사업 허가 현황 라. 전력망의 송·배전 등 개발이용의 현황 및 여건	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나.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다. 「신재생에너지법」 제27조제1호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라. 그 밖에 에너지 탐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해양관광 구역	가. 자연자원 : 경승지, 해수욕장 등 나. 문화자원 : 지역축제, 어촌체험마을, 유원지 등 다. 휴양·레저자원 : 캠핑장, 유람선터미널, 수상레저사업장, 바다 낚시공원 등	가.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와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나. 「어촌·어항법」제18조에 따른 어촌관광구역 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제27조에 따른 낚시어선업 영업구역 라. 「유선 및 도선사업법」제8조에 따른 유선 영업구역 마. 「수상레저안전법」제39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영업구역 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해수욕장 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마리나항만구역 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제20조의2에 따른 해양관광진흥지구 자. 그 밖에 해양관광 기능의 유지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환경·생태계 관리구역	가. 해양보호생물의 서식 현황 및 분포 나. 갯벌 하구, 해중경관 등 해양서식지 및 경관 다.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 라. 바닷새의 서식 현황 및 분포 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해양생태도	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 나.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지역, 습지개선지역 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에

해양용도구역	해역 특성 및 이용현황	법정구역
	바. 해양문화·역사적 가치가 높은 해양문화유산 및 해저유물 분포	다른 복원사업 지역 라. 「자연환경보전법」제12조 및 제23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마.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른 절대보전 무인도서 또는 준보전 무인도서의 그 주변해역 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갯벌관리구역 사. 「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제4조제1항에 따른 특정도서의 주변해역 아. 「해양수산발전기본법」제28조제2항에 따른 해중경관지구 자.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차.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학술적 가치가 높은 기념물(보호구역 포함)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카. 그 밖에 환경 및 생태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연구·교육보전구역	가. 해양과학기지 및 관측부이의 위치 및 분포 나.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해양기상관측 등 연구·교육활동 다. 영해기점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 등 영토 관리 현황 라. 해양보호생물의 이동경로, 기후변화 등에 관한 연구·교육활동 마. 국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해양자원 조사가 필요한 해역	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영해기점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 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해역 다. 그 밖에 연구 및 교육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항만·항행구역	가. 지정 항로의 위치 나. 어선·선박의 통항 특성 다. 선박 항행의 안전성	가. 「항만법」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구역 나. 「신항만건설촉진법」제5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 예정구역 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정박지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항로 라. 「해사안전법」제10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 제31조제1항에 따른 항로, 제68조제1항에 따른 통항 분리수역 마. 「해운법」제15조에 따른 보조항로 바. 「유선 및 도선사업법」제8조에 따른 도선 영업구역 사. 그 밖에 항만의 기능 유지 및 선박의 안전한 항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군사활동구역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설치·운영 현황 나. 해상사격 등 군사 훈련 활동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해군기지 및 항공작전기지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6호에 따른 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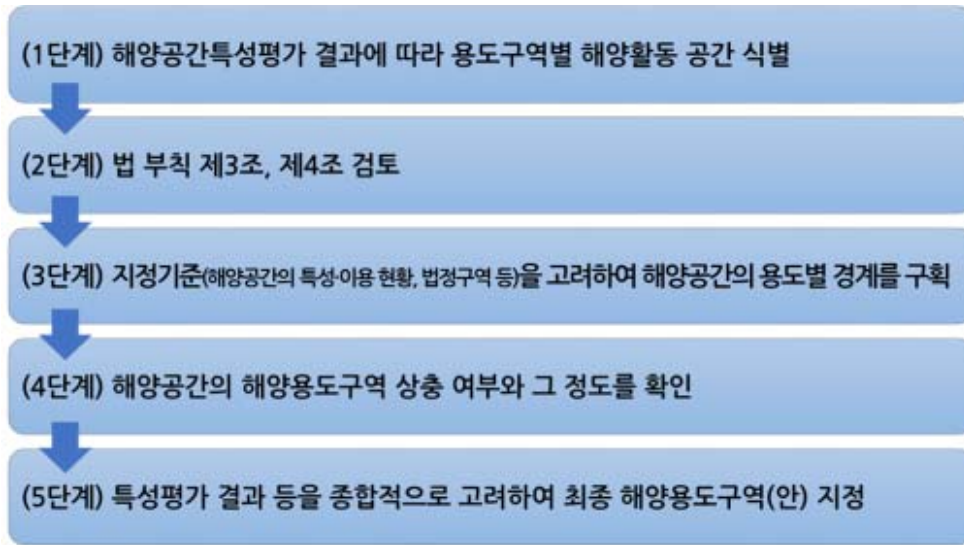
해양용도구역	해역 특성 및 이용현황	법정구역
		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구역 다. 그 밖에 군사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안전관리 구역	가. 과거 지진·폭풍·해일, 조위 상승, 너울성 파도 등으로 해수가 월류(越流)하여 침수, 시설물 파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나. 연안침식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바닷가 및 간석지 다. 항해 또는 정박 중 다른 선박·시설과 부딪히거나 사고 위험이 존재하는 해역 라. 조력 및 화력발전 등 에너지 관련 시설이 설치된 해역 및 그 주변 해역 마. 석유 및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의 비축·저장·공급 등을 위한 시설 및 최근 거리로 인접한 바닷가	가.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나. 「연안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연안침식관리구역 다. 「전원개발촉진법」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라. 「수상레저안전법」제25조에 따른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 마. 그 밖에 해양에 설치한 시설물의 보호 및 해양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자료 : 해양수산부, 2021, 「해양공간관리계획 및 관리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64호)

#### □ 해양용도구역 구획 및 지정

- 해양용도구역 지정은 구획과 상충·조정 과정을 통해 이루어짐
  - 해양용도구역의 구획은 해양공간의 특성 및 이용 현황, 법정구역(타 법률에 따라 지정된 해양공간) 등 해양용도구역의 지정기준을 고려하여 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이 되는 해양공간의 용도별 경계를 확인하는 것임
  - 해양용도구역의 지정은 해양용도구역을 구획한 이후 해양용도구역 상호 간의 양립 가능성 및 상충여부 등을 비교·분석하고, 조정 과정을 거쳐 구역을 정하는 것임.
-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음

〈그림 3-14〉 해양용도구역 지정 절차



- (1단계) 특성평가 결과에 따라 용도구역별 해양활동 공간 식별
- (2단계) 「해양공간계획법」 부칙 제3조, 제4조에 해당하는 구역을 우선 검토
- 법 시행 시점에 「연안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기 지정 구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나, 개별 법률에 따른 구역이 해제되거나 구역에서 활동 허가 기간이 지나면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른 해양공간특성평가를 토대로 해양용도구역 변경
- (3단계) 해양공간 특성 및 이용 현황, 법정구역(타 법률에 따라 기 지정된 해양공간) 등 해양용도구역의 지정기준을 고려해 대상 해양공간의 용도별 경계 확인
- (4단계) 해양공간의 해양용도구역 상충 여부와 그 정도를 확인<sup>8)</sup>
- 둘 이상의 용도구역에 해당되거나 해양활동이 중첩된 경우, 특성평가 결과값이 높은 용도를 다른 용도에 우선하여 정할 수 있음
- 다만, 각 특성평가 결과값이 동일하여 해양용도구역 선택이 곤란한 경우 주변 해양공간의 보전 및 이용·개발 현황, 해양 활동 지속가능성, 지역협의회 및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할 수 있음
- (5단계) 특성평가 결과와 대상 해양공간의 특성·현황 및 현안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해양용도구역(안) 지정

8) 「해양공간관리계획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26조(해양용도구역의 상충 및 조정)

〈표 3-5〉 「해양공간계획법」의 해양용도구역과 「연안관리법」의 연안해역기능구 비교

근거	해양용도구역	연안해역기능구
「해양공간계획법」 부칙 제3조 (연안해역기능구에 관한 경과조치)	어업활동보호구역	어항구, 어장구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광물자원구
	에너지개발구역	산업시설구
	해양관광구역	레저관광구, 해중문화시설구, 해수욕장구
	환경·생태계관리구역	해양수질관리구(시화호매립), 해양환경복원구, 수산생물자원 보호구(어업), 해양생태보호구, 경관보호구, 공원구, 해양문 화자원보존구, 재해관리구
	연구·교육보전구역	해양조사구
	항만·항행구역	항만구, 항로구
군사활동구역	군사시설구	

주 : 동 계획과 관련하여 경북연안의 해중문화시설구(없음), 해양수질관리구(시화호매립), 재해관리구(없음)는 없음.  
수산생물자원보호구는 수산자원 관리수면과 보호수면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반영하였음

〈표 3-6〉 「해양공간계획법」 시행 시 기존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의 경과조치

근거	해양용도구역	기존 법률에 따른 구역, 지역 등
「해양공간계획법」부칙 제4조 (해양용도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4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채굴권 설정 구역(「광업법」제9조의2제2호)</li> <li>골재채취 예정지(「골재채취법」제21조의2제1항)</li> <li>골재채취단지(「골재채취법」제34조제1항)</li> <li>채취권 설정 구역(「해저광물자원 개발법」제5조)</li> </ul>
	환경·생태계관리구역 (2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양보호구역(「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li> <li>습지보호지역(「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li> </ul>
	항만·항행구역 (7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항만구역(「항만법」제2조제4호)</li> <li>신항만건설예정지역(「신항만건설 촉진법」제5조제1항)</li> <li>정박지·항로(「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 조제7호, 제11호)</li> <li>교통안전특정해역·항로·통항분리수역(「해사안전법」제10조 제1항, 제31조제1항, 제68조제1항)</li> </ul>
	군사활동구역(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6호)</li> </ul>

#### □ 용도구역 조정의 기본방향

- 둘 이상의 용도구역에 해당되어 중첩되는 경우, 특성평가 결과, 법·제도적 기준(법률에 따른 규제 및 조장 사항 포함), 해양환경·생태 특성, 주변해역의 이용·개발 현황과

- 미래 보전·이용·개발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도를 선택
- 용도를 선택하기 곤란한 경우, 지역협의회, 전문가 자문, 해양생태계서비스\* 평가 결과 등을 활용
- \* 해양생태계서비스 평가 방법과 절차는 정부에서 R&D 사업으로 연구 중에 있음.
- 미지정 해역에 대해서는 추후 해당 해양공간에 보전, 이용, 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별도의 정밀 해양공간특성평가와 전문가 현장조사를 실시
  - 안전관리구역, 군사활동구역, 연구·교육보전구역은 타 용도구역과 중복되어 지정될 수 있음. 이 3개 용도구역은 타 용도구역과 중첩 시 조정이 필요 없음.
    - 안전관리구역의 지정 목적은 해양활동과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해양활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개별 해양활동·시설의 안전을 위한 것임으로 사고의 위험이 있거나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타 용도구역과 중복되어 지정할 수 있음
    - 군사활동구역은 국가의 안보, 군사시설·중요시설의 보호, 군사 훈련을 위하여 설정한 해역으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함. 타 용도구역과 중복되어 지정할 수 있음.
    - 연구·교육보전구역은 보전 가치와 생태적 가치가 높은 환경으로 시험, 관찰, 샘플링 등 연구를 진행하며 향후 해양교육 측면에서 보전이 필요한 구역을 말함. 주로 해양관측시설, 해양보호생물종의 이동경로 및 회유 경로, 산란지, 서식지 등이 이에 해당함
  - 9개 해양용도구역 중 3개 해양용도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중복 용도구역에 해당하는 공간의 조정 방향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3-7〉 항만·항행구역(안)과 중복하는 경우 조정 방향

항만·항행구역(안)					
중복 용도구역	중복 용도구역 특성		항만·항행구역 구획 기준		최종용도
	법·제적 기준	특성평가 결과	항로 등	항만구역 (항계)	
어업활동보호구역	수산자원관리수면, 보호수면, 면허어업(양식구역), 연안해역기능구, (어항구, 어장구)	공간특성평가 (3등급), 정밀어 획량분석정보	항로(일반항로, 통항 분리제도), 교통안전 특정해역, 정박지	무역항, 연안항	
중복	○		○		항만항행

항만·항행구역(안)					
중복 용도구역	중복 용도구역 특성		항만·항행구역 구획 기준		최종용도
	법·제적 기준	특성평가 결과	항로 등	항만구역 (항계)	
용도구역의 특성		○	○		항만항행
	○			○	항만항행*
		○		○	항만항행
환경·생태계관리 구역	해양보호구역, 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문화재관리 구역, 특정도서, 잘대보전도서 (무인도서), 연안해역기능구	공간특성평가3등급	항로(일반항로, 주요 항로, 통항분리제도), 교통안전특정해역, 정박지	무역항, 연안항	
중복 용도구역의 특성	○		○		항만항행
		○	○		항만항행
	○			○	환경생태
		○		○	항만항행
해양관광구역	해수욕장, 마니라항만 및 시설, 연안해역기능구 (레저관광구, 해중문화 시설구, 해수욕장구 등)	공간특성평가(3등 급), 낚시활동구역	항로(일반항로, 주요 항로, 통항분리제도), 교통안전특정해역, 정박지	무역항, 연안항	
중복 용도구역의 특성	○		○		항만항행
		○	○		항만항행
	○			○	해양관광
		○		○	항만항행
골재광물자원개발 구역	광업권, 골재채취예정지 등	공간특성평가 (부존량), 기 채취해역	항로(일반항로, 통항 분리제도), 교통안전 특정해역, 정박지	무역항, 연안항	
중복 용도구역의 특성	○		○		항만항행
		○	○		항만항행
	○			○	항만항행*
		○		○	항만항행
에너지개발구역	에너지 발전, 관련 시설 주변해역	공간특성평가	항로(일반항로, 통항 분리제도), 교통안전 특정해역, 정박지	무역항, 연안항	
중복 용도구역의 특성	○		○		항만항행
		○	○		항만항행
	○			○	에너지
		○		○	항만항행

\* 항만구역 내 광업권의 경우 관리구역으로 반영하였음

\* 항만구역 내 한정 면허어업구역의 경우 관리의 우선순위를 어업활동으로 설정하였으나, 한정면허기간 종료 후 현 용도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유지 혹은 변경 등에 관한 검토 필요

〈표 3-8〉 환경·생태계관리구역(안)과 중복하는 경우 조정 방향

환경·생태계관리구역(안)					
중복 용도구역	중복 용도구역 특성		환경·생태계 구획 기준		최종용도
	법·제적 기준	특성평가 결과	법·제적 기준	특성평가 결과	
어업활동보호구역	수산자원관리수면 보호수면 면허어업(양식구역), 연안 해역기능구(어항구, 어장구)	공간특성평가 (3등급), 정밀어획량 분석정보	해양보호구역, 습지보호 지역, 문화재관리구역, 특정도서, 절대보전도서 (무인도), 연안해역기능구	특성평가 3등급	
중복 용도구역의 특성	○		○		어업활동
		○	○		환경생태
	○			○	어업활동
		○		○	환경생태
해양관광구역	해수욕장, 마니라항만 및 시설, 연안해역기능구 (레저관광구, 해중문화 시설구, 해수욕장구 등)	공간특성평가 (3등급), 낚시활동 구역	해양보호구역, 습지보호 지역, 문화재관리구역, 특정도서, 절대보전도서 (무인도), 연안해역기능구	특성평가 3등급	
중복 용도구역의 특성	○		○		해양관광
		○	○		환경생태
	○			○	해양관광
		○		○	환경생태
골재광물자원개발 구역	광업권 골재채취예정지 등	공간특성평가 (부존량), 기 채취해역	해양보호구역, 습지보호 지역, 문화재관리구역, 특정도서, 절대보전도서 (무인도), 연안해역기능구	특성평가 3등급	
중복 용도구역의 특성	○		○		골재광물
		○	○		환경생태
	○			○	골재광물
		○		○	특성평가결과 비교·검토
에너지개발구역	에너지 발전, 관련 시설 주변해역	공간특성평가	해양보호구역, 습지보호 지역, 문화재관리구역, 특정도서, 절대보전도서 (무인도), 연안해역기능구	공간특성평가 3등급	
중복 용도구역의 특성	○		○		환경생태
		○	○		환경생태
	○			○	특성평가결과 비교·검토
		○		○	환경생태 (특성평가결 과비교·검토)

〈표 3-9〉 어업활동보호구역(안)과 중복하는 경우 조정 방향

어업활동보호구역(안)					
중복 용도구역	중복 용도구역 특성		어업활동 구획 기준		최종용도
	법·제적 기준	특성평가 결과	법·제적 기준	특성평가 결과	
해양관광구역	해수욕장, 마니라항만 및 시설, 연안해역기능구(레저관광구, 해중문화시설구, 해수욕장구 등) 등	공간특성평가(3등급), 낚시활동구역	면허어업(양식구역), 연안해역기능구, (어항구, 어장구), 수산자원관리수면, 보호수면	공간특성평가(3등급), 정밀어획량분석정보	
중복 용도구역의 특성	○		○		어업활동
		○	○		어업활동
	○			○	해양관광
		○		○	어업활동
골재광물자원개발 구역	광업권, 골재채취예정지 등	공간특성평가(부존량), 기 채취해역	수산자원관리수면, 보호수면, 면허어업(양식구역), 연안해역기능구, (어항구, 어장구)	공간특성평가(3등급), 정밀어획량분석정보	
중복 용도구역의 특성	○		○		어업활동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의 경우만 해당)
		○	○		어업활동
	○			○	골재광물
		○		○	특성평가결과 비교·검토
에너지개발구역	에너지 발전, 관련 시설 주변해역	공간특성평가	수산자원관리수면, 보호수면, 면허어업(양식구역), 연안해역기능구, (어항구, 어장구)	공간특성평가(3등급)	
중복 용도구역의 특성	○		○		에너지
		○	○		어업활동
	○			○	특성평가결과 비교·검토
		○		○	어업활동 (특성평가결과 비교·검토)

〈표 3-10〉 해양관광구역(안)과 중복하는 경우 조정 방향

해양관광구역(안)					
중복 용도구역	중복 용도구역 특성		해양관광 기획 기준		최종용도
	법·제적 기준	특성평가 결과	법·제적 기준	특성평가 결과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광업권, 골재채취 예정지 등	공간특성평가 (부존량), 기채취해역	해수욕장, 마니라항만 및 시설, 연안해역기능구(레저관광구, 해중문화시설구, 해수욕장구 등)	공간특성평가 (3등급), 낚시활동구역	
중복 용도구역의 특성	○		○		골재광물
		○	○		해양관광
	○			○	골재광물
		○		○	특성평가결과 비교·검토
에너지개발구역	에너지 발전, 관련 시설 주변해역	특성평가 결과	해수욕장, 마니라항만 및 시설, 연안해역기능구(레저관광구, 해중문화시설구, 해수욕장구 등)	공간특성평가 (3등급), 낚시활동구역	
중복 용도구역의 특성	○		○		에너지
		○	○		해양관광
	○	○		○	특성평가결과 비교·검토
		○		○	특성평가결과 비교·검토

〈표 3-11〉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안)과 중복하는 경우 조정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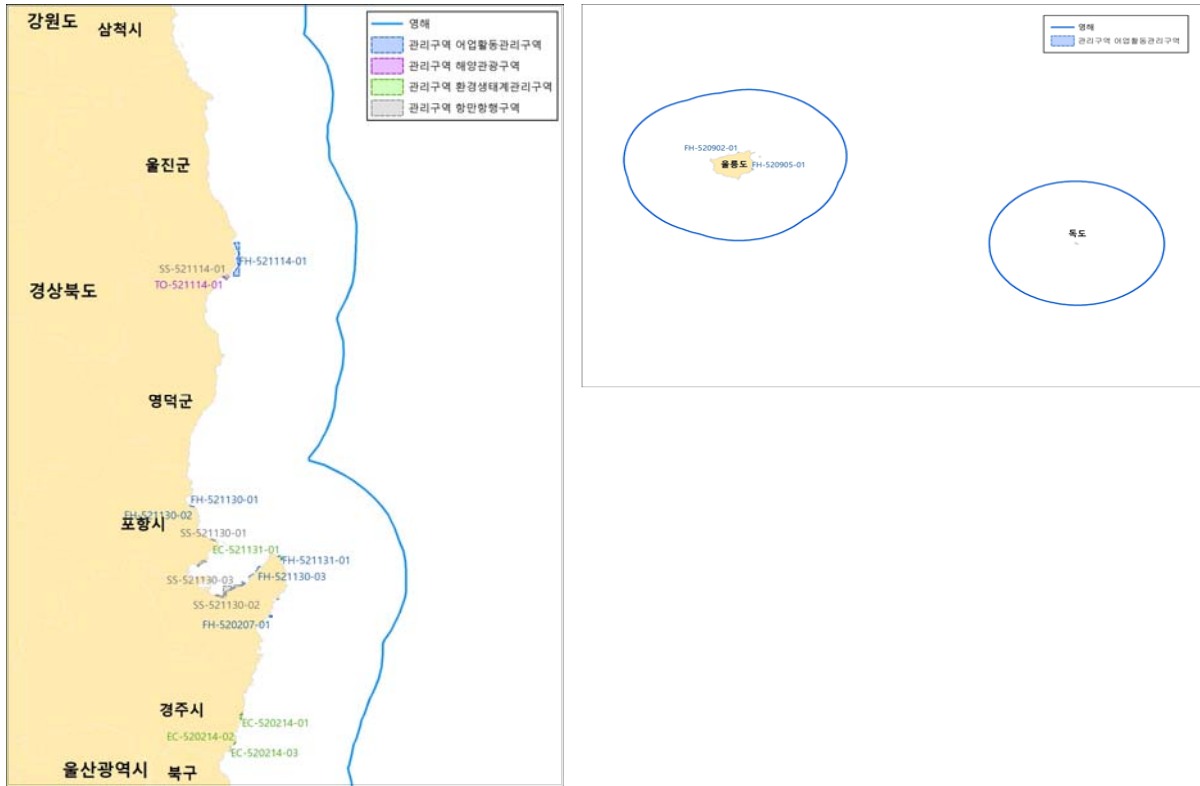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안)					
중복 용도구역	중복 용도구역 특성		골재·광물 기획 기준		최종용도
	법·제적 기준	특성평가 결과	법·제적 기준	특성평가 결과	
에너지개발구역	에너지 발전, 관련 시설 주변 해역	해양공간 특성평가	광업권, 골재채취예정지 등	공간특성평가 (부존량), 기채취해역	
중복 용도구역의 특성	○		○		에너지
		○	○		골재광물
	○			○	특성평가결과 비교·검토
		○		○	특성평가결과 비교·검토

## □ 용도구역 관리

- 용도구역의 관리에 관한 내용은 개별 용도구역에서 시·공간적으로 적절한 활동을 명시하거나 용도구역에 적합한 활동에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조정·관리할 수 있는 방안 및 조치 사항 등임
  - 용도구역 설정 이후에는 용도를 우선 증진시키는 방안 및 조치 사항
  - 해양용도구역 내 인간 활동의 수용 가능성 수준과 관리 조치 등
  - 해양공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활동(해양시설<sup>9)</sup> 설치 및 고정적 활동)과 그 외 활동은 용도구역별 특성에 따라 관리 방식을 달리 적용
  - 각 용도구역에서는 지정된 용도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해양 활동을 허용하되, 용도 중첩 시 관리의 우선순위를 두어 관리: 해당공간은 별도의 관리코드를 부여하여 관리
  - 관리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는 주변 해역의 이용 및 보전 현황, 해양공간 이용 밀집도, 해양공간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함
- \* 「해양공간관리계획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28조(해양용도구역 관리의 우선순위)
- 용도 중첩 시 중첩공간 도출 및 관리의 우선순위 설정 방법은 다음과 같음
  - (1단계 : 중첩공간 확인) 용도구역 자료 특성별 분류 구분, 용도구역별 1:1 중첩 분석을 통한 중첩 공간
  - (2단계: 중첩 공간 중 관리가 필요한 공간 선정) 관리구역 도출
    - ① 공간의 지역성: 해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관리대상구역의 최종 결과 도출
    - ② 관리의 실효성: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코드 부여
    - ③ 정보의 신뢰성: 데이터 해상도 및 기술력

9) 「해사안전법」제2조 15. “해양시설”이란 자원의 탐사·개발, 해양과학조사, 선박의 계류·수리·하역, 해상주거·관광·레저 등의 목적으로 해저에 고착된 교량·터널·케이블·인공섬·시설물이거나 해상부유 구조물로서 선박이 아닌 것을 말함

〈그림 3-15〉 용도구역별 관리구역 도출 결과



- (3단계: 중첩 공간의 관리의 우선순위 설정)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관리의 우선순위 설정

- ① 주변 해역의 이용 및 보전 현황
- ② 공간 이용의 밀집도: 특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우세한 용도를 우선하여 관리
- ③ 공간관리의 효율성: 용도구역 중 보전과 이용의 공간특성평가 값이 동일한 수준일 경우 보전의 용도를 우선하여 관리

\* 예) 환경·생태계관리구역과 어업활동보호구역의 공간특성평가 값이 같을 경우 환경·생태계관리구역이 우선

### 3. 해양용도구역 지정 및 관리

#### □ 해양용도구역 지정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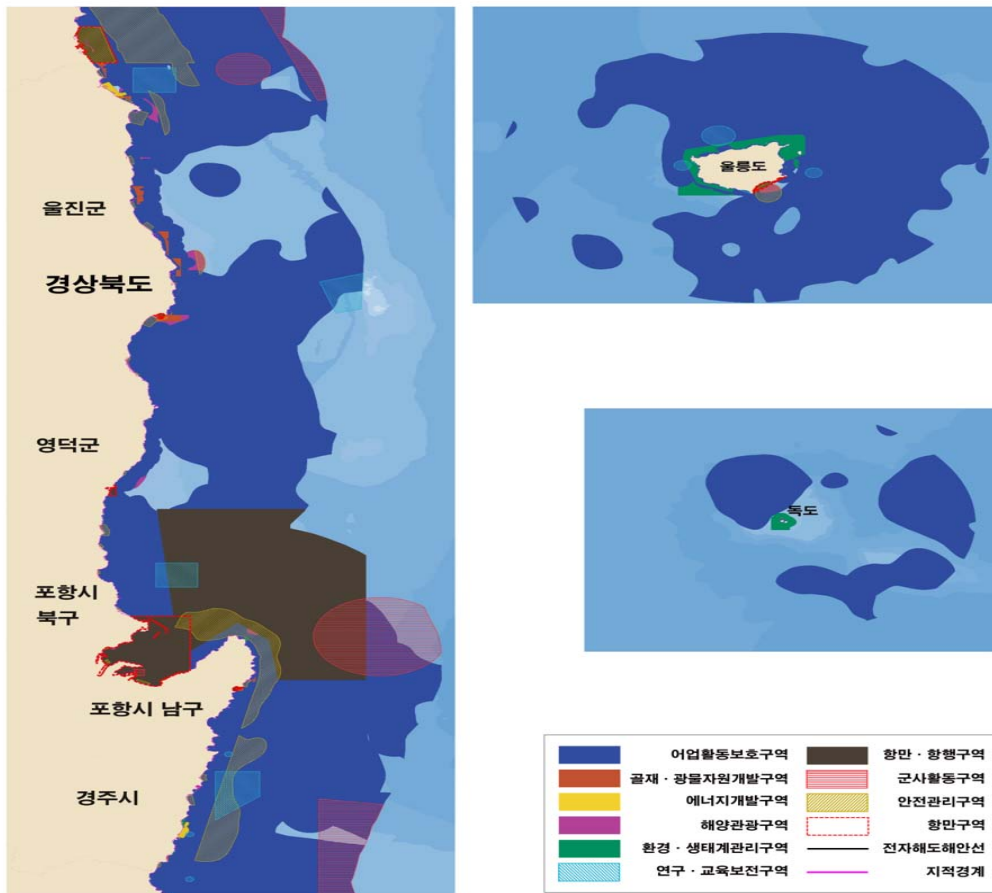
○ 대상 해양공간의 면적은 총 8,410.92km<sup>2</sup> (영해만 해당)

\*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항만구역 등에 대한 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립·변경하고, 그 외 해양공간(영해 내)은 시·도지사가 수립·변경 (「해양공간계획법」 제7조)

○ 어업활동보호구역,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환경·생태계관리구역, 연구·교육보전구역, 항만·항행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 에너지개발구역 등 9개 용도구역으로 구분

\* 유보해역 : 특성평가를 수행한 지역이라도 특정 해양이용 행위의 활동 밀도가 낮거나, 해양환경, 생태, 사회, 경제 데이터의 양이 적어 해양용도구역 설정의 실익이 없는 공간

경북		면적(km <sup>2</sup> )	비중(%)	
합계		8,410.92	100.00	
해양 용도 구역	어업활동보호구역	4,869.00	57.89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14.43	0.17	
	에너지개발구역	5.61	0.07	
	해양관광구역	23.66	0.28	
	환경·생태계관리구역	53.34	0.63	
	항만·항행구역	770.82	9.16	
	용도 중첩 가능	연구·교육보전구역	141.06	1.68
		군사활동구역	345.84	4.11
		안전관리구역	235.61	2.80
	(중복구역)		(639.92)	(7.61)
소계		5,819.45	69.19	
유보해역		2,591.47	30.81	



## 1) 어업활동보호구역

□ (정의) 면허어업, 허가어업 등 어업활동을 보호·육성하고 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 마을어업, 양식업 등을 위한 어장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역
- 어업생산량이 높거나, 조업 활동이 활발하여 어업활동의 관리가 필요한 해역
- 수산자원 조성, 수산생물의 산란지 혹은 서식지의 보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해역
- 어항 건설과 어항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해역

### (1) 용도구역 관리목표

- 수산자원 조성 및 산란지·서식지 보호, 수산자원 고갈 유발어법 금지 등을 통해 어업생산량 및 지역 경제적 이익 증진
  - 수산자원의 과학적 관리방법을 적용하여 수산자원 조성 및 산란지·서식지 보호에 따른 생산량 지속으로 지역 어가소득 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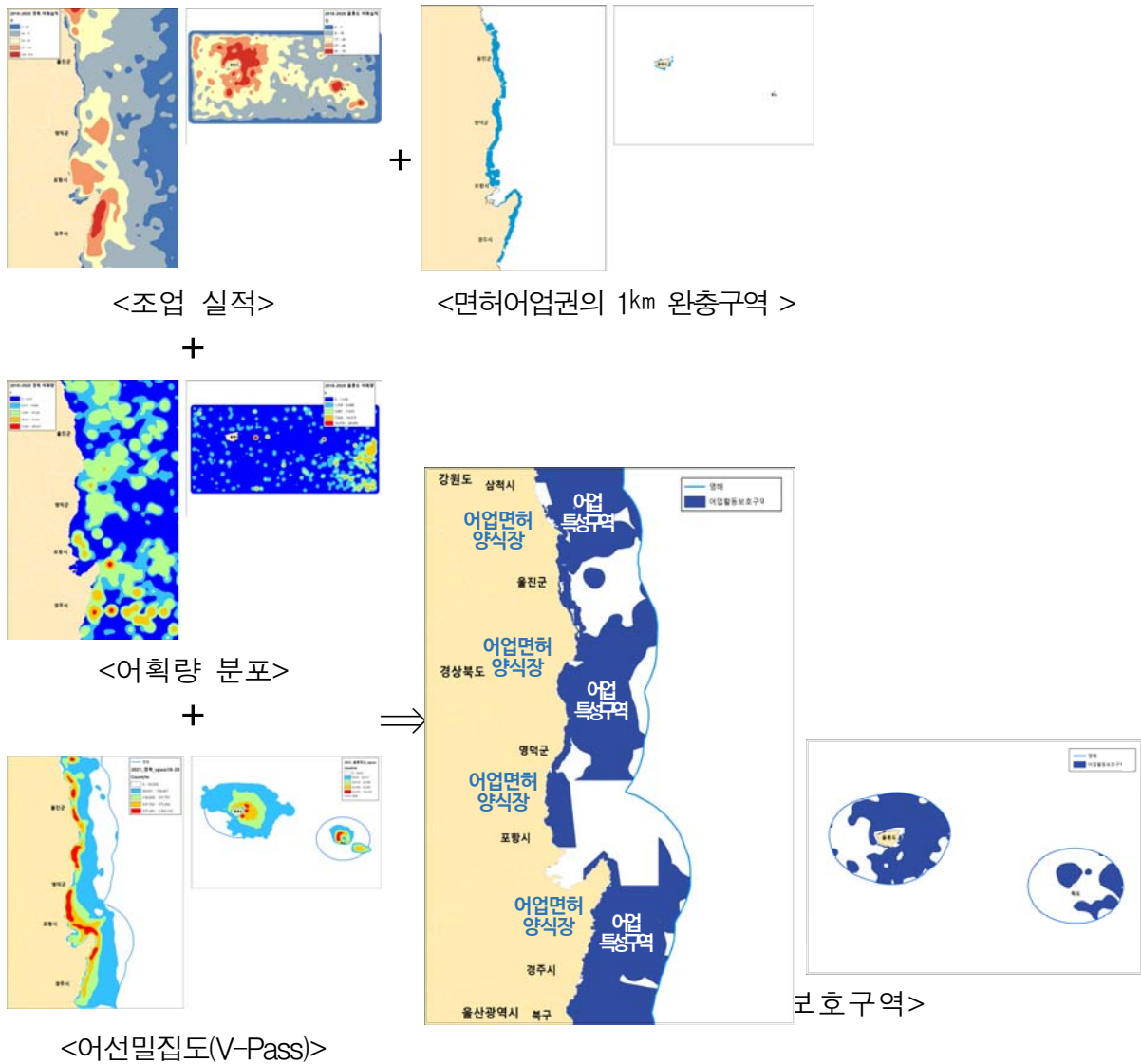
### (2) 용도구역 지정 및 상충 조정

- (지정 방법) 법정 보호구역, 조업위치 기반 연근해 어획량, 어업 밀집도(V-PASS), 마을어장 및 양식장(면허어업), 어항 등을 고려하여 설정

\* 잡는 어업 활동 공간은 조업 위치에 기반한 어획량 분포를 통해서 확인하고, 기르는 어업 활동 공간은 양식 면허가 발급된 공간으로 확인

- 특성평가 결과 3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격자를 우선적으로 포함
  - 잡는 어업 활동 공간은 조업 위치에 기반한 어획량 분포와 어선 밀집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고, 기르는 어업 활동 공간은 면허어업권이 분포한 공간으로 확인
  - 마을어업 및 양식업 보호를 위해 면허시설 주변 해역 1km 버퍼를 포함하여 설정
- (상충 조정) 어업활동이 활발한 공간 내 해양관광 활동(해수욕장, 낚시활동 등) 및 환경·생태 특성(해양생물다양성 등), 골재광물 등과 중첩하는 경우 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의 우선 순위 부여

\* 장길리 낚시공원, 울릉도 천부해중전망대, 이거리돛전망대, 월포해수욕장, 호미반도 해안 둘레길, 채굴권(규사) 등이 존재함



### (3) 공간 관리 방안

#### ① 권장 해양 이용·활동

□ 수산자원 산란·서식 환경 보호 및 복원과 수산업 성장과 발전을 위한 활동 권장

- 다양한 식량의 공급원으로 역할 뿐만 대중성 어종은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창출
  - 동 구역 내 개발과 이용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수산 활동을 지원
- 구역의 관리 목표와 상충·경합이 발생하는 활동(해저광물, 광물 및 골재, 해양에너지 개발 등)은 제한\*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활동의 경우 최소화 혹은 영향 완화

\* 「해양용도구역관리지침」 제5조제3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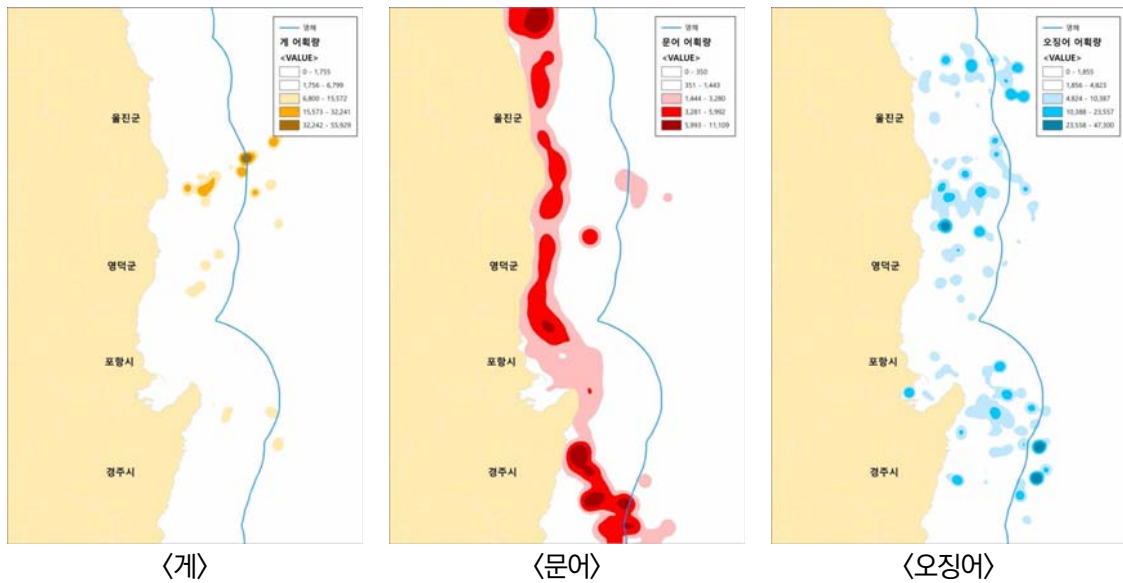
- 수산자원 서식·산란지 등의 압력이나 위협 활동(채취·채굴, 공작물 설치, 형질 변경 등) 제한
- 주요 지형·서식지를 훼손하지 않는 연구·교육, 레저·관광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 등 양립 가능한 경우 허용하고, 지역주민이 접근할 수 있는 시설 설치 허용
- 인공어초, 바다목장 등 수산자원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설치 허용 등

② 관리 방안(해양공간의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사항)

□ 동 구역 대중성 어종의 지속가능한 어업활동 모니터링 및 위협 요인 분석

- 산란 및 서식 환경 등 수산생물의 생애주기별, 어종별 공간 분포 조사
  - \* 게, 문어, 오징어 등

〈그림 3-16〉 경북 주변해역 어종별 공간 분포 현황



주 : 수협중앙회 어업정보통신국의 지난 5년간('20~'16) 연근해조업실적 데이터로 분석

□ 어업활동보호구역 내 수산자원 조성 사업 추진

- 바다목장(인공어초 시설, 수산종자 방류 등), 바다숲 조성 사업, 수산자원관리수면 관리
  - 인공어초 시설 주변 해역 낚시활동 모니터링 및 공간관리 수단 마련
- 수산자원 조성 효과 사후 모니터링 수행과 정보 제공

□ 어업활동과 상충하는 이용행위 규명 및 문제 해결을 위한 갈등관리 프로세스 진행

(4) 용도구역 관리의 우선순위

- 어업활동보호구역 내 마리나 시설 설치 계획, 해수욕장 시설을 증설하거나 보완하여 관광단지 조성, 어항을 정비하여 관광자원화(어촌뉴딜 등) 하려는 계획이 있는 경우 관리의 우선순위 부여
- 둘 이상의 용도가 중첩되는 어업활동보호구역에 대해 관리코드를 부여하여 관리 우선순위 설정 및 그 사유를 기재

〈그림 3-17〉 어업활동보호구역 내 관리구역



〈표 3-12〉 어업활동보호구역 관리구역 해양공간관리 사항

구분		면적 (km <sup>2</sup> )	중첩 용도	관리의 우선순위	상세 설명
구역	관리코드				
어업활동보호구역	FH-521114-01	4.00	골재광물 (채굴권)	① 어업활동 ② 골재광물	<input type="checkbox"/> 수산자원관리수면과 면허어장이 존재하여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채굴권(규사)이 설정된 광구 존재
	FH-520207-01	0.18	해양관광 (레저관광구)	① 어업활동 ② 해양관광	<input type="checkbox"/> 면허어장이 존재하여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레저관광구(장길리 낚시공원)가 존재
	FH-520902-01	0.01	해양관광 (레저관광구)	① 어업활동 ② 해양관광	<input type="checkbox"/> 면허어장이 존재하여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레저관광구(울릉도 천부해중전망대)가 존재
	FH-520905-01	0.11	해양관광 (레저관광구)	① 어업활동 ② 해양관광	<input type="checkbox"/> 면허어장이 존재하여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레저관광구(행남등대 스카이 힐링로드)가 존재
	FH-521130-01	0.05	해양관광 (레저관광구)	① 어업활동 ② 해양관광	<input type="checkbox"/> 면허어장이 존재하여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레저관광구(이가리뒀전망대)가 존재

구 분		면적 (km <sup>2</sup> )	중첩 용도	관리의 우선순위	상세 설명
구역	관리코드				
	FH-521130-02	0.11	해양관광 (해수욕장구)	① 어업활동 ② 해양관광	<input type="checkbox"/> 어항(이가리항)이 존재하여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해수욕장구(월포해수욕장)가 존재
	FH-521130-03	0.54	해양관광 (레저관광구) 항만항행 (무역항)	① 어업활동 ② 해양관광 ③ 항만항행	<input type="checkbox"/> 면허어장이 존재하여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레저관광구(이가리돛전망대)가 존재 <input type="checkbox"/> 무역항(포항항)내측 수역
	FH-521131-01	0.09	해양관광 (레저관광구)	① 어업활동 ② 해양관광	<input type="checkbox"/> 면허어장과 어항(호미곶항)이 존재하여 어업활동 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레저관광구(호미반도 해안 돌레길)가 존재

## 2)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정의) 바다 골재 및 해저 광물자원의 효율적·안정적 공급을 위한 구역

### (1) 용도구역 관리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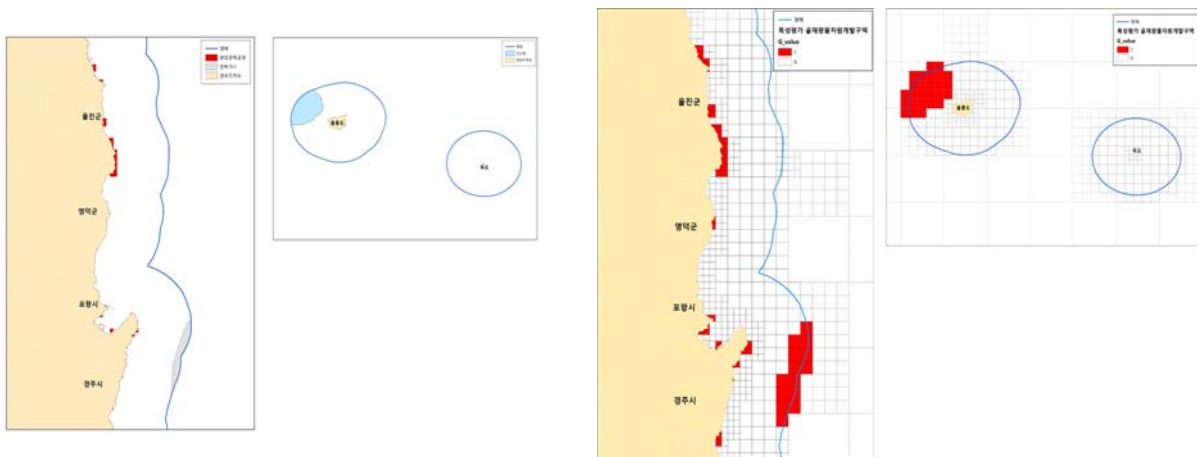
바닷모래 및 해저광물 채취와 어업활동 간 갈등 완화

### (2) 용도구역 지정

(지정 방법) 골재 및 광물자원 부존량, 광업권 설정 현황 등을 기준으로 설정

○ 채굴권 설정 해역을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으로 지정

\* 광업권 설정된 광구가 해안에 있거나 인접한 경우는 총 31건 : 광업권 1건, 채굴권 29건, 탐사권 1건임.



<골재 채취 및 자원부존 현황>

<특성평가 결과>

〈그림 3-18〉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 (3) 공간 관리 방안

#### ① 권장 해양 이용·활동

- 골재·광물자원 탐사 및 채굴시 해양생태계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 채취활동 이외 시간을 달리하여 공존 가능한 해양이용 행위(어업활동, 항행활동 등)는 허용
  - 광업권 설정 구역의 경우, 광업권 설정기간 만료 시\* 용도구역 유지·변경 검토 후 조치
    - \*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제14조(핵심활동 종료에 따른 해양용도구역의 관리)

#### ② 관리 방안(해양공간의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사항)

- 채굴권 및 광업권 설정 구역의 경우 채취기간과 광업권 설정기간 만료 시 골재·광물자원개발 구역 유지·변경 검토 후 조치
  - 채취 허가 해역에서 불법채취 행위 단속 방안과 동시에 친환경적 채취 활동 유도
- 광업권이 설정된 해역의 모래를 준설하고 활용함에 있어 광업권 보유 업체와 갈등 사전 관리 필요

- 채굴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타 활동의 영향 최소화 및 저감대책의 이행 여부 검토

### 3) 해양관광구역

□ (정의) 해양관광 기능의 유지 및 개발이 필요한 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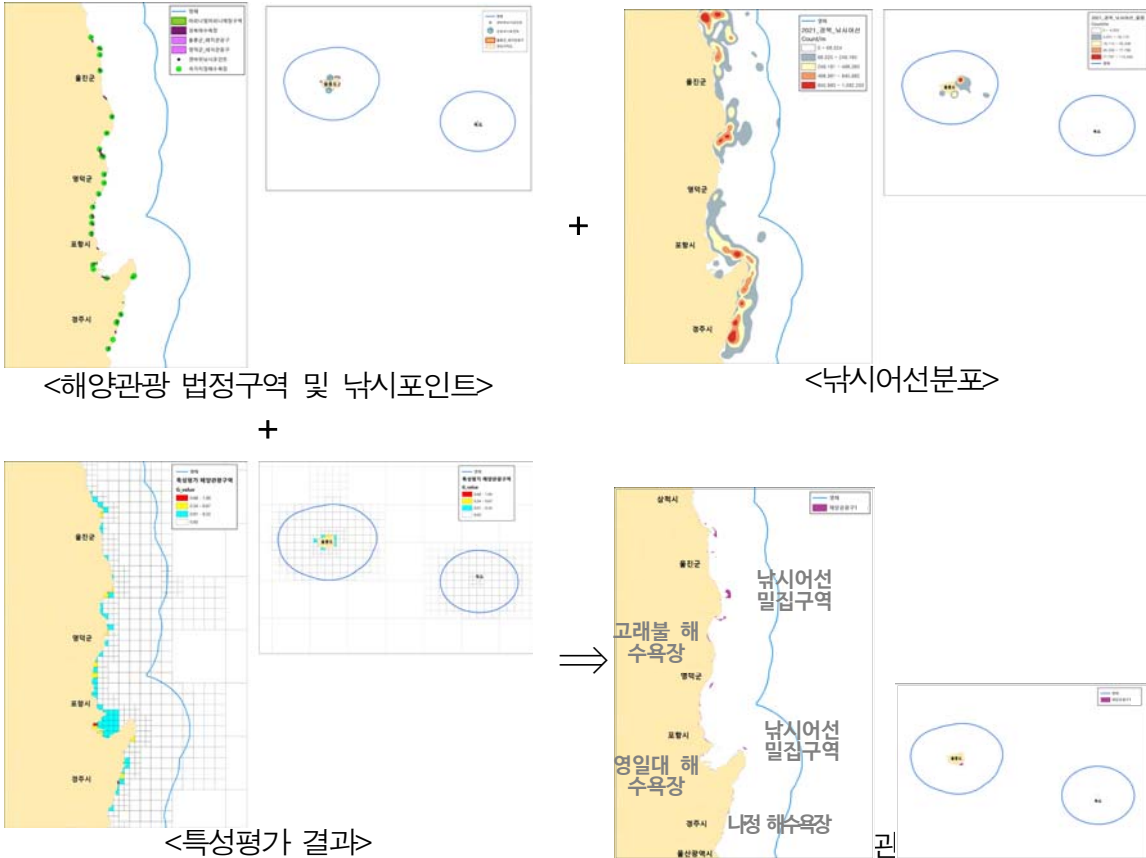
#### (1) 용도구역 관리목표

- 해양레저, 해양친수, 마리나 등 다양한 해양관광·레저 수요 충족 및 핵심 공간의 해양관광 활동 증진

#### (2) 용도구역 지정 및 상충 조정

- (지정 방법) 해수욕장, 마리나(예정구역\*) 시설 및 항만, 연안관리지역계획의 레저관광구, 해수욕장구, 낚시(갯바위, 선상) 활동 분포\* 등을 고려하여 설정

- \* 마리나 예정구역은 해양공간특성평가에 반영하였으나, 실제 용도구역 설정 시 미반영
- \* 속도 알고리즘(2knot 이하)을 통한 낚시활동 공간 추출



- (상충 조정) 연안항 등 항만구역 내 마리나 시설 등 관련 법정구역이 존재하는 경우 해양관광 구역으로 지정

### (3) 공간 관리 방안

#### ① 권장 해양 이용·활동

- 해양생태·환경 자원을 활용한 해양 관광·레저활동 및 어업의 잠재적 가치 창출 활동
  - 해양관광과 해양레저 활동에 필요한 행위 및 개발 허용
    - 여가활동을 직접 즐길 수 있는 마리나 및 수상레저 시설을 비롯하여, 연안 및 해양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시설 설치 허용
      - \* 해양과 바닷가 낚시 활동을 위한 시설, 레저보트 등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레저 활동과 시설, 어촌 체험과 관광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 유람선·잠수함·크루즈 등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 생태관광에 적합한 시설물, 해수욕장 관리 운영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
  -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최적 투자 및 개발 공간 확보, 해양관광활동 공간분석(빅데이터 분석)과 정보 인프라 구축
- 해양관광·레저 활동과 시설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혹은 완화
  - 이와 동시에 타 이용활동이 해양관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

#### ② 관리 방안(해양공간의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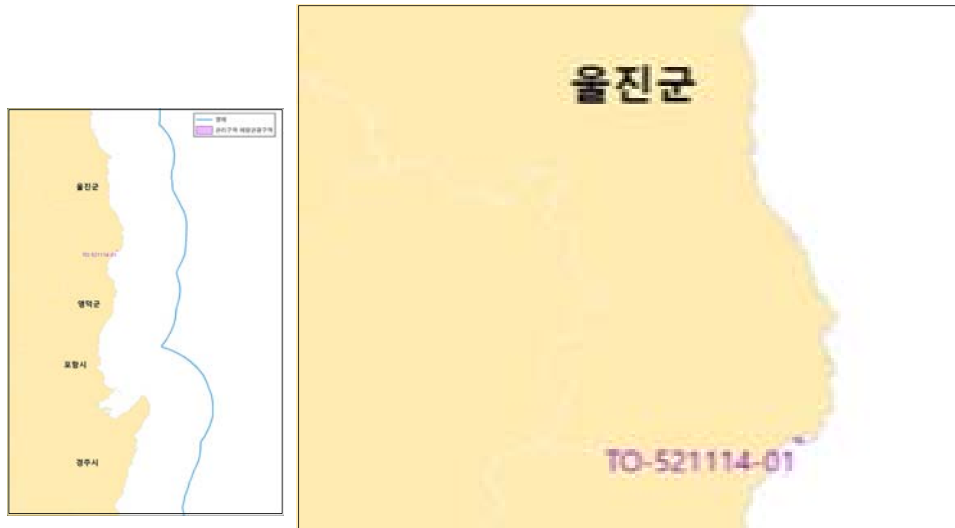
- 해양생태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 활성화와 잠재적 가치 창출
- 해양이용 수요 충족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양관광·레저 전략적 중심지 조성
- 해양관광과 타 해양활동 간 상호작용 점검
  - 해양관광의 잠재적 영향 분석 및 관리
  - 동시에 해양관광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인위적 요인 및 상호 작용 검토
  - 개발 이후 해양생태계 및 환경 변화 모니터링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
  - 마리나항만 개발 시 선박, 요트 등의 정박을 위한 수심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준설 시 준설토사 처리 대책 필요
- 동 구역에서 해양 이용·개발 시 해양관광과 레저활동에 미치는 영향 점검
  - 해양이용·개발을 허가하는 지자체 혹은 관련 기관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

- 겨울철 이동성 조류 및 해양환경·생태계 미칠 영향
  - 소음 또는 빛의 교란 등으로 연안 어메니티에 대한 영향
  - 레저 보트, 유람선, 낚시 어선 노선의 영향
- 허가 기관은 해양관광과 레저 활동 관련 이해관계자와 협의 결과, 합의된 조치를 필요시 확인

(4) 용도구역 관리의 우선순위

- 해양관광구역 내 채굴권 및 항만구역이 설정된 공간은 관리코드 부여

〈그림 3-19〉 해양관광구역 내 관리구역



〈표 3-13〉 해양관광관리구역 해양공간관리 사항

구 분		면적 (km <sup>2</sup> )	중첩 용도	관리의 우선순위	상세 설명
구역	관리코드				
해양관광구역	TO-521114-01	0.18	골재광물 (채굴권) 항만항행 (연안항)	① 해양관광 ② 골재광물 ③ 항만항행	<input type="checkbox"/> 후포 마리나항만이 존재하여 해양관광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채굴권(규사)이 설정된 광구 위치 <input type="checkbox"/> 연안항(후포항)이 위치하고 있음

4) 환경·생태계관리구역

□ (정의) 해양환경과 생태계 및 경관의 보전과 관리가 필요한 구역

(1) 용도구역 관리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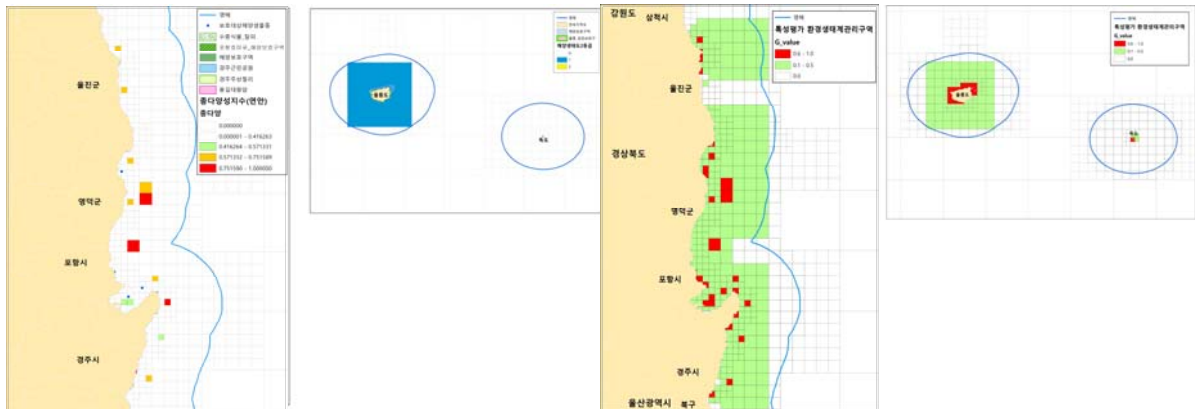
□ 해양환경·생태계의 건강성 및 생물다양성의 유지와 보전

(2) 용도구역 지정 및 상층 조정

□ (지정 방법) 특성평가 결과 3등급 이상, 독도, 연안·해양보호구역(해양보호구역, 근린공원 등)과 문화재보호구역(문무대왕암), 해양생물다양성지수 등을 고려하여 설정

\* 수중식물(잘피)의 경우, 특성평가시에 반영하였으며 용도구역으로 직접 반영하지 않음

□ (상층 조정) 환경·생태계관리구역 내 어업활동(면허어장), 채굴권(고령도)이 활발한 공간은 관리 구역으로 지정



〈기 지정된 보호구역 및 해양생물다양성 지수 등〉

〈특성평가 결과〉

〈그림 3-20〉 환경·생태관리구역



### (3) 공간 관리 방안

#### ① 권장 해양 이용·활동

-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해양생태계 서비스(자원공급, 기후조절, 관광·문화, 생물다양성 유지 등)를 유지·증진하기 위한 활동 권장
  - 용도구역의 관리 목표와 상충·경합이 발생할 수 있는 계획과 활동은 제한되며, 불가피한 활동의 경우 최소화 혹은 영향 완화조치 제시 필요

#### ② 관리 방안(해양공간의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사항)

- 해양생태환경의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 저서동물, 해조류, 해초류(갈피) 모니터링
  - 특히 블루카본과 관련한 해초류 모니터링 강화
- 해양생물 서식지 보호 및 복원, 해양보호생물 회복 사업 추진
  - 왕돌초 해역, 울릉군 및 호미곶 주변 해역 등의 해양생태계 보호 추진
  - 해양오염 및 서식지 훼손 상태 파악을 위한 주기적 점검과 해양생물다양성 위협 요인 분석·제거
  - 달랑계\* 보호와 관리를 위한 사전조치 필요
    - \* 경북 갯벌 생태계(모래 갯벌)에 출현하는 해양보호생물
- 해양생태계 및 환경 감시 강화를 위해 해양생태계 모니터링
  - 생태계 가치가 높은 공간(독도 및 울릉도 주변해역 등)의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 동 구역의 주기적이고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보전가치가 높은 해역을 시민 참여 모니터링\* 방안 마련
    - \* 시민 참여에 의한 해양생태 및 환경 자료 수집으로 주요 이슈 발견 및 해결 방안의 제시에 있어서 중앙·지방정부의 역할 보완

### (4) 용도구역 관리의 우선순위

- 환경생태관리구역 내 항만·항행 및 어업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은 관리코드 부여

〈그림 3-21〉 환경·생태관리구역 내 관리구역



〈표 3-14〉 환경·생태계관리구역 해양공간관리 사항

구 분		면적 (km <sup>2</sup> )	중첩 용도	관리의 우선순위	상세 설명
구역	관리코드				
환경·생태 관리구역	EC-521131-01	0.26	어업활동 (면허어장) 해양관광 (레저관광)	① 환경생태 ② 어업활동 ② 해양관광	<input type="checkbox"/> 경관보호구(문무대왕암)로 지정되어 환경·생태계관리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면허어장이 존재 <input type="checkbox"/> 레저관광구(호미반도 둘레길) 존재
	EC-520214-01	0.46	어업활동 (면허어장)	① 환경생태 ② 어업활동	<input type="checkbox"/> 경관보호구(문무대왕암)로 지정되어 환경·생태계관리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면허어장이 존재
	EC-520214-02	0.12	어업활동 (면허어장)	① 환경생태 ② 어업활동	<input type="checkbox"/> 천연기념물(주상절리)로 지정되어 환경·생태계관리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면허어장이 존재
	EC-520214-03	0.03	어업활동 (면허어장) 골재광물 (채굴권)	① 환경생태 ② 어업활동 ③ 골재광물	<input type="checkbox"/> 경주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환경·생태계관리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면허어장이 존재 <input type="checkbox"/> 채굴권(고령토)이 설정된 광구 위치

5) 연구·교육보전구역

□ (정의) 해양수산 연구와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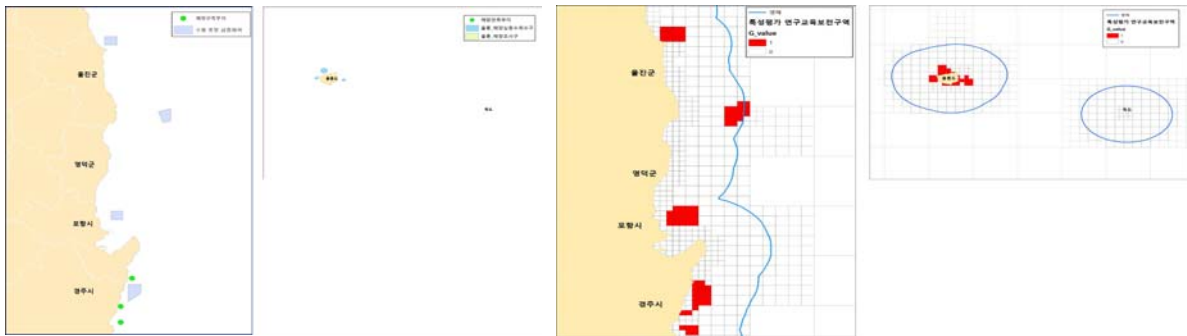
(1) 용도구역 관리목표

□ 해양수산 및 해양보호생물 등의 연구·조사 활동 유지

(2) 용도구역 지정방법

□ (지정 방법) 해양조사를 위한 해양관측시설, 수중로봇 실증해역, 연안관리지역계획상 해양심층수 취수구 및 해양조사구(연안해역기능구) 등을 고려하여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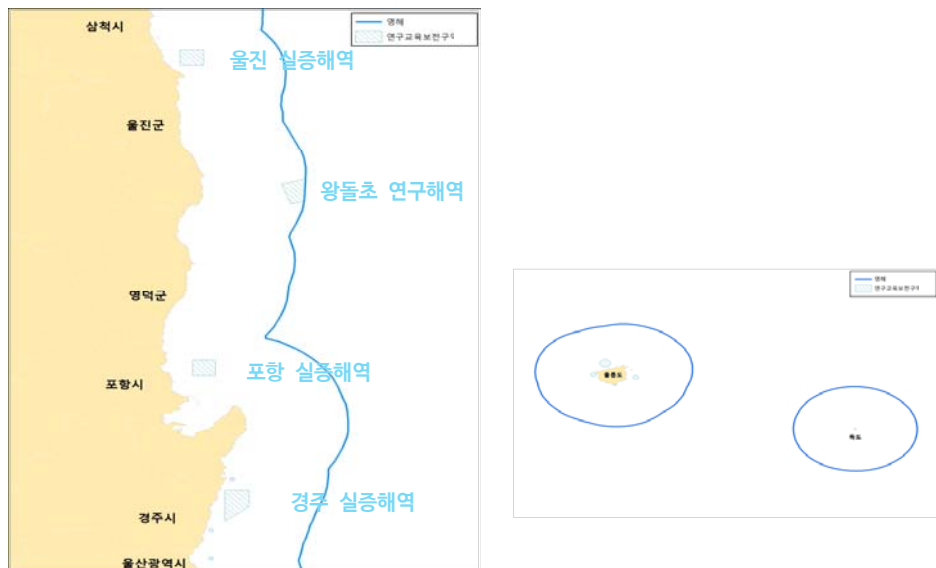
○ 왕돌초 해역에 해양관측시설인 동해 해양과학기지 건설 예정



〈해양관측부이, 수중로봇 실증해역 등〉

〈특성평가 결과〉

〈그림 3-22〉 연구·교육보전구역



## (3) 공간 관리 방안

## ① 권장 해양 이용·활동

- 서식 실태 및 해양관측 등 연구·조사 활동 등을 저해하지 않는 해양활동 가능
  - 해양생물과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활동 가능
  - 중요한 서식지를 훼손하지 않는 연구 활동 허용

## ② 관리 방안(해양공간의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사항)

- 해양관측 등 연구·조사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해양활동 가능
  - 해양생물 및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을 훼손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공존이 가능한 해양이용 개발 활동 가능
- 독도 등 무인도서의 실제적 관리 실현
  - 독도 등 무인도서의 실태조사 및 주기적 점검 체계 마련
- 해양수중로봇 및 관련 장비의 시험평가를 위한 연구 활동 추진
  - 다만, 국가 R&D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사업 완료 이후 용도구역 유지 및 변경에 관한 검토 후 관리

## 6) 항만·항행구역

- (정의) 항만기능의 유지와 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 (1) 용도구역 관리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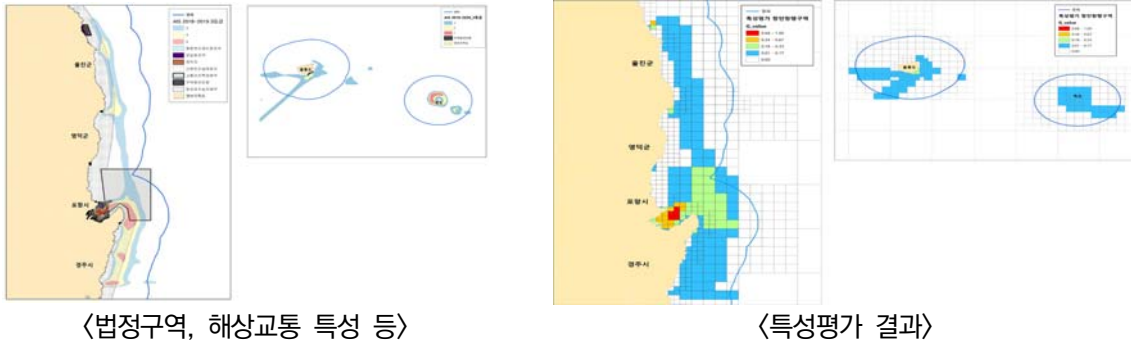
- 항만기능의 효율성 제고 등 원활한 항만 개발·운영을 도모하고, 선박의 안전운항 확보
- 항만·항행 기능 확대과정에서 타 용도와의 상충발생 최소화

## (2) 용도구역 지정 및 상충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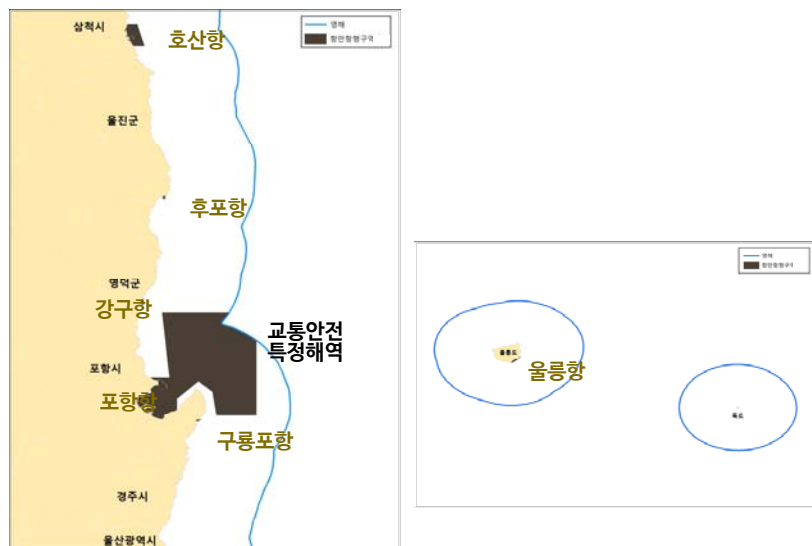
- (지정 방법) 항만구역(포항항, 후포항 등), 교통안전특정해역, 항로, 정박지, 해상교통 특성(항적 등)\* 등을 고려한 구역설정

\* GICOMS 데이터를 통한 화물선 및 탱크선 이동 공간 추출 : 선박의 주 이동 경로 확인

- 항만·항행구역과 중복된 해양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법·제도,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도구역 지정



〈그림 3-23〉 항만·항행구역



(3) 공간 관리 방안

① 권장 이용·활동

□ 항행활동 우선, 그 외 활동은 시간에 따라 공존 가능한 경우만 허용

- 안전한 항만·항행 활동을 보장 및 보호를 위한 해저지형(수심) 변화를 주는 개발과 항로를 침범하는 해양기반시설 승인 불가
- 안전한 항행을 위한 항로 활동 보장 및 어업, 유어활동 안전 관리 강화
-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기존 구역(항로, 교통안전특정해역 등)의 행위 관리 사항 준수

## ② 관리 방안(해양공간의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사항)

- 항만구역과 항로 등은 항만의 기능과 용도를 우선하여 관리
  - 항만과 해운의 입지를 위한 주기적 해저지형 등 특성 파악
  - 선박 입출항 추세, 선박규모 및 종류 등 항만 운영여건 변동 요인 점검
  - 항만시설 개발에 따른 해양환경 변화(퇴적물 이동에 따른 수심 변화 등) 점검, 주기적 준설 및 조사
- 안전한 항행을 위해 항로 준수 및 어업, 유어활동의 안전관리 강화
- 항만이용 선박과의 충돌 방지를 위한 기존 구역(항로 등) 내의 활동 준수

## (4) 용도구역 관리의 우선순위

- 항만·항행관리구역 내 어업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은 관리코드 부여

〈그림 3-24〉 항만·항행구역 내 관리구역



〈표 3-15〉 항만·항행관리구역 해양공간관리 사항

구 분		면적 (km <sup>2</sup> )	중첩 용도	관리의 우선순위	상세 설명
구역	관리코드				
항만항행	SS-521114-01	0.72	골재광물 (채굴권)	① 항만항행 ② 골재광물	<input type="checkbox"/> 연안항(후포항)이 지정되어 항만항행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채굴권(규사)이 설정된 광구 위치 - 등록번호 58267(허가 기간 : '18.10.1. ~ '38.9.30.), 등록번호 65141(허가 기간 : '19.6.1. ~ '39.5.31.)
	SS-521130-01	0.27	골재광물 (채굴권)	① 항만항행 ② 골재광물	<input type="checkbox"/> 무역항(포항항)이 지정되어 항만항행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채굴권(규사)이 설정된 광구 위치 - 등록번호 59002(허가 기간 : '15.12.1. ~ '38.11.30.), 등록번호 76707(허가 기간 : '15.5.4. ~ '22.4.6.), 등 록번호 48910(허가 기간 : '15.4.7. ~ '42.4.6.)
	SS-521130-02	1.79	골재광물 (채굴권)	① 항만항행 ② 골재광물	<input type="checkbox"/> 무역항(포항항)이 지정되어 항만항행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채굴권(고령토)이 설정된 광구 위치 - 등록번호 45680(허가 기간 : '17.7.1.. ~ '37.6.30.)
	SS-521130-03	3.92	어업활동 (어업면허)	① 항만항행 ② 어업활동	<input type="checkbox"/> 무역항(포항항)이 지정되어 항만항행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면허어장(한정면허)이 존재

7) 군사활동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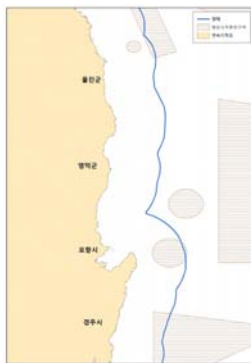
□ (정의) 국방 및 군사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1) 용도구역 관리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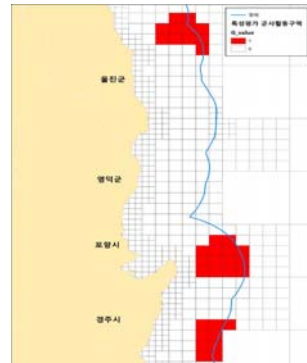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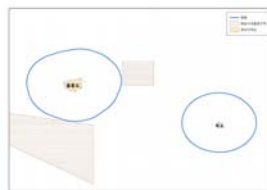
□ 군사안보와 영토관리, 해상사격 훈련 따른 주민 안전 관리 강화

(2) 용도구역 지정방법

□ 해군, 해경, 공군 해상사격 훈련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공간



〈해상사격훈련구역〉



〈특성평가 결과〉

〈그림 3-25〉 군사활동구역



### (3) 공간 관리 방안

#### ① 권장 이용·활동

##### □ 군사활동 우선, 그 외 활동은 시간에 따라 공존가능한 경우만 허용

- 해양에서의 군사활동은 해양안보, 항행안전을 위해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 활동이며, 접경지역으로 군사안보를 위해 타 해양 활동 제약
- 안정적 군사 활동과 항행 및 조업 안전 등 조화 필요

#### ② 관리 방안(해양공간의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사항)

##### □ 군사활동구역 내 해양이용행위(불법 행위) 감시 강화

- 울릉도 및 독도 주변 해역은 군사·안보적 가치가 높은 해역으로 해상사격 훈련구역이 있어 개발과 접근의 제약에 많음
- 중국어선의 불법조업행위, 우리어선의 북방해역 이동조업 등으로 피해가 빈번하고 어획활동이 높은 공간으로 울릉도 및 독도 근해안전 조업 지도 및 관리 필요

##### □ 안보 및 영토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해양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존 장려

-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접근이 어려우나 우수한 경관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연구 등 다양한 해양활동 추진 장려

### 8) 안전관리구역

□ (정의) 해양에 설치한 시설물의 보호 및 해양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 (1) 용도구역 관리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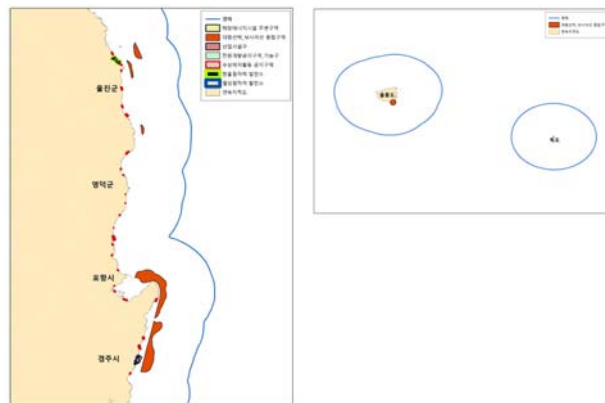
□ 안전한 해양이용 및 활동 지원

#### (2) 용도구역 지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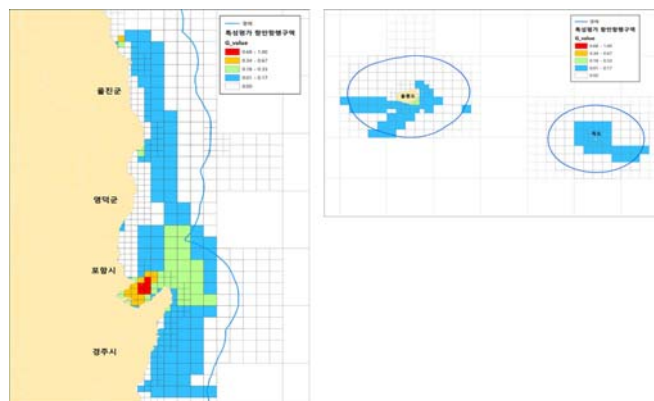
□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 원자력발전소 주변 해역, 연안침식관리구역, 선박 통항 및 사고위험 분석 등을 고려하여 설정

○ 연안침식관리구역은 전국 7개 중 경북에 2개소\* 있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침식 우려가 높음

\* 봉평해변(2015), 금음해변(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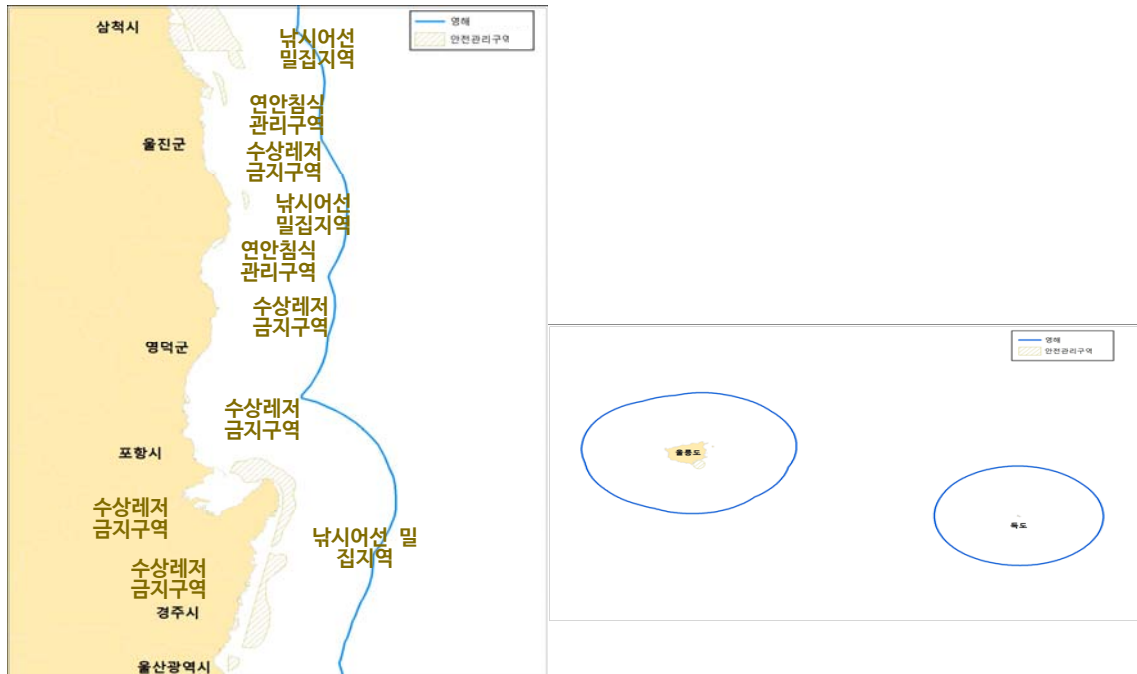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 에너지 시설 등〉



〈특성평가 결과〉

〈그림 3-26〉 안전관리구역



### (3) 공간 관리 방안

#### ① 권장 이용·활동

- 사고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예방 등 해양안전활동 지원
  - 안전부표, 안전경고문 설치 및 안전 순찰 활동, 해양안전 지식 보급, 해양안전 문화 확산
  - 어선 종사자 및 해양 레저 활동객 등의 안전 역량 제고 및 교육 활동

#### ② 관리 방안(해양공간의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사항)

- 원자력발전소 주변 해역 이용·활동의 영향 주기적 모니터링 및 개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조사 및 정보 확보
- 사고 다발지역에 위험성 조사, 위험요소 지속 발굴을 통해 사고 예방
- 주기적 위험성 조사\*, 위험요소 지속 발굴 등을 통해 사고 예방조치
  - \* 사고발생 해역 및 선박·어선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라 발생할 우려가 높은 해역을 대상
  - 사고 다발지역 등에 대한 안내·경고 등을 통해 해양이용자들이 미리 조심하도록 하는 등 사고발생 예방 유도
  - 지진해일 위험노출 지역에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안전 관리 점검 강화

### 9) 에너지개발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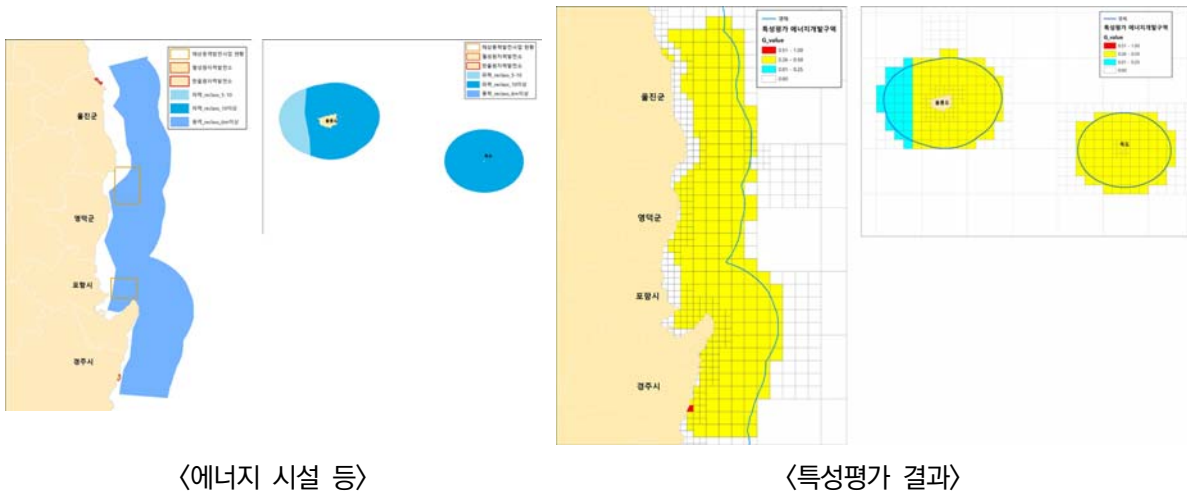
□ (정의) 해양에너지 개발과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 (1) 용도구역 관리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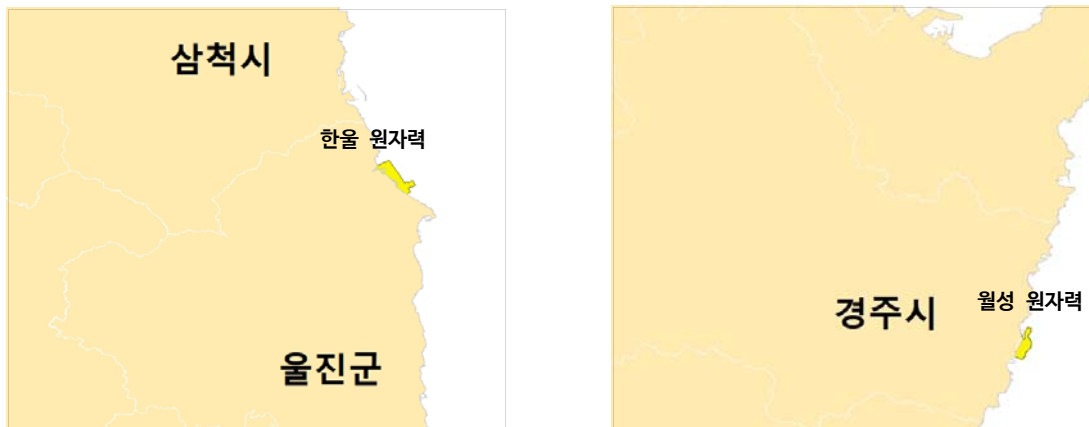
- 해양생태계와 균형을 이루는 해양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 에너지 시설 유지, 해양활동 영향·갈등 최소화

#### (2) 용도구역 지정방법

- 해양에너지 자원, 에너지 시설(한울(울진), 월성(경주) 원자력발전소) 등을 고려하여 설정



<그림 3-27> 에너지개발구역



## 〈 용도구역 미반영 〉

- 경북 해역에 해상풍력사업(영덕울진 해상풍력, 영일 해상풍력) 수요가 있으나, 수용성 확보, 행정절차 진행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미반영

수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요가 있는 해양공간에 대한 위치정보, 규모, 이용개발의 용도 등 구체적 이용개발 계획 및 구상 마련 필요</li> <li>- 해당 이용개발계획이 특성평가결과와 부합하고, 사회적 갈등이 작을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수용 가능</li> </ul>
수용 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개발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간에 대한 위치정보와 규모가 구체적으로 적시 되지 않고, 특성평가와 해당용도의 특성과 불부합한 경우 수용 불가능</li> </ul>

## (3) 공간 관리 방안

## ① 권장 해양 이용·활동

- 기존의 에너지시설, 현재 추진 중인 해상풍력 발전과 타 이용행위와의 충돌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절차 마련

## ② 관리 방안(해양공간의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사항)

- 해양에너지 개발 사업 주변 해역의 수질, 생태, 지형 변화 모니터링
- 해양에너지 개발 사업이 사회, 경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 혹은 완화
  - 예를 들어, 해상풍력 발전의 성장을 유도하고, 공간에서 타 이용행위와 충돌을 해결 하는데 필요한 메커니즘(절차) 마련
- 해양에너지 개발 추진 시 수산업, 해양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
- 해양에너지 개발 사업 주변 해역의 수질, 생태, 지형 변화 모니터링하여 사회, 경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혹은 완화
- 해양에너지 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마련
  - \* 개발된 해상풍력발전단지의 경우 인접 지자체 간 협의 절차 마련 필요





## 제 4 장

# 해양공간계획의 성공적 수립 및 이행방안

1.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2. 지역협의회 운영 결과
3. 해양공간관리 이행·점검 방안





## 제4장 / 해양공간계획의 성공적 수립 및 이행방안



### 1.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 □ 구성·운영 배경

- 해양공간계획의 성공적 수립과 이행을 위해 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지역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함) 구성·운영 필요
  - 특히 계획수립 초기단계부터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투명성, 절차적 타당성, 계획의 실효성 제고

#### □ 지역협의회 구성

- (구성) 경북도청의 추천으로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주요 해양공간 이용, 보전 활동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
- (기능) 지역협의회는 관리계획 수립 대상 해양공간에 대한 현안 및 관리계획의 수립·이행에 관하여 검토
  - 대상 해양공간의 주요 현안에 대한 검토
  - 해양용도구역 지정 검토 및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의견 개진
  - 관리계획의 초안 마련 등에 관한 자문

#### □ 법적 근거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기본원칙(제3조) 및 제4조(국가 등의 책무)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

제3조(기본원칙) 해양공간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관리되고 이용되어야 한다.

1. 생태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공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보전·이용 및 개발할 것
2. 국방안전과 해상교통안전 등 공공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3. 국민의 해양공간 관리에 대한 정책 참여와 건전한 이용 기회를 보장할 것
4. 해양공간의 통합관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한 협력 및 국제협력을 증진할 것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며, 국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 동법 시행령(제6조)은 관리계획 수립 시 관련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해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을 규정

\* 제6조(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 ① 시·도지사는 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수립·변경을 위해 지역주민, 시민단체,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추진 경과

- 지자체 설명회 및 의견수렴('21.4.14.)
- 지역 담당자 협의회 및 의견수렴('21.9.28.)
- 제1차 경북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21.10.22.)
- 제2차 경북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21.11.25.)
- 경북 해양공간관리계획(안) 공청회('21.12.21.)
- 관계부처 의견조회('21. 12월~'22. 1월)
- 경북 지역위원회 운영('22. 5월)

□ 경북 지역협의회 구성

○ 구성 원칙

- 분야별 공평한 참여 기회 제공 : 주요 이용·개발·보전 활동 관련 민관산학의 이해관계자를 포괄하되, 분야별 참여인원을 안배\*
  - \* 특히 상충행위 관련 이해관계자(예. 어민-골재업자)를 모두 포함
- 합의에 기반한 협의회 구성으로 대표성 확보: 주요 이용·개발·보전 활동별 이해관계자 간 자율적인 의견수렴 및 합의를 통해 협의회 위원을 추천하여 대표성 확보
  - \* 예: 복수의 어민단체 간 합의를 통해 어민 대표 협의회 위원을 추천

○ 구성 절차 및 현황

- 지역협의회 구성 관련 의견 청취를 위한 광역지자체 업무협의
- 해당 지자체의 추천으로 위원 구성
-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 위원 구성

〈표 4-1〉 경북 지역협의회 구성(안)

구분	구성(안)
경북 지역협의회	민(7), 관(13), 학(1), 연(2) 등 총 243명

## 2. 지역협의회 운영 결과

### 1) 경북 지자체 설명회

#### □ 개요

- 일자 및 장소 : '21. 4. 14.(수) 경북 환동해본부 대회의실
- 참석자 : 해양수산부, 경북도청 및 소속 시·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표 4-2〉 경북 지자체 설명회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경북 지자체 설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공간통합관리제도 설명</li> <li>- 경북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절차 및 방법 소개</li> <li>- 경북 지역 현안관련 논의 및 질의응답</li> <li>- 향후 추진계획</li> </ul>

〈그림 4-1〉 경북 지자체 설명회 회의장면



### 2) 경북 지역 담당자 협의회

#### □ 개요

- 일자 및 장소 : '21. 9. 28.(월) 화상회의
- 참석자 : 해양수산부, 경북도청 및 시·군 담당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IOST 등

〈표 4-3〉 경북 지역 담당자 협의회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경북 지역 담당자 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북 해양공간관리계획(안) 추진 현황 및 주요 내용 설명</li> <li>- 대상해양공간 범위, 인접 지자체간 중첩해역 조정 관련 논의</li> <li>- 해양용도구역 지정 및 변경 관련 논의</li> <li>- 지역 현안 논의 및 질의응답</li> </ul>

### 3) 제1차 경북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

#### □ 개요

- 일자 및 장소 : '21. 10. 22.(금) (주)영일신항만 대회의실
- 참석자 : 해양수산부, 경북도청 및 시·군 담당자, 지역협의회 위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 경북의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설명하고, 지역의 공간관리 현안과 용도구역(안) 지정에 관한 논의를 진행

〈표 4-4〉 제1차 지역협의회 주요내용

구분	주요 의견	반영여부	
경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해역 범위) 경북 해양공간관리 계획 수립범위를 영해 외측으로 확대 요청</li> </ul>	미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지자체의 관리계획 수립 대상범위는 영해 내측 해역으로, EEZ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도록 법에 규정</li> </ul>
경북 수산업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 해상풍력단지의 에너지개발구역 반영 계획 추가 설명 요청</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풍력단지 반영은 환경성 검토 및 수용성 확보 선행 필요</li> </ul>
영덕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골재광물) 실제 채굴 중인 해역에 한해 용도구역 지정 요청</li> </ul>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자료 검토를 통해 반영 여부 결정</li> </ul>
울릉 어업인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업) 울릉도 서측해역의 어업활동 보호구역 지정 및 해양포유류 개체 수 조절, 인접 지자체와 조업구역 조정 요청</li> </ul>	미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도구역 반영은 어획량 등 해양공간 특성평가 결과 및 타 활동 상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li> <li>• 경북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의 어업활동보호구역 비율은 58%로 타 용도구역 대비 넓은 면적을 차지</li> </ul>

구분	주요 의견	반영여부	
포항 수산업연합	• (어업·항만항행) 포항항 항만구역 축소 및 어업활동보호구역 지정 요청	미수용	• 항만법에 따라 기존에 지정한 항만구역은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시 조정할 수 없으며, 항만당국과 항만구역 조정 협의가 우선 필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연구·교육) 수중로봇 실증용 연구시설의 해양용도구역 반영 요청	수용	• 경북도를 통해 자료 수령 및 검토하여 연구·교육 보전구역(안)에 반영

〈그림 4-2〉 제1차 경북 지역협의회 회의장면



#### 4) 제2차 경북 해양공간계획 지역협의회

##### □ 개요

- 일자 및 장소 : '21. 11. 25.(목) (☞)영일신항만 대회의실
- 참석자 : 해양수산부, 경북도청 및 시·군 담당자, 지역협의회 위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표 4-5〉 제2차 지역협의회 주요내용

<p>주요 논의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마련된 용도구역(안)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li> <li>- 연구·교육보전구역, 에너지개발구역 등 지정·관리에 관한 의견 수렴</li> <li>- 지역 현안 논의 및 질의응답</li> <li>-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위촉 관련 논의</li> </ul>	
<p>〈 주요 의견 〉</p>		<p>〈 설명 내용 〉</p>
<p>대구경북연 구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수립 및 관리권한) 연안관리지역계획과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주체, 관리 권한에 대한 설명 요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간범위를 EEZ로 확대, 광역지자체장이 관할해역 (항만구역을 제외한 영해) 수립·관리, 해양활동 기반의 9개 용도구역으로 개편, 적합성 협의 신설 등</li> </ul>
<p>지역협의회 위원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역협의회와 지역위원회 간의 기능 구분과 협의회 위원의 지역위원회 겸임 가능 여부 설명 요청</li> <li>• (에너지) 계획수립 시 해상풍력 외 타 해양에너지 고려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위원회는 법으로 정한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변경 및 중요 사항에 대한 심의기구로, 지역협의회 위원 겸임 가능</li> <li>• 해양에너지 자원량을 고려하였으나, 용도구역으로 반영 가능한 공간은 관련 시설이 운영 중이거나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경우임.</li> </ul>
<p>울진죽변어촌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업) 어업활동보호구역 내에서 양식장, 정지망 등 어업유형 간 상생을 위해 비율 조정 등 공간관리 방안 모색 요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갈등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하겠음</li> </ul>
<p>경북도 해양수산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 풍력단지 건설시 용도구역 변경 필요 여부(경북해양수산물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간관리계획 반영이 필수는 아니나 용도구역 변경 생략 시 수용성 확보 및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등 절차적 문제 발생 소지 있음(해양수산부)</li> </ul>

〈그림 4-3〉 제2차 경북 지역협의회 회의장면



### 3. 해양공간관리 이행·점검 방안

- 해양공간계획제도의 안정적 안착과 지역의 역량을 고려하여 법률 시행 이후 첫 계획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하지만, 기본적으로 시·도지사는 계획의 수립과 이행의 주체임
- 해양공간계획 수립 이후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어야 함

#### 1) 해양공간관리 거버넌스 구축

##### 【구축방향】 해양공간 보전, 이용, 개발을 위한 해양공간의 계획관리 체계 개편

- 해양공간계획은 해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해역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수요를 고려하여 해양용도구역을 합리적으로 설정·관리함으로써 해양공간의 가치를 높이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해양공간관리 거버넌스는 해양공간관리계획 과정에서 과학과 참여에 의한 해양공간의 용도 파악을 통한 계획의 수립·이행을 보장하여야 함

#### □ 해양공간 이해관계자 참여 및 협력 기반 구축

-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 계획 수립 초기부터 이해관계자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해양공간 이용·개발, 해양용도구역 지정·관리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협의·조정
- \* 법률 시행 이전에 구성된 경북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를 공식 출범하기 위한 절차와 과정 준비
- 해양공간계획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적극적인 정보 공개와 함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및 감시 기능 강화
- 해양공간관리 필요성, 여건, 과제, 참여·협력 등에 해양공간관리 관련 홍보

#### □ 해양공간관리 정책 이행 조직 및 기반 마련

- 시·도와 관련 연안 시·군은 해양공간계획 시행할 담당 조직 또는 인원을 지정·배치
-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

\* 제9조(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변경과 그 밖에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를 둔

- 경북도는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
  - \* 경상북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경상북도 조례 제4536호, 2021.7.15. 제정)
-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종합적 판단 등에 관한 사항을 관련 담당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 수행
- 해양공간계획과정의 민주성·공정성의 확보, 전문지식의 도입, 이해관계의 조정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 및 조정 등에 적합

□ 해양공간관리 역량 강화 및 인식 증진

- 해양공간관리가 신뢰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활용, 정부가 추진 중인 해양공간정보체계\* 등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 공유 체계 구축
- 기본적으로 해양공간에 대한 이용·개발 및 보전 관련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조사 결과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접근

\* 정부는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해양공간특성평가 등에 필요한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정보 공동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행 중

-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양공간관리 교육 및 연수 강화
- 지역주민 등 시민의 자발적 협조와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방안 마련
  - 경북도 및 각 시·군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해양공간계획의 필요성, 주요 내용, 추진 방향 등 상세한 내용을 쉽게 검색하고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함
  - 지역주민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자료 배포
  - 정규교육과정에 반영 및 해양공간관리 전문인력 양성

\*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교과과정에 해양공간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 실천 사항을 포함시켜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인식 제고 시킬 필요가 있음.

2) 해양공간관리 주기적 모니터링

□ 관리계획의 이행점검

-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및 보전현황과 관리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해양공간 관리에 대해 점검 필요
- 이행점검 대상은 경북 해양공간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타 법령에 따른 인가 및 허가 등 해양공간에서의 행위제한 또는 지원 등에 관한 사항, 해양환경

및 생태계 현황, 해양공간관리 능력 등임.

- 타 부서의 협조와 전문 지식이 필요한 업무로 이를 위한 인력 및 조직 체계 정비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역량 강화는 해양공간계획체제 발전의 주춧돌
  - 해양공간계획체제의 도입은 중앙부처 주도의 하향식으로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과 시행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상향식으로 진행되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공간정보의 분석, 관련 부서 협업 등을 통해 다양한 해양공간의 이용·개발·보전 수요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해양공간계획체제의 발전을 위해 해양공간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 확보와 관리역량 강화에 집중 필요

〈표 4-6〉 관리계획의 이행점검 대상 및 방법

이행점검 대상	세부 항목	방법
대상해양공간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1) 이용·개발사업 현황과 정해진 신규 사업 및 기존 사업 추진 현황 (2) 공유수면 점·사용 현황 (3) 공유수면 매립 계획 및 추진 현황 (4) 해양공간적합성 협의 현황	공유수면 점사용 대장, 해양공간정보체계, 관련 담당 부서 자료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 대상 해양공간에서의 행위제한 또는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 대상 해역 내 면허어업권, 골재채취허가 등 면허 및 인가·허가 실적 (2) 대상 해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제정 여부 (3) 위와 관련한 협의 및 조정 실적	지방자치단체 관련 조례, 관련 담당 부서 자료 등
대상 해양공간의 해양공간관리 능력	(1)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여부 (2) 해양공간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여부 (3) 대상 해양공간의 현안 및 갈등 사례 (4) 해양공간계획체제 활용 여부 (5) 대상 해양공간의 관리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활동 여부 (6) 계획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	대상 해양공간의 관리 담당 부서 자료, 관련 업무담당자 및 지역협의회 의견 등

자료 : 해양수산부, 2021, 「해양공간관리계획 및 관리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64호)

- 경북도지사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과 변경 사항을 해양수산부에 제출
  -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변경 시에 활용한 기초 정보,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 해양용도구역 도면 등은 해양수산정보 공동플랫폼에서 제공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출

□ 관리계획의 자체평가

- 경북도지사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이행실태에 관한 자체평가보고서를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의 검토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주기적 점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참조

- 자체평가보고서는 해당 년도의 이행 실적 및 부진 사유, 다음해 이행계획 및 추진 방안으로 구성되며, 앞서 설명한 주기적 점검 결과도 첨부되어야 함.

〈표 4-7〉 자체평가 보고서의 목차

<p>I. ○○○○년 자체평가의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배경 및 목적</li> <li>2. 관리계획 추진경과</li> <li>3. 평가대상 및 범위(요약)</li> </ul> <p>II. ○○○○년 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 사항</li> <li>2. 해양용도구역별 사업·업무의 이행 현황</li> <li>※ 각 사업·업무의 이행 현황은 미이행 /부분이행 / 완료로 제시</li> <li>3. 지역협의회 운영 실적</li> </ul> <p>III. ○○○○년 자체평가 결과 및 조치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총평</li> <li>2. 평가대상 사업(업무)별 자체평가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평가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평가 결과는 부적정, 적정, 평가유보로 제시</li> </ul> </li> <li>2) 평가결과 조치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li> </ul> </li> <li>3) 향후 이행계획의 내용 및 추진 방법</li> </ul> </li> <li>3. 기타 건의 사항</li> </ul> <p><b>【참고】</b>○○○○년 이행점검 결과</p>
---

자료 : 해양수산부, 2021, 「해양공간관리계획 및 관리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64호)



## 부 록

1. 경북 해양공간 이용 및 개발 수요
2. 경북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서
3. 경북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위원
4. 경북 지역협의회 의견 제출 현황 및 검토 결과
5. 공청회 결과
6. 관계기관 협의결과
7. 경북 지역위원회 운영 결과
8.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결과





## 부록 1 : 경북 해양공간 이용 및 개발 수요

### 1. 연안해양 이용개발수요의 성격에 따른 특성분석

- 경상북도 지역의 전체 연안해양 이용개발수요는 257건으로 이중 포항시가 73건으로 가장 많고 수요 성격으로는 관광사업이 90건으로 가장 많은 수요를 보임
  - 경상북도 지역의 전체 연안해양 이용개발수요는 257건으로 그 중 73건이 포항시에 집중되어 분포하고, 다음으로는 울진군 56건, 영덕군 46건, 울릉군 43건, 경주시 31건의 순으로 나타남
  - 사업성격에 따라 관광, 마리나, 수산, 에너지, 항만, 환경, 기타 등 9개 분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관광분야가 90건으로 가장 많고 기타분야가 8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전체 수요면적은 약 46.48km<sup>2</sup>로 경주시와 포항시가 각각 24.07km<sup>2</sup>, 15.11km<sup>2</sup>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부분이 26.06km<sup>2</sup>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환경생태 10.01km<sup>2</sup>로 대부분을 차지
  - 기타 분야 이용개발수요 면적 경주시가 22.25km<sup>2</sup>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생태 분야는 영덕군 5.25km<sup>2</sup>, 포항시 4.34km<sup>2</sup>로 두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 전체 사업비는 약 29조 7,032억원으로 포항시에 약 24조 4,573억원이 집중되어 있고, 기반시설 분야가 13조 6,532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
  - 지역별 예산은 포항시가 약 24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주시, 울진군, 영덕군, 울릉군의 순으로 나타남
  - 산업특성에 따른 예산 분포는 기반시설이 약 13조 6,533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항만분야가 약 9조 6,817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부록 표 1-1〉 경북 연안해양 이용개발수요 특성 분석(사업성격) 1

구분		관광	기반시설	마리나	보호구역	수산
경주시	개소	13	1			1
	면적(㎡)	1,821,117				
	예산(백만원)	54,859	18,000			1,900
영덕군	개소	22	4	1		
	면적(㎡)	86,818				
	예산(백만원)	228,930	71,100	2,000		
울릉군	개소	15	2		1	1
	면적(㎡)	11,700	52,330			
	예산(백만원)	97,611	681,365		1,912	50
울진군	개소	15	1	1		4
	면적(㎡)	321,045		170,433		10,216
	예산(백만원)	1,257,769	7,200	64,236		37,200
포항시	개소	24	11	3		13
	면적(㎡)	1,161,271		33,000		3,070,500
	예산(백만원)	1,111,568	12,875,600	65,300		5,000
경상북도	개소	1				3
	면적(㎡)					420,000
	예산(백만원)	55,400				44,750
전체	개소	90	19	5	1	22
	면적(㎡)	3,401,951	52,330	203,433		3,500,716
	예산(백만원)	2,806,137	13,653,265	131,536	1,912	88,900

〈부록 표 1-2〉 경북 연안해양 이용개발수요 특성 분석(사업성격) 2

구분		어항	항만	환경생태	기타	총합계
경주시	개소	4			12	31
	면적(㎡)				22,254,000	24,075,117
	예산(백만원)	13			1,709,981	1,784,753
영덕군	개소	6		4	9	46
	면적(㎡)	900		5,250,000	292,071	5,629,789
	예산(백만원)	164,600		10,800	130,296	607,726
울릉군	개소	6			18	43
	면적(㎡)				2,326	66,356
	예산(백만원)	183,883			201,580	1,166,401
울진군	개소	6		1	28	56
	면적(㎡)				260,000	761,694
	예산(백만원)	1,013		140	201,768	1,569,326
포항시	개소	1	8	1	12	73
	면적(㎡)	7,200	3,236,372	4,340,000	3,257,200	15,105,543
	예산(백만원)	14,587	9,681,740	8,800	694,701	24,457,296
경상북도	개소	2		1	1	8
	면적(㎡)			420,000		840,000
	예산(백만원)	8,750		3,750	5,000	117,650
전체	개소	25	8	7	80	257
	면적(㎡)	8,100	3,236,372	10,010,000	26,065,597	46,478,499
	예산(백만원)	372,846	9,681,740	23,490	2,943,326	29,703,152

## 2. 연안해양 이용개발수요의 해역용도별 구분에 따른 특성분석

- 용도해역 구분에 따른 연안해양 이용개발 수요는 해양관광 부문이 83건으로 가장 많고 지역별로는 포항시가 73건으로 가장 많은 수요를 보임
  - 전체 사업 수요 257건 중 에너지 4건, 환경생태 5건을 제외한 4개 분야에서 30~60건의 비슷한 수준을 보임
- 수요면적은 에너지 부문이 22.22km<sup>2</sup>로 가장 많고, 지역별로는 경주시 24.07km<sup>2</sup>, 포항시 15.10km<sup>2</sup>로 두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 해양안전분야를 제외한 어업활동, 해양관광, 항만항행, 기타 분야야 비스한 사업규모를 보이고 있음
- 사업비는 기타 부문이 약 15조 7,300억원으로 가장 많고 대부분이 포항시에 집중되어 있음
  - 어업활동 부분(2,328억원)과 해양안전 부분(6,361억원) 환경생태 부문(215억원)이 비교적 적은 사업비 규모를 보이고 있음


〈부록 표 1-3〉 경북 연안해양 이용개발수요 특성 분석(용도해역) 1

시군구	값	어업활동	에너지	해양관광	환경생태
경주시	개소	4	3	10	
	면적(m <sup>2</sup> )		22,224,000	1,813,102	
	예산(백만원)	1,909	1,585,000	55,121	
영덕군	개소	2	1	20	3
	면적(m <sup>2</sup> )			86,818	5,250,000
	예산(백만원)	100,000		128,630	10,800
울릉군	개소	1		18	1
	면적(m <sup>2</sup> )			7,115	
	예산(백만원)	50		113,269	1,912
울진군	개소	5		12	
	면적(m <sup>2</sup> )	10,216		321,045	
	예산(백만원)	37,340		143,625	
포항시	개소	14		23	1
	면적(m <sup>2</sup> )	3,298,700		1,113,871	4,340,000
	예산(백만원)	45,000		1,126,139	8,800
경상 북도	개소	4			
	면적(m <sup>2</sup> )	840,000			
	예산(백만원)	48,500			
전체	개소	30	4	83	5
	면적(m <sup>2</sup> )	4,148,916	22,224,000	3,341,951	9,590,000
	예산(백만원)	232,799	1,585,000	1,566,784	21,512

〈부록 표 1-4〉 경북 연안해양 이용개발수요 특성 분석(용도해역) 2

시군구	값	항만항행	해양안전	기타	총합계
경주시	개소	1	9	4	31
	면적(㎡)		38,015		24,075,117
	예산(백만원)	4	98,019	44,700	1,784,753
영덕군	개소	7	6	7	46
	면적(㎡)	900	244,000	48,071	5,629,789
	예산(백만원)	166,600	87,296	114,400	607,726
울릉군	개소	12	7	4	43
	면적(㎡)	1,415	5,000	52,826	66,356
	예산(백만원)	190,804	159,001	701,365	1,166,401
울진군	개소	20	12	7	56
	면적(㎡)	170,433	250,000	10,000	761,694
	예산(백만원)	151,787	160,117	1,076,457	1,569,326
포항시	개소	13	7	15	73
	면적(㎡)	2,048,384	429,000	3,875,588	15,105,543
	예산(백만원)	9,412,946	126,701	13,737,710	24,457,296
경상 북도	개소	2	1	1	8
	면적(㎡)				840,000
	예산(백만원)	8,750	5,000	55,400	117,650
전체	개소	55	42	38	257
	면적(㎡)	2,221,132	966,015	3,986,485	46,478,499
	예산(백만원)	9,930,891	636,134	15,730,032	29,703,152

## 부록 2 : 경북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서

 <b>한국해양수산개발원</b> <small>KOREA MARITIME INSTITUTE</small>	ID <input type="text"/>		
<b>경북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지역주민)</b>			
2021050701-0			
<p>안녕하십니까?</p> <p>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해양수산부의 위탁을 받아 「경북 해역 해양공간계획 수립」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현재 경북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p> <p>본 설문조사의 목적은 경북 지역민을 대상으로 <b>해양공간 활용과 현안 등을 파악하고자 함</b>입니다. 또한, 설문결과는 우리나라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설문조사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는 <b>㈜리서치앤리서치</b>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p> <p>귀하의 의견은 이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귀하의 응답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p> <p>※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조사에 응답해주신 데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1년 6~7월</p> <p style="text-align: right;">한국해양수산개발원 <b>최희정</b> 부연구위원 외 연구진</p> <p style="text-align: center;">문의사항 (주)리서치앤리서치(R&amp;R) 담당자 : <b>조선미</b> 부장(02-3484-3053)</p>			
응답자 기본 사항			
응답자 성명	연락처(유선)	연락처(핸드폰)	
면접 일시	____월 ____일 ____시	어업인 여부	1) 어업인 2) 일반국민
<p>※ 어업인 : 어획, 양식, 수산물 가공/유통/판매, 횡집 등 수산물 전문 요리점에 종사하시는 분</p>			
면접원 기본사항			
본 면접 조사는 면접지침사항 내용을 준수하여 이루어졌음을 확인합니다	면접원 성명 : ID _____	S/V 확인 _____	검증원 확인 _____
에디터 확인 _____			
S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성      2) 여성	
SQ2	귀하의 나이는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이상 ☞ 만 19세 미만 설문종단	
SQ3	귀하의 거주 지역은 어디 입니까?	1) 경주시   2) 포항시   3) 영덕군   4) 울진군 5) 울릉군   6) 그 외 지역 ☞ 조사 종단	
SQ4	귀하의 거주 지역은 바다와 접하고 있습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 조사 종단	
- 1 -			

### PART A. 경북 해양공간 인식

Q01. 경북 지역에 거주하시는 것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Q02. 현재 경북 바다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중요한 순서대로 아래 보기 중 세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 1) 어로어업, 양식어업 및 수산업 등 어업활동을 위한 공간
- 2) 해수욕장, 마리나, 레저시설 등 관광·여가를 위한 공간
- 3) 산업단지, 조선소, 재생에너지(풍력발전, 태양광 등) 시설 등 산업공간
- 4) 항만의 기능과 선박의 운항 등을 위한 공간
- 5) 어촌마을, 해안인접 주거지역 등 정주공간
- 6) 기타 (기입):

Q03. 경북 바다가 보유하고 있는 독특한 자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중요한 순서대로 아래 보기 중 두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 1) 항만, 산업단지, 조선소, 재생에너지 시설, 원자력발전소 등 산업자원
- 2) 어류 등 풍부한 수산자원
- 3) 어촌마을, 전통어구어법 등 해양역사·문화자원
- 4) 마리나, 해수욕장 등 해양레저관광자원
- 5) 해양 및 해안 생태·경관자원
- 6) 기타 (기입):

Q04. 경북 바다가 사람들에게 다양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부정 2) 부정 3) 보통 4) 긍정 5) 매우 긍정

Q05. 귀하의 삶은 경북 바다와 얼마나 관련되어 있습니까?

- 1) 전혀 무관 2) 무관 3) 보통 4) 관련 5) 매우 관련

Q06. 현재 경북 바다는 여러 방식으로 이용·개발되고 있는데, 이러한 이용·개발을 통해 바다 환경 및 생태계가 얼마나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변화 없음 2) 대체로 변화함 3) 변화함 4) 매우 변화함 5) 모르겠음

Q07. 다음은 경북 바다로부터 예상되는 혜택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각 혜택이 개인(귀하)과 지역사회에 중요한 정도를 각각 0점~10점 사이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 10점에 가까울수록 중요도가 높음

< 설명 >

- (1) 수산물 생산: 바다에서 물고기, 조개, 김, 미역 등
- (2) 광물자원 제공: 바닷모래나 여러 광물
- (3) 에너지 생산: 해상풍력발전 등 바다를 이용한 전기 생산
- (4) 산란지와 서식지 제공: 해양생물의 산란지 및 서식지
- (5) 오염 물질 정화: 육지에서 들어오는 오염물질의 정화
- (6) 레크리에이션과 관광: 낚시, 수영 등 사람들의 휴식 및 레저 공간 제공
- (7) 심미 및 문화적 서비스: 심리적 안정과 예술적 영감, 삶의 터전으로써 바다의 전통문화적 혜택 (어구·어법, 문화재, 종교 등)
- (8) 기후 조절 기능 : 이산화탄소 흡수로 인한 기후변화 영향 감소
- (9) 재해 및 위험 관리 : 자연재해(파도·해일 등)로부터 보호 기능
- (10) 부양 및 지원 서비스: 영양염 순환 등을 통한 해양생태계의 생산 활동 지원
- (11) 해상 교통 및 운송 서비스 : 해상 교통과 물류 활동 지원

1) 개인의 중요도(각 항목별 점수 표시)

항 목	중요도 낮음 <<<<	보통	>>>>	중요도 높음							
(1) 수산물 생산	0	1	2	3	4	5	6	7	8	9	10
(2) 광물자원 제공	0	1	2	3	4	5	6	7	8	9	10
(3) 에너지 생산	0	1	2	3	4	5	6	7	8	9	10
(4) 산란지와 서식지 제공	0	1	2	3	4	5	6	7	8	9	10
(5) 오염 물질 정화	0	1	2	3	4	5	6	7	8	9	10
(6) 레크리에이션과 관광	0	1	2	3	4	5	6	7	8	9	10
(7) 심미 및 문화적 서비스	0	1	2	3	4	5	6	7	8	9	10
(8) 기후 조절 기능	0	1	2	3	4	5	6	7	8	9	10
(9) 재해 및 위험 관리	0	1	2	3	4	5	6	7	8	9	10
(10) 부양 및 지원 서비스	0	1	2	3	4	5	6	7	8	9	10
(11) 교통 및 운송 서비스	0	1	2	3	4	5	6	7	8	9	10

2) 지역의 중요도(각 항목별 점수 표시)

항 목	중요도 낮음 <<<<	보통	>>>>	중요도 높음							
(1) 수산물 생산	0	1	2	3	4	5	6	7	8	9	10
(2) 광물자원 제공	0	1	2	3	4	5	6	7	8	9	10
(3) 에너지 생산	0	1	2	3	4	5	6	7	8	9	10
(4) 산란지와 서식지 제공	0	1	2	3	4	5	6	7	8	9	10
(5) 오염 물질 정화	0	1	2	3	4	5	6	7	8	9	10
(6) 레크리에이션과 관광	0	1	2	3	4	5	6	7	8	9	10
(7) 심미 및 문화적 서비스	0	1	2	3	4	5	6	7	8	9	10
(8) 기후 조절 기능	0	1	2	3	4	5	6	7	8	9	10
(9) 재해 및 위험 관리	0	1	2	3	4	5	6	7	8	9	10
(10) 부양 및 지원 서비스	0	1	2	3	4	5	6	7	8	9	10
(11) 교통 및 운송 서비스	0	1	2	3	4	5	6	7	8	9	10

## PART B. 경북의 주요 해양활동 간 갈등

### 주요 해양활동에 대한 설명

- ☞ 사람들은 다양한 목적으로 해양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동시에 해양을 보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활동들이 서로 충돌하여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바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해양공간정보를 분석해서 바다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수요를 조정하고, 갈등을 예방 및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다음 설문에서는 주요 해양활동들(아래 설명)의 상충(相衝) 행태와 정도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요 해양활동	설명/사례
어업 활동	<p>우리 생활에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수산물을 바다에서 잡거나 기르는 활동</p> 
골재·해저광물 자원 채취	<p>골재·해저광물 채취는 해저의 표층 및 지질구조에 존재하는 모래, 자갈, 석유 및 천연가스, 해수에 녹아있는 소금, 마그네슘, 금, 은 등을 채취하는 활동</p> 
신재생에너지 개발	<p>신재생에너지 개발은 해양의 바람, 파도, 조석, 염도, 온도차 등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얻는 활동</p> 
해양관광	<p>해양관광 활동은 해수욕, 바다낚시, 해양레저 활동, 야생동식물 관찰 등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해양에서 재충전할 수 있는 휴식 및 여가 활동</p> 

주요 해양활동	설명/사례
환경·생태	<p>해양환경과 생태 보호 활동은 바다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역 지정, 해양서식지 복원, 오염 관리 등</p> 
연구·교육	<p>연구 및 교육 활동은 바다를 대상으로 해양조사, 학술적 연구 등을 통해 얻는 정보와 지식과 관련한 활동과 바다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 활동</p> 
항만·항행	<p>항만·항행 활동은 항만의 개발, 유지, 운영하는 활동과 선박을 이용하여 사람과 화물을 수송하는 활동</p> 
군사활동	<p>군사 활동은 해양에 있는 국방·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 작전과 관련한 활동</p> 
안전관리	<p>안전관리는 해양 시설을 보호하고, 해양 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해양레저 활동 등을 위한 조치</p> 

Q08. 10년 전과 비교해 경북 바다를 얼마나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적게 2) 더 적게 3) 변화 없음 4) 더 많이 5) 매우 많이

Q09. 10년 전과 비교해 경북 바다를 이용하는 방식이 얼마나 복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단순 2) 조금 단순 3) 변화 없음 4) 조금 복잡 5) 매우 복잡

Q10. 아래 표는 대표적인 해양활동을 세분화한 것입니다. 각 활동(구분)의 총합이 100%가 되도록 세부 활동들의 중요도(비중)를 작성해 주십시오.

\* 예를 들어, 어업활동 중 어선어업과 양식업의 중요도가 같을 경우 50%, 50% 기입)

구분	세부 활동	비중(%)
1) 어업활동	(1) 어선어업	%
	(2) 양식	%
	합계	100%
2) 에너지 개발	(1) 풍력 및 조류 등	%
	(2) 조력발전	%
	합계	100%
3) 해양관광	(1) 해변관광	%
	(2) 낚시, 유람	%
	합계	100%
4) 환경생태	(1) 보호구역	%
	(2) 우수한 생태계	%
	합계	100%
5) 항만 항행	(1) 항만구역	%
	(2) 항로 등 항행구역	%
	합계	100%

Q11. 다음은 경북의 해양 이용·개발 및 보전 활동 간 상충(相衝)의 여부와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각 활동 간 상충 정도(갈호 안)를 1~5점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상충이 높은 것은 각 활동 간의 충돌 혹은 갈등이 있는 것으로, 5점은 상충 정도가 매우 높고, 1점은 낮은 것입니다.)

구분	어업 활동	골재 광물	에너지 개발	해양 관광	환경·생태	연구·교육	항만·항행	군사 활동
(1) 어업활동								
(2) 골재 광물	( )점							
(3) 에너지개발	( )점	( )점						
(4) 해양관광	( )점	( )점	( )점					
(5) 환경·생태	( )점	( )점	( )점	( )점				
(6) 연구·교육	( )점	( )점	( )점	( )점	( )점			
(7) 항만·항행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8) 군사활동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9) 안전관리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PART C. 해양공간계획제도 및 경북 해양공간관리 방향

### 해양공간계획제도에 대한 설명

- ☞ 다양한 해양활동의 갈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자 해양공간계획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해양공간계획제도는 토지이용계획과 유사하게 해양공간을 더욱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공간정보를 바탕으로 중요한 활동별로 사전에 해양공간을 할당하는 제도입니다.

#### 해양공간관리 여건 변화



#### 해양공간계획의 개념

**"해양공간계획(eez)의 바람직한 용도를 사전에 설정하고 관리하는 정책과정"**

- 그동안 해양이용 수요 및 관리 시 차기(제2차)해양공간계획과 더불어 선진국 '해양공간계획' 제도로 확대되고 있음
- 지역차별적 특성에 따른 공간 이용(해양공간) 및 해양공간 정보 제공(해양공간정보) 체계, 공동 관리 체계
- 즉, 정부가 해양공간계획에 따라 해양공간 용도를 관리하는 체계



- ☞ 해양공간계획제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2018년 4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해양공간의 특성 및 해양이용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양용도구역을 설정·관리하는 등 우리나라 숲 해역에 대한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해양용도구역(9개) : 어업활동보호구역,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에너지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환경·생태계관리구역, 연구·교육보전구역, 항만·항행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

\*\* 지역별 해양공간계획 수립 :

- (16~17) 경기만 시범해역 → (18) 부산·경남 → (19) 전남·제주·울산·서남해안 EEZ →  
(20) 경북·충남·서해안 EEZ → (21) 강원도·경북·동해안 EEZ

- ☞ 다음 설문에서는 우리나라 해양공간계획제도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경북 해양공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Q12. 「해양공간계획제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1) 몰랐다      2) 들어본 적은 있다      3) 내용을 알고 있다

Q13.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라 해양공간을 이용 목적에 따라 구분관리하는 「해양공간계획제도」가 해양공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해양공간적합성협의제도 (법제15조)**

☞ 해양공간계획제도의 이행수단으로서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제도**는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양의 이용 및 개발 계획을 승인수립변경하거나 지구 및 구역 등을 지정 혹은 변경 하는 경우에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 협의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 해양관광단지 개발,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 광물 골재자원 채취, 항만 및 어항개발, 해양에너지 개발, 어장개발 등 해양의 이용개발에 관한 타부처 및 행정기관의 법정계획

Q14. 「해양공간계획제도」의 이행수단인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제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1) 전혀 **모른다** 2) 잘 **모른다** 3) 보통 4) 알고 있다 5) 매우 잘 안다

Q15.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제도**가 해양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Q16. 「해양공간계획제도」가 다양한 해양활동들 간 갈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전혀 기여 못 함 2) 기여 못 함 3) 보통 4) 기여함 5) 매우 기여함

Q17. 다음은 「해양공간계획제도」가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요소로, 각 요소별 중요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평가 항목	중요도				
	낮음	<<<	보통	>>>	높음
1) 「해양공간계획제도」 시행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	1	2	3	4	5
2) 행정 조직(계획 수립-이행을 위한 조직 정비 등)	1	2	3	4	5
3) 해양공간정보(해양공간정보의 수집·가공·관리 등)	1	2	3	4	5
4) 법률 및 제도의 정비(시행령 등 세부적인 규정 완비)	1	2	3	4	5
5) 이해관계자 및 주민의 참여(주민 설명회, 지역협의회 등)	1	2	3	4	5
6) 관련 계획·제도에 대한 교육 및 역량 강화	1	2	3	4	5

Q18.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라 해양공간계획 수립 시 바다의 어떤 가치(아래 평가항목)가 우선되어야 하는지 아래 항목 간 **상대적인 중요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 ☞ 보전 : 바다의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유지
- ☞ 이용 : 바다를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을 말하며, 해양스포츠, 해상교통로, 어장으로 이용
- ☞ 개발 : 해양공간이나 자원을 유용하게 만들어 활용하는 것을 말하며, 그 예로 해양에너지 개발, 해양관광 시설 개발, 해양광물자원 개발, 해양구조물 건설 등

평가항목	중요도																평가항목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동일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1) 보전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이용
2) 보전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개발
3) 이용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개발

Q19. 10년 전과 비교해 경북 바다를 이용하는 여러 활동 간 갈등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감소 2) 조금 감소 3) 변화 없음 4) 조금 증가 5) 매우 증가

Q20. 향후에 경북 지역의 해양공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불필요 2) 불필요 3) 보통 4) 필요 5) 매우 필요

Q21. 미래 경북 바다가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 중요한 순서대로 아래 항목 중 두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 1) 아름답고 건강한 바다
- 2) 매력적인 해양관광·휴양 공간
- 3) 풍요로운 수산업 공간
- 4) 항만 및 해양 물류를 지원하는 공간
- 5) 해양에너지와 해양산업을 위한 공간
- 6) 기타 (기입):

Q22. 다음 경북 현안 중 해양공간관리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아래 항목 중 세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 1) 연안침식 대응, 재해방지 강화
- 2) 해양바이오 (오메가3, 키토산 등) 개발을 위한 수산 자원 확보
- 3) 해양레저관광 수요 증가
- 4) 해양에너지 개발 수요에 따른 영향 및 갈등
- 5) 해양환경 변화와 해양생태계 훼손
- 6) 수산자원 고갈 및 조업구역 축소
- 7) 연근해 어선-레저선박 안전사고 증가 및 선박 통행에 따른 타 활동과 상충
- 8) 독도 및 주변 해역의 영토수호
- 9) 원자력발전소 온배수(냉각수로 사용된 따뜻한 물) 배출 관리
- 10) 항만건설, 연안개발 등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추진

Q22-1. 위의 내용 외에 경북 해양활동과 관련한 현안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자유롭게 작성하세요.

Q23. 귀하께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해상경계 분쟁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 1) 모른다 ▶ Q24번으로  
 2) 들어는 보았다 ▶ Q23-1번으로  
 3) 내용을 알고 있다 ▶ Q23-1번으로

Q23-1. (23번에서 2, 3번을 선택한 경우) 귀하께서는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간 해상경계 분쟁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 다음은 해상경계 분쟁해결 관련한 사항입니다.

Q24. 귀하께서는 우리나라 해상경계 분쟁해결을 위하여 **현행 방식(사법적 해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법적/비사법적 분쟁해결이란?

- 사법적 분쟁해결 : 법원의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확정하고 법적 구속력 있는 판단을 내리는 과정
- 비사법적 분쟁해결 : 법적 소송 외 분쟁해결 방식으로서 법원이나 행정기관을 통한 조정 또는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
  - 조정 : 제3자가 당사자간 분쟁해결 과정에 참여하여 협상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며, 조정인은 분쟁 해결에 대한 권한은 가지지 않음
  - 중재 :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중재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위원회의 최종결정을 따르기로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함

- 1) 현재 방식으로 충분하다 ☞ Q25번으로
- 2) 현재 방식은 적절하지 않고 개선되어야 한다 ☞ Q24-1번으로
- 3) 잘 모르겠다 ☞ Q25번으로

Q24-1. (24번에서 2번을 선택한 경우) 해상경계 분쟁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지자체간 조정·중재
- 2) 국회 입법(법률 제정)
- 3) 범부처 협의회(혹은 위원회)
- 4) 기타 (기입:)

Q25. 해상경계 분쟁에 대한 조정·중재를 위한 조직 혹은 기관은 어느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기존 단일 부처 :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등
- 2) 범부처 조정 또는 중재위원회
- 3) 법원
- 4) 기타 (기입:)

## PART D. 이해관계자 참여·협력 및 인식 증진

### 해양공간계획 수립 절차와 지역협의회 역할

- ☞ 해양공간의 갈등을 줄이고, 해양 가치를 유지·증진하기 위한 해양공간 통합관리제도는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으며, 이해관계자 참여와 협력은 해양공간계획의 성공적 수립과 이행을 위한 기반입니다.
- ☞ 해양공간계획 수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해양공간관리계획(안) 마련
    - \* 특성평가→용도구역(안) 마련 →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 의견수렴 및 검토
  - ② 공청회 등 의견수렴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 ③ 지역위원회 심의
  - ④ 승인 신청(시·도지사→해수부)
  - ⑤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 및 관리계획 승인(해수부→시·도지사)
  - ⑥ 고시 및 통보
- ☞ 「해양공간계획법」은 계획안 수립단계부터 주민,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공청회를 거쳐 해양공간의 이용개발·보전 방향에 대한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역협의회: 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수립·변경을 위해 주민,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협의회(시행령 제6조)

#### 해양공간계획 수립 과정



Q26. 해양공간계획을 수립이행하는데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지역협의회가 필요하다 생각하십니까?

-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 이하 Q26-1번으로**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 이하 Q27번으로**

Q26-1. (26번에서 1, 2번을 선택한 경우) 그 이유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1)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이 생길 것이다.  
2) 지역협의회 의견이 정책결정에 반영되기 어려울 것이다.  
3) 기타 (기입):

Q27. 지역협의회가 잘 운영되기 위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래 항목 중 두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첫번째 ( ) 두번째 ( )

- 1) 참여 시점 : 계획 수립 초기부터 구성하여 운영  
2) 참여 대상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3) 참여 방식 : 온오프라인 참여, 설문 등 다양한 방식의 의견 수렴 프로세스 구축  
4) 참여 결과 피드백 : 개진한 의견의 반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피드백 하는 방안

### PART E. 응답자 특성 문항

DQ1. 귀하께서는 경북 지역에서 얼마나 거주하셨습니다?

- 1) 5년 미만 2) 5~10년 미만 3) 10~20년 미만 4) 20~30년 미만 5) 30년 이상

DQ2.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1) 농업/임업/어업 2) 자영업 3) 판매/영업/서비스직 4) 기능/숙련직  
5) 생산/노무직 6) 사무직 7) 전문/자유직 8) 가정주부  
9) 학생 10) 무직/퇴직  
11) 기타 (기입):

DQ3. 실례지만 귀하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재학 포함)

- 1) 중학교 졸업 이하 2) 고등학교 졸업 3) 대학 졸업 4) 대학원 졸업 이상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부록 3 : 경북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위원

〈부록 표 3-1〉 2021년도 경북 지역협의회 위원

(기준 : 2021년 12월)

구분	이름	소속	직위	분야
1	연 인 성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수중건설로봇실증센터	센터장	해양기술
2	학 정 교 철	안동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 수	환경생태
3	연 임 성 호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연안관리
4	민 김 태 훈	한국수산업경영인 경상북도연합회	회 장	수산업
5	민 하 기 동	한국수산업경영인 포항시연합회	회 장	수산업
6	민 권 정 훈	한국수산업경영인 경주시연합회	회 장	수산업
7	민 배 준	영덕축산어촌계	어업인	수산업
8	민 방 학 수	울진죽변어촌계	어촌계장	수산업
9	민 김 해 수	울릉어업인연합회	회 장	수산업
10	민 차 상 욱	포항항만물류협회	사무처장	항만
11	관 이 동 후	제1함대사령부 작전참모실	해상작전담당	국방
12	관 황 보 훈	포항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안전관리계장	안전
13	관 장 채 식	道 독도해양정책과	독도해양정책과장	계획관리
14	관 최 종 석	“	해양환경안전팀장	계획관리
15	관 황 성 수	道 해양수산과	어업관리팀장	계획관리
16	관 최 명 렬	道 해양레저관광과	해양레포츠팀장	계획관리
17	관 김 명 심	道 동해안정책과	해양신산업팀장	계획관리
18	관 류 시 갑	道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신산업팀장	계획관리
19	관 김 국 철	포 항 시 해양산업과	해양정책팀장	계획관리
20	관 이 재 화	경 주 시 해양수산과	연안관리팀장	계획관리
21	관 김 방 식	영 덕 군 해양수산과	연안관리팀장	계획관리
22	관 이 상 업	울 진 군 해양수산과	해양개발팀장	계획관리
23	관 김 기 흥	울 릅 군 해양수산과	해양개발팀장	계획관리

## 부록 4 : 경북 지역협의회 의견 제출 현황 및 검토 결과

### □ 제1차 경북 지역협의회

〈부록 표 4-1〉 제1차 경북 지역협의회 의견 제출 현황 및 검토

구분	주요 의견	검토 결과	비고
경북도 어업관리팀 장	○ (대상해역 범위) 조업활동 등 인접 지자체와 갈등 예방을 위해 경북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범위를 영해 외측으로 확대 필요	○ 광역지자체의 관리계획 수립 대상범위는 영해 내측 해역으로, EEZ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도록 법에 규정 * 현행 법제도에서 지자체 관할해역 설정 근거가 없어 관련 법률 제정을 위한 별도 연구 추진 중	미반영
울릉어업인연 합	○ (어업) 울릉도 서측해역의 어업활동보호구역 지정 및 해양포유류(강치, 돌고래) 개체수 조절, 인접 지자체와 조업구역 조정 요청	○ 해양용도구역 반영은 어획량 등 해양공간 특성평가 결과 및 타 활동 상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	미반영
포항수산업연 합	○ (어업·항만항행) 포항항 항만구역 내 문어축제 등 어로활동이 많아 항만구역 축소 및 어업활동보호구역 지정 요청	○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시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 조정은 어려우며, 지자체와 항만당국간 항만구역 조정 협의가 우선 필요	미반영
KIOST	○ (연구·교육) 수중로봇 테스트용 연구시설의 해양용도구역 반영	○ 경북도를 통해 구체적 자료 제공 시 검토하여 반영 여부 결정	검토 후 필요시 반영
영덕 해양수산물	○ (골재광물) 실제 채굴 중인 해역에 한해 해양용도구역 지정 요청	○ 지역협의회 및 공청회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 후 반영 여부 결정	검토 후 필요시 반영
경북수산업연 합	○ (에너지) 해상풍력단지의 에너지개발구역 반영 계획	○ 환경성 검토 및 수용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	미반영

## □ 제2차 경북 지역협의회

〈부록 표 4-2〉 제2차 경북 지역협의회 의견 제출 현황 및 검토

구분	주요 의견	검토 결과	비고
대구경북연구원	○ (계획 수립 및 관리 권한) 연안관리지역계획과 비교 시 용도구역의 설정, 계획의 수립 및 관리 주체와 권한을 구체적으로 설명 요청	○ 공간범위를 EEZ로 확대, 광역지자체장이 관할해역(항만구역을 제외한 영해) 수립·관리, 해양활동 기반의 9개 용도구역으로 개편, 적합성 협의 신설 등	-
지역협의회 위원장	○ (지역위원회) 지역협의회와 지역위원회 간의 기능 구분과 협의회 위원의 지역위원회 겸임 가능 여부 설명 요청	○ 지역위원회는 법으로 정한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변경 및 중요 사항에 대한 심의기구로, 지역협의회 위원 겸임 가능	-
	○ (에너지) 계획수립 시 해상풍력 외 타 해양에너지 고려 여부	○ 해양에너지 자원량을 고려하였으나, 용도구역으로 반영 가능한 공간은 관련 시설이 운영 중이거나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경우임	-
울진죽변어촌 계	○ (어업) 어업활동보호구역 내에서 양식장, 정치망 등 어업유형 간 상생을 위해 비율 조정 등 공간관리 방안 모색 요청	○ 갈등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하겠음	반영
지역협의회 위원	○ (연구·교육) 지정절차 및 타 이용행위 가능 여부	○ 기존 이용과의 상충, 해역 영향 등 고려 후 중첩하여 지정 가능	-
경북해양수산 과	○ (에너지) 풍력단지 건설시 용도구역 변경 필요 여부	○ 공간관리계획 반영이 필수는 아니나 용도구역 변경 생략 시 수용성 확보 및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등 절차적 문제 발생 소지 있음	-

## 부록 5 : 공청회 결과

### □ 경북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 일시/장소 : 2021.12.21./경상북도 어업기술센터(포항)
- 주요내용 : 해상경계 설정 필요성, 영일만 수질 개선 모니터링, 어업활동과 관광활동 간 갈등 완화, 미래수요 예측, 에너지개발구역 지정 관련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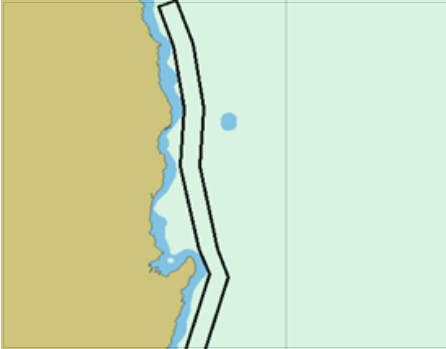
〈부록 표 5-1〉 공청회 의견 제출 현황 및 검토

구분	주요 의견	검토 결과	비고
한동대학교 교수	○ (해상경계) 해양공간계획 수립범위 확정 및 수산업 조업구역 갈등 해소를 위해 해상경계 설정 필요	○ 현행 법제도에 지방자치단체 관할해역 설정 기준 및 근거가 없어 법안 제정을 위한 연구 추진 중	-
	○ (환경·생태계) 영일만의 수질 개선을 위해 모니터링 사업 추진 필요	○ 해양환경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자체와 협의하여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할 경우 모니터링 및 행위제한 등 연안오염총량관리 가능	-
포항오도2리 어촌계장	○ (어업·관광) 선상낚시·수중레저활동 증가에 따른 어업과의 갈등 해소, 보호수면 지정해역의 조업제한 등 사후관리 강화 필요	○ 낚시면허제·총량제 도입 등을 검토하였으나 규제반대로 인해 무산, 어족자원의 보호를 위해 레저활동의 체계적 관리 및 보호수면 사후관리 등 개선 필요성에 공감	-
대구경북연구 원 연구위원	○ (미래 수요) 공간계획 수립 시 장·단기 변화 예측을 토대로 미래 수요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방향성 제시 필요	○ 지역 방향성을 수록할 수 있도록 유도구역 도입 등 법 개정 추진중	-
경북 에너지산업과	○ (에너지) 에너지개발구역 지정기준	○ 해상풍력 상생발전방안에 따라 공공주도 집적화 단지로 지정되거나, 주민수용성 확보이후 공간계획에 반영가능	-

## 부록 6 : 관계기관 협의결과

○ 일시 : `21.12월 ~ `22.1월

〈부록 표 5-2〉 관계기관 협의 의견 제출 현황 및 검토

구분	주요 의견	검토 결과	비고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	○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 현황 데이터 수정 요청 * 해당 페이지 : 17쪽, 49쪽	○ 수용	반영
	○ 포항시 도구해변 연안완충구역 지정 폐지로 동 계획의 관련 내용 전체를 삭제 * 해당 페이지 : 50~51쪽, 122쪽	○ 수용	반영
한국해양교통 안전공단 교통안전평가실	○ 실질적인 선박통행 항적정보(GICOMS 데이터)에 기반한 선박 통항로를 용도구역에 반영 필요  <경북 연안해역 관습 통항로 현황> - 상기의 그림과 같이 경북권 해역에서 남측(부산·울산항)으로 항행하거나, 북측(울진 또는 강원권 무역항)으로 항행하는 선박의 연안 통항로(검은색)에 대해 항만·항행구역 추가 반영 필요	○ 항만·항행구역 지정 기준은 법률에서 정한 항만구역,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정박지 및 항로, 교통안전특정해역, 통항분리수역 등으로 이를 모두 반영하였음. - 관습적 통항로를 항만·항행구역으로 정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선박 항행 활동을 저해하지 않음. ○ 관습적 통항로는 전북도의 항만·항행구역 지정 기준에 맞지 않으며, 타 용도의 활용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반영하기 어려움.	미수용

## 부록 7 : 경북 지역위원회 운영 결과

### □ 심의 개요

- 일시 : 2022. 5. 4.(수)
- 장소 : 경상북도 동부청사 대회의실
- 위원 : 11명 참석(주재 : 환동해지역본부장(부위원장))
- 안건 : 경북 해양공간관리계획(안) 심의

### □ 심의 결과

- 참여위원 : 11명(총 19명 중)
- 심의결과 : 가결\*(동의 11명)
  - \* 「경상북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회의)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 경북도 추가의견
    - 가.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용도구역 설정 시 미래 발전적인 부분도 감안하여 관리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측면에서 미래수요를 반영할 필요 있음
    - 나. 경북 해역의 어업활동과 낚시활동 간 갈등관리 프로세스가 부재하며, 해양공간계획을 토대로 활동 간 우선순위를 확인하고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임

## 부록 8 :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결과

### 경북 해양공간관리계획(안) 제출 의견 및 검토결과

구분	주요 의견	검토 결과	비고
민간위원	○ (안전관리) 경북지역은 지진해일의 위험에 노출된 지역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강구 필요	○ 관련 내용은 해양공간관리계획 안전관리구역 관리방향에 수록 * 지진해일 위험노출 지역의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안전관리 점검 강화	반영



# 경북 해양공간관리계획 설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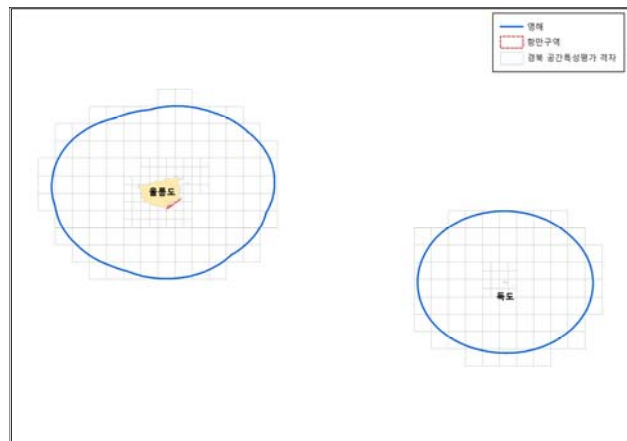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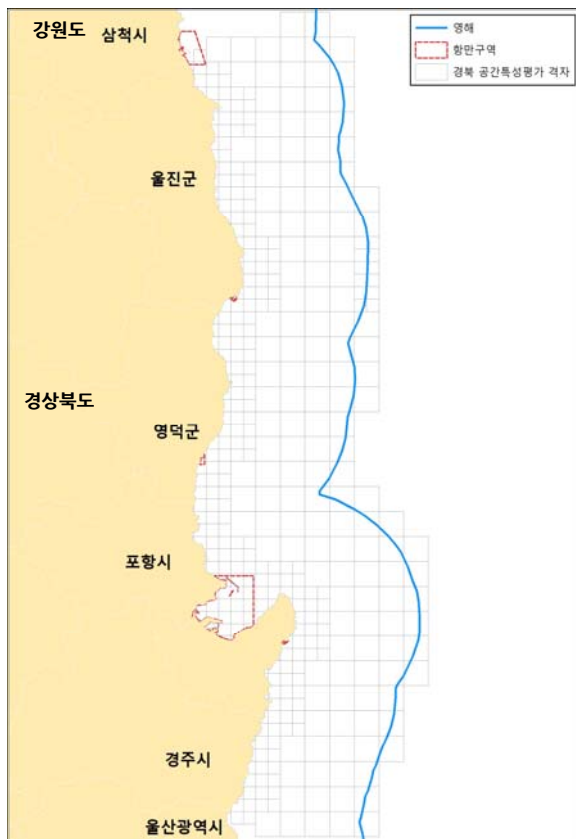




## 경상북도 해양공간관리계획 계획설명서

### 1. 해양공간관리계획 계획 수립 대상 해양공간

- 계획 수립 대상 해양공간의 면적은 8,410.92km<sup>2</sup> (항만구역 109.54km<sup>2</sup>, 항만구역 외 8,301.38km<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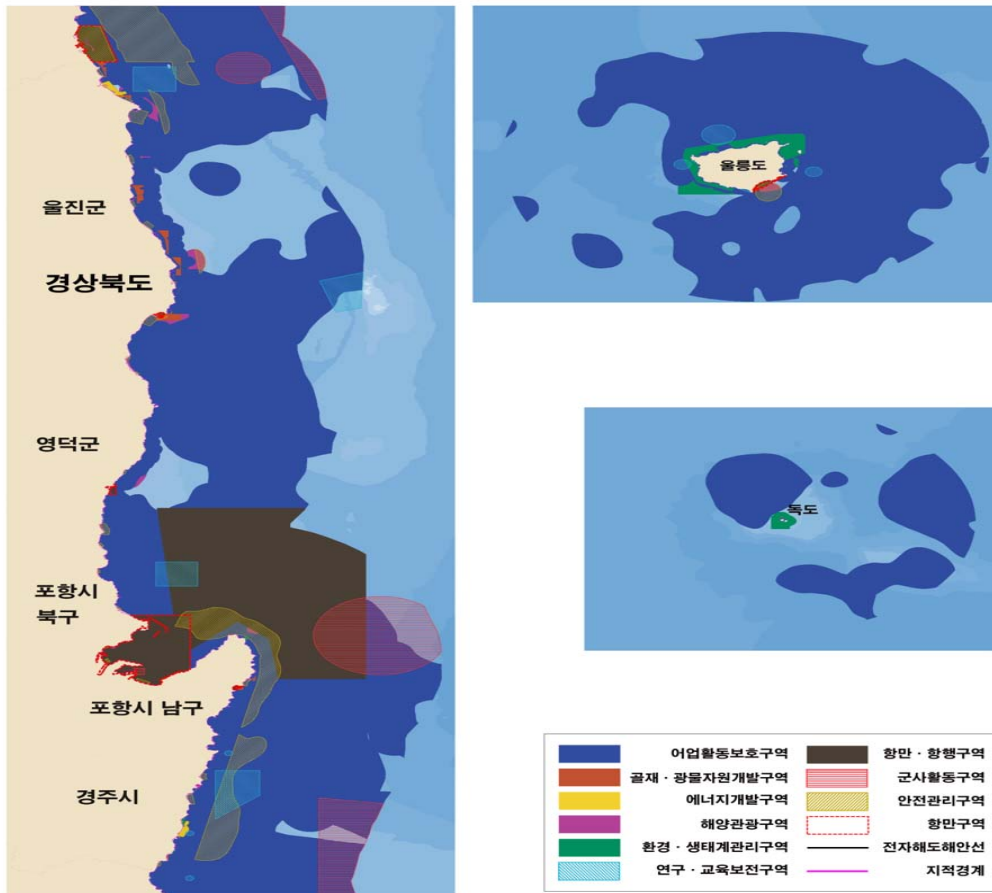


\*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범위는 해양용도구역을 효율적으로 표기하기 위해 인접 시·도의 관할구역이 일부 포함될 수 있음

## 2. 해양용도구역 결정(변경) 설명서

경북		면적(km <sup>2</sup> )	비중(%)	
합계		8,410.92	100.00	
해양 용도 구역	어업활동보호구역	4,869.00	57.89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14.43	0.17	
	에너지개발구역	5.61	0.07	
	해양관광구역	23.66	0.28	
	환경·생태계관리구역	53.34	0.63	
	항만·항행구역	770.82	9.16	
	용도 중첩 가능	연구·교육보전구역	141.06	1.68
		군사활동구역	345.84	4.11
		안전관리구역	235.61	2.80
	(중복구역)	(639.92)	(7.61)	
소계	5,819.45	69.19		
유보해역		2,591.47	30.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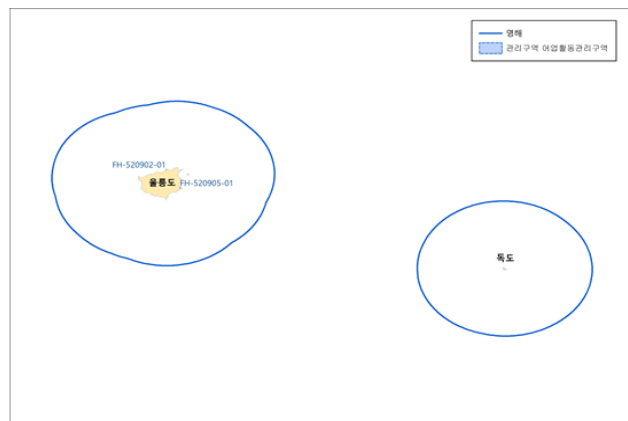
### <경북 해양용도구역 지정 현황>



### 3. 해양용도구역 해양공간관리 사항 설명서

○ 해양용도구역 내 관리구역 : 17개소

- 어업활동보호구역(8개소), 해양관광구역(1개소), 환경·생태계관리구역(4개소), 항만·항행구역(4개소)



<경북 해양용도구역 내 관리구역 현황>

구분		면적 (km2)	중첩 용도	관리의 우선순위	상세 설명
구역	관리코드				
어업활동보호구역 (8개)	FH-521114-01	4.00	골재광물 (채굴권)	① 어업활동 ② 골재광물	<input type="checkbox"/> 수산자원관리수면과 면허어장이 존재하여 어업 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채굴권(규사)이 설정된 광구 존재
	FH-520207-01	0.18	해양관광 (레저관광구)	① 어업활동 ② 해양관광	<input type="checkbox"/> 면허어장이 존재하여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레저관광구(장길리 뉴시공원)가 존재
	FH-520902-01	0.01	해양관광 (레저관광구)	① 어업활동 ② 해양관광	<input type="checkbox"/> 면허어장이 존재하여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레저관광구(울릉도 천부해중전망대)가 존재
	FH-520905-01	0.11	해양관광 (레저관광구)	① 어업활동 ② 해양관광	<input type="checkbox"/> 면허어장이 존재하여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레저관광구(행남등대 스카이 힐링로드)가 존재
	FH-521130-01	0.05	해양관광 (레저관광구)	① 어업활동 ② 해양관광	<input type="checkbox"/> 면허어장이 존재하여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레저관광구(이가리돛전망대)가 존재
	FH-521130-02	0.11	해양관광 (해수욕장구)	① 어업활동 ② 해양관광	<input type="checkbox"/> 어항(이가리항)이 존재하여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해수욕장구(월포해수욕장)가 존재
	FH-521130-03	0.54	해양관광 (레저관광구) 항만항행 (무역항)	① 어업활동 ② 해양관광 ③ 항만항행	<input type="checkbox"/> 면허어장이 존재하여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레저관광구(이가리돛전망대)가 존재 <input type="checkbox"/> 무역항(포항항)내측 수역
	FH-521131-01	0.09	해양관광 (레저관광구)	① 어업활동 ② 해양관광	<input type="checkbox"/> 면허어장과 어항(호미곶항)이 존재하여 어업활동 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레저관광구(호미반도 해안 둘레길)가 존재
해양관광구역 (1개)	TO-521114-01	0.18	골재광물 (채굴권) 항만항행 (연안항)	① 해양관광 ② 골재광물 ③ 항만항행	<input type="checkbox"/> 후포 마리나항만이 존재하여 해양관광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채굴권(규사)이 설정된 광구 위치 <input type="checkbox"/> 연안항(후포항)이 위치하고 있음
환경·생태계 관리구역 (4개)	EC-521131-01	0.26	어업활동 (면허어장) 해양관광 (레저관광)	① 환경생태 ② 어업활동 ② 해양관광	<input type="checkbox"/> 경관보호구(문무대왕암)로 지정되어 환경·생태계 관리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면허어장이 존재 <input type="checkbox"/> 레저관광구(호미반도 해안 둘레길)가 존재
	EC-520214-01	0.46	어업활동 (면허어장)	① 환경생태 ② 어업활동	<input type="checkbox"/> 경관보호구(문무대왕암)로 지정되어 환경·생태계 관리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면허어장이 존재
	EC-520214-02	0.12	어업활동 (면허어장)	① 환경생태 ② 어업활동	<input type="checkbox"/> 천연기념물(주상절리)로 지정되어 환경·생태계 관리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면허어장이 존재

구분		면적 (km2)	중첩 용도	관리의 우선순위	상세 설명
구역	관리코드				
	EC-520214-03	0.03	어업활동 (면허어장) 골재광물 (채굴권)	① 환경생태 ② 어업활동 ③ 골재광물	<input type="checkbox"/> 경주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환경·생태계관리 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면허어장이 존재 <input type="checkbox"/> 채굴권(고령도)이 설정된 광구 위치
항만·항행구역 (4개)	SS-521114-01	0.72	골재광물 (채굴권)	① 항만항행 ② 골재광물	<input type="checkbox"/> 연안항(후포항)이 지정되어 항만항행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채굴권(규사)이 설정된 광구 위치 - 등록번호 58267(허가 기간 : 2018.10.1. ~ 2038.9.30.), 등록번호 65141(허가 기간 : 2019.6.1. ~ 2039.5.31.)
	SS-521130-01	0.27	골재광물 (채굴권)	① 항만항행 ② 골재광물	<input type="checkbox"/> 무역항(포항항)이 지정되어 항만항행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채굴권(규사)이 설정된 광구 위치 - 등록번호 59002(허가 기간 : 2015.12.1. ~ 2038.11.30.), 등록번호 76707(허가 기간 : 2015.5.4. ~ 2022.4.6.), 등록번호 48910(허가 기간 : 2015.4.7. ~ 2042.4.6.)
	SS-521130-02	1.79	골재광물 (채굴권)	① 항만항행 ② 골재광물	<input type="checkbox"/> 무역항(포항항)이 지정되어 항만항행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채굴권(고령도)이 설정된 광구 위치 - 등록번호 45680(허가 기간 : 2017.7.1. ~ 2037.06.30.)
	SS-521130-03	3.92	어업활동 (어업면허)	① 항만항행 ② 어업활동	<input type="checkbox"/> 무역항(포항항)이 지정되어 항만항행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면허어장(한정면허)이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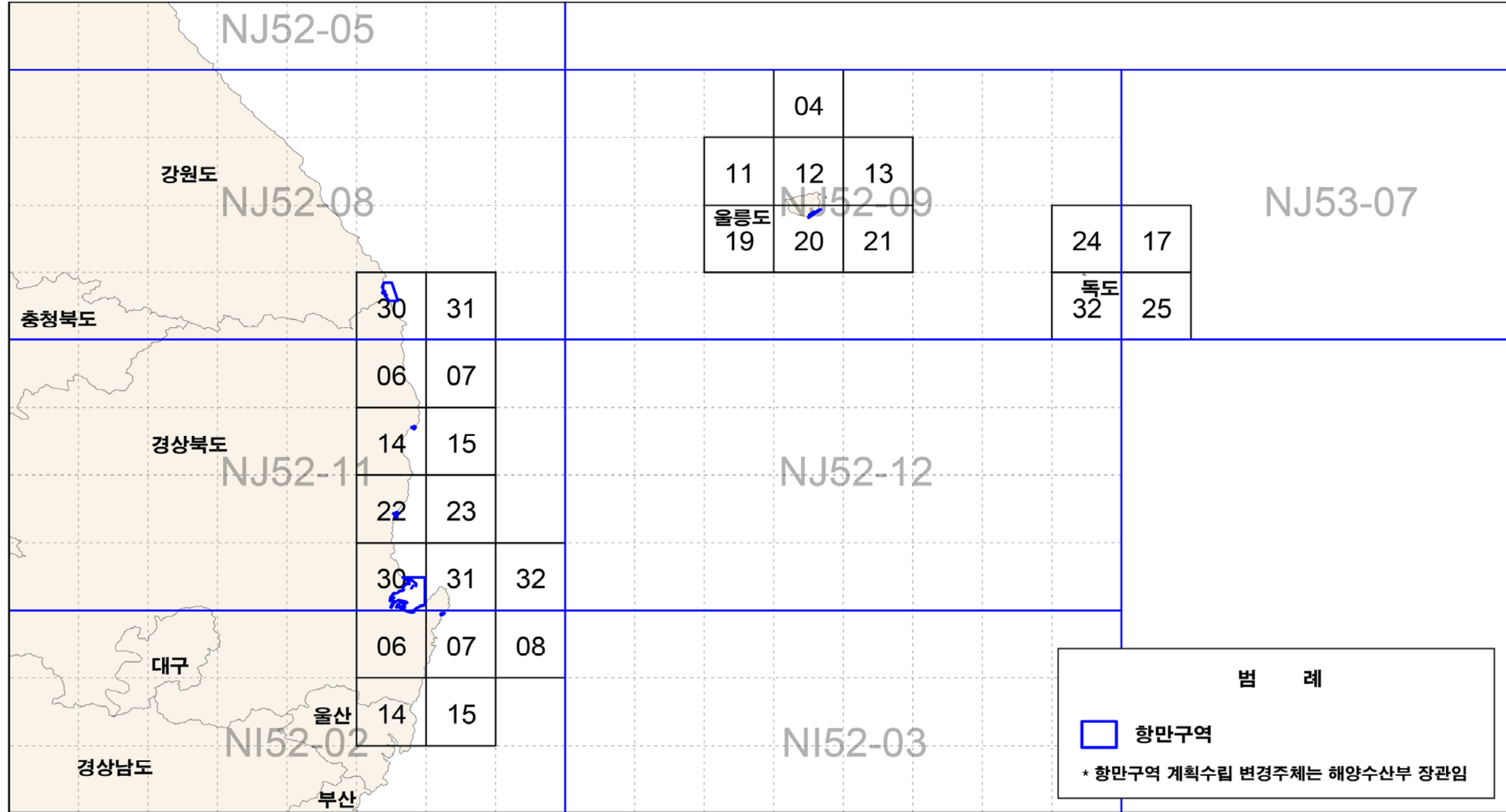
# 경북 해양공간관리계획도

\* 별첨





# 경북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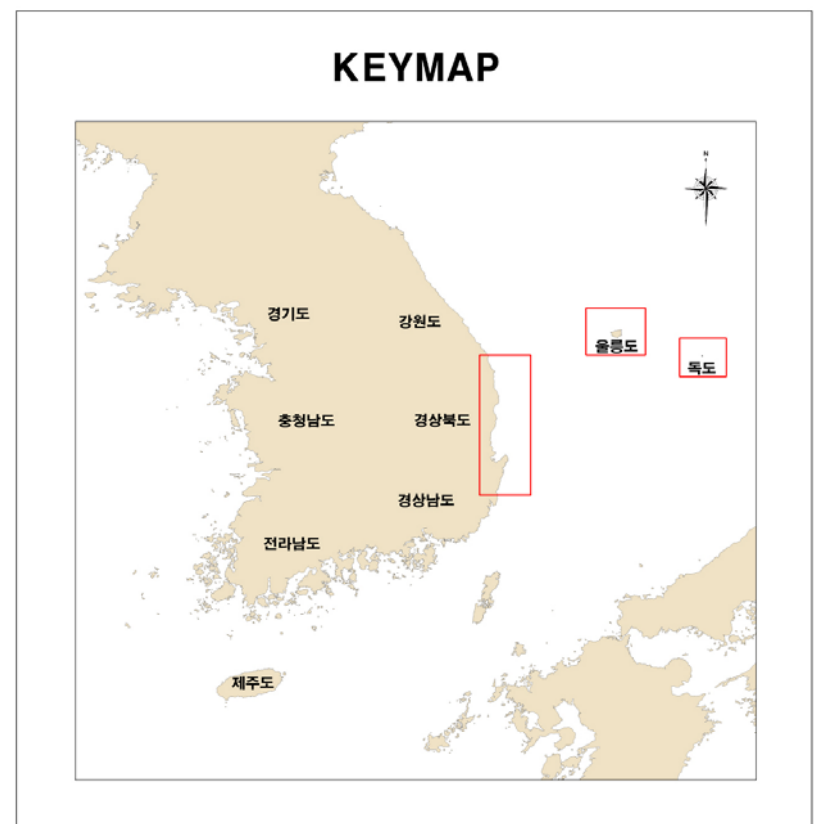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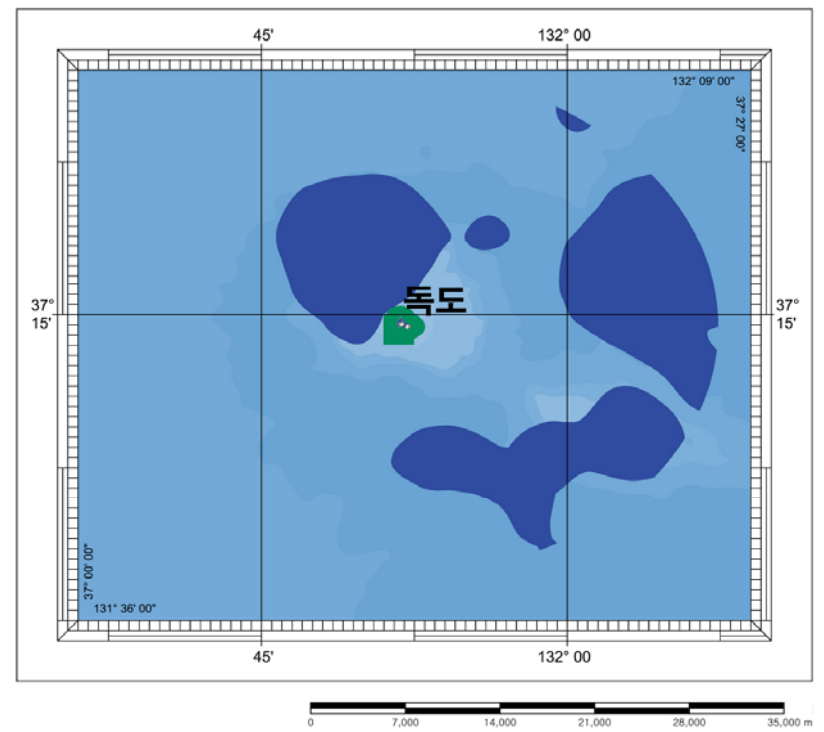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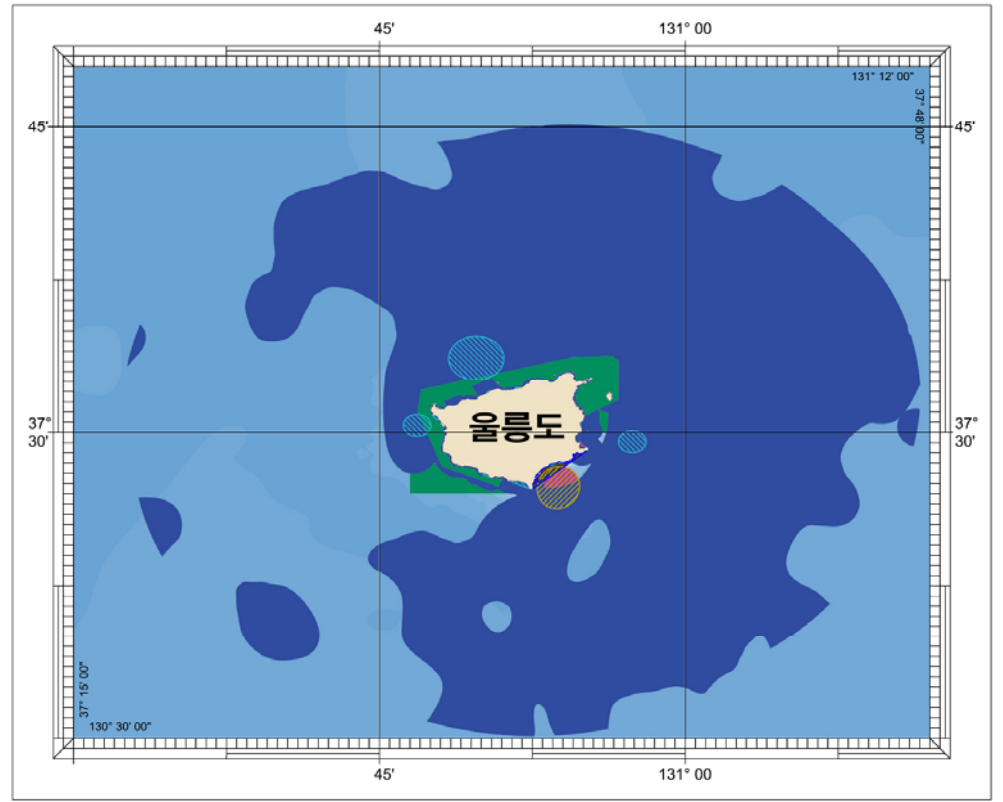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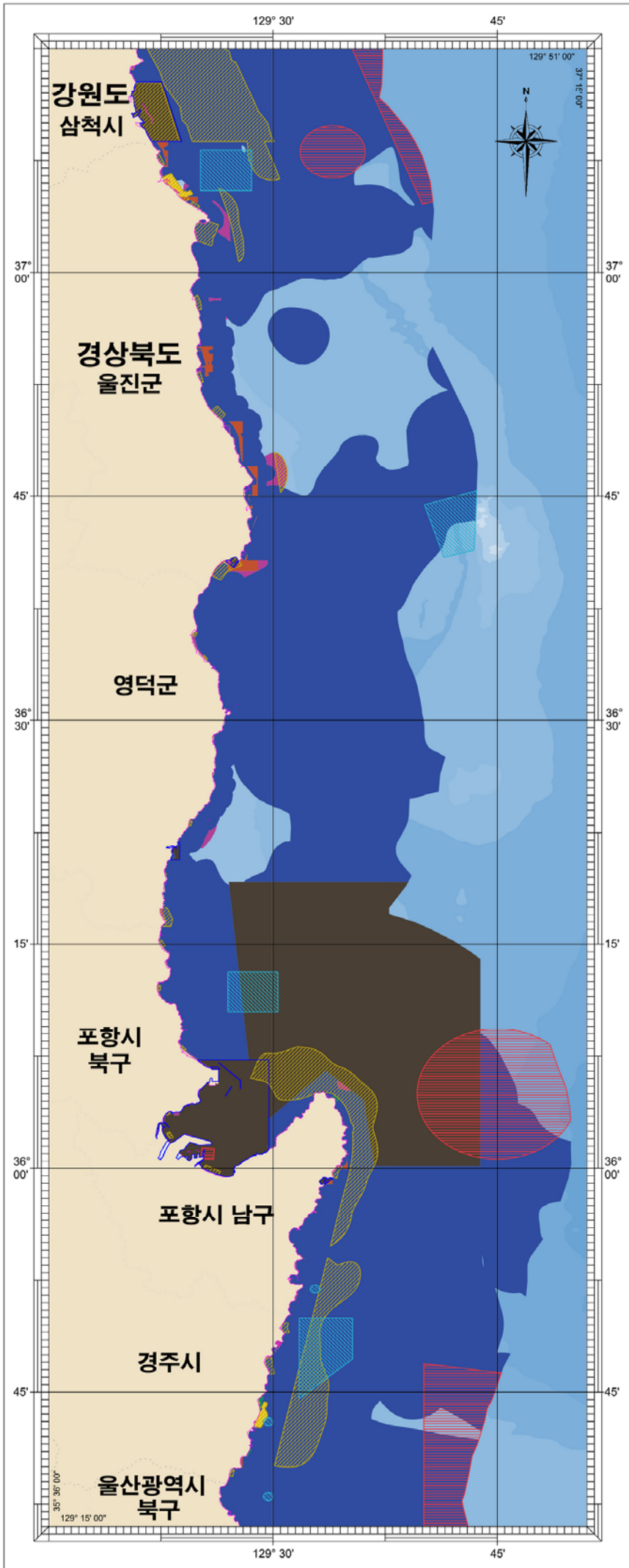


※ 해양공간관리계획 관련 참고사항

1. 본 도면은 해양용도구역을 효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인접 시·도의 육지부와 관할 해역이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해양용도구역에 관한 최신 자료 및 상세한 정보는 해양공간통합관리정보시스템(www.msp.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북 해양공간관리계획 총괄도



범례			
	어업활동보호구역		항만·항정구역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군사활동구역
	에너지개발구역		안전관리구역
	해양관광구역		항만구역
	환경·생태계관리구역		전자해도해안선
	연구·교육보존구역		지적경계

※ 해양공간관리계획 관련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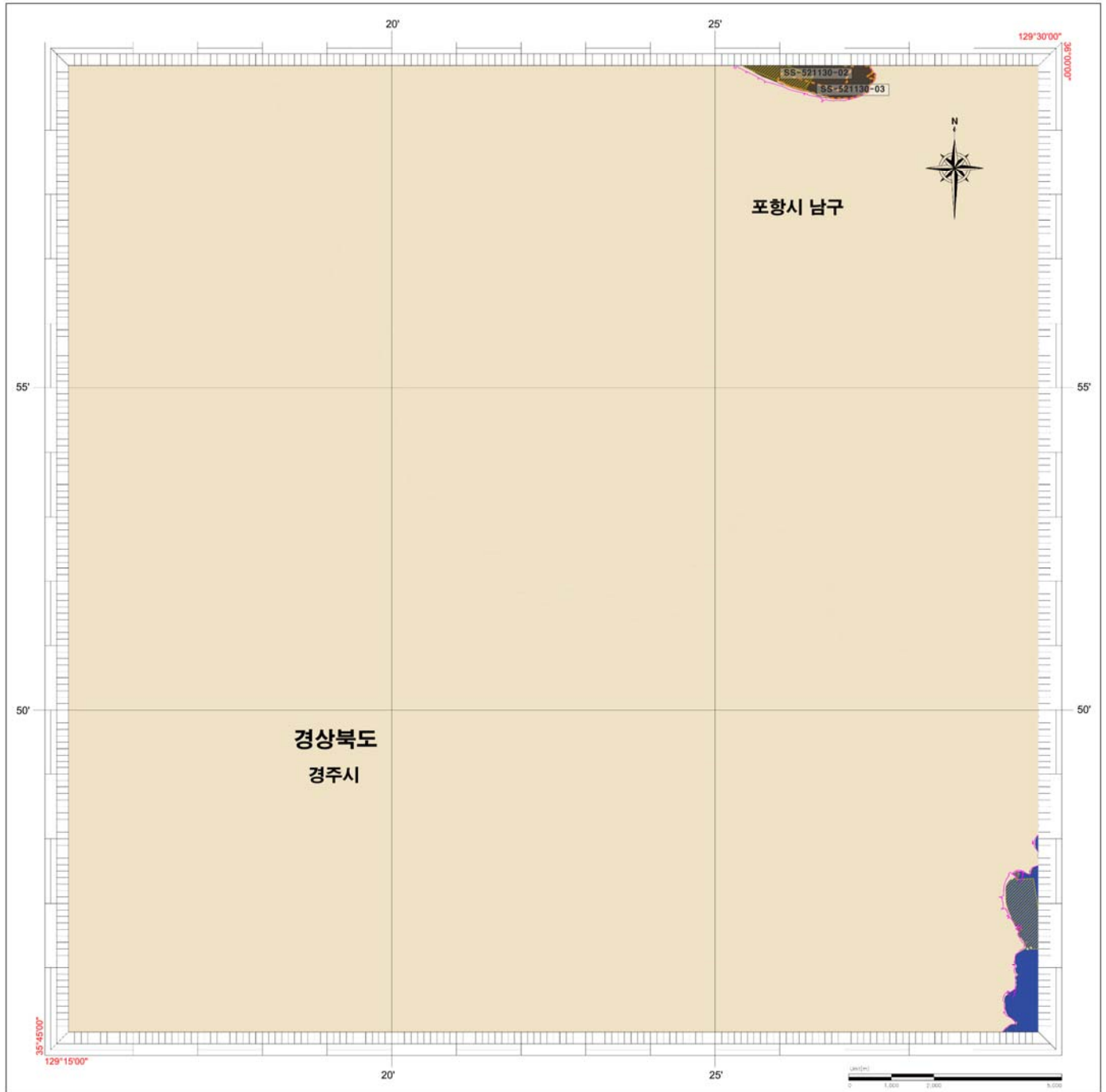
- 본 도면은 해양용도구역을 효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인접 시·도의 육지부와 관할 해역이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해양용도구역에 관한 최신 자료 및 상세한 정보는 해양공간통합관리정보시스템 ([www.msp.go.kr](http://www.msp.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해양용도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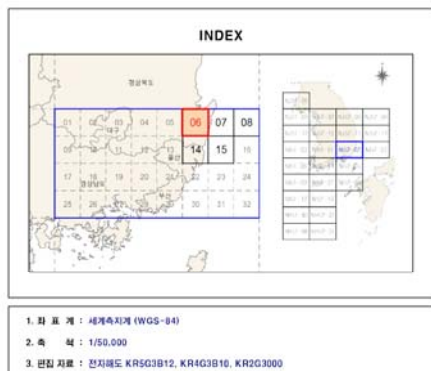


NI52-02-06



**범례**

	어업활동보존구역
	문화·관광자원개발구역
	에너지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방산·생태계관리구역
	연구·교육보존구역
	방파·항만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
	전자해도제한선
	지적경계
	관리구역



**관리구역 상세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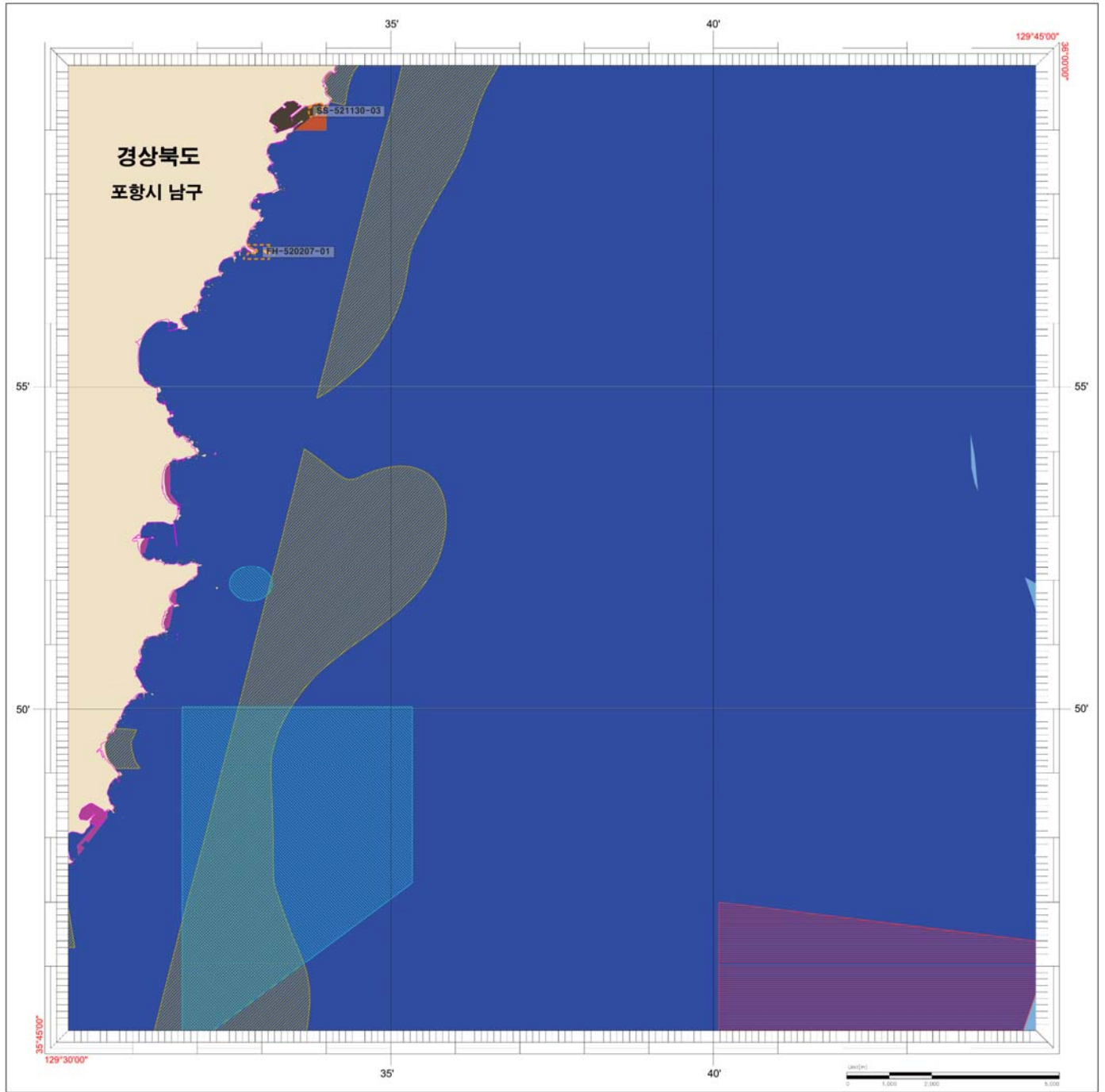
구분	관리코드	면적(㎡)	종류	관리부수인용처	상세설명	비고
포항·포항구	06-01-130-02	1.99	군사활동 (14.36%)	국방부	국방부 1부 관리구역 지정(국방부 2017.7.11. 2017.06.30)	
포항·포항구	06-01-130-03	3.99	군사활동 (9.99%)	국방부	국방부 1부 관리구역 지정(국방부 2017.7.11. 2017.06.30)	

\*참고사항

\* 해양공간계획도는 해양용도구역의 위치와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제작된 도면입니다. 해양공간계획도 상 해양용도구역은 지적경계를 기준으로 제작되었고, 해도에서 추출한 해안선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적도와 해안선의 경계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관계로 일부 지역에서는 해양용도구역의 경계가 해안선과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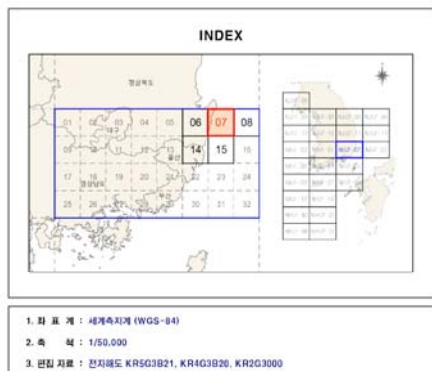


# 해양용도구역



**범례**

	어업활동보조구역
	문화·관광자원개발구역
	에너지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해양생태계관리구역
	연구·교육보존구역
	방파·항행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
	경자해안제한선
	지적경계
	관리구역



**관리구역 상세정보**

구분	관리구역	면적(㎡)	종류	관리부수신순위	상세설명	비고
해양관광보조구역	06-1	0.18	해양관광	1	국립해양수목원 조성사업(국립해양수목원 조성사업)에 따른 관광자원개발구역 지정	
연안·교육보존구역	07	3.90	연안·교육보존	1	국립해양수목원 조성사업(국립해양수목원 조성사업)에 따른 연안·교육보존구역 지정	
방파·항행구역	08	0.18	방파·항행	1	국립해양수목원 조성사업(국립해양수목원 조성사업)에 따른 방파·항행구역 지정	
안전관리구역	09	0.18	안전관리	1	국립해양수목원 조성사업(국립해양수목원 조성사업)에 따른 안전관리구역 지정	
군사활동구역	10	0.18	군사활동	1	국립해양수목원 조성사업(국립해양수목원 조성사업)에 따른 군사활동구역 지정	
에너지개발구역	11	0.18	에너지개발	1	국립해양수목원 조성사업(국립해양수목원 조성사업)에 따른 에너지개발구역 지정	
어업활동보조구역	12	0.18	어업활동보조	1	국립해양수목원 조성사업(국립해양수목원 조성사업)에 따른 어업활동보조구역 지정	
문화·관광자원개발구역	13	0.18	문화·관광자원개발	1	국립해양수목원 조성사업(국립해양수목원 조성사업)에 따른 문화·관광자원개발구역 지정	
해양생태계관리구역	14	0.18	해양생태계관리	1	국립해양수목원 조성사업(국립해양수목원 조성사업)에 따른 해양생태계관리구역 지정	
연안·교육보존구역	15	0.18	연안·교육보존	1	국립해양수목원 조성사업(국립해양수목원 조성사업)에 따른 연안·교육보존구역 지정	
방파·항행구역	16	0.18	방파·항행	1	국립해양수목원 조성사업(국립해양수목원 조성사업)에 따른 방파·항행구역 지정	
군사활동구역	17	0.18	군사활동	1	국립해양수목원 조성사업(국립해양수목원 조성사업)에 따른 군사활동구역 지정	
안전관리구역	18	0.18	안전관리	1	국립해양수목원 조성사업(국립해양수목원 조성사업)에 따른 안전관리구역 지정	
에너지개발구역	19	0.18	에너지개발	1	국립해양수목원 조성사업(국립해양수목원 조성사업)에 따른 에너지개발구역 지정	
어업활동보조구역	20	0.18	어업활동보조	1	국립해양수목원 조성사업(국립해양수목원 조성사업)에 따른 어업활동보조구역 지정	
문화·관광자원개발구역	21	0.18	문화·관광자원개발	1	국립해양수목원 조성사업(국립해양수목원 조성사업)에 따른 문화·관광자원개발구역 지정	
해양생태계관리구역	22	0.18	해양생태계관리	1	국립해양수목원 조성사업(국립해양수목원 조성사업)에 따른 해양생태계관리구역 지정	
연안·교육보존구역	23	0.18	연안·교육보존	1	국립해양수목원 조성사업(국립해양수목원 조성사업)에 따른 연안·교육보존구역 지정	
방파·항행구역	24	0.18	방파·항행	1	국립해양수목원 조성사업(국립해양수목원 조성사업)에 따른 방파·항행구역 지정	
군사활동구역	25	0.18	군사활동	1	국립해양수목원 조성사업(국립해양수목원 조성사업)에 따른 군사활동구역 지정	
안전관리구역	26	0.18	안전관리	1	국립해양수목원 조성사업(국립해양수목원 조성사업)에 따른 안전관리구역 지정	
에너지개발구역	27	0.18	에너지개발	1	국립해양수목원 조성사업(국립해양수목원 조성사업)에 따른 에너지개발구역 지정	
어업활동보조구역	28	0.18	어업활동보조	1	국립해양수목원 조성사업(국립해양수목원 조성사업)에 따른 어업활동보조구역 지정	
문화·관광자원개발구역	29	0.18	문화·관광자원개발	1	국립해양수목원 조성사업(국립해양수목원 조성사업)에 따른 문화·관광자원개발구역 지정	
해양생태계관리구역	30	0.18	해양생태계관리	1	국립해양수목원 조성사업(국립해양수목원 조성사업)에 따른 해양생태계관리구역 지정	
연안·교육보존구역	31	0.18	연안·교육보존	1	국립해양수목원 조성사업(국립해양수목원 조성사업)에 따른 연안·교육보존구역 지정	
방파·항행구역	32	0.18	방파·항행	1	국립해양수목원 조성사업(국립해양수목원 조성사업)에 따른 방파·항행구역 지정	

**\* 참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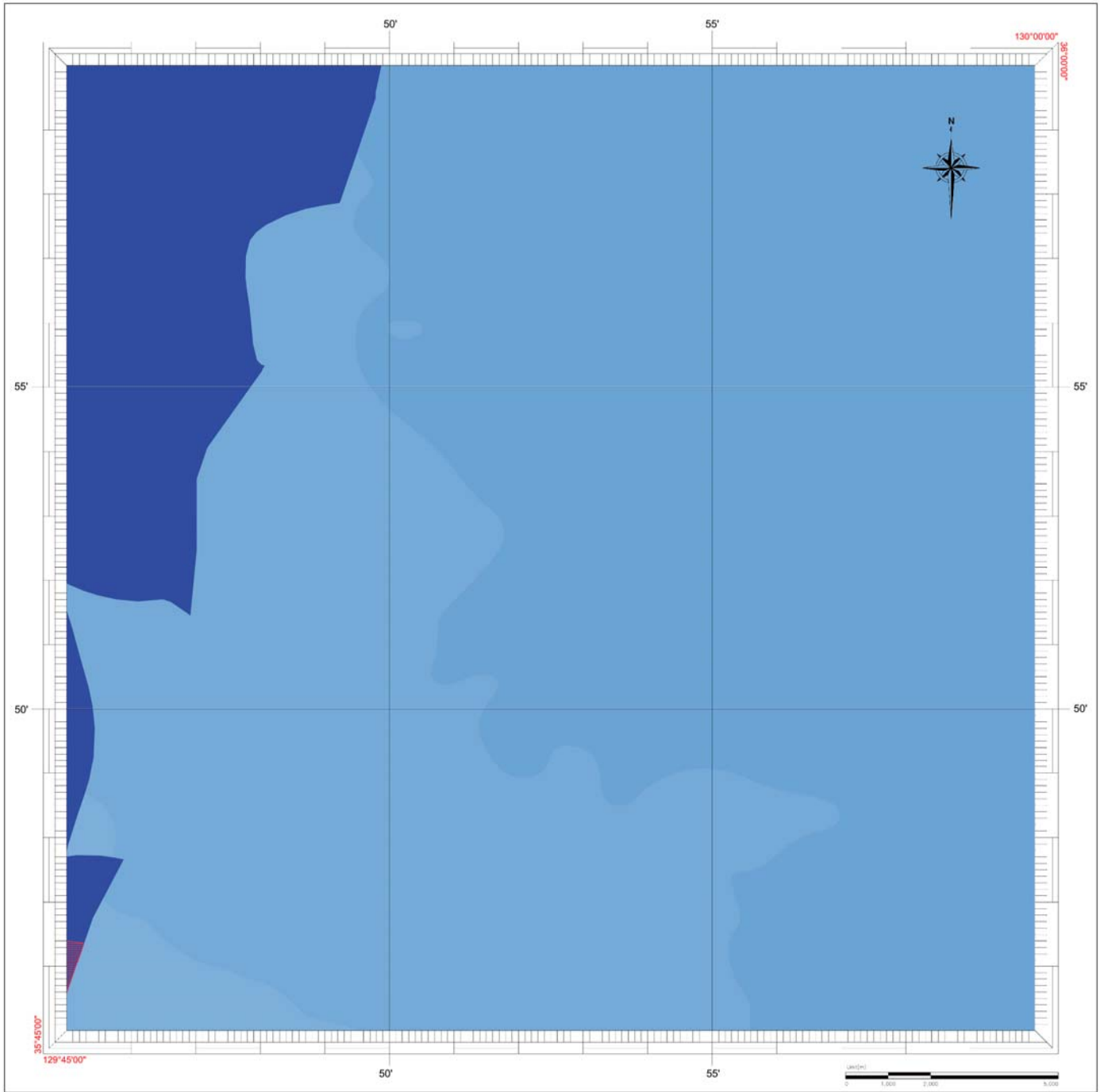
해양공간계획도는 해양용도구역의 위치와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제작된 도면입니다. 해양공간계획도 상 해양용도구역은 지적경계를 기준으로 제작되었고, 해도에서 추출한 해안선과 병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적도와 해안선의 경계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관계로 일부 지역에서는 해양용도구역의 경계가 해안선과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 해양용도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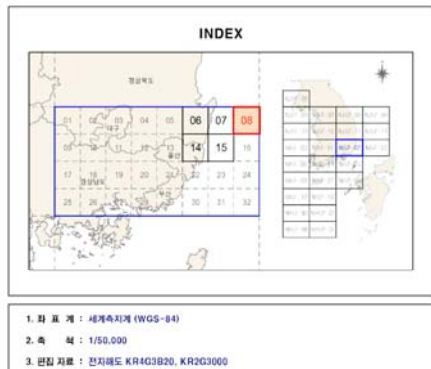


NI52-02-08



**범례**

	어업활동보존구역
	문화·관광자원개발구역
	에너지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방산·생태계관리구역
	연구·교육보존구역
	방파·항만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
	전지해도제한선
	지역경계
	관리구역



**관리구역 상세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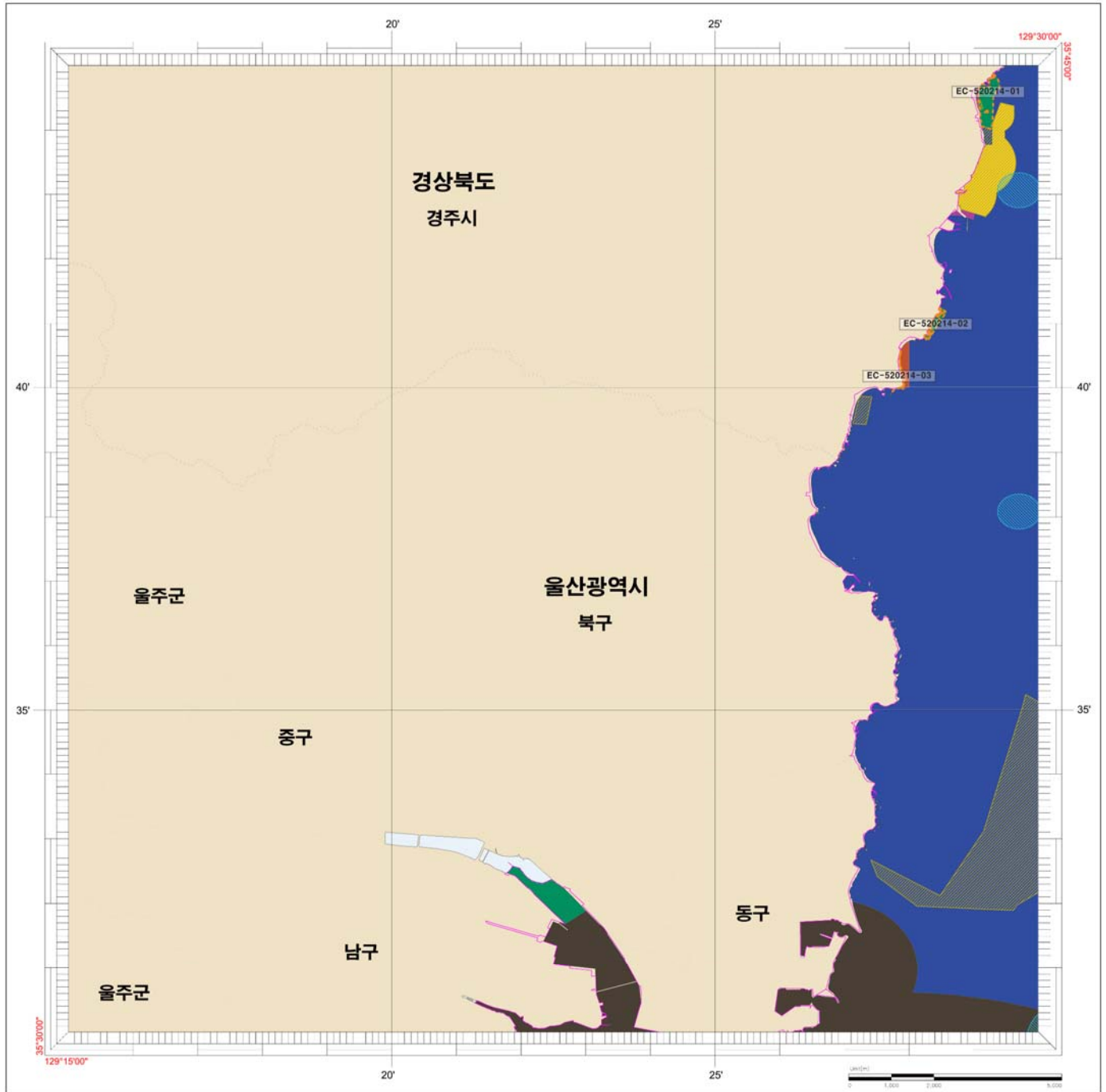
구분	관리코드	면적(㎡)	종류명	관리부수인용비	상세설명	비고

\* 참고 사항

해양공간계획도는 해양용도구역의 위치와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제작된 도면입니다. 해양공간계획도 상 해양용도구역은 지역경계를 기준으로 제작되었고, 해도에서 추출한 해안선과 병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역도와 해안선의 경계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관계로 일부 지역에서는 해양용도구역의 경계가 해안선과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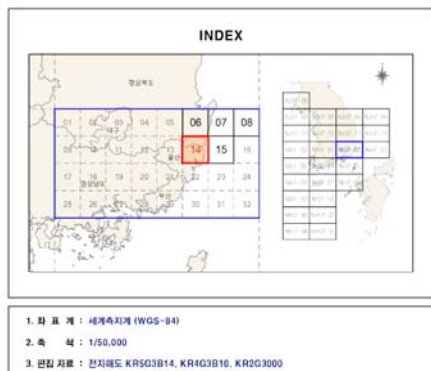


# 해양용도구역



**범례**

	어업활동보존구역
	문화·관광자원개발구역
	해안취락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방파제·생태해안관리구역
	연구·교육보존구역
	방파제·해양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
	경자해도제한선
	지적경계
	관리구역



**관리구역 상세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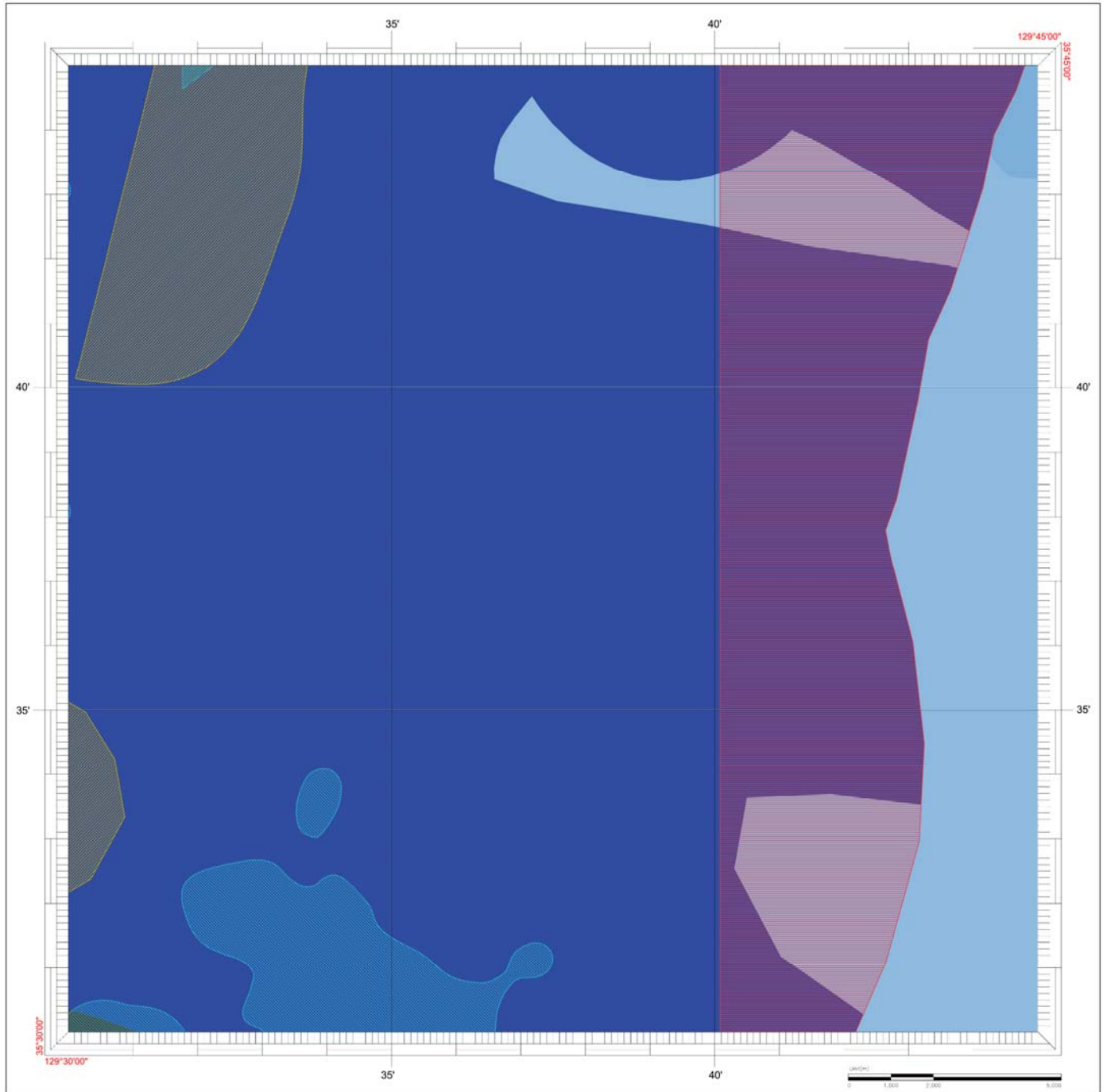
구분	관리코드	면적(㎡)	종류	관리부수	상세설명	비고
1차	060214-01	0.46	어업활동보존(해양관광)	1. 해양관광 2. 어업활동	경주시의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해양관광구역으로 지정한다.	
2차	060214-02	0.12	해양관광(해양취락)	1. 해양취락 2. 해양관광	경주시의 해양관광자원개발을 위한 해양취락구역으로 지정한다.	
3차	060214-03	0.03	해양관광(방파제)	1. 방파제 2. 해양관광	경주시의 해양관광자원개발을 위한 방파제구역으로 지정한다.	

\* 참고사항

해양공간계획도는 해양용도구역의 위치와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제작된 도면입니다. 해양공간계획도 상 해양용도구역은 지적경계를 기준으로 제작되었고, 해도에서 추출한 해안선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적도와 해안선의 경계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관계로 일부 지역에서는 해양용도구역의 경계가 해안선과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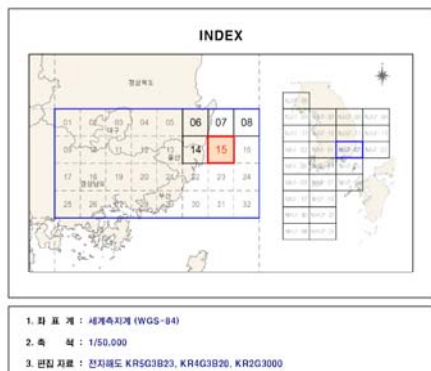


# 해양용도구역



**범례**

	어업활동보조구역
	문화·관광자원개발구역
	에너지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방산·생태계관리구역
	연구·교육보존구역
	방파·항만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
	전자해도제한선
	지적경계
	관리구역



**관리구역 상세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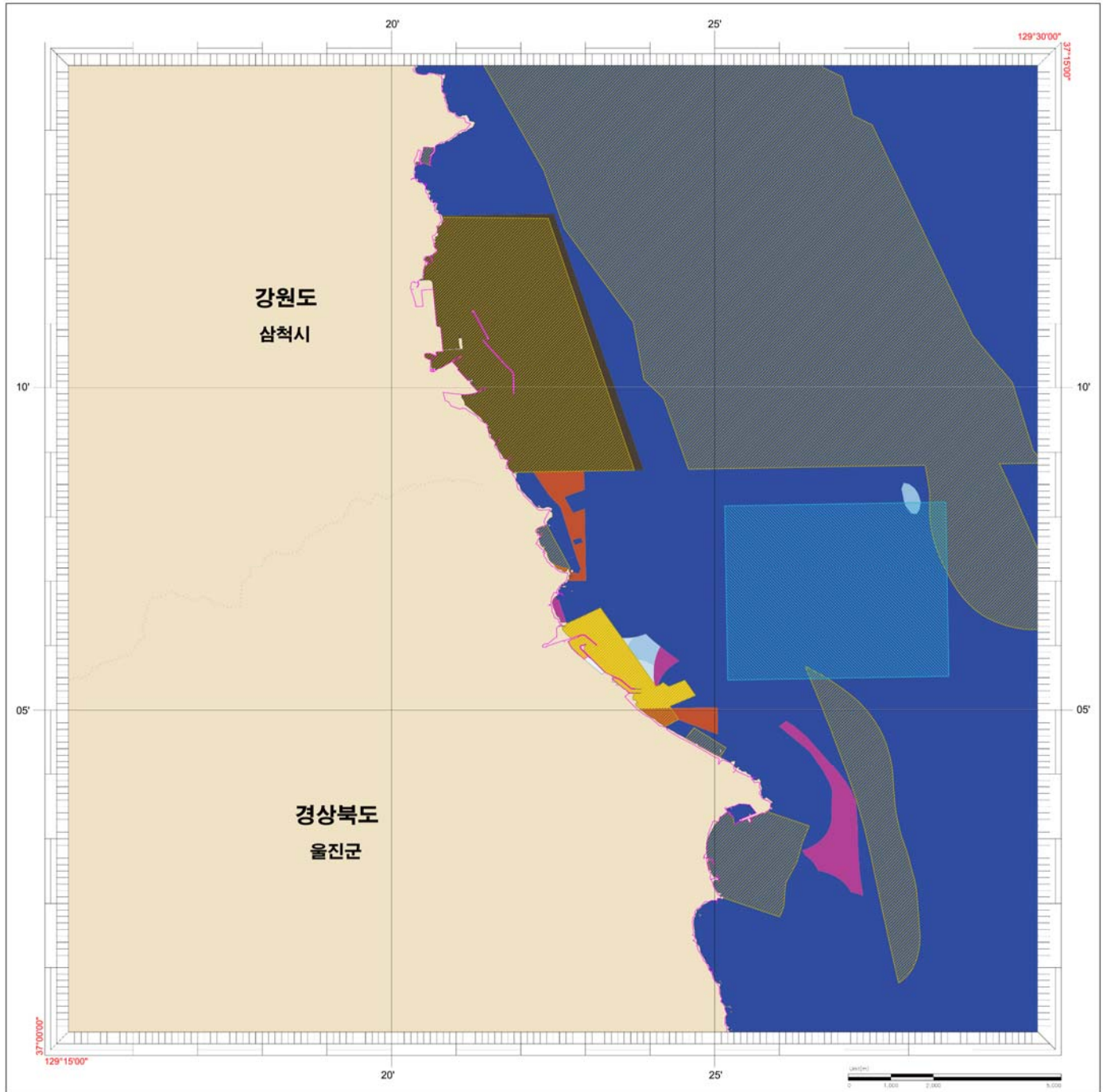
구분	관리코드	면적(㎡)	종류명	관리부동산소재	상세설명	비고

\*참고사항

• 해양공간계획도는 해양용도구역의 위치와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제작된 도면입니다. 해양공간계획도 상 해양용도구역은 지적경계를 기준으로 제작되었고, 해도에서 추출한 해안선과 병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역도와 해안선의 경계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관계로 일부 지역에서는 해양용도구역의 경계가 해안선과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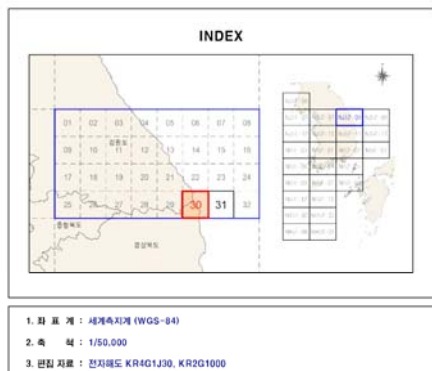


# 해양용도구역



**범례**

	어업활동보조구역
	풍채·양분자양개항구역
	해운·저항구역
	해양관광구역
	해양 생태계관리구역
	연구·교육보존구역
	방파·항행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
	전지해도제한선
	지역경계
	관리구역



**관리구역 상세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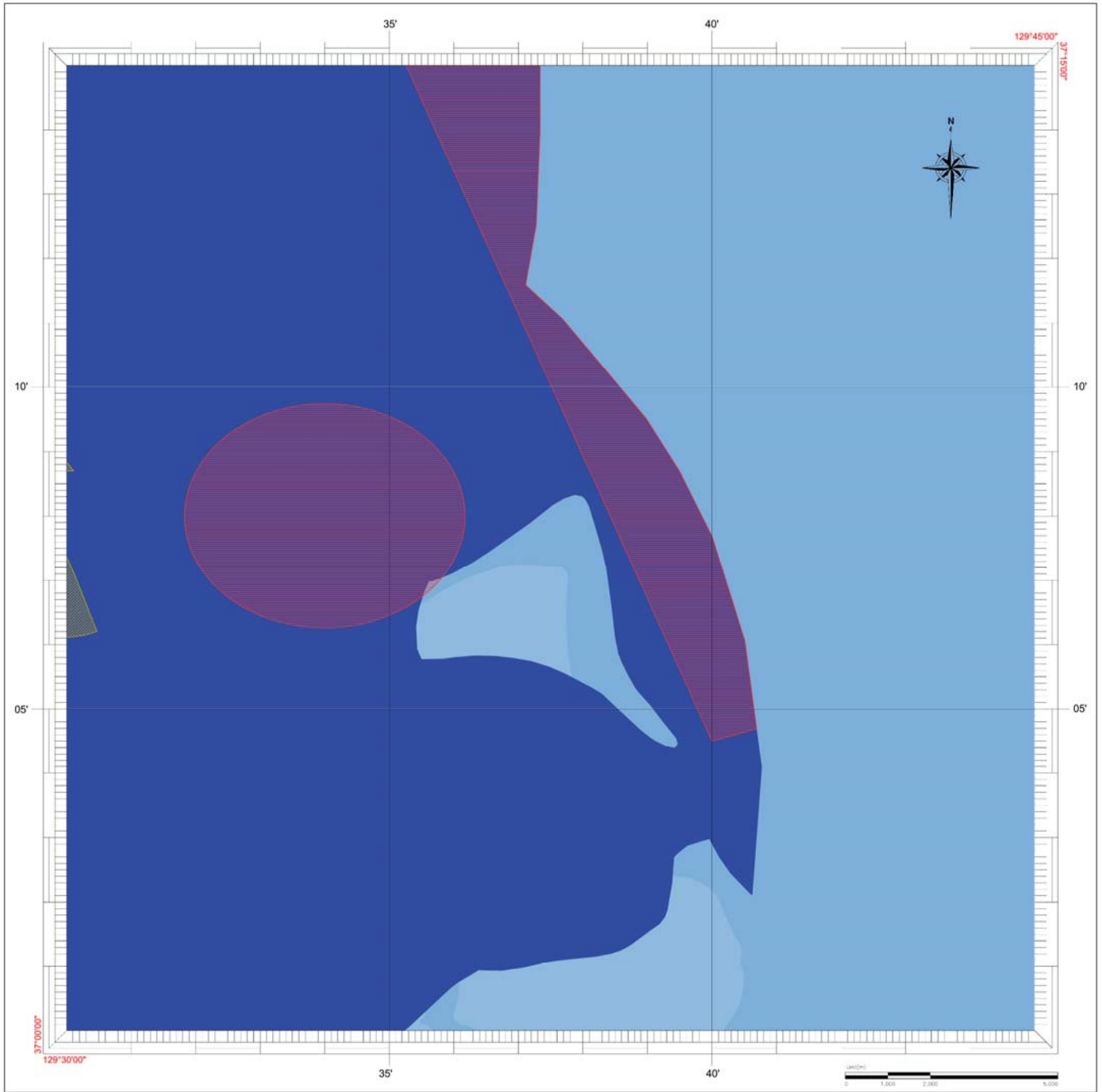
구분	관리코드	면적(㎡)	종류(용도)	관리부 부속번호	상세설명	비고

\* 참고 사항

• 해양공간계획도는 해양용도구역의 위치와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제작된 도면입니다. 해양공간계획도 상 해양용도구역은 지역경계를 기준으로 제작되었고, 해도에서 추출한 해안선과 병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역도와 해안선의 경계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관계로 일부 지역에서는 해양용도구역의 경계가 해안선과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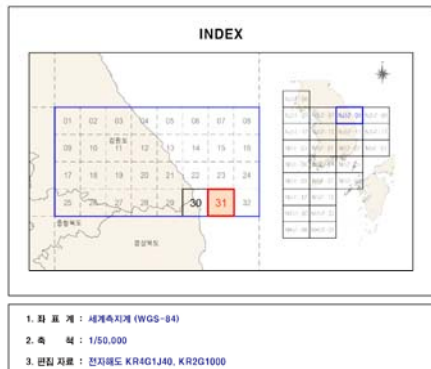


# 해양용도구역



**범례**

	어업활동보존구역
	문화·관광자원개발구역
	에너지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방파선·생태계관리구역
	연안·교역보존구역
	방파선·항만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
	전차해도제한선
	지역경계
	관리구역



**관리구역 상세정보**

구분	관리코드	면적(㎡)	종류명	관리부서	상세설명	비고

\* 참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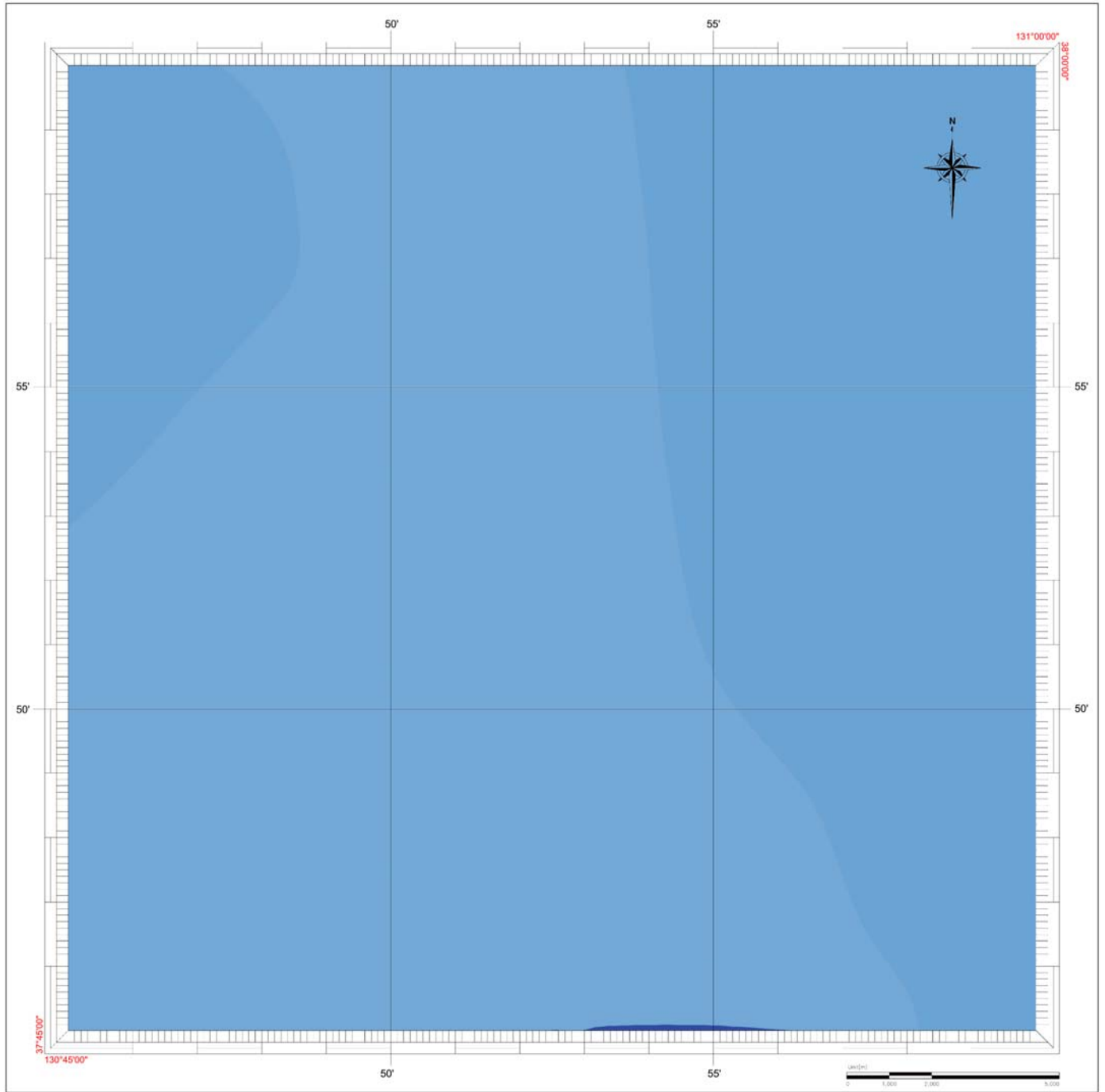
해양공간계획도는 해양용도구역의 위치와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제작된 도면입니다. 해양공간계획도 상 해양용도구역은 지역경계를 기준으로 제작되었고, 해도에서 추출한 해안선과 병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역도와 해안선의 경계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관계로 일부 지역에서는 해양용도구역의 경계가 해안선과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 해양용도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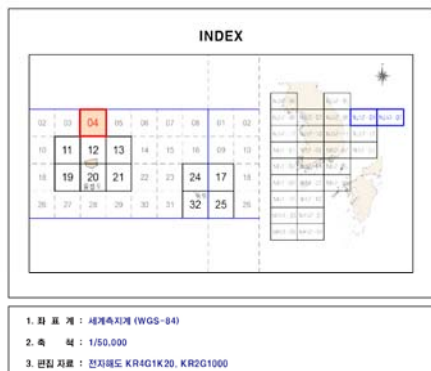


NJ52-09-04



**범례**

	어업활동보조구역
	풍채·양묘장용계항구역
	해운·수출·수입구역
	해양관광구역
	방파·생태계관리구역
	연구·교육·보존구역
	방파·항만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
	전지해도해안선
	지역경계
	관리구역



**관리구역 상세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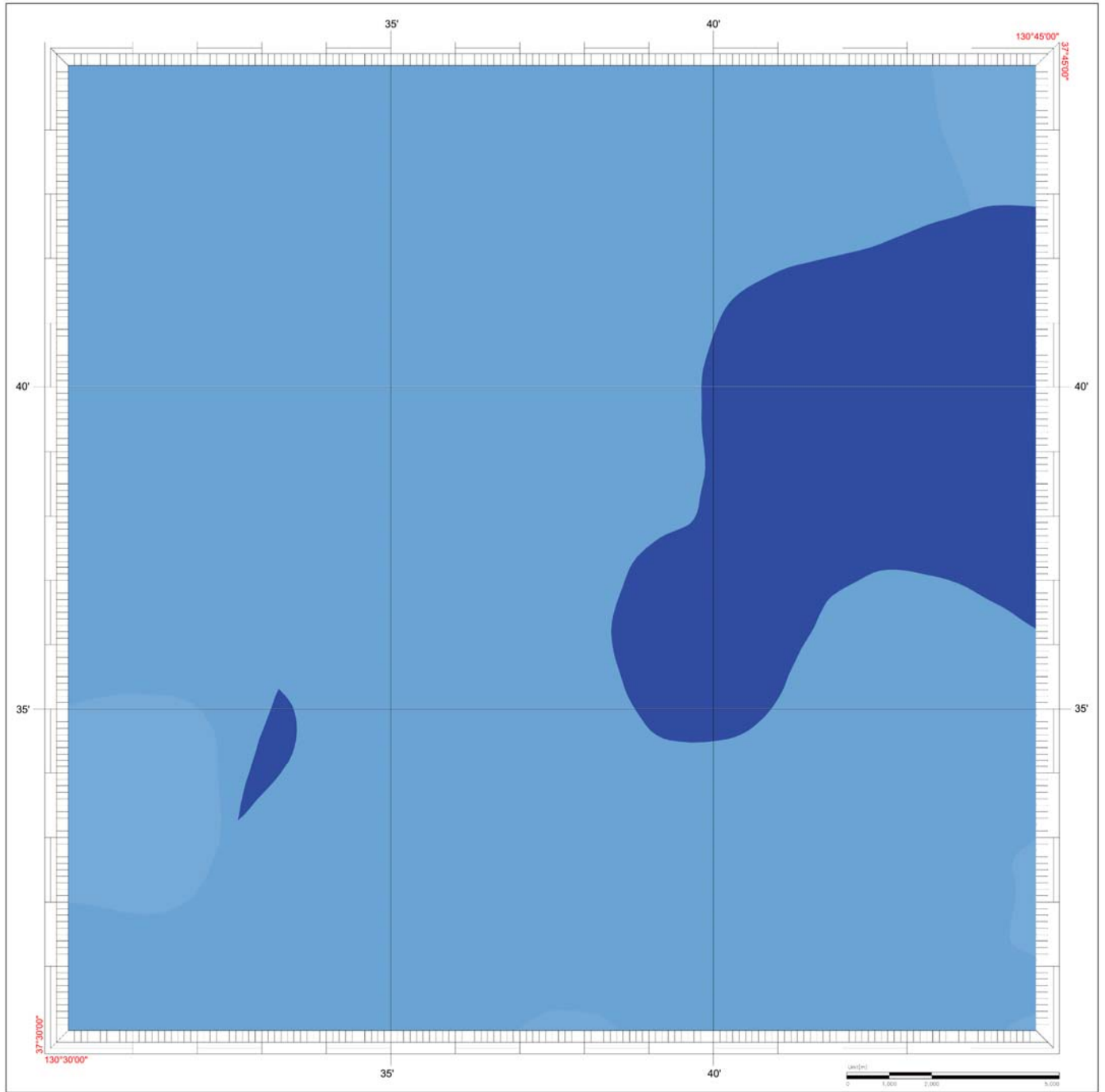
구분	관리코드	면적(㎡)	종류명	관리부서	상세설명	비고

\*참고사항

• 해양공간계획도는 해양용도구역의 위치와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제작된 도면입니다. 해양공간계획도 상 해양용도구역은 지역경계를 기준으로 제작되었고, 해도에서 추출한 해안선과 병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역도와 해안선의 경계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관계로 일부 지역에서는 해양용도구역의 경계가 해안선과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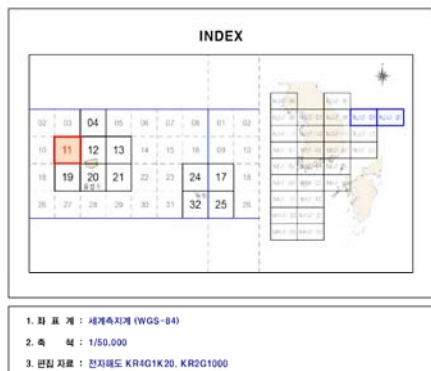


# 해양용도구역



**범례**

	어업활동보조구역
	풍채·양묘장용계류구역
	해수욕장용구역
	해양관광구역
	분양·생태계관리구역
	연구·교육보존구역
	방파·항행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
	전자해도제한선
	지역경계
	관리구역



**관리구역 상세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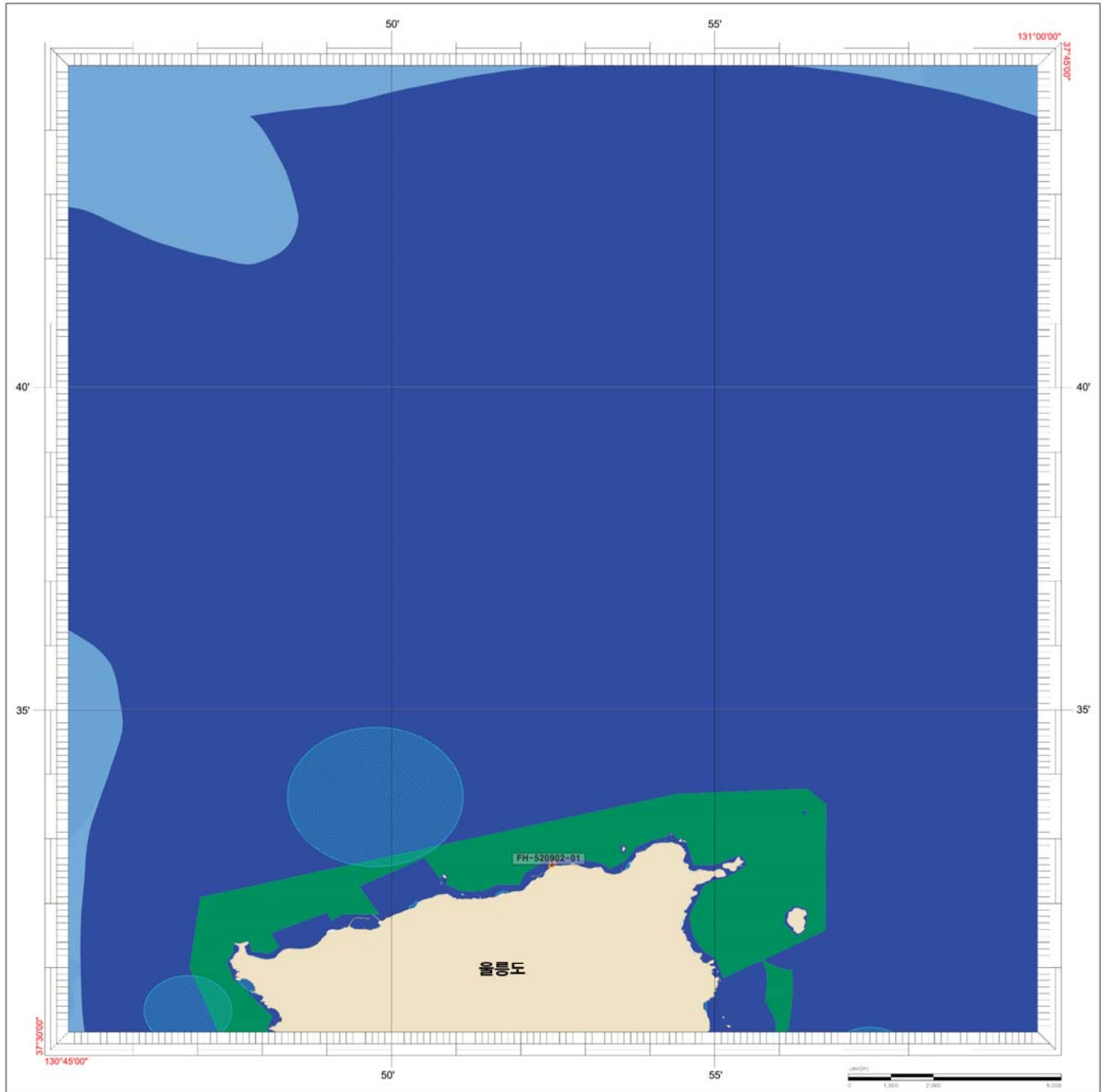
구분	관리코드	면적(㎡)	종류명	관리부서	상세설명	비고

\*참고사항

• 해양공간계획도는 해양용도구역의 위치와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제작된 도면입니다. 해양공간계획도 상 해양용도구역은 지역경계를 기준으로 제작되었고, 해도에서 추출한 해안선과 병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역도와 해안선의 경계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관계로 일부 지역에서는 해양용도구역의 경계가 해안선과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 해양용도구역



**범례**

	어업활동보조구역
	풍채·양분자양계통구역
	해수저지계통구역
	해양관광구역
	분양·생태계관리구역
	연구·교육보존구역
	휴양·관광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
	전자해도제한선
	지역경계
	관리구역

**INDEX**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09	13	
18	19	20	21	22	23	24	17	18
26	27	28	29	30	31	32	25	26

1. 좌표계 : 세계측지계 (WGS-84)  
 2. 축척 : 1/50,000  
 3. 편집자료 : 전자해도 KRS01K24, KR401K20, KR201000

**관리구역 상세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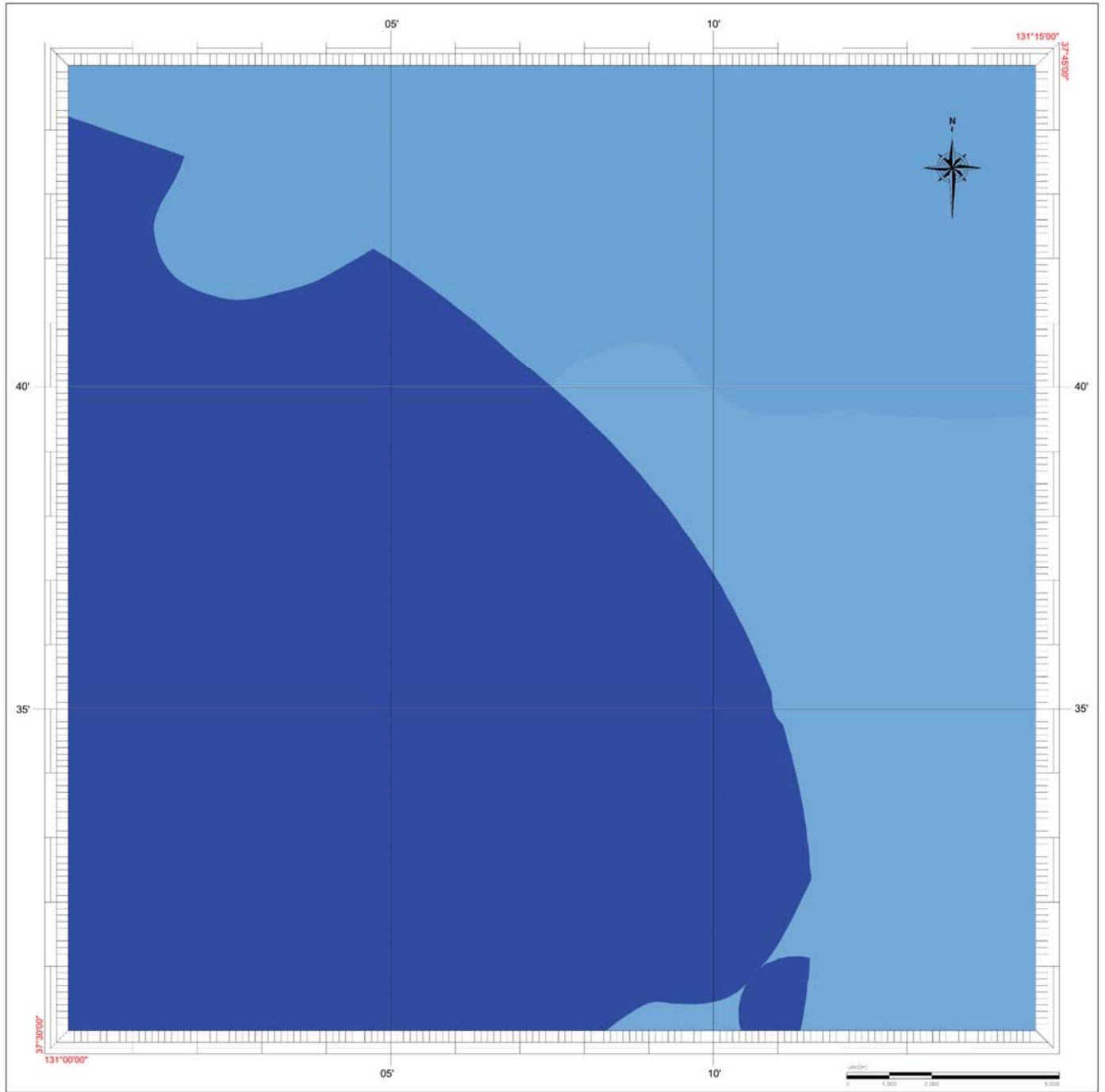
구분	관리코드	면적(㎡)	종류	관리부수인원	상세설명	비고
해양용도구역	PH-C000-01	0.00	해양관광	0	해양관광 구역에 해당되는 구역으로,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한다.	

\* 참고 사항

해양공간계획도는 해양용도구역의 위치와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제작된 도면입니다. 해양공간계획도 상 해양용도구역은 지역경계를 기준으로 제작되었고, 해도에서 추출한 제한선과 병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역도와 제한선의 경계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관계로 일부 지역에서는 해양용도구역의 경계가 제한선과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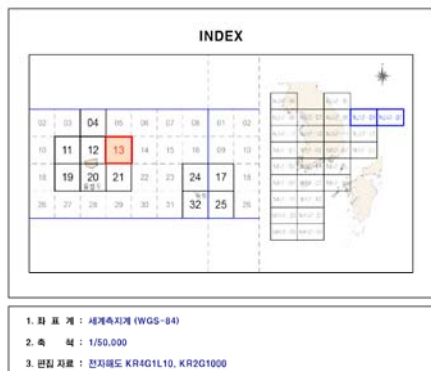


# 해양용도구역



**범례**

	어업활동보조구역
	풍채·양묘장개발구역
	해수욕장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방파·생태계관리구역
	연구·교육보존구역
	방파·해양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
	전자해도제한선
	지역경계
	관리구역



**관리구역 상세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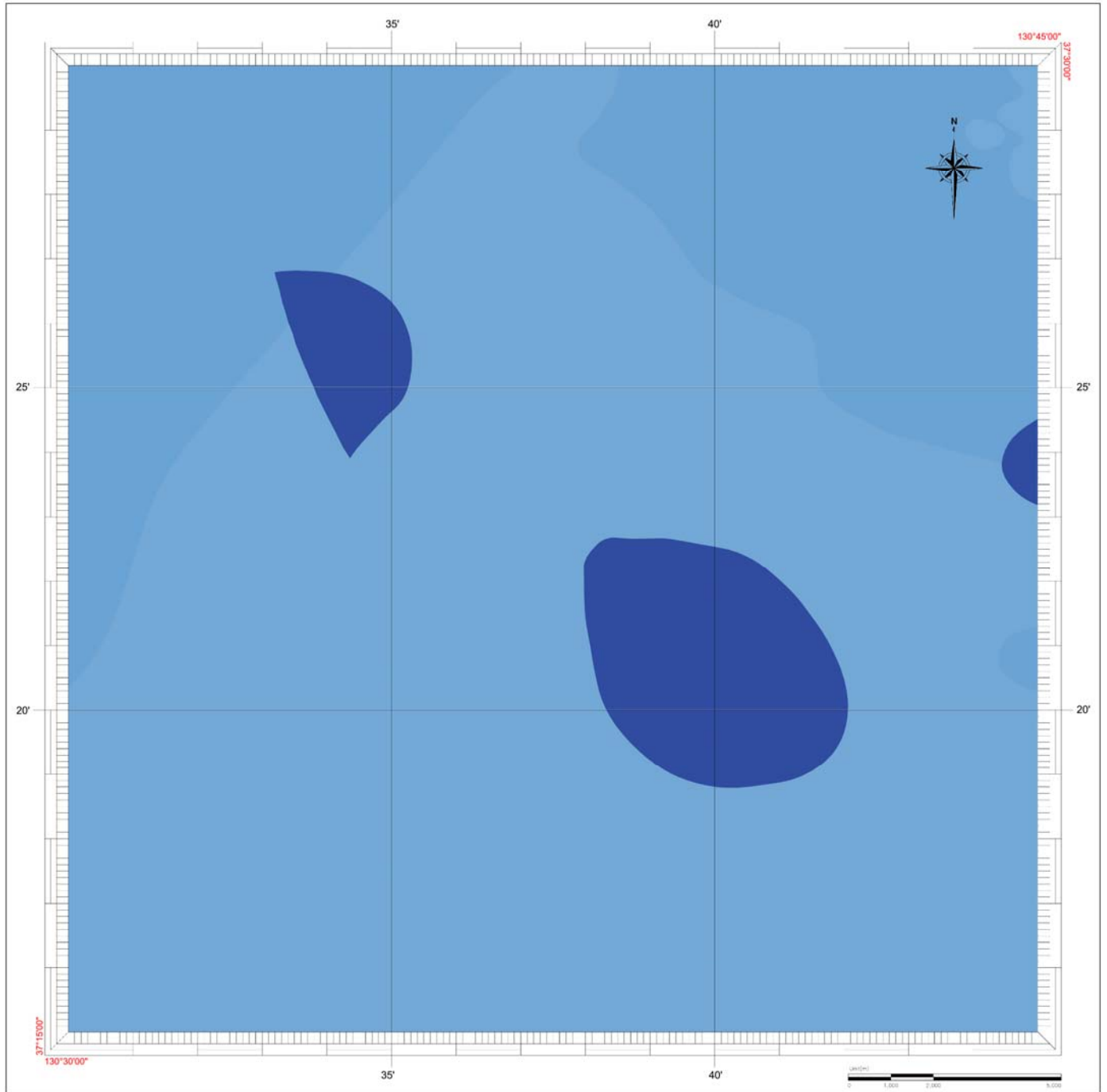
구분	관리코드	면적(㎡)	종류명	관리부서	상세설명	비고

**\*참고사항**

해양공간계획도는 해양용도구역의 위치와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제작된 도면입니다. 해양공간계획도 상 해양용도구역은 지역경계를 기준으로 제작되었고, 해도에서 추출한 제한선과 병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역도와 제한선의 경계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관계로 일부 지역에서는 해양용도구역의 경계가 제한선과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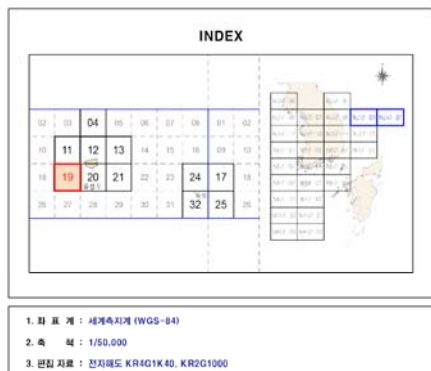


# 해양용도구역



**범례**

	어업활동보조구역
	풍채·양묘장용계류구역
	해수욕장용구역
	해양관광구역
	방파·생태계관리구역
	연구·교육보존구역
	방파·양양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
	전자해도제한선
	지역경계
	관리구역



**관리구역 상세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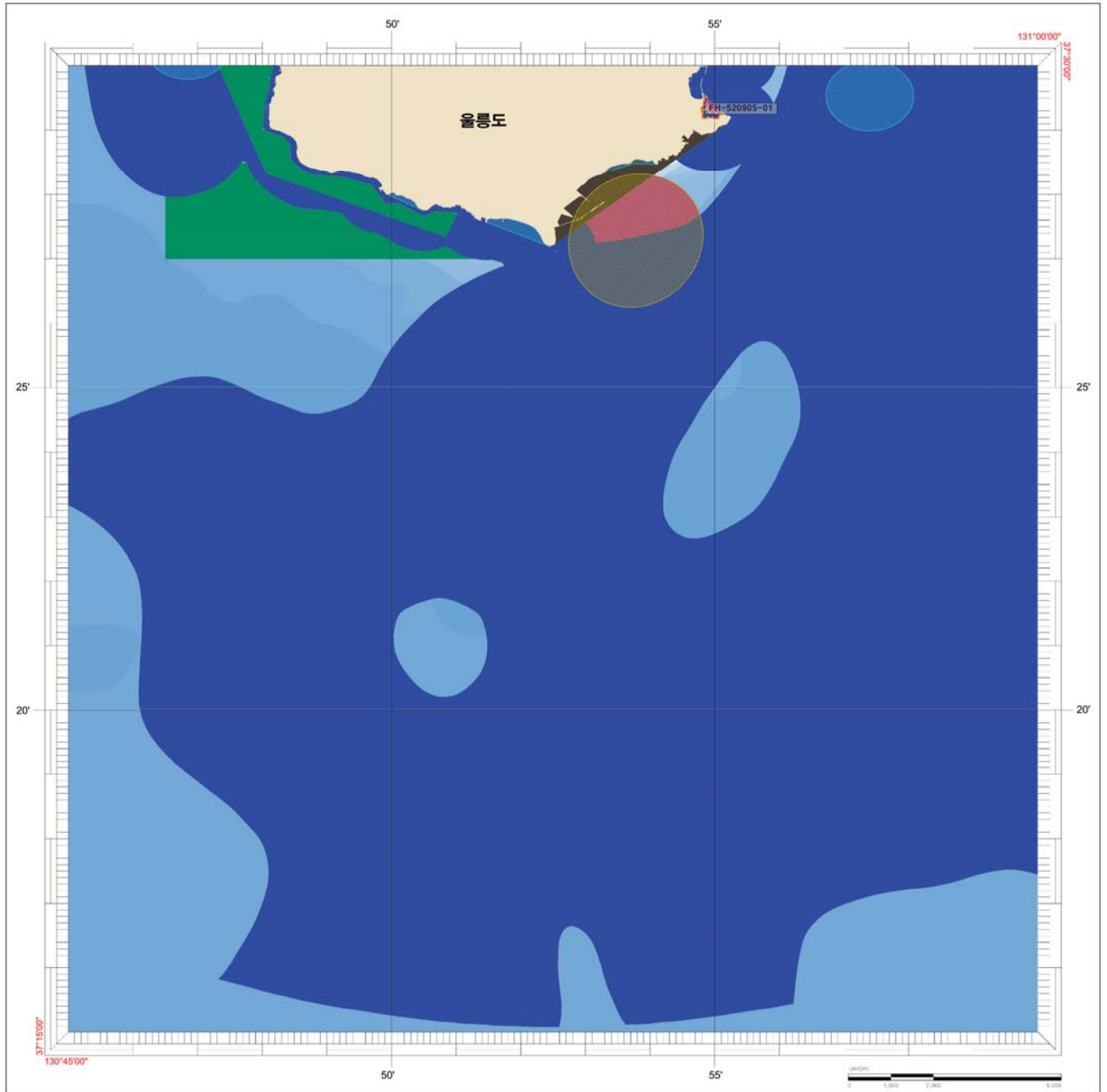
구분	관리코드	면적(㎡)	종류	관리부서	상세설명	비고

\*참고사항

• 해양공간계획도는 해양용도구역의 위치와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제작된 도면입니다. 해양공간계획도 상 해양용도구역은 지역경계를 기준으로 제작되었고, 해도에서 추출한 해안선과 병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역도와 해안선의 경계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관계로 일부 지역에서는 해양용도구역의 경계가 해안선과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 해양용도구역



**범례**

	어업활동보조구역
	풍채·양분자양계통구역
	해수저지계통구역
	해양관광구역
	분양·생태계관리구역
	연구·교육보존구역
	방파·항행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
	전자해도제한선
	지역경계
	관리구역

**INDEX**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09	13	
18	19	20	21	22	23	24	17	18
26	27	28	29	30	31	32	25	26

1. 좌표계 : 세계속지계 (WGS-84)  
 2. 축척 : 1/50,000  
 3. 편집자료 : 전자해도 KRS01K42, KR401K40, KR201000

**관리구역 상세정보**

구분	관리코드	면적(㎡)	종류명	관리부수인용비	상세설명	비고
해양용도구역	FM-020905-01	6,111	해양관광	사유업종별 유수업종별	해양관광 조수위역 해양관광지도(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에 근거하여 결정. 허가종별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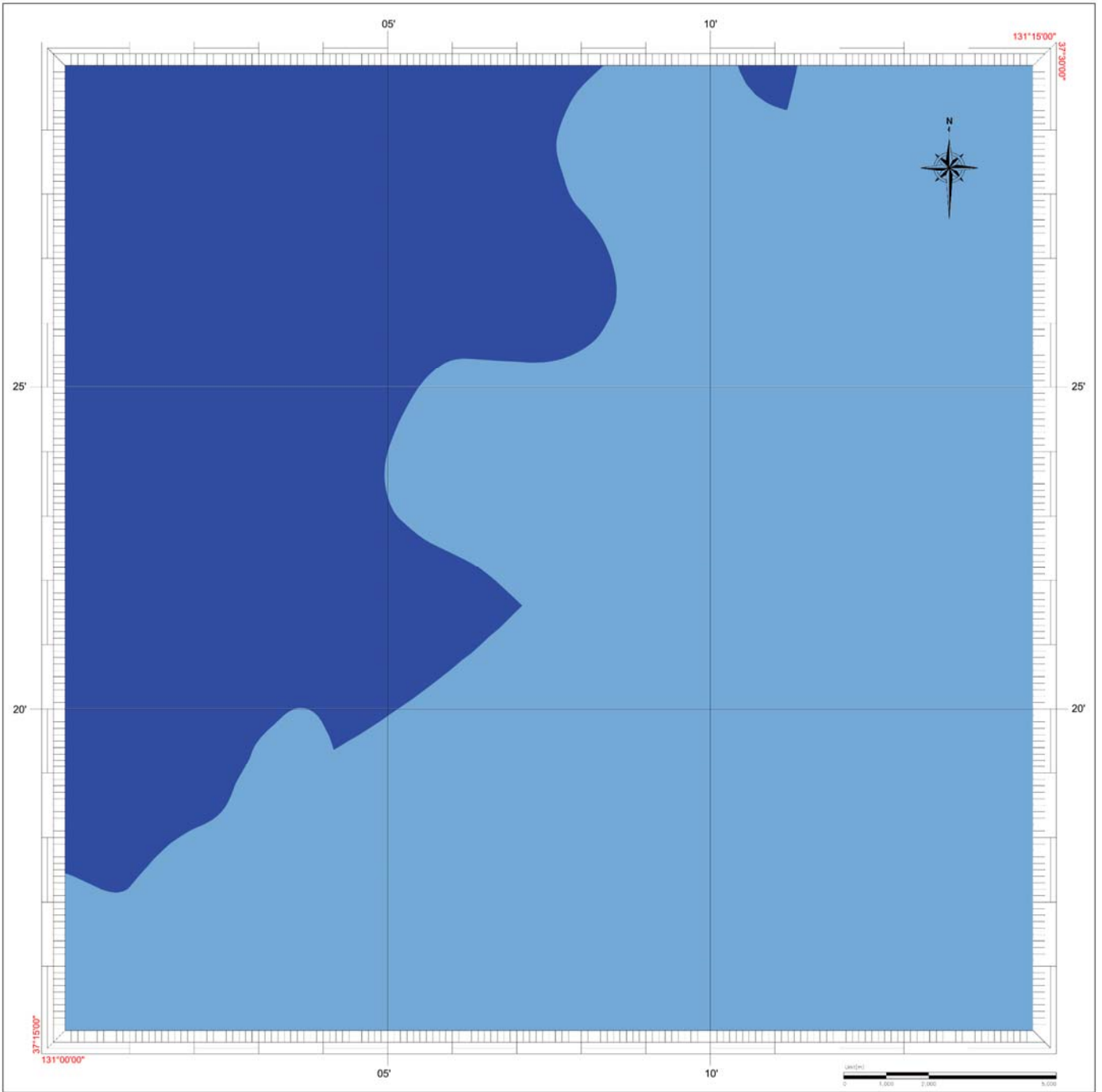
• 해양공간계획도는 해양용도구역의 위치와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제작된 도면입니다. 해양공간계획도 상 해양용도구역은 지역경계를 기준으로 제작되었고, 해도에서 추출한 해안선과 병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역도와 해안선의 경계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관계로 일부 지역에서는 해양용도구역의 경계가 해안선과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 해양용도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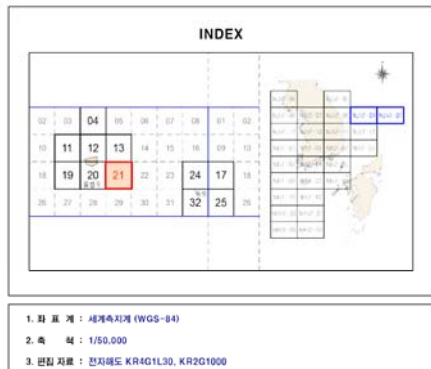


NJ52-09-21



**범례**

	어업활동보조구역
	문화·관광자원개발구역
	에너지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방산·생태계관리구역
	연구·교육보존구역
	방파·항만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
	전자해도제한선
	지역경계
	관리구역



**관리구역 상세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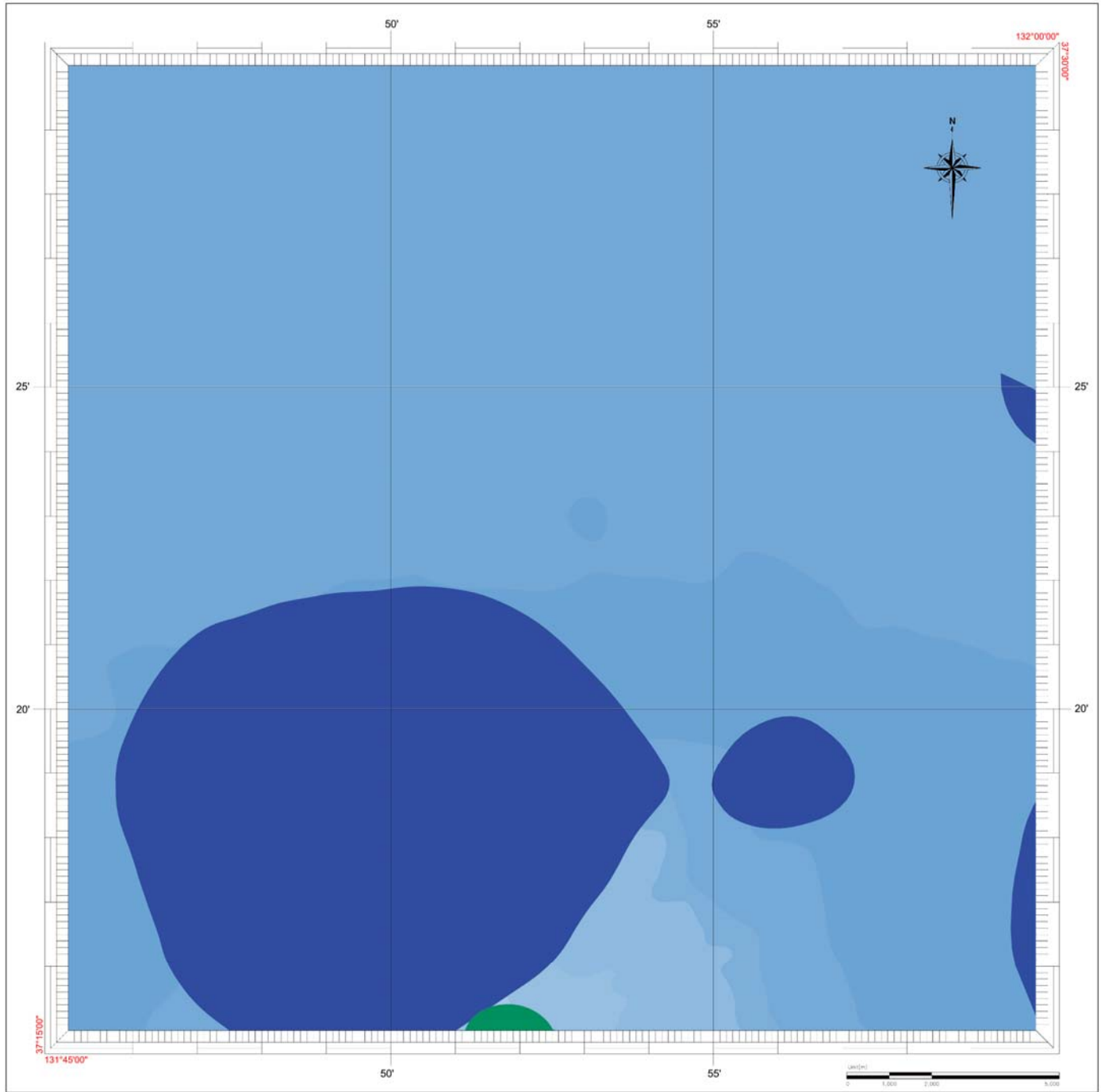
구분	관리코드	면적(㎡)	종류명	관리부수인용허	상세설명	비고

\*참고사항

• 해양공간계획도는 해양용도구역의 위치와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제작된 도면입니다. 해양공간계획도 상 해양용도구역은 지역경계를 기준으로 제작되었고, 해도에서 추출한 제한선과 병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역도와 제한선의 경계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관계로 일부 지역에서는 해양용도구역의 경계가 제한선과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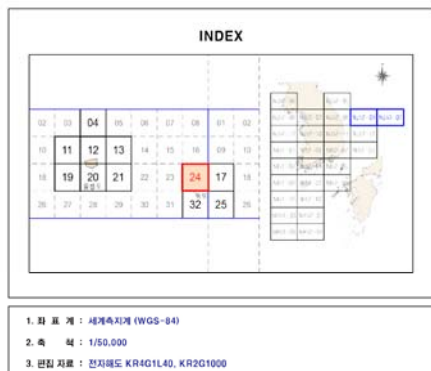


# 해양용도구역



**범례**

	어업활동보조구역
	풍채·양묘장개발구역
	해안저지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분양·생태계관리구역
	연구·교육보존구역
	방파·양양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
	전지해도제한선
	지역경계
	관리구역



**관리구역 상세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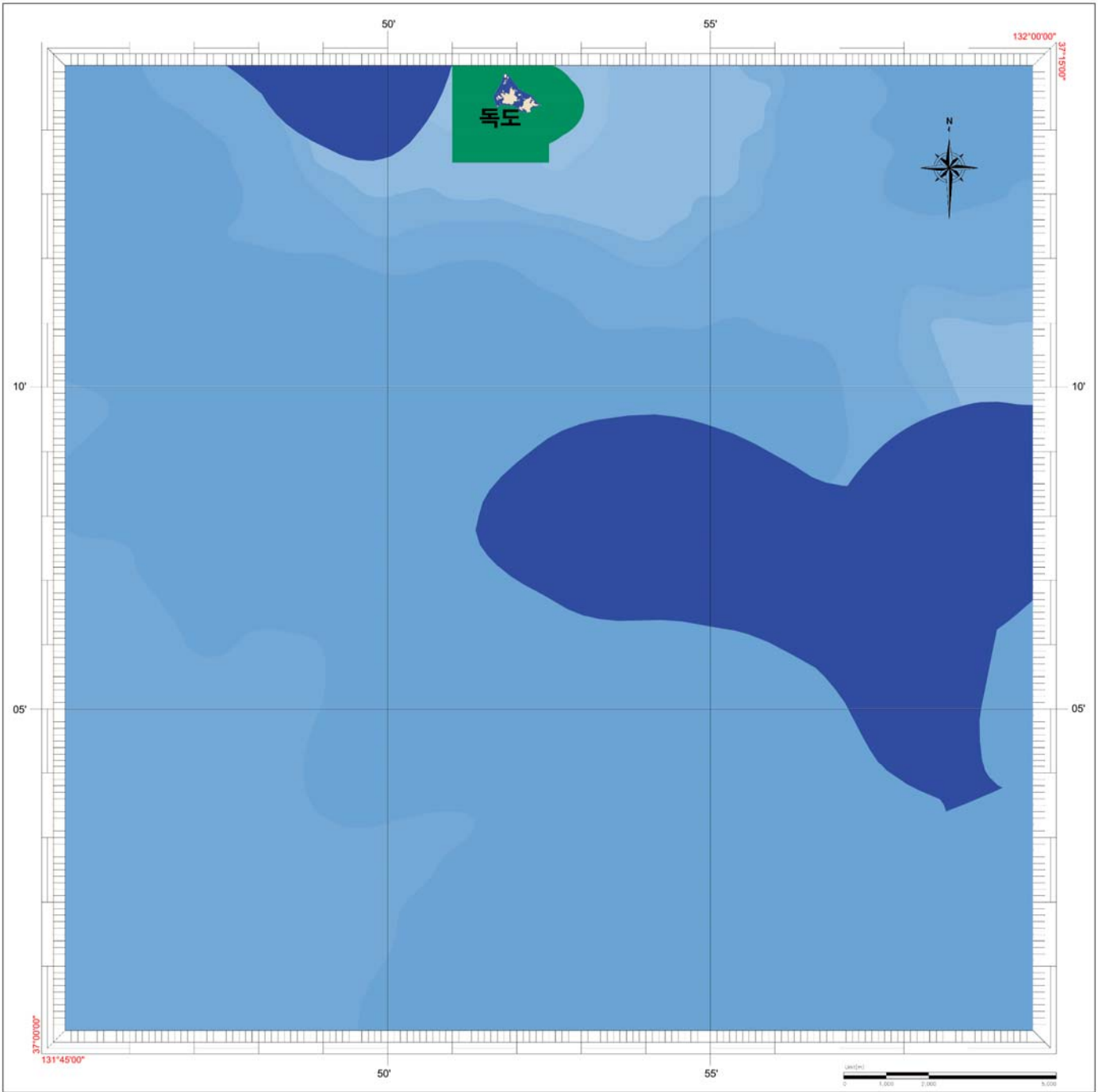
구분	관리코드	면적(㎡)	종류	관리부수인용허	상세설명	비고

\*참고사항

• 해양공간계획도는 해양용도구역의 위치와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제작된 도면입니다. 해양공간계획도 상 해양용도구역은 지역경계를 기준으로 제작되었고, 해도에서 추출한 해안선과 병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역도와 해안선의 경계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관계로 일부 지역에서는 해양용도구역의 경계가 해안선과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 해양용도구역



**범례**

	어업활동보조구역
	풍채·양분자양개항구역
	해수욕장개항구역
	해양관광구역
	방파·생태계관리구역
	연구·교육보존구역
	방파·항행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
	전자해도제한선
	지역경계
	관리구역

**INDEX**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09	13	
18	19	20	21	22	23	24	17	18
26	27	28	29	30	31	32	25	26

1. 좌표계 : 세계측지계 (WGS-84)  
 2. 축척 : 1/50,000  
 3. 편집자료 : 전자해도 KR401L40, KR201000

**관리구역 상세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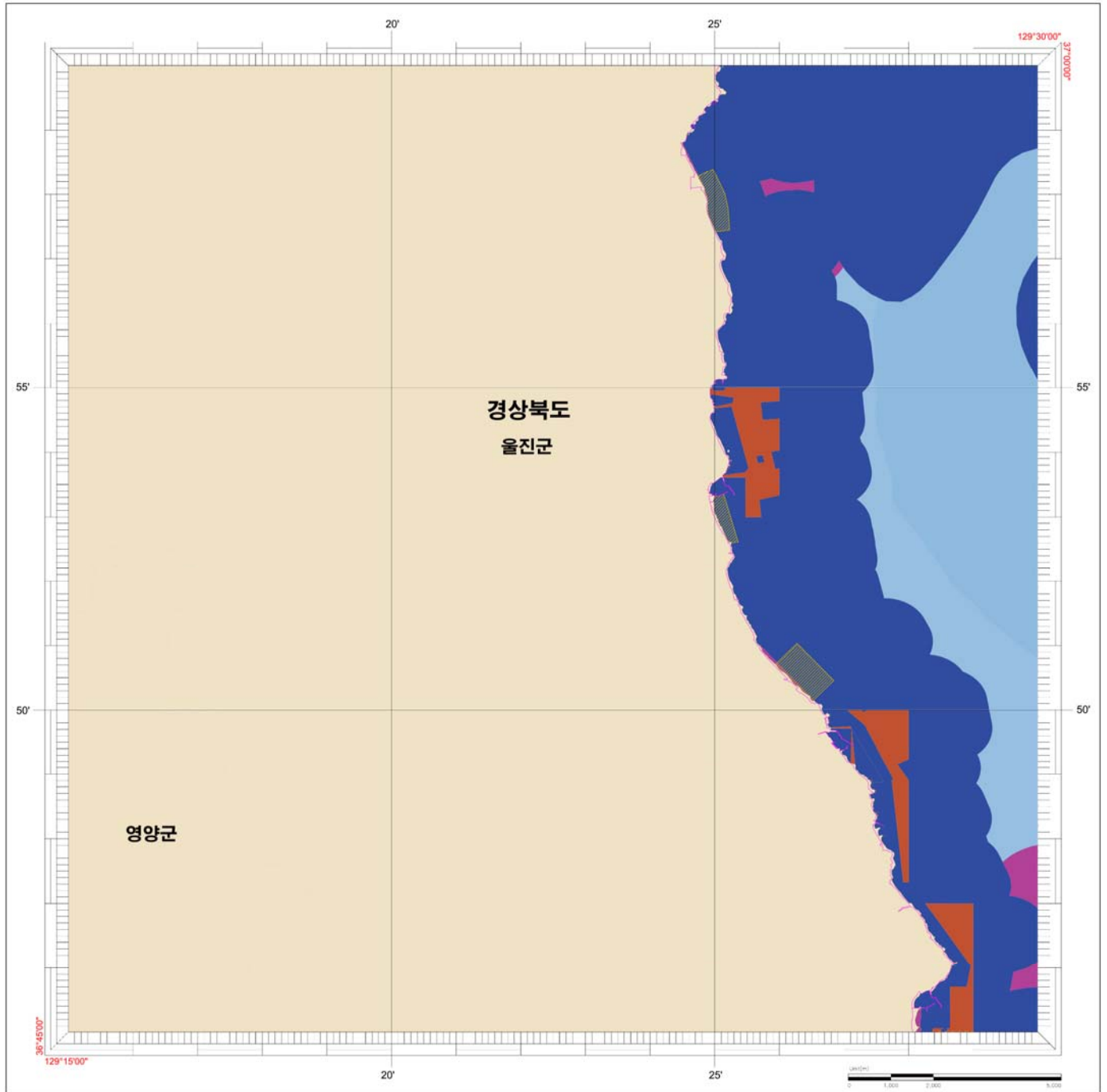
구분	관리코드	면적(㎡)	종류명	관리부수인용허	상세설명	비고

\*참고사항

• 해양공간계획도는 해양용도구역의 위치와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제작된 도면입니다. 해양공간계획도 상 해양용도구역은 지역경계를 기준으로 제작되었고, 해도에서 추출한 해안선과 병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역도와 해안선의 경계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관계로 일부 지역에서는 해양용도구역의 경계가 해안선과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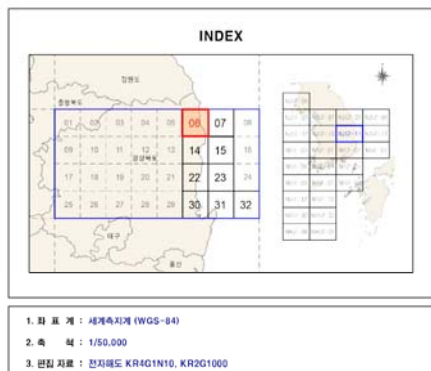


# 해양용도구역



**범례**

	어업활동보호구역
	풍채·양묘장개발구역
	해안저지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방파·생태계관리구역
	연구·교육보존구역
	항만·양양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
	전자해도제한선
	지역경계
	관리구역



**관리구역 상세정보**

구분	관리코드	면적(㎡)	종류	관리부수인용비	상세설명	비고

\*참고사항

• 해양공간계획도는 해양용도구역의 위치와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제작된 도면입니다. 해양공간계획도 상 해양용도구역은 지역경계를 기준으로 제작되었고, 해도에서 추출한 해안선과 병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역도와 해안선의 경계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관계로 일부 지역에서는 해양용도구역의 경계가 해안선과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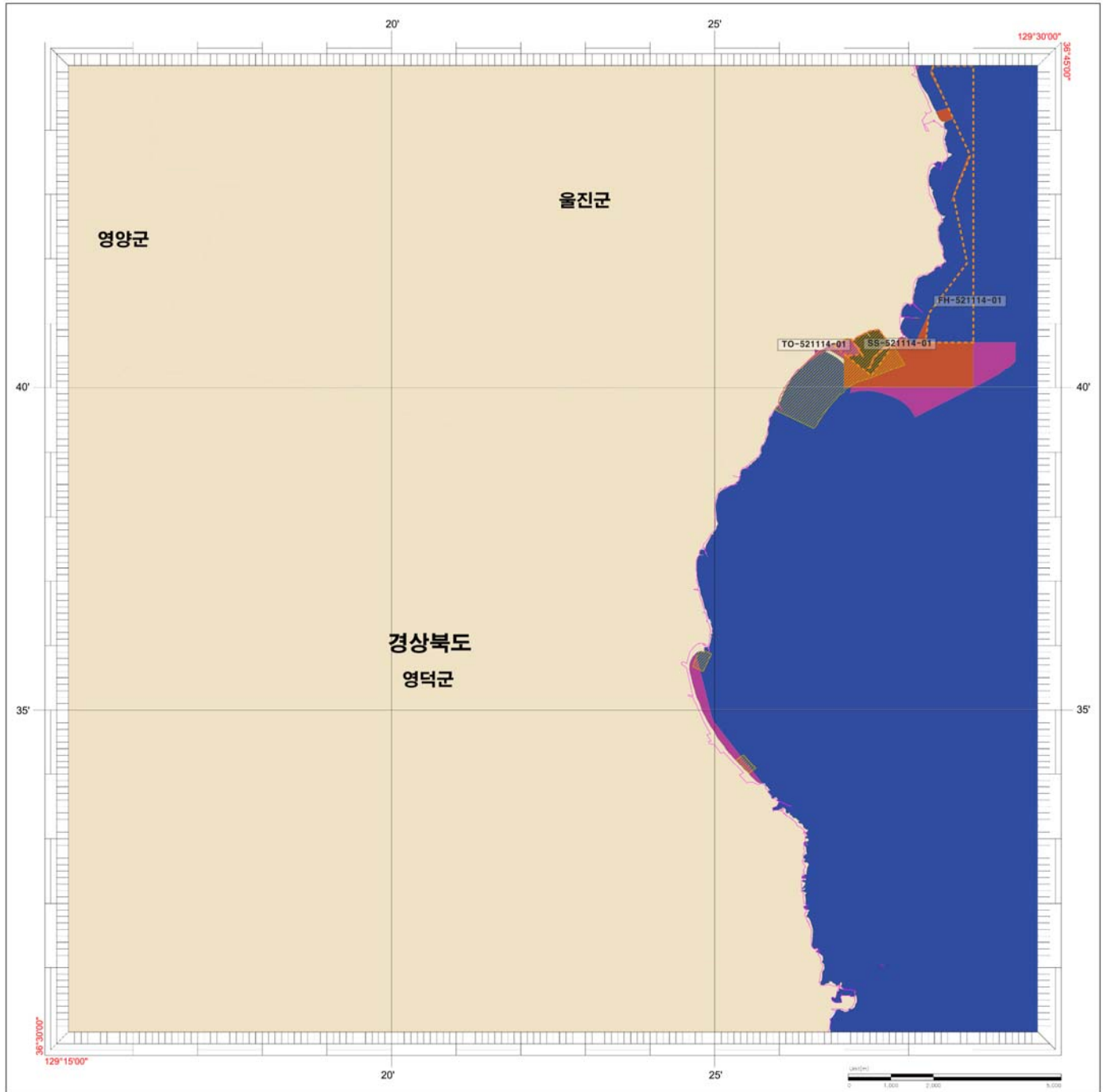




# 해양용도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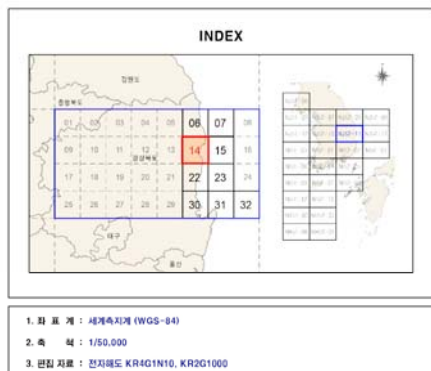


NJ52-11-14



**범례**

	어업활동보조구역
	문화·관광자원개발구역
	에너지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방파·생태계관리구역
	연구·교육보존구역
	방파·해양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
	간지해도제한선
	지역경계
	관리구역



**관리구역 상세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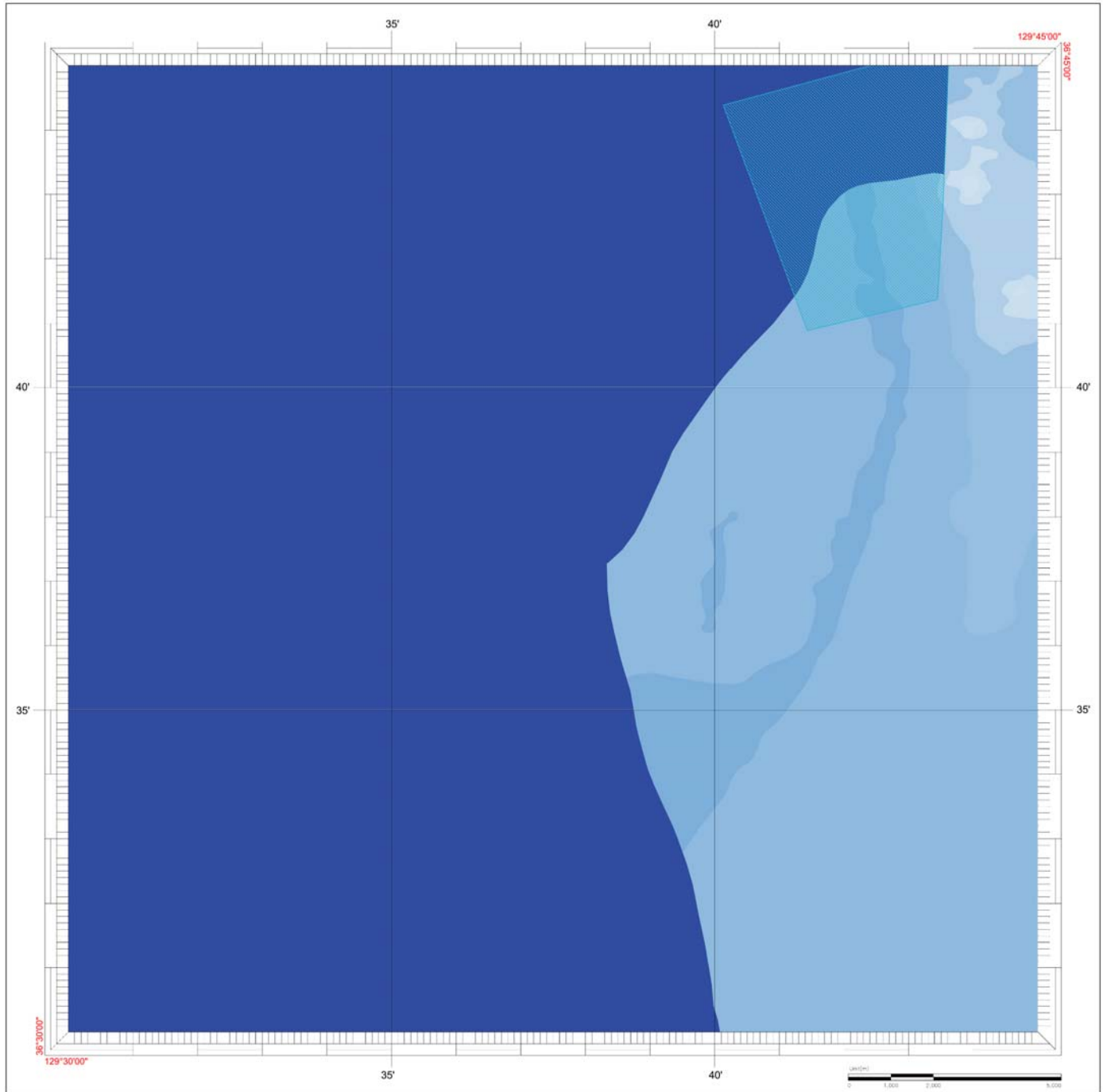
구분	관리구분	면적(㎡)	종류	관리부수	상세설명	비고
영양군	TO-521114-01	4,200	해양관광	5주일마다 1주(20%)	유수적용가능지역의 근해에서 해당관리구역(11)을 지정 해상(11)에서 설정된 용구 중세	
영진군	SS-521114-01	8,770	해양관광	1주(20%) 1주(20%)	방파·연구·교육·문화·관광·해양·관광·해양 해양(11)에서 설정된 용구 중세	
영덕군	TO-521114-01	6,118	해양관광	1주(20%) 1주(20%)	유수적용가능지역의 근해에서 해당관리구역(11)을 지정 해상(11)에서 설정된 용구 중세	

\* 참고 사항

해양공간계획도는 해양용도구역의 위치와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제작된 도면입니다. 해양공간계획도 상 해양용도구역은 지역경계를 기준으로 제작되었고, 해도에서 추출한 해안선과 병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역도와 해안선의 경계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관계로 일부 지역에서는 해양용도구역의 경계가 해안선과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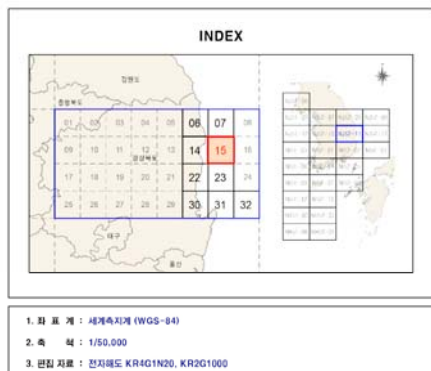


# 해양용도구역



**범례**

	어업활동보조구역
	풍채·양묘장개발구역
	해안저지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방파·생태계관리구역
	연안·교육보안구역
	방파·해양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
	전지해도제한선
	지역경계
	관리구역



**관리구역 상세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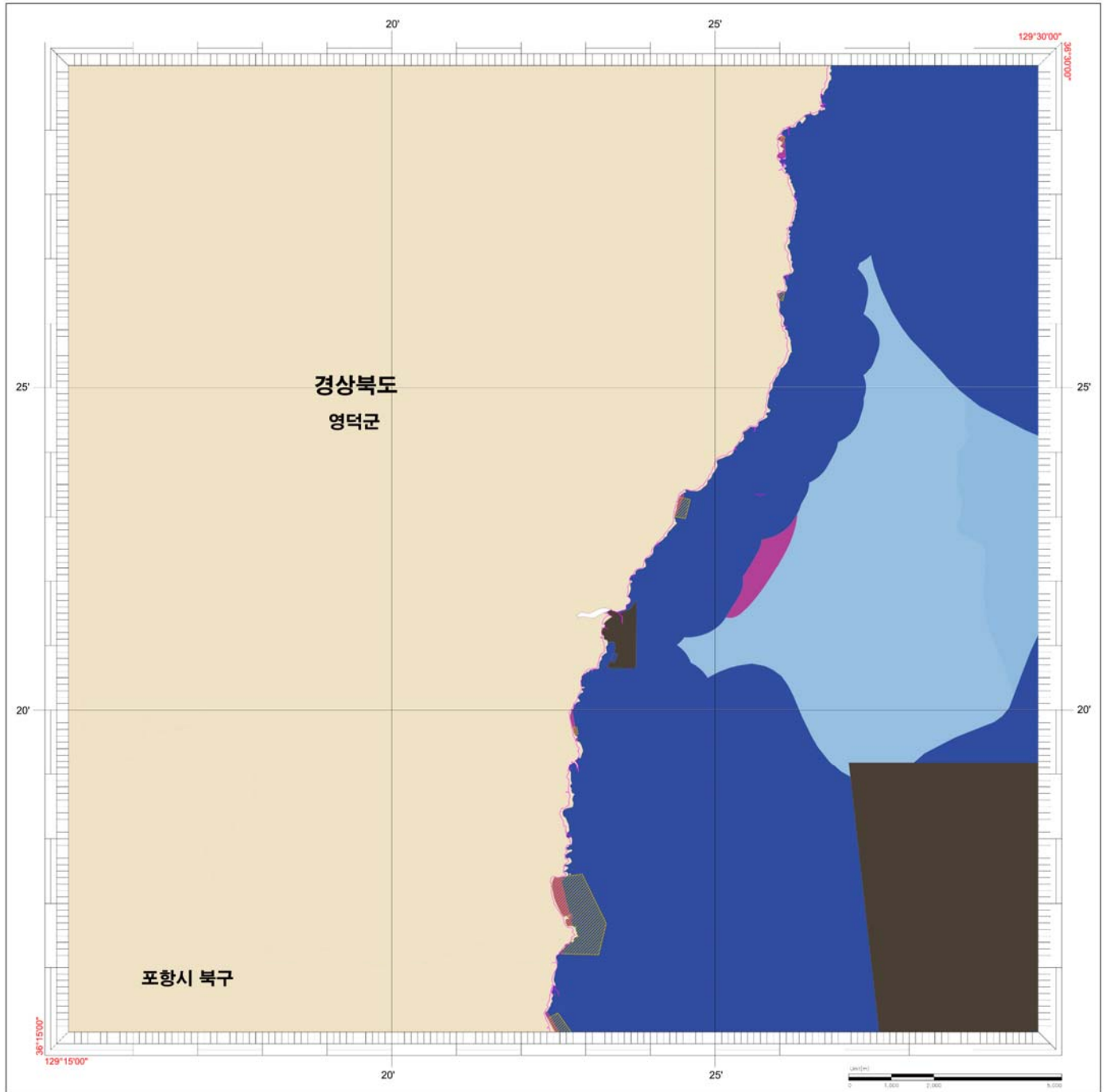
구분	관리코드	면적(㎡)	종류명	관리부서	상세설명	비고

\*참고사항

• 해양공간계획도는 해양용도구역의 위치와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제작된 도면입니다. 해양공간계획도 상 해양용도구역은 지역경계를 기준으로 제작되었고, 해도에서 추출한 해안선과 병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역도와 해안선의 경계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관계로 일부 지역에서는 해양용도구역의 경계가 해안선과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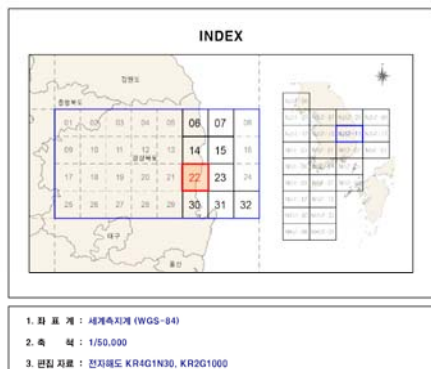


# 해양용도구역



**범례**

	어업활동보조구역
	풍채·양묘장용계항구역
	해안저지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방파·생태계관리구역
	연구·교육보존구역
	방파·해양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
	전지해도제한선
	지역경계
	관리구역



**관리구역 상세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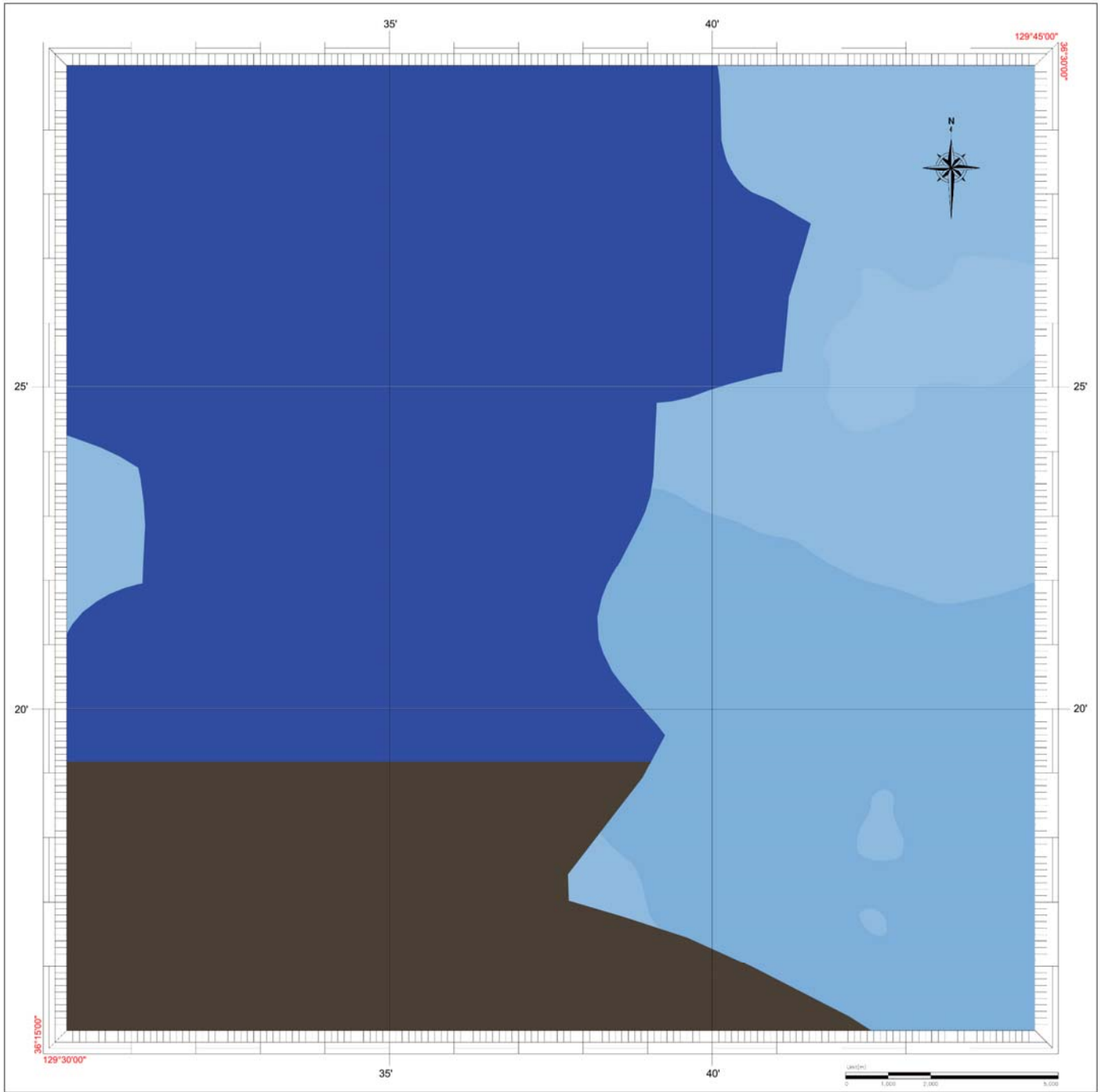
구분	관리코드	면적(㎡)	종류명	관리부위	상세설명	비고

\*참고사항

• 해양공간계획도는 해양용도구역의 위치와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제작된 도면입니다. 해양공간계획도 상 해양용도구역은 지역경계를 기준으로 제작되었고, 해도에서 추출한 해안선과 병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역도와 해안선의 경계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관계로 일부 지역에서는 해양용도구역의 경계가 해안선과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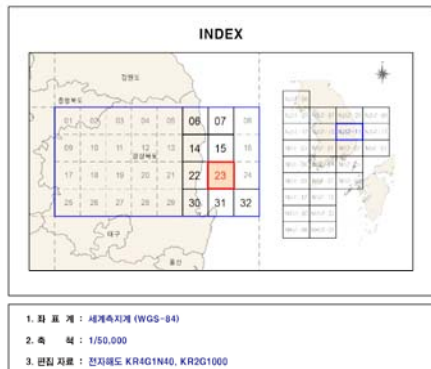


# 해양용도구역



**범례**

	어업활동보조구역
	풍채·양묘장용계항구역
	해안저지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방파·생태계관리구역
	연구·교육보존구역
	방파·양양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
	전차해도제한선
	지역경계
	관리구역



**관리구역 상세정보**

구분	관리코드	면적(㎡)	종류명	관리부수인용허	상세설명	비고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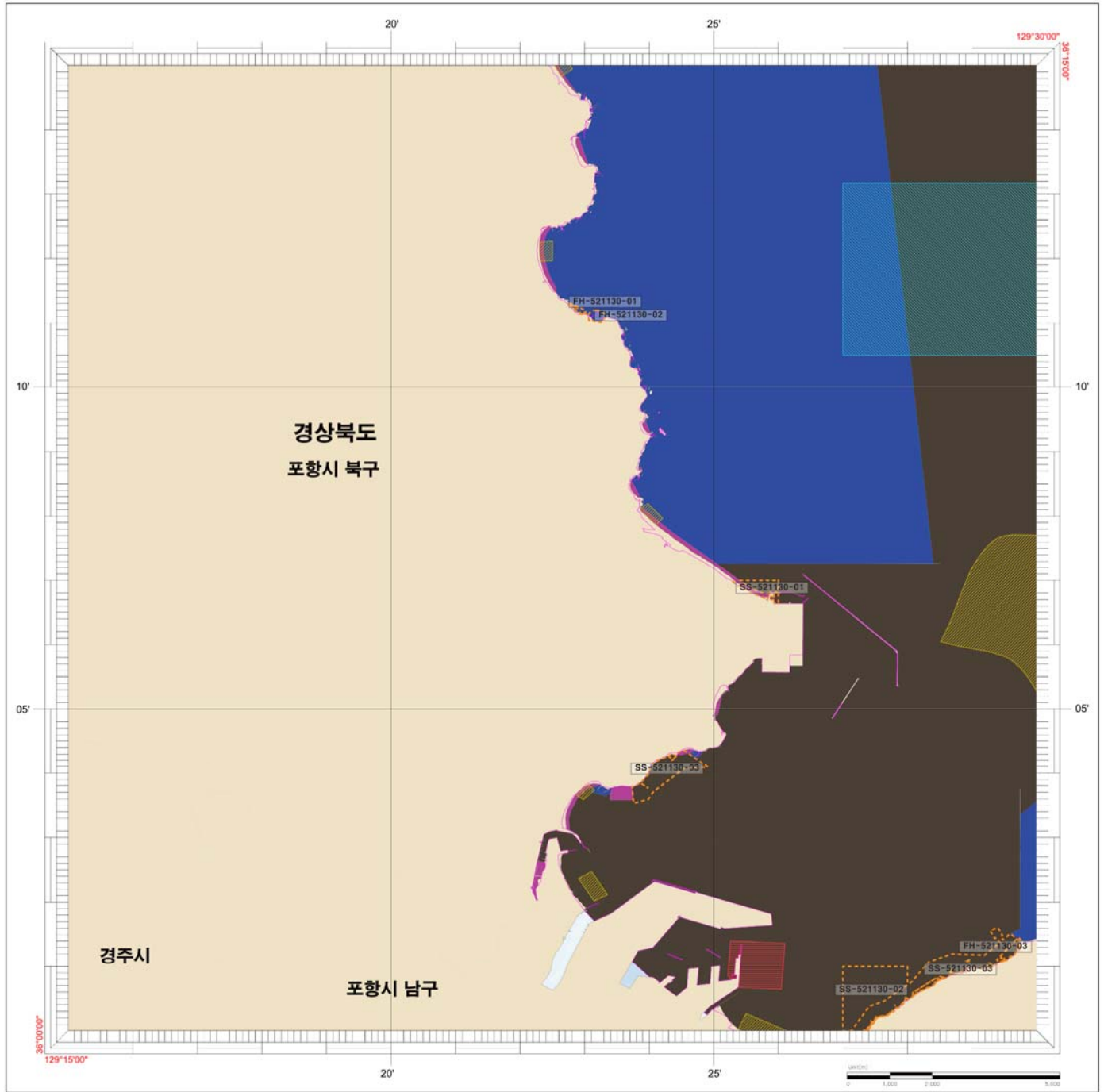
• 해양공간계획도는 해양용도구역의 위치와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제작된 도면입니다. 해양공간계획도 상 해양용도구역은 지역경계를 기준으로 제작되었고, 해도에서 추출한 제한선과 병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역도와 제한선의 경계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관계로 일부 지역에서는 해양용도구역의 경계가 제한선과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 해양용도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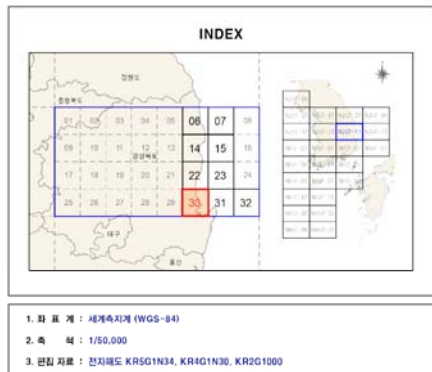


NJ52-11-30



**범례**

	어업활동보존구역
	문화·관광자원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해양관광관리구역
	연구·교육보존구역
	환경·휴양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
	경자해도제한선
	지역경계
	관리구역



**관리구역 상세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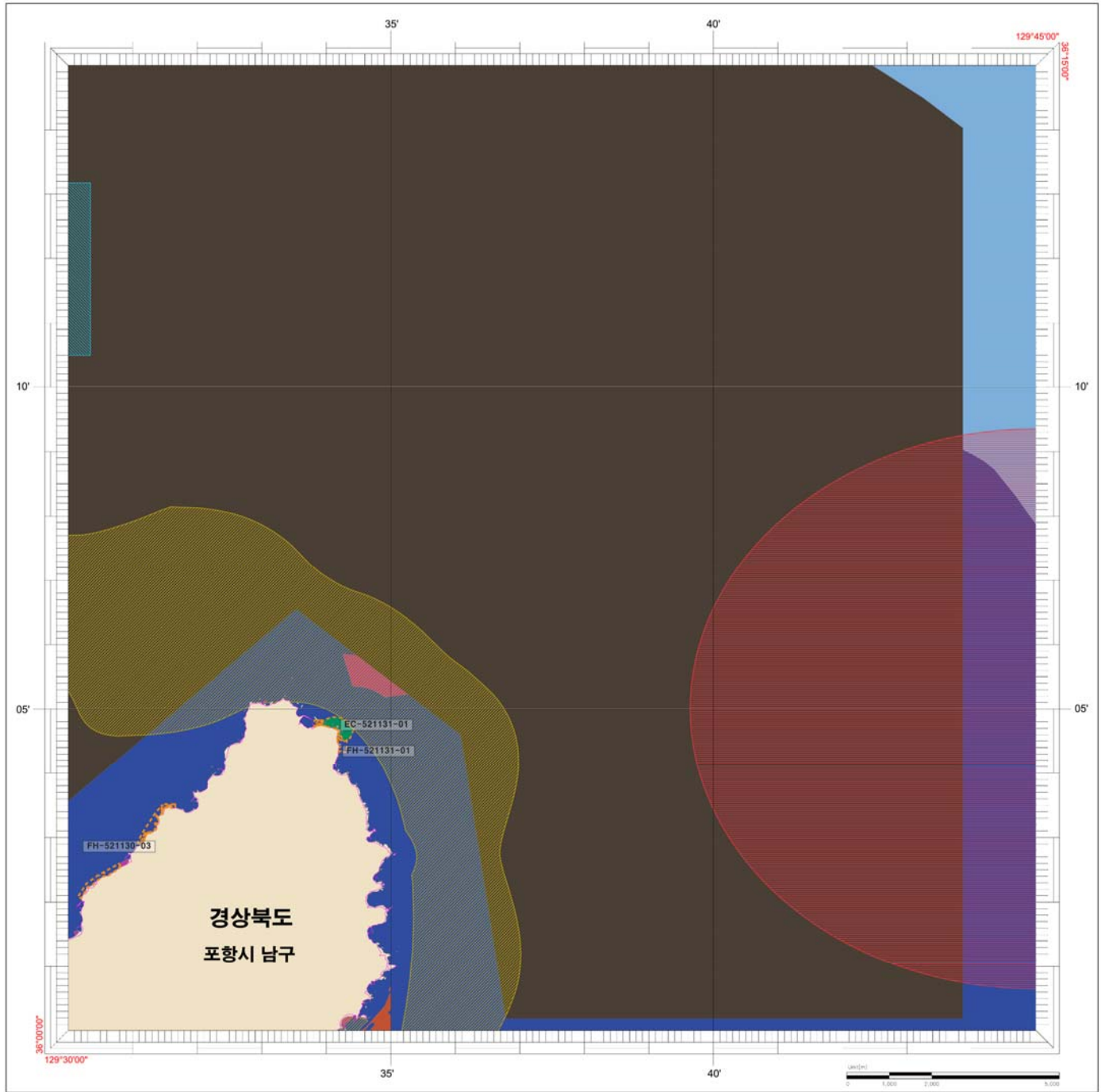
구분	관리코드	면적(㎡)	종류	관리부수인용	상세설명	비고
해양관광구역	01-131-30-01	0.06	해양관광	해양관광	해양관광의 존속을 위한 해양관광시설(해양관광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해양관광관리구역	01-131-30-02	0.11	해양관광	해양관광	해양관광의 존속을 위한 해양관광시설(해양관광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해양관광관리구역	01-131-30-03	0.54	해양관광	해양관광	해양관광의 존속을 위한 해양관광시설(해양관광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연구·교육보존구역	02-01133-01	0.21	연구·교육보존	연구·교육보존	해양관광의 존속을 위한 해양관광시설(해양관광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연구·교육보존구역	02-01133-02	1.76	연구·교육보존	연구·교육보존	해양관광의 존속을 위한 해양관광시설(해양관광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문화·관광자원개발구역	03-131-30-01	0.90	문화·관광자원개발	문화·관광자원개발	해양관광의 존속을 위한 해양관광시설(해양관광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참고사항**

\* 해양공간계획도는 해양용도구역의 위치와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제작된 도면입니다. 해양공간계획도 상 해양용도구역은 지역경계를 기준으로 제작되었고, 해도에서 추출한 해안선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역도와 해안선의 경계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관계로 일부 지역에서는 해양용도구역의 경계가 해안선과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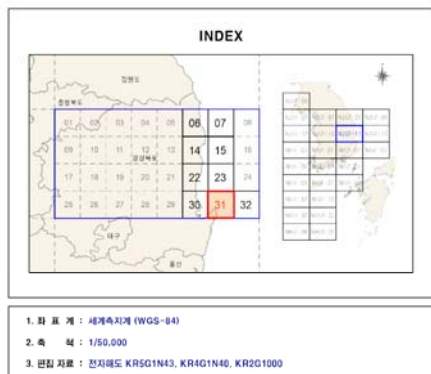


# 해양용도구역



**범례**

	어업활동보호구역
	풍채·양묘장개발구역
	해안저지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방파·생태계관리구역
	연구·교육보호구역
	방파·양양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
	경자해도제한선
	지역경계
	관리구역



**관리구역 상세정보**

구분	관리코드	면적(㎡)	종류	관리부서	상세설명	비고
어업활동보호구역	제 52-130-01	0.54	어업활동 보호구역	해양수산부	어업활동 보호구역 지정	
풍채·양묘장개발구역	제 52-131-01	0.00	풍채·양묘장 개발구역	해양수산부	풍채·양묘장 개발구역 지정	
해안저지개발구역	제 52-131-02	0.00	해안저지 개발구역	해양수산부	해안저지 개발구역 지정	
해양관광구역	제 52-131-03	0.00	해양관광 구역	해양수산부	해양관광 구역 지정	
방파·생태계관리구역	제 52-131-04	0.00	방파·생태계 관리구역	해양수산부	방파·생태계 관리구역 지정	
연구·교육보호구역	제 52-131-05	0.00	연구·교육 보호구역	해양수산부	연구·교육 보호구역 지정	
방파·양양구역	제 52-131-06	0.00	방파·양양 구역	해양수산부	방파·양양 구역 지정	
군사활동구역	제 52-131-07	0.00	군사활동 구역	해양수산부	군사활동 구역 지정	
안전관리구역	제 52-131-08	0.00	안전관리 구역	해양수산부	안전관리 구역 지정	

\* 참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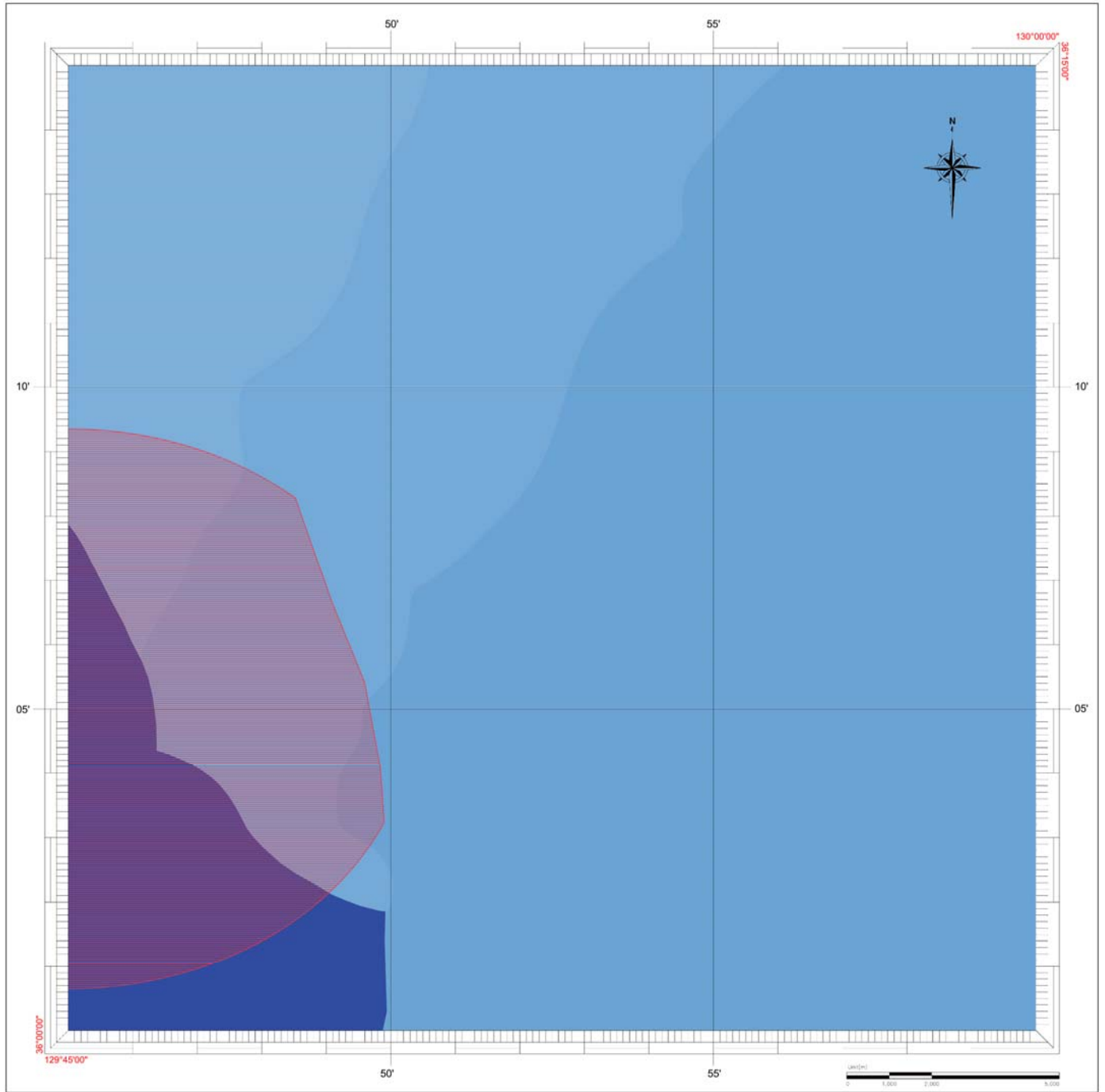
\* 해당공간계획도는 해양용도구역의 위치와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제작된 도면입니다. 해당공간계획도 상 해양용도구역은 지역경계를 기준으로 제작되었고, 해도에서 추출한 해안선과 병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역도와 해안선의 경계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관계로 일부 지역에서는 해양용도구역의 경계가 해안선과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 해양용도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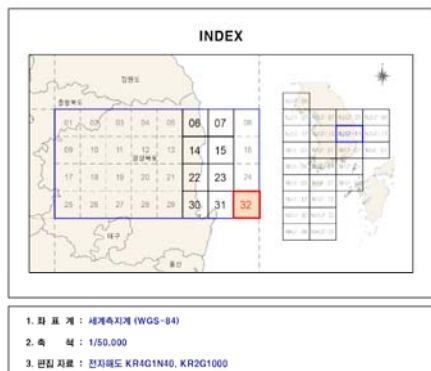


NJ52-11-32



**범례**

	어업활동보조구역
	문화·관광자원개발구역
	에너지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방파선·생태계관리구역
	연구·교육보존구역
	방파선·해양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
	전지해도제한선
	지역경계
	관리구역



**관리구역 상세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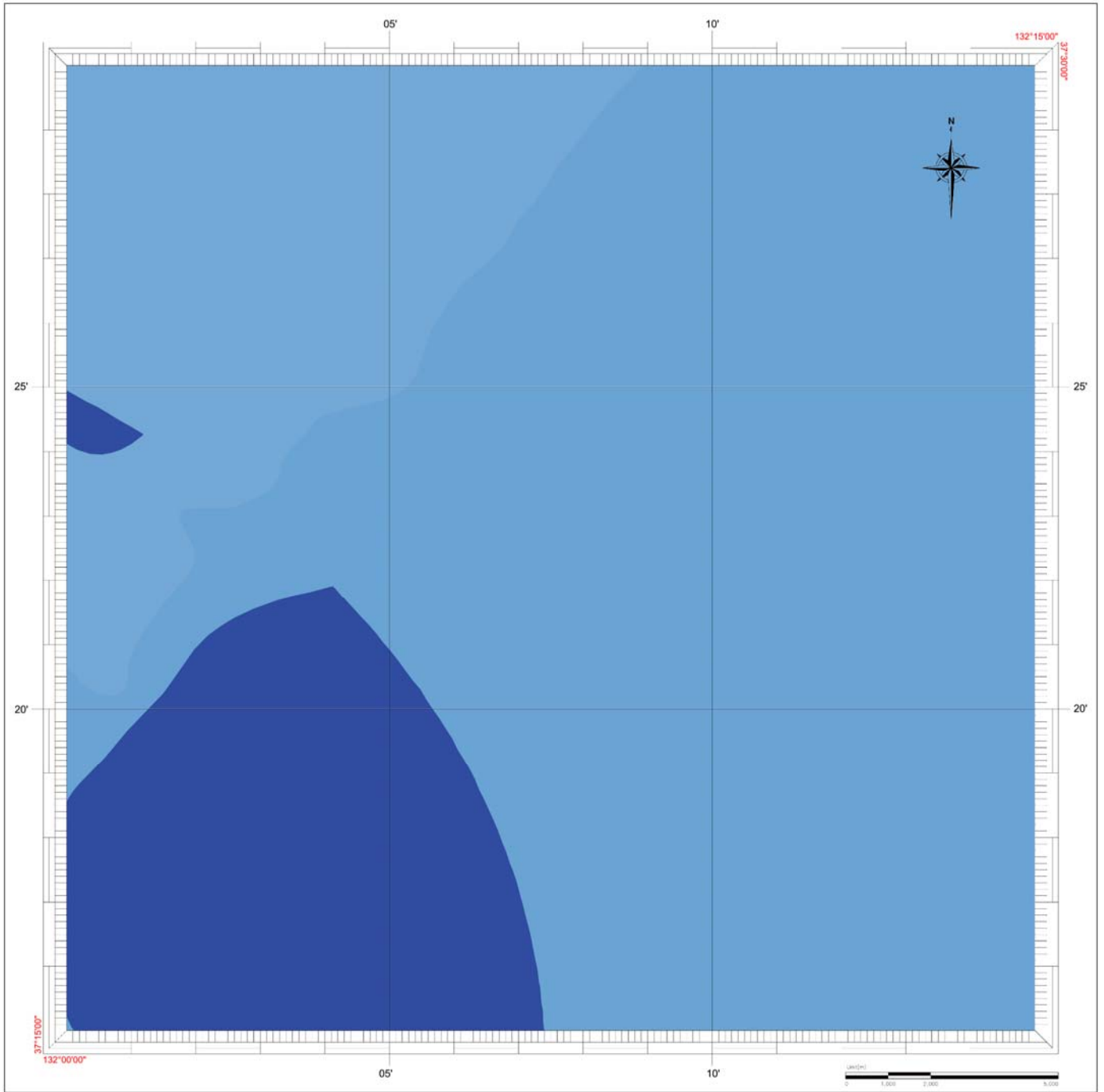
구분	관리코드	면적(㎡)	종류명	관리부수인용비	상세설명	비고

\*참고사항

• 해양공간계획도는 해양용도구역의 위치와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제작된 도면입니다. 해양공간계획도 상 해양용도구역은 지역경계를 기준으로 제작되었고, 해도에서 추출한 해안선과 병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역도와 해안선의 경계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관계로 일부 지역에서는 해양용도구역의 경계가 해안선과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 해양용도구역



**범례**

	어업활동보조구역
	풍채·양묘장용해양구역
	해수욕장해양구역
	해양관광구역
	방파·생태계관리구역
	연구·교육보존구역
	방파·항만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
	전지해도제한선
	지역경계
	관리구역

**INDEX**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1. 좌표계 : 세계측지계 (WGS-84)  
 2. 축척 : 1/50,000  
 3. 편집자료 : 전자해도 KR402130, KR202060

**관리구역 상세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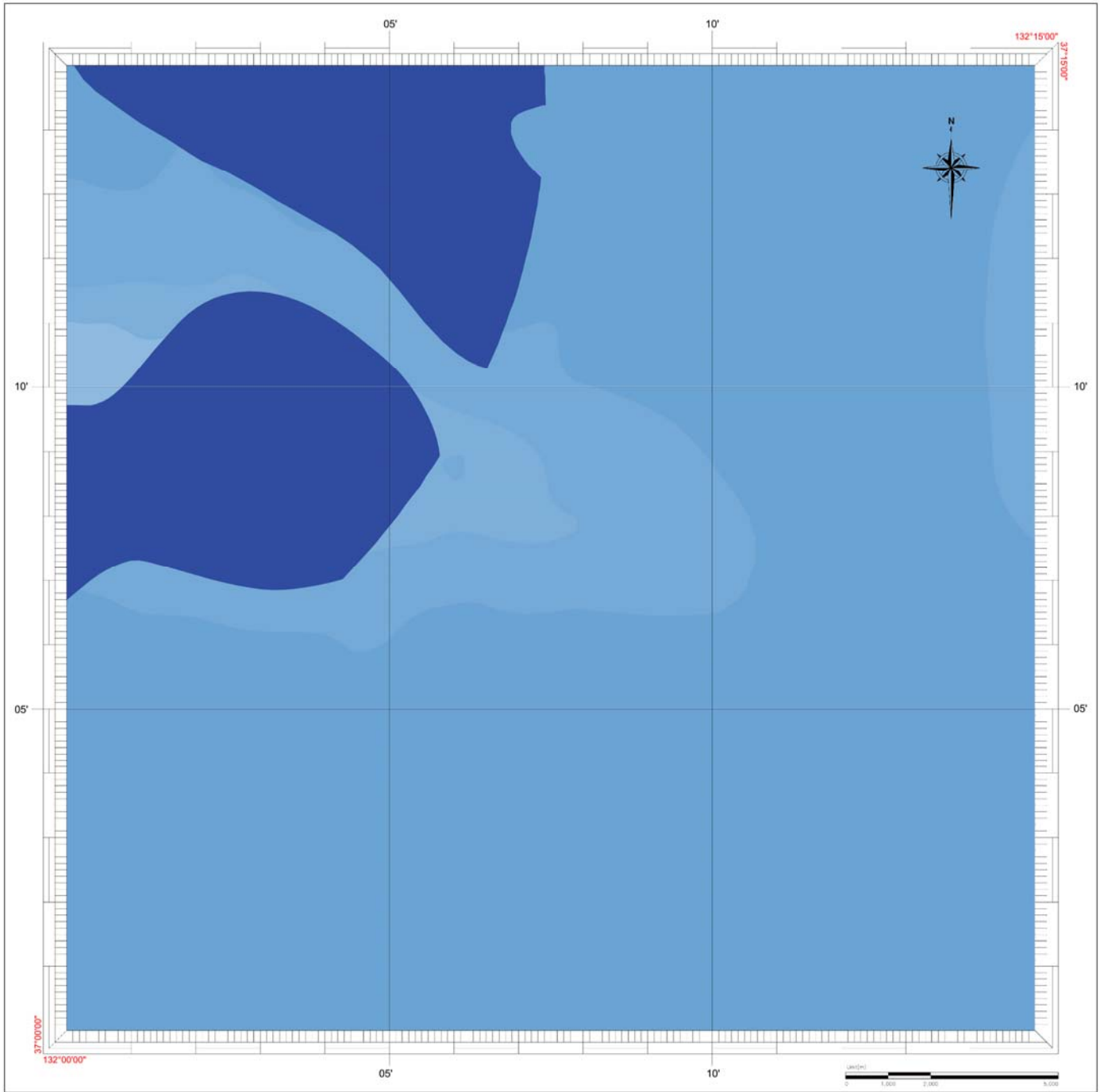
구분	관리코드	면적(㎡)	종류	관리부수인용비	상세설명	비고

\*참고사항

• 해양공간계획도는 해양용도구역의 위치와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제작된 도면입니다. 해양공간계획도 상 해양용도구역은 지역경계를 기준으로 제작되었고, 해도에서 추출한 제한선과 병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역도와 제한선의 경계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관계로 일부 지역에서는 해양용도구역의 경계가 제한선과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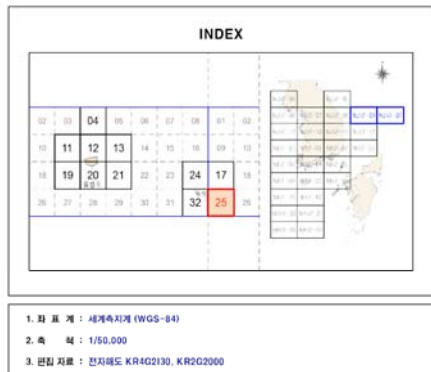


# 해양용도구역



**범례**

	어업활동보조구역
	풍채·양묘장용계항구역
	해운·수출·수입구역
	해양관광구역
	방파·생태계관리구역
	연구·교육보존구역
	방파·항만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
	전지해도제한선
	지역경계
	관리구역



**관리구역 상세정보**

구분	관리코드	면적(㎡)	종류	관리부수인용허	상세설명	비고

\*참고사항

해양공간계획도는 해양용도구역의 위치와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제작된 도면입니다. 해양공간계획도 상 해양용도구역은 지역경계를 기준으로 제작되었고, 해도에서 추출한 해안선과 병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역도와 해안선의 경계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관계로 일부 지역에서는 해양용도구역의 경계가 해안선과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